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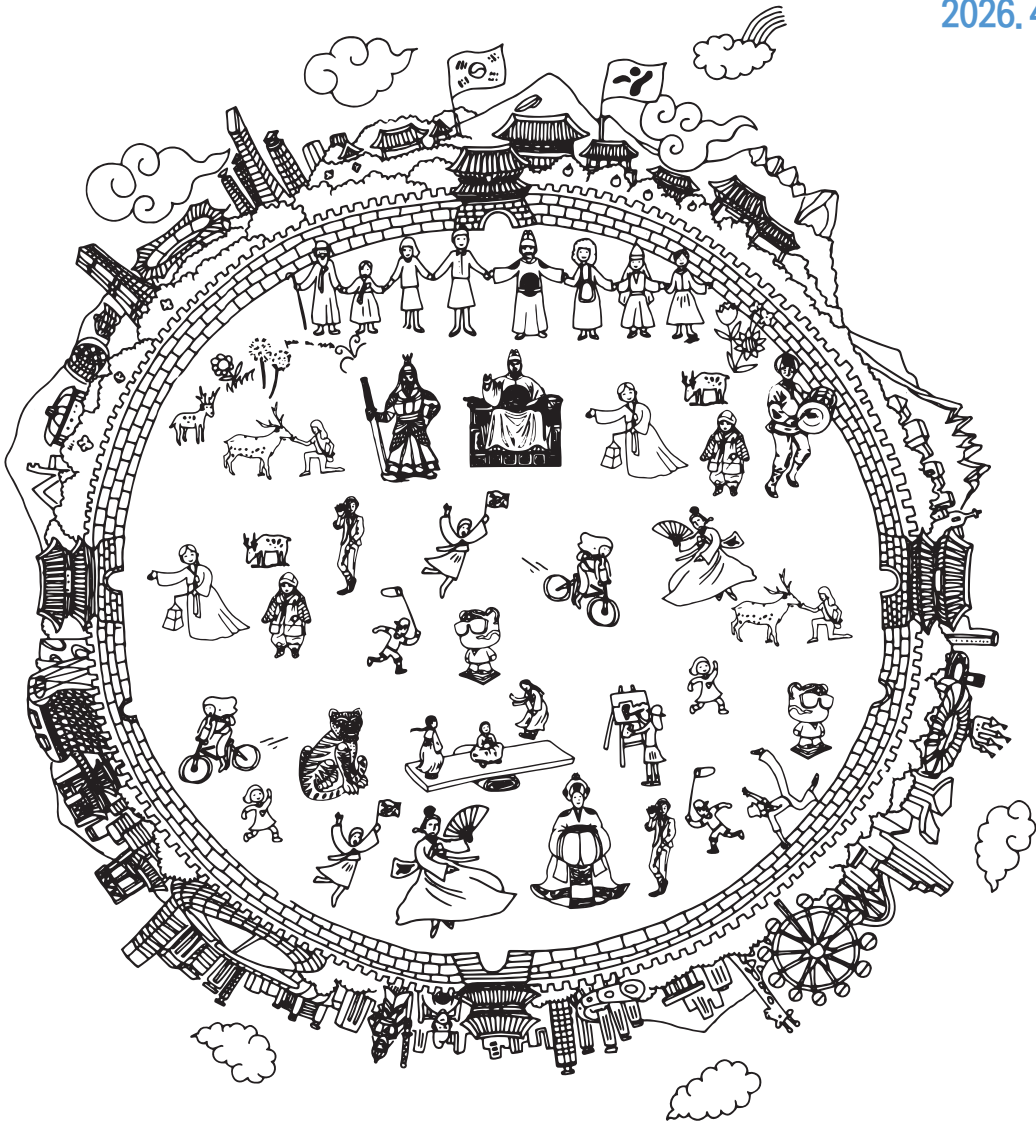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38호
2026. 4. 2.(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1001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1001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1001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	9
제1001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1001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1001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	16
제1001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1001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제10020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	24
제1002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26
제1002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제1002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제1002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제1002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10026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입법예고]

제2026-1072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0
제2026-1075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4
제2026-107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0
제2026-1083호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5
제2026-1084호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2
제2026-109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5
제2026-1097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0

◆ 고 시

제2026-160호	도시계획시설(수고공급설비)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73
제2026-168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4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75
제2026-169호	도시관리계획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9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89
제2026-170호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5
제2026-171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136
제2026-172호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	138
제2026-173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139
제2026-174호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재위탁 고시	146
제2026-175호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47
제2026-176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192
제2026-177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194

◆ 공 고

제2026-992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197
제2026-999호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지원 공고	215
제2026-1004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21
제2026-101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23
제2026-1020호	승강기사업자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공고	224
제2026-1021호	승강기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225
제2026-1022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26
제2026-1024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227
제2026-102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28
제2026-105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230
제2026-1067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231
제2026-107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32
제2026-1071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34
제2026-1081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42
제2026-1086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257

제2026-1089호	도시관리계획(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개 구역)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259
제2026-1090호	국가유산수리업등 신규 등록 공고	274
제2026-109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위법행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해산등기·청산의무 이행 안내 공시송달 공고	275
제2026-1100호	2개년(2026~2027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공고	279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제2026-4호	2026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342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훈령]

제22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폐지규정	347
-------	-------------------------	-----

◆ 구 고 시

제2026-54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마포구)	349
제2026-4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강서구)	351
제2026-37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353
제2026-77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초구)	360
제2026-78호	도시관리계획(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초구)	365
제2026-79호	도시관리계획(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초구)	371
제2026-51호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373
제2026-54호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강동구)	375

◆ 구 공 고

제2026-480호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 열람공고(동대문구)	382
제2026-613호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성북구)	387
제2026-591호	도시관리계획(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노원구)	394

제2026-649호	도시계획시설(물푸레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은평구)	395
제2026-577호	신촌지역 마포3구역 및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제공람공고(마포구)	398
제2026-674호	구로구 은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공원(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을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419
제2026-62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금천구)	434
제2026-688호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동작구청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동작구)	435
제2026-72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공고 (서초구)	438
제2026-850호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근린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강남구)	440

◆ 사업소고시

제2026-12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450
제2026-1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450
제2026-1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451
제2026-1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451
제2026-1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452
제2026-1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452

◆ 사업소공고

제2026-122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453
제2026-123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456
제2026-19호	청문조서 열람 공시송달 공고(강남소방서)	458

◆ 기 타

제2026-1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고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59
제2026-10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460
제2026-102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461

자치법규 등**[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10012호****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의 열량과 식단 사진. 다만, 제4호의 식단표와 다른 식단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단이 변경된 사유를 포함한다. 이 경우 일부 학생에게 제공되는 대체식단은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내부 규정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부실 급식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부실 급식 방지 강화를 위해 학교 급식의 사진과 열량공개 사항을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는 정보에 급식 사진과 열량을 추가함(안 제 10조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1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료 제작 시 수사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에는 수사기관 관계자,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나타나고, 학생들의 유해 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음
- 나.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마약류를 비롯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추진에 관한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 및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다. 또한 자문위원회에 관련 기관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여,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 제작시 수사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전문가 등과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3항 신설)
- 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의 활동을 의무화함(안 제9조제1항)
- 다.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와 동 위원회에대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의 전문가 참여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1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6년 4월 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생성형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올바른 가치판단과 윤리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인공지능으로서,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2. “윤리적활용”이란 생성형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허위 콘텐츠를 생성·유포·공유 등을 하지 않으며, 정보의 편향성과 허위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교급별 맞춤형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교육 방안
3. 교직원의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방안
4. 그 밖에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의 생성형인공지능 사용 실태 및 윤리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학생의 생성형인공지능 사용 현황 및 목적
 2. 딥페이크 등 합성 콘텐츠에 대한 인식 수준
 3. 타인의 권리 침해 및 허위정보 생성에 대한 인식
 4.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대한 이해도
 5. 학교의 윤리교육 실시 현황 및 효과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① 학교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생성형인공지능 기술의 기본원리와 한계에 대한 이해
 2. 생성형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콘텐츠의 부적절성, 편견 등 문제 인식
 3. 생성형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조작 콘텐츠(딥페이크 등) 제작·유포의 위험성 및 법적 책임
 4.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방법에 관한 사항
 5. 생성형인공지능 활용 시 출처 표기 등 학문적 정직성에 관한 사항
- 제8조(지침 보급) 교육감은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교직원,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과 관련된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대학·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최근 학생들이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생성형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 윤리적 문제가 함께 증가하고 있음
- 나. 특히 생성형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 청소년이 324명(83.7%)으로 대다수를 차지함
- 다. 이처럼 학생들 사이에서 생성형인공지능을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활용하는 과정에서 범죄의식 없이 이를 놀이문화로 혼동하는 등 기술 활용에 대한 윤리의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생성형인공지능 기술활용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과 윤리적활용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3조)
- 나.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다.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학교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1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체결”을 “체결, 교육 지원 및 교류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국제교류협력 대상 검토 및 선정) 교육감은 제6조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상호 신뢰성
2.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3.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의 교류 여건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을 통한 실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명확한 국제교류협력 대상의 선정 및 검토, 사후관리 및 경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교류협력의 정의를 확대함 (안 제2조)

나. 국제교류협력 대상 검토 및 선정을 규정함 (안 제6조2)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1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과학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안전한 과학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2. 과학실 안전장구 및 설비 구축
3. 과학실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실태조사
4. 과학실 안전교육 및 교원의 실험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5. 과학실 화학약품 및 폐수·폐시약 등 관리·처리
6. 안전한 과학실 사례 발굴 및 지원
7. 그 밖에 과학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 제목 “(과학실 관리)”를 “(과학실 관리 및 안전관리담당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장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책임을 담당하는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안전관리 담당자”를 “안전관리담당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22년 한 고등학교 과학실험 중 금속나트륨이 폭발하여 학생 여러 명이 부상 당했고 다른 해에는 실험 중 포르말린이 누출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병원으로 이송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과학실험 중 예기치 않은 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 과학실험 중 안전사고 예방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 대책, 장구 및 설비구축, 실태조사 등이 포함된 과학실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2)

나. 학교장이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1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6년 4월 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후예산서”란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 성과지표, 기대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기후결산서”란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 및 기금 결산 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달성량 평가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지표 설정, 대상 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기후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을 통해 학교 등 교육환경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과 연계하여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기후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예산제의 개요
2. 기후예산의 규모
3. 기후예산의 성과지표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4.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후예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기후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예산의 집행 실적
 2. 기후예산의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3.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달성률 평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후결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에 따른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년도 기후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2. 제4조에 따른 기후예산제 지침서에 관한 의견
 3. 기후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4.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
 5. 기후예산제의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총괄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기후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온실가스 감축 관련 활동 중인 관련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기후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

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주민 참여 및 지원) 교육감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기후예산제를 연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침서, 추진사업 및 운영 성과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후예산제 우수사례를 홍보하거나 각종 행사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2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중요성이 전국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며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나. 서울특별시가 이미 지난 2022년부터 기후예산서를 매년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제도 도입 및 운영 체계가 미비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다. 본 조례안은 기후예산서와 기후결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여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환류하도록 규정함.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재정이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고자 함
- 라.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의 생존권 및 학습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교육기관의 예산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되어야 함. 본 조례안을 통해 교육시설 개선, 에너지 전환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 대응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 및 지침서 작성 (안 제3조 ~ 제4조)
- 다. 기후예산서·기후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안 제5조)
- 라.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6조 ~ 제8조)
- 마. 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제9조 ~ 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1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품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청렴 문화 조성) ①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자신이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자신의 배우자가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②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기로약속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의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청대문 암행단 사업 등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의 '찬조금' 행태는 여전히 음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
- 나. 이에 학교운동부의 청렴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비리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앞장서고,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 및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교육 현장 내 청렴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금품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나. 청렴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1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장애학생 등의 보호 지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거나 경계선지능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조사·상담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하여금 대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을 조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이 충분한 보호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진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폭력 대응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심의위원회’와 ‘경계선지능 학생’을 정의하고, 그 밖의 용어는 법에 따르도록 정비함(안 제2조)
- 나. 장애학생 또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진술 조력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20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6년 4월 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 출제·심사·선정·채점·인쇄·편집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수당 지급 기준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업무 관계자일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시행 중인 각종 시험의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시험 업무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 업무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시험 업무 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액을 규정(안 제2조)

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안 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2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6년 4월 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의 재활용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을 말한다.
2. “도서 기증”이란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적·폐기”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도서를 도서관 등록대장에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도서관의 장서 현황, 자료 이용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기본 방향 및 목표
 2. 도서관별 도서 기증 활성화 전략 및 세부 과제
 3. 제적·폐기 도서의 선별 작업 등에 필요한 인력 활용 방안
 4. 도서관 도서 기증을 위한 학교, 지역사회 등 연계 방안
 5. 도서 기증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6. 그 밖에 교육감이 도서관의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서관의 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자발적으로 도서관에 도서를 기

증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는 경우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③ 도서관장은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도서에 대하여 등록 여부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도서관장은 도서 기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를 기증한 개인, 기관 및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동의한 기증자에 한하여 기증 정보의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2. 희귀자료, 귀중자료 등 우수 기증자에 대한 감사장 증정
3. 그 밖에 기증자 예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지식정보자원의 공유·확산 및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평생학습시설 등의 기관·단체 및 개인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등록하지 않은 도서
2. 소장 도서 중 여분의 도서
3. 제적·폐기 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4.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 기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도서 기증의 세부 절차, 기준, 대상 등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 기증 우수사례, 기증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거나 각종 행사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 제적·폐기도서, 여분의 도서 등이 다수 발생 하나 「공직선거법」상 법적 근거 없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으로 무상배부가 어려워 적극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함
- 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으로 도서관 운영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도서관·평생학습관의 도서 기증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도서 기증·재활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서관, 도서 기증, 제적·폐기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방법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2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지한”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제4조제1항 중 “두 차례만”을 “1회에 한하여”로, “있고,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규정에 따른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보고) 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단, 그 임기는 중전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당초 취지와 달리 독립성이 약화되고, 과도한 비용 대비 실효성이 낮은 구조로 변질된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을 폐지함
- 나.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규모를 합리화하고 자격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기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다. 또한 감사에 참여한 비상근 시민감사관이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감사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렴시민감사관은 비상근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자격요건은 전문성과 실무경력을 중심으로 정비함(안 제3조)
- 나.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결원 시 후임자의 잔여임기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4조)
- 다.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공익제보 관련 직무 규정을 삭제(안 제5조)
- 라. 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이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2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여건, 학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인문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문교육 실시 계획 등의 자료를 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문교육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개발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문교육 수요조사 및 홍보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인문교육 우수사례 발굴) 교육감은 인문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학교장이 실시하는 인문교육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필요한 홍보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 나. 다만, 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인문학 실천학교 지정·운영에 대한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등 인문교육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의 지원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문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나. 인문교육 진흥 사업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 다. 인문교육 우수사례 발굴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 라.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2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과 과제 수행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수행평가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 간 평가의 공정성 훼손, 학습 성취도의 왜곡, 교사의 평가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나. 이에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인공지능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 항목 추가(안 제9조제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2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최근 사회 동향 분석 등을 통한 인기 직군 및 직능과 관련된 진로 교육 방향성 제시

제12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진로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평가 내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현재 서울시 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및 체험 활동은 체험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일회성 활동으로 그치거나 학생들의 희망과는 달리 수동적으로 지정된 소수의 체험만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 나. 학교와 진로교육 또는 체험 가능 기관 등이 서로 협력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흥미를 느끼거나 궁금해하는 직군 및 직능에 대해 파악해야 하며, 효과적인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이를 토대로 미래에 대한 설계와 자긍심, 재능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학생들이 원하는 직군 및 직능에 대해 분석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함(안 제4조)
- 나.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 전·후에 학생들의 관심과 진로 흥미를 높이기 위한 사전 및 사후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원회에 효과적인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10026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039”를 “8,058”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873”을 “892”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8,058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7,157				
23급	1		1		
3급	9		9		
34급	3		3		
4급	44		33	11	
45급	7		7		
5급 이하 소계	7,072				
전문경력관 소계	7				
연구사 소계	14				
별정직 계	8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7				
특정직 계	892				
4급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51		29	22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841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등을 위한 2026년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산정 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특정직) 정원 증원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19명 (8,039명 → 8,058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 증 19명 (873명 → 892명)

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원: 증 19명 (8,039명 → 8,058명)

○ 특정직 정원 조정: 증 19명 (873명 → 892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증 19명 (822명 → 841명)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72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임기 기준을 정비하고, 내부위원의 대리참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위 등에 따라 신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기준 마련(안 제4조제3항 개정)

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시의원의 임기 규정 정비(안 제4조제4항 신설)

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중 내부위원의 대리참석 근거 마련(안 제4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전화: 02-2133-32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FAX : 02)2133-1031

(2) E-mail : witch372@seoul.go.kr

(3) 우 편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산관리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위촉 당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상임위원회 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4급 이상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리위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심의회의 위원 중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시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위촉 당시의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상임위원회 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4급 이상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리위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④ ~ ⑥ (생 략)

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항
까지와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75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장기전세주택 거주자의 가구원 수 변동에 따른 유연한 주거 선택 기회 보장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감점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전세주택 감점 산정기준 예외 규정 신설(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임대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과(전화: 02-2133-9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 (1) 팩 스: 02-768-8989
- (2) 이메일: yr4806@seoul.go.kr
-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임대주택과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주택실 임대주택과(☎02-2133-9578)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조제8호 중 “입주자 선정기준”을 “입주자선정 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제1호”를 “제8조제1항”으로, “공급한다”를 “공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같은 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및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입주자 선정순위(건설형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구 분	내 용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일반공급·우선공급 가점기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가. 공급신청자의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성년 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나. 공급신청자의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다. 공급신청자의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라. 공급신청자의 부양가족 수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마. 공급신청자의 청약저축 납입 횟수	96회 이상	84회 이상 96회 미만	72회 이상 84회 미만	60회 이상 72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바. 공급신청자의 청약예금 가입 기간	8년 이상	6년 이상 8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2년 미만

※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성년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라’의 부양가족 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하며, 태아를 포함함.

※ ‘마’의 가점은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제외

※ ‘바’의 가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제외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기준을 적용하고, 무주택기간 산정 시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3. 감점 산정기준(당첨자 발표일 기준)

감점 기준	감점 점수
가. 최근 3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나. 최근 5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4점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2점

※ 단, 결혼,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기존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의 장기전세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 제외(무주택세대구성원 수가 감소된 경우 더 작은 면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상기 제2호 및 제3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당첨자”란 관리주체가 제3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자로서 별도로 주택 소유 여부, 소득기준 등의 입주자 자격과 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계약대상자로 결정한 자를 말한다.	8. ----- ----- <u>입주자선정 기준</u> ----- ----- ----- ----- -----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제3조(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선정 기준) ① 관리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입주자의 소득요건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중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	제3조(입주자 자격 및 입주자선정 기준) ① ----- ----- ----- ----- ----- ----- ----- ----- ----- -----.

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국민임대주택 전환분)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1호나 목의 입주자격(소득요건)에 따른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퍼센트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다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2.·3. (생략)

② (생략)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

1. -----

----- 제8조제1항 -----

----- 공급 -----
한다.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④ (생 략)

[별표 2] <개정 2025. 7. 28.>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및 유형별 입주자 선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입주자 선정순위(전세형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구 분	내 용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일반공급·우선공급 가점기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구 분	5년	4년	3년	2년	1년
가. 우물신청자의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영년 미초)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3년 미만
나. 우물신청자의 부주거 기간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3년 미만
다. 우물신청자의 나이	50세 이상 50세 미만	45세 이상 45세 미만	40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라. 우물신청자의 부양가족 수	5명 이상 5명 미만	4명 4명 미만	3명 3명 미만	2명 2명 미만	1명 1명 미만
마. 우물신청자의 청약적응 실적 횟수	96회 이상 96회 미만	84회 이상 84회 미만	72회 이상 72회 미만	60회 이상 60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바. 우물신청자의 청약적응 가점 기간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2년 미만

※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영년 이후부터 가입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로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합산된 경우 합산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 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라」의 부양가족 수는 영년 이후 신고된 기준 인정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민 에 동거한 부양가족수만을 의미하며, 대외를 포함함.
※ 「마」의 가점은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되지
※ 「바」의 가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되지
※ 우물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기초의 기준을 적용하고, 우물신청자 선정 시 우 물소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3. 가점 산정기준(당첨자 발표일 기준)

가점 기준	가점 점수
가. 최근 3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나. 최근 5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4점
다. 가족 및 나환 이외의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2점

4. 상기 제2호 및 제3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미정년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에 따른다.

----- 규칙 -----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2]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및 유형별 입주자 선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입주자 선정순위(전세형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구 분	내 용
제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일반공급·우선공급 가점기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구 분	5년	4년	3년	2년	1년
가. 우물신청자의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영년 미초)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3년 미만
나. 우물신청자의 부주거 기간	10년 이상 10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3년 미만
다. 우물신청자의 나이	50세 이상 50세 미만	45세 이상 45세 미만	40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라. 우물신청자의 부양가족 수	5명 이상 5명 미만	4명 4명 미만	3명 3명 미만	2명 2명 미만	1명 1명 미만
마. 우물신청자의 청약적응 실적 횟수	96회 이상 96회 미만	84회 이상 84회 미만	72회 이상 72회 미만	60회 이상 60회 미만	24회 이상 60회 미만
바. 우물신청자의 청약적응 가점 기간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2년 미만

※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영년 이후부터 가입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로부터 기산) 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합산된 경우 합산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 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라」의 부양가족 수는 영년 이후 신고된 기준 인정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민 에 동거한 부양가족수만을 의미하며, 대외를 포함함.
※ 「마」의 가점은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되지
※ 「바」의 가점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되지
※ 우물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기초의 기준을 적용하고, 우물신청자 선정 시 우물소득 여 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3. 가점 산정기준(당첨자 발표일 기준)

가점 기준	가점 점수
가. 최근 3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나. 최근 5년 이내에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4점
다. 가족 및 나환 이외의 장기전세주택 임대차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2점

※ 단, 결혼, 임신, 노후보,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거주 중단 장기전세주택 신청 당시의 비교하여 우물주택에 구입한 수가 변동되어 다른 항목의 장기전세주택으로 이주가 되어 동점을 신청하는 경우 가점 적용 제외(우물 주택매매가점 수가 감소할 경우 더 낮은 점수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4. 상기 제2호 및 제3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미정년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추첨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7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시대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저하된 ‘근검과 절약’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 발생 시 자기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대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근검과 절약) 삭제 (안 제6조 삭제)

나. 공무원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자기돌봄 특별휴가 연 1일 부여 (안 제24조제19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2133-5729, FAX: 2133-0773, E-mail: sun7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 (1) FAX: 02-2133-0773
- (2) E-mail: sun79@seoul.go.kr
-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인사과 ☎02-2133-5729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2026-1077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 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공무원은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량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삭 제>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생략)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 ----- ----- ----- ----- ----- ----- -----
제9조(파견근무) ①·② (생략)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	제9조(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제24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3. (생략)

③ ~ ⑮ (생략)

<신설>

-----.

1. -----
----- 제14조제1항-

2.·3. (현행과 같음)

③ ~ ⑮ (현행과 같음)

⑮ 공무원은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83호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중 신고포상금 지급 주기 및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포상금을 반기별 지급에서 분기별 지급으로 변경(안 제4조 및 제7조)

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세분화 및 지급금액 조정(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02-2133-8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로관리과
- 2) 이메일 : julim03@seoul.go.kr
-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4) F A X : 02-768-8906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반기별” 을 “분기별”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 중 보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대하여는 재난안전실장이,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로, “각각 해당” 을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 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반기별” 을 “분기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로 등 고장·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포상금액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고장신고 (제3조제1항제1호)	신고 건	10,000원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제3조제1항제3호)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 (분기별)	5건 이상 ~ 10건 미만	20,000원
		10건 이상 ~ 15건 미만	40,000원
		15건 이상 ~ 20건 미만	60,000원
		20건 이상 ~ 25건 미만	80,000원
		25건 이상 ~ 30건 미만	100,000원
		30건 이상 ~ 35건 미만	120,000원
		35건 이상 ~ 40건 미만	140,000원
		40건 이상 ~ 45건 미만	160,000원
		45건 이상 ~ 50건 미만	180,000원
		50건 이상	200,000원
	가로등시설물 고장 신고 (분기별)	5건 이상 ~ 15건 미만	20,000원
		15건 이상 ~ 30건 미만	30,000원
		30건 이상 ~ 50건 미만	50,000원
		50건 이상 ~ 75건 미만	100,000원
		75건 이상	200,000원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분기별)	5건 이상 ~ 10건 미만	20,000원
		10건 이상 ~ 20건 미만	30,000원
		20건 이상 ~ 30건 미만	50,000원
		30건 이상 ~ 40건 미만	80,000원
		40건 이상 ~ 50건 미만	100,000원
		50건 이상 ~ 80건 미만	120,000원
		80건 이상	150,000원
	보도 불편사항 신고 (분기별)	5건 이상 ~ 10건 미만	20,000원
		10건 이상 ~ 20건 미만	40,000원
		20건 이상 ~ 30건 미만	60,000원
		30건 이상 ~ 40건 미만	80,000원
		40건 이상 ~ 50건 미만	100,000원
		50건 이상 ~ 60건 미만	120,000원
		60건 이상 ~ 70건 미만	140,000원
		70건 이상 ~ 80건 미만	160,000원
		90건 이상 ~ 100건 미만	180,000원
		100건 이상	200,000원
손괴 원인자 신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리시설물 원상복구비	200,000원 이상~ 600,000원 미만	10,000원
		600,000원 이상~ 1,000,000원 미만	30,000원
		1,000,000원 이상	50,000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1항제3호 : <u>반기별</u>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2. ----- <u>분기별</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고장·파손 등 신고의 처리) ① <u>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 중 보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업무에 대하여는 재난안전실장이,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대하여는 재난안전실장이 각각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할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한다.</u>	제6조(고장·파손 등 신고의 처리) ① <u>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u> ----- ----- ----- ----- ----- ----- ----- <u>해당</u>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고장·파손 등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3항에 따	④ ----- -----

라 고장·파손 등 신고를 통보 받은 시설물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신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의 사실 등을 현장 확인하도록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고장·파손 사실 및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정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신고인에 한정하여 신고포상금을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다.

[별표]

도로 등 고장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포상금액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고장신고 (제3조제1항제1호)	(생 략)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제3조제1항제3호)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 50건 미만 20,000원
		50건 이상 ~ 100건 미만 30,000원

별지 제1호서식-----

-----.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

---. -----

-- 분기별-----.

② -----
----- 별지 제2호서
식-----.

[별표]

도로 등 고장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포상금액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기준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고장신고 (제3조제1항제1호)	(현행과 같음)		
도로 및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제3조제1항제3호)	차도(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파손 신고 (분기별)	5건 이상 ~ 10건 미만	20,000원
		10건 이상 ~ 15건 미만	40,000원
		15건 이상 ~ 20건 미만	60,000원

		100건 이상 ~ 150건 미만	50,000원
		150건 이상 ~ 300건 미만	100,000원
		300건 이상 ~ 500건 미만	150,000원
		500건 이상	200,000원
	가로등시설물 고장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30건 미만	20,000원
		30건 이상~ 50건 미만	30,000원
		50건 이상~ 100건 미만	50,000원
		100건 이상~ 150건 미만	100,000원
		150건 이상	200,000원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20건 미만	20,000원
		20건 이상~ 30건 미만	30,000원
		30건 이상~ 50건 미만	50,000원
		50건 이상~ 80건 미만	80,000원
		80건 이상	100,000원
	보도 불편사항 신고 (반기별)	10건 이상~ 30건 미만	20,000원
		30건 이상~ 50건 미만	50,000원
		50건 이상~ 100건 미만	100,000원
		100건 이상~ 200건 미만	200,000원

		20건 이상 ~ 25건 미만	80,000원
		25건 이상 ~ 30건 미만	100,000원
		30건 이상 ~ 35건 미만	120,000원
		35건 이상 ~ 40건 미만	140,000원
		40건 이상 ~ 45건 미만	160,000원
		45건 이상 ~ 50건 미만	180,000원
		50건 이상	200,000원
	가로등시설물 고장 신고 (분기별)	5건 이상 ~ 15건 미만	20,000원
		15건 이상 ~ 30건 미만	30,000원
		30건 이상 ~ 50건 미만	50,000원
		50건 이상 ~ 75건 미만	100,000원
		75건 이상	200,000원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 (분기별)	5건 이상~ 10건 미만	20,000원
		10건 이상~ 20건 미만	30,000원
		20건 이상~ 30건 미만	50,000원
		30건 이상~ 40건 미만	80,000원
		40건 이상~ 50건 미만	100,000원
		50건 이상~ 80건 미만	120,000원
		80건 이상	150,000원
	보도 불편사항 신고 (분기별)	5건 이상 ~ 10건 미만	20,000원
		10건 이상 ~ 20건 미만	40,000원
		20건 이상 ~ 30건 미만	60,000원
		30건 이상 ~ 40건 미만	80,000원
		40건 이상 ~ 50건 미만	100,000원
		50건 이상 ~ 60건 미만	120,000원
		60건 이상 ~ 70건 미만	140,000원
		70건 이상 ~	160,000원

		200건 이상	300,000원			80건 미만	
						90건 이상 ~ 100건 미만	180,000원
						100건 이상	200,000원
손괴 원인자 신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 리시설물 원상복구비	(생 략)		손괴 원인자 신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교통안전·관 리시설물 원상복구비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84호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과 문언을 일치시키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제83조제1항에서 정한 기일 전까지 같은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 하는 것으로 규정 (안 제16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 2133-3446, E-mail : lu0301@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세무조사 시작일 15일 전까지”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으로,
“정하는”을 “정한 기일 전까지 같은 항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 사공무원은 <u>세무조사 시작일 15일</u> <u>전까지</u> 법 제83조제1항에서 <u>정하</u> <u>는</u>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 지하여야 한다.	제16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 ----- <u>세무조사를 실시하는</u> <u>경우에는</u> ----- <u>정</u> <u>한 기일 전까지 같은 항에서 정하</u> <u>는</u>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9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 세종문화회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명확화 및 법적안정성 등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임원추천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인원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제9조(추천위원회)제1항의 추천위원회 구성 인원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가. 제9조(추천위원회) 제1항 제1호 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의견제출

이 시행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 (1) FAX : 02-2133-1059
- (2) E-mail : kyung83@seoul.go.kr

- (3)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02-2133-2519)

※ 이 조례의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 예술진흥”을 “문화예술 진흥”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공연예술진흥”을 “공연예술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문화예술진흥”을 “문화예술 진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3명”을 “사람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시의”를 “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임명하고자”를 “임명하고자”로 한다.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제17조제3항 중 “법인에 대하여”를 “법인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문화 예술 진흥</u> 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문화예술 진흥</u> ----- ----- ----- ----- -----.
제4조(법인의 사업) 법인은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략) 2. 삭제 3. <u>공연예술진흥</u>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4. ~ 6. (생략) 7. <u>문화예술진흥</u> 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4조(법인의 사업) ----- ----- -----. 1. (현행과 같음) 3. <u>공연예술 진흥</u> ----- ----- 4. ~ 6. (현행과 같음) 7. <u>문화예술 진흥</u> ----- ----- -----
제6조(정관) ① (생략)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u>서울특별시 의회</u>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서울특별시 의회</u> (이하 “ <u>시의회</u> ”라 한다) -- -----.
제9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	제9조(추천위원회) ① -----

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3명
2.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3명

<신 설>

②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경영전문인,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며, 법인의 임직원, 서울시의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추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④ (생 략)

⑤ 법인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17조(경영평가)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인사상·예산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생 략)

1. -----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

----- 시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임명하고자 -----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경영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법인에게 -----

-----.

④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97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운영수석전문위원은 공직사회 내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해관계 조정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인 점과, 개방형직위 지정기준 (대통령령 제35981호)을 고려하여 개방형직위에서 지정 해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지정 해제(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02-2133-66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 (1) E-mail : jekim0513@seoul.go.kr
- (2) 전 화 : (02) 2133 - 6632
-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기획담당관
-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전문위원(4급)란 중 “운영, 행정자치”를 “행정자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u>전문위원의 개방형 직위 지정·운영(제3조제4항 관련)</u> <table><tr><td>전문위원(4급)</td></tr><tr><td> <u>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 도시계획균형, 교통, 예산결산특별</u> </td></tr></table>	전문위원(4급)	<u>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 도시계획균형, 교통, 예산결산특별</u>	[별표 1] <u>전문위원의 개방형 직위 지정·운영(제3조제4항 관련)</u> <table><tr><td>전문위원(4급)</td></tr><tr><td> <u>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 도시계획균형, 교통, 예산결산특별</u> </td></tr></table>	전문위원(4급)	<u>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 도시계획균형, 교통, 예산결산특별</u>
전문위원(4급)					
<u>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 도시계획균형, 교통, 예산결산특별</u>					
전문위원(4급)					
<u>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 도시계획균형, 교통, 예산결산특별</u>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60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에 따라 수도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효 고시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수도공급설비	중구 신당동 837-4	848.4	감)848.4	-	-	

2.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

시설의 종류	실효일자	실효위치	실효사유	비고
수도공급설비	2026. 4. 2.	중구 신당동 837-4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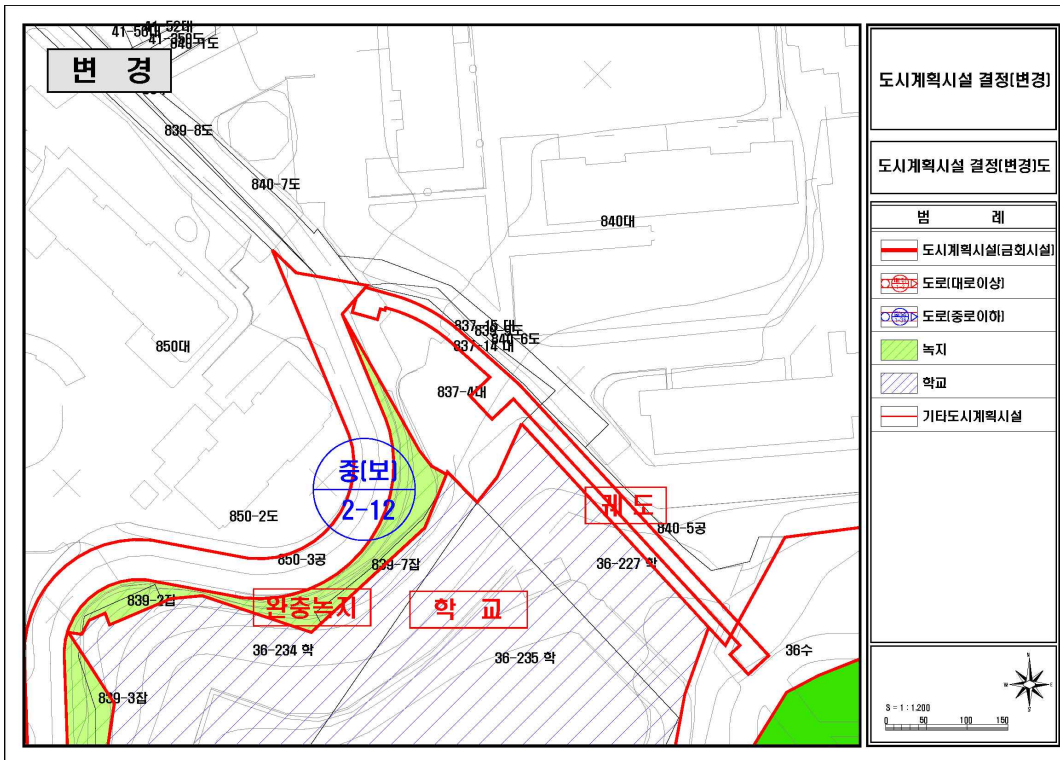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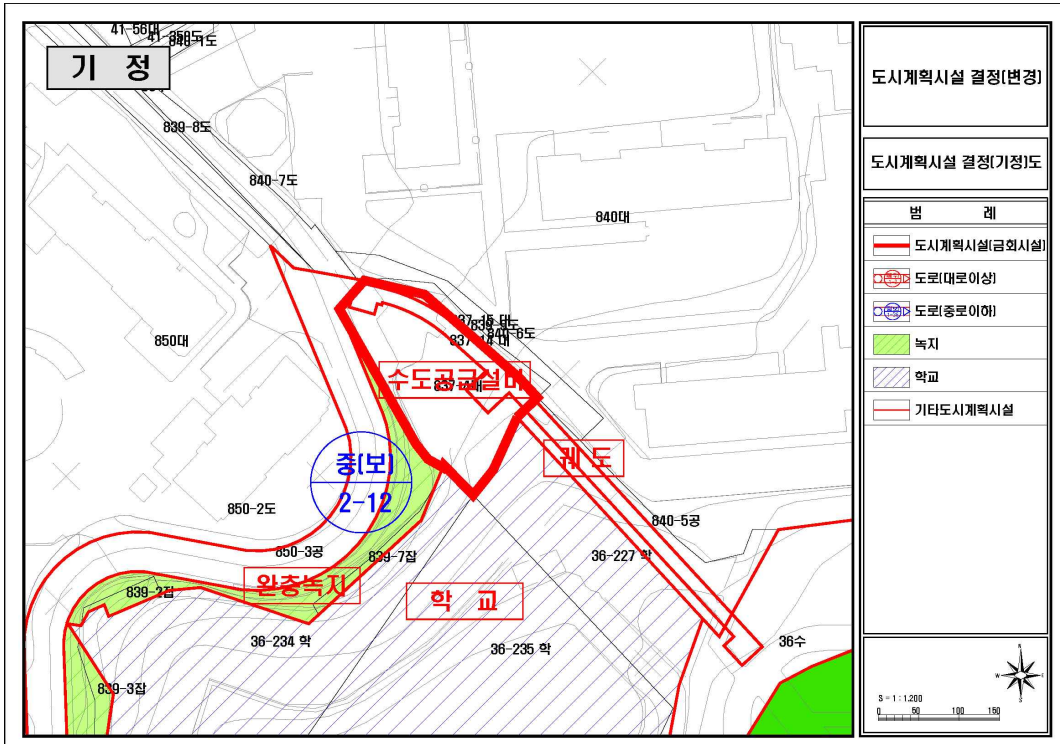
3. 지형도면고시

- 첨부 참조(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사항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서울아리수본부 계획설계과(☎02-3146-1415)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68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4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3호(2000.02.09.)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29호(2007.05.17.)로 용두1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5호(2009.09.10.)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6호(2010.09.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0호(2012.0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6호(2013.06.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6호(2017.0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6호(2017.0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8호(2018.0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0호(2019.0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7호(2020.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3호(2020.1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4호(2021.06.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9호(2021.0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89호(2021.10.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호(2022.0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3호(2022.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21호(2022.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45호(2022.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4호(2023.0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호(2023.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7호(2023.03.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0호(2023.12.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90호(2024.04.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00호(2024.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9호(2024.12.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21호(2025.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1호(2025.05.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23호(2025.06.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54호(2025.07.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8호(2025.08.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83호(2025.08.2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지구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청량리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20만㎡이상)	동대문구 용두·전농동 일원	358,066.7	감 6.4	358,060.3	최초결정일 : 서고 제2009-345호 (2009. 09. 10.)

※ 변경사유 :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가. 기준년도 : 2021년

나. 목표연도 : 2030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부도심 기능 회복 도모

나.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을 통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균형발전 도모(청량리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서울 동북권의 관문역할 수행)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함

4.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사업방식	구역명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58,066.7	감) 6.4	358,060.3	
촉진 구역	소계		148,049.2	감) 6.4	148,042.8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청량리1재정비촉진구역	1,819.2	-	1,819.2	
		청량리2재정비촉진구역	1,938.3	-	1,938.3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7,020.6	-	7,020.6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41,573.9	-	41,573.9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51,644.8	감) 6.4	51,638.4	
		전농재정비촉진구역	27,815.4	-	27,815.4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16,237.0	-	16,237.0	
존치 지역	소계		210,017.5	-	210,017.5	
	존치지역		210,017.5	-	210,017.5	

※ 변경사유 : 용두1 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5.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결정(변경) :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외 다른 구역 변경 없음

6.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용두1 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26일대	51,644.8	감) 6.4	51,638.4	-

※ 변경사유 :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고
기정	용두 1구역	합 계			51,644.8	100.0	
		획지계획	소 계		34,810.0	67.4	
			1		2,019.6	3.9	[업무,판매]
			2		2,566.8	5.0	[업무,주거]
			3		3,045.9	5.9	[업무,주거]
			4		1,360.5	2.6	[판매,주거]
			5	준주거	12,183.4	23.6	[판매,주거]
				일반상업			[업무,판매]
			6	준주거	13,633.8	26.4	[업무,주거]
		일반상업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소 계		16,834.8	32.6	-
			도 로		15,266.0	29.6	도시계획시설
			공 원		1,568.8	3.0	-
변경	용두 1구역	합 계			51,638.4	100.0	
		획지계획	소 계		34,810.3	67.4	
			1		2,019.6	3.9	[업무,판매]
			2		2,566.8	5.0	[업무,주거]
			3		3,045.9	5.9	[업무,주거]
			4		1,360.8	2.6	[판매,주거]
			5	준주거	12,183.4	23.6	[판매,주거]
				일반상업			[업무,판매]
			6	준주거	13,633.8	26.4	[업무,주거]
		일반상업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소 계		16,828.1	32.6	-
			도 로		15,259.3	29.6	도시계획시설
			공 원		1,568.8	3.0	-

※ 변경사유 :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없음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51	35~42 (42)	주간선 도로	3,300 (280)	종로6가 89	청량리동 749	일반 도로	-	서고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대로	2	58	33~35 (33)	주간선 도로	1,850 (150)	용두동 (대2-14)	행당동 (118광장)	일반 도로	-	서고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17	용두동 24-2	용두동 20-36	일반 도로	-	서고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500	15	집산 도로	343	용두동 47-7	용두동 12-5	일반 도로	-	서고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501	15	집산 도로	85	용두동 26-27	용두동 20-80	일반 도로	-	서고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502	15	집산 도로	152	용두동 23-1	용두동 20-3	일반 도로	-	서고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503	15 (13)	집산 도로	150	용두동 14-20	용두동 12-5	일반 도로	-	서고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3	4	12	국지 도로	78	용두동 26-14	용두동 26-17	일반 도로	-	서고 제2020-427호 (2020.10.22)	-

※ 1. ()는 용두1구역 연장 및 폭원임

(2) 입체적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구 분	규 모		비고
기정	1	도로	■기점부 : 용두동 23-12 ■종점부 : 용두동 23-47	길이(m)	60		5구역
				폭(m)	15		
				높이	지하2m~지상15m이하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상2m초과, 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기정	2	도로	■기점부 : 용두동 14-10 ■종점부 : 용두동 14-21	길이(m)	94		6구역
				폭(m)	15		
				높이	지하2m~지상15m이하(건축물간 연결을 위한 시설물(연결브릿지) 부분 6m)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2m초과, 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3)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원	소공원	동대문구 용두동 26-1 일원	1,568.8	-	1,568.8	서고 제2020-427호 (2020.10.22)	

4) 건축시설계획 : 변경(면적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 층수	비고 (주거비율제한)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용두1 재정비 촉진구역	51,644.8	1	2,019.6	용두동 24-1일대	업무,판매	50%이하	899%이하	90m이하	0%
			2	2,566.8	용두동 23-8일대	업무,주거	50%이하	899%이하	155m이하	90%이하
			3	3,045.9	용두동 26-14일대	업무,판매	50%이하	899%이하	90m이하	90%이하
			4	1,360.5	용두동 26-3일대	판매,주거	50%이하	549%이하	60m이하	89.4%이하
			5	12,183.4	용두동 23-1일대	판매,주거	50%이하	549%이하	60m이하	54.0%이하
						업무,판매		899%이하	90m이하	
변경	용두1 재정비 촉진구역	51,638.4	1	2,019.6	용두동 24-1일대	업무,판매	50%이하	899%이하	90m이하	0%
			2	2,566.8	용두동 23-8일대	업무,주거	50%이하	899%이하	155m이하	90%이하
			3	3,045.9	용두동 26-14일대	업무,판매	50%이하	899%이하	90m이하	90%이하
			4	1,360.8	용두동 26-3일대	판매,주거	50%이하	549%이하	60m이하	89.4%이하
			5	12,183.4	용두동 23-1일대	판매,주거	50%이하	549%이하	60m이하	54.0%이하
						업무,판매		899%이하	90m이하	
변경	용두1 재정비 촉진구역	51,638.4	6	13,633.8	용두동 14-1일대	업무,주거	50%이하	1,100%이하	200m이하	90%이하

※ 변경사유 :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구역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응두 1구역	건축 한계선	왕산로변	6지구	5m
6지구외				3m		
고산자로변			3m			
벽면 한계선		1,2지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4m 이격 (지상1층부에만 적용)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응두 1구역	공공 보행통로	1,2 지구내 벽면한계선으로 지정된 공지	폭8m	※ 공공보행 통로조성 지침 참조	
			5,6 지구내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된 공지	폭12m		
			6 지구내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된 공지	폭10m		
	샘지형 공지	2지구	1개소(개소별 49㎡이상)	-		
		5지구내	2개소(개소별 45㎡이상)	-		
		6지구내	2개소(개소별 60㎡이상)	-		

주1) 준주거지역은 주거비율을 건축연면적의 90%이하로 제한

주2) 업무·판매시설 유도지역은 주거용도 입지 불허 및 공공보행통로에 면한 저층부(지상1층) 주거용도 입지 불허

→ 6지구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2022.1.26.)에 따라 상업지역 중 광역·지역중심 이하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주거90%(주거·오피스텔등80+ 임대주택10) + 비주거 10% 적용

주3) 용도1구역내 4획지 공개공지 183㎡이상 확보(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제3항 적용)

주4) 용도1구역내 5획지(준주거지역) 공개공지 1,502㎡이상 확보(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제3항 적용)

※ 주용도라 함은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이며 제시된 용도 중 선택하여야 함

※ 공공보행통로 조성지침

- ① 대지 내 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 혹은 도로와 접하거나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 할 수 없다.
- ②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규정된 폭원 이상으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③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바닥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고,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대지 내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⑤ 동·서간 도로·통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직선 형태로 조성하고, 건물간 지상연결 브릿지는 지상 6m이상 높이에 설치하되 지구별 3개소 이하(폭4m 이하)로 설치 가능.

5)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부담률 : 변경

(1)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후 3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256	해당없음	

(2) 공공용지 부담률 : 변경

■ 공공시설 부담률(토지) : 변경

구분	정비 구역명	위치	시행면적 (㎡)	사업계획내역(㎡)				비고		
				지구면적	공공시설면적			확지내 기존 공공용지 (㎡)	공공용지 부담율	
					계	공공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기정	영남-1구역	1	용두동 24-1일대	3,212.1	2,019.6	1,192.5	805.1	387.4	357.5	18.14
		2	용두동 23-8일대	3,660.4	2,566.8	1,093.6	645.5	448.1	101.4	17.49
		3	용두동 26-18일대	4,274.7	3,045.9	1,256.5	673.5	583.0	0.0	18.14
		4	용두동 26-3일대	1,923.0	1,360.5	562.5	301.5	261.0	0.0	
		5	용두동 23-1일대	17,794.2	12,183.4	5,610.8	3,273.7	2,337.1	573.8	
		6	용두동 14-1일대	20,780.4	13,633.8	7,146.6	4,531.3	2,615.3	1,510.0	
		합계		51,644.8	34,810.0	16,862.5	10,230.6	6,631.9	2,542.7	18.09
변경	영남-1구역	1	용두동 24-1일대	3,212.1	2,019.6	1,192.5	805.1	387.4	357.5	18.14
		2	용두동 23-8일대	3,660.4	2,566.8	1,093.6	645.5	448.1	101.4	17.49
		3	용두동 26-18일대	4,274.7	3,045.9	1,256.5	673.5	583.0	0.0	18.14
		4	용두동 26-3일대	1,916.6	1,360.8	555.8	305.4	250.4	0.0	18.33
		5	용두동 23-1일대	17,794.2	12,183.4	5,610.8	3,273.7	2,337.1	573.8	18.14
		6	용두동 14-1일대	20,780.4	13,633.8	7,146.6	4,531.3	2,615.3	1,510.0	18.14

구분	정비 구역명	위치	시행면적 (㎡)	사업계획내역(㎡)				비고	
				지구면적	공공시설면적			획지내 기존 공공용지 (㎡)	공공용지 부담율
					계	공공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합계	51,638.4	34,810.3	16,855.8	10,234.5	6,621.3	2,542.7	18.09

※ 변경사유 :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나. 용두1(4지구)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 : 변경(선형변경 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용두1(4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동대문구 용두동 26-3번지 일대	1,923.0	감) 6.4	1,916.6	지적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2)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선형변경 없음)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923.0	감) 6.4	1,916.6	100.0	지적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804.2	감) 3.2	1,801.0	94.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18.8	감) 3.2	115.6	6.0	

※ 변경사유 :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3) 토지이용계획 : 변경(선형변경 없음)

구 분	명칭	면적(㎡)			비 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923.0	감) 6.4	1,916.6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562.5	감) 6.7	555.8	29.0	-
	도로	562.5	감) 6.7	555.8	29.0	-
획 지	소계	1,360.5	증) 0.3	1,360.8	71.0	-
	획지 (4지구)	1,360.5	증) 0.3	1,360.8	71.0	주용도 준주거 : 판매 · 주거

※ 변경사유 :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없음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500	15	집산 도로	343	용두동 47-7	용두동 12-5	일반 도로	-	서고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501	15	집산 도로	85	용두동 26-27	용두동 20-80	일반 도로	-	서고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3	4	12	국지 도로	78	용두동 26-14	용두동 26-17	일반 도로	-	서고 제2020-427호 (2020.10.22)	-

5) 건축시설계획 : 변경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용도지역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지상/지하)	비고 (주거비율제한)
	명칭	면적(m)								
기정	용두1(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923.0	용두동 26-3일대	준주거 지역	판매, 주거	50% 이하	549% 이하	60m 이하	지상18층 이하 지하5층	89.4% 이하
변경	용두1(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1,916.6	용두동 26-3일대	준주거 지역	판매, 주거	50% 이하	549% 이하	60m 이하	지상18층 이하 지하5층	89.4%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공동주택 - 58세대								
		구 분		세대수			비율(%)			
				기정	변경	변경후				
		전용 면적	계	45	증) 13	58	100.0			
			85㎡이하	15	증) 41	56	96.6			
			85㎡~115㎡미만	-	-	-	-			
115㎡초과	30		감) 28	2	3.4					
※ 주거비율 89.33%										

주1) 준주거지역은 주거비율을 건축연면적의 90%이하로 제한

주2) 용두1구역내 4획지 공개공지 183㎡이상 확보(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제3항 적용)

6)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계획 : 변경

■ 공공시설 부담률(%) = $\{(555.8 - (250.4 + 0.0)) / (1,916.6 - (250.4 + 0.0))\} \times 100$
= 18.3%

구분	촉진구역 계획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면적(㎡)	촉진구역 총면적(㎡)	공공시설 부담률(%)
기정	562.5	261.0	0.0	1,923.0	18.1
변경	555.8	250.4	0.0	1,916.6	18.3

7) 용적률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면적	공공시설 제공 면적(㎡)			비고
			계	공공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획지 내 기존공공용지
	1,916.6	1,360.8	555.8	305.4	250.4	0.0
공공시설등 부지제공면적	■ 순부담면적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 획지내 기존 공공용지 = 555.8㎡ - 250.4㎡ - 0.0㎡ = 305.4㎡ (18.3%)					
기준/허용 용적률	400%		■ 203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는 별도 허용용적률 적용 없음			
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 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 = 400 × (1+1.3×1×0.22442) = 516.69% ∴ 상한용적률 515% 적용 - α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555.8-250.4-0.0 1,916.6-555.8 = 0.22442 - 가중치 = 1					

8).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최악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변경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후 3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58 (증 13)	해당없음	

9). 기타사항 변경 없음

7.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용두1구역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용두1(4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용두동26-3일대	1,923.0	감) 6.4	1,916.6	100.0	지적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나. 용도지역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선형변경 없음)

구 분		면적(㎡)			비 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923.0	감) 6.4	1,916.6	100.0	지적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804.2	감) 3.2	1,801.0	93.9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18.8	감) 3.2	115.6	6.1	

※ 변경사유 :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4지구 지적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2)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적(㎡)			비 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용두1-4지구)		1,360.5	증) 0.3	1,360.8	100.0	지적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다. 기타사항 변경 없음

8.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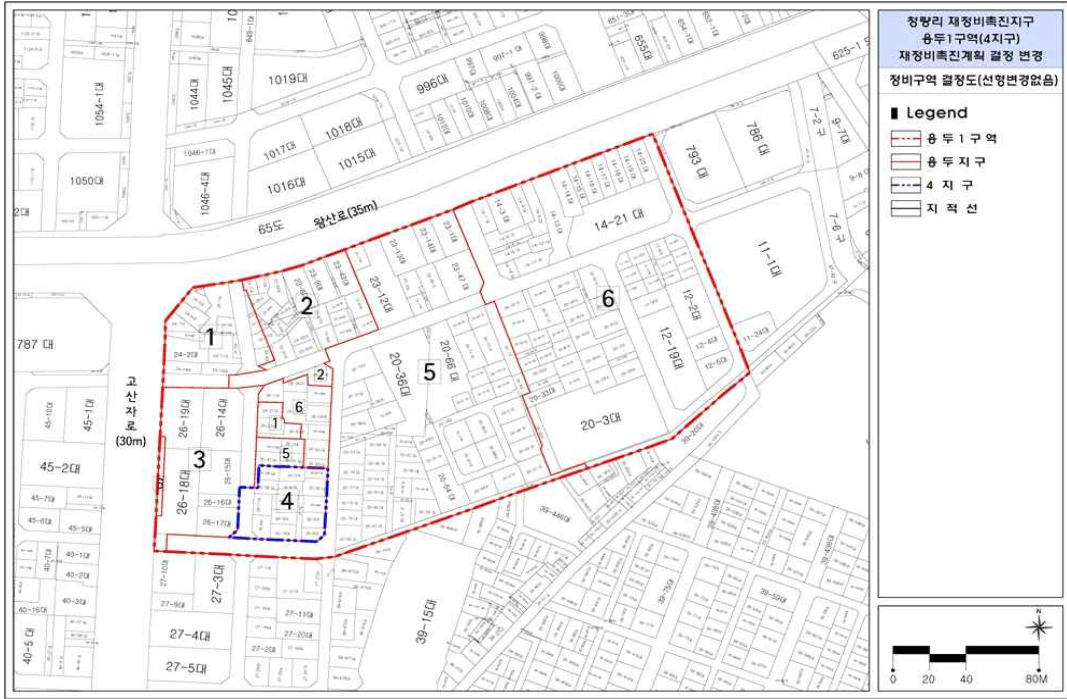
9.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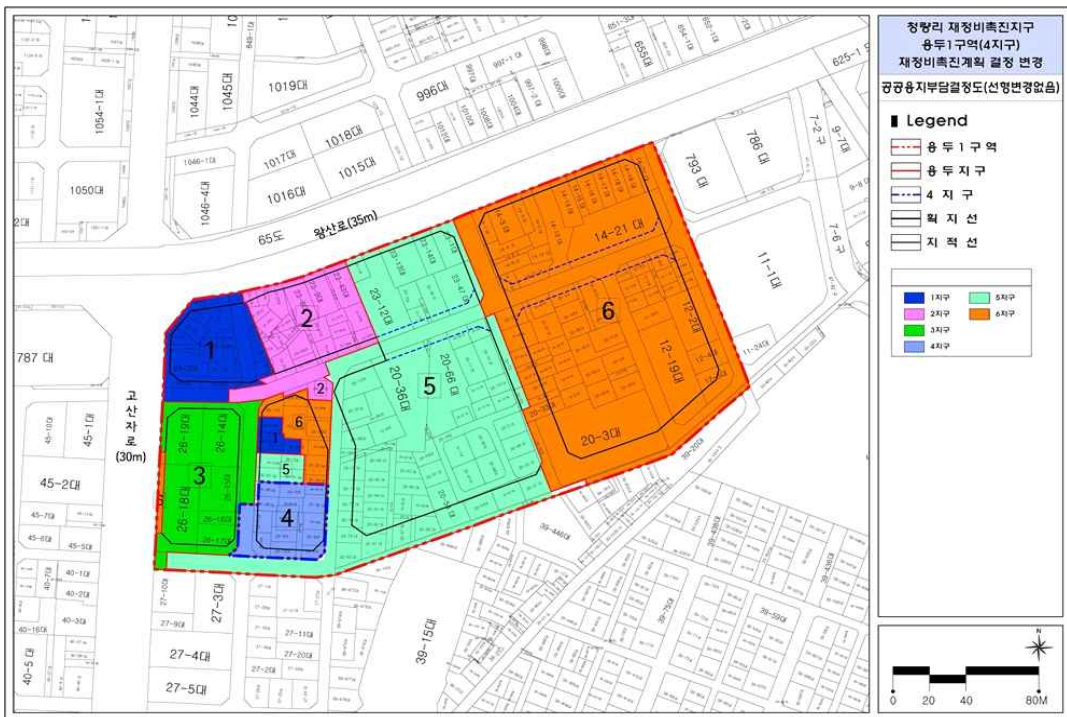
10.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02-2133-7217) 및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578)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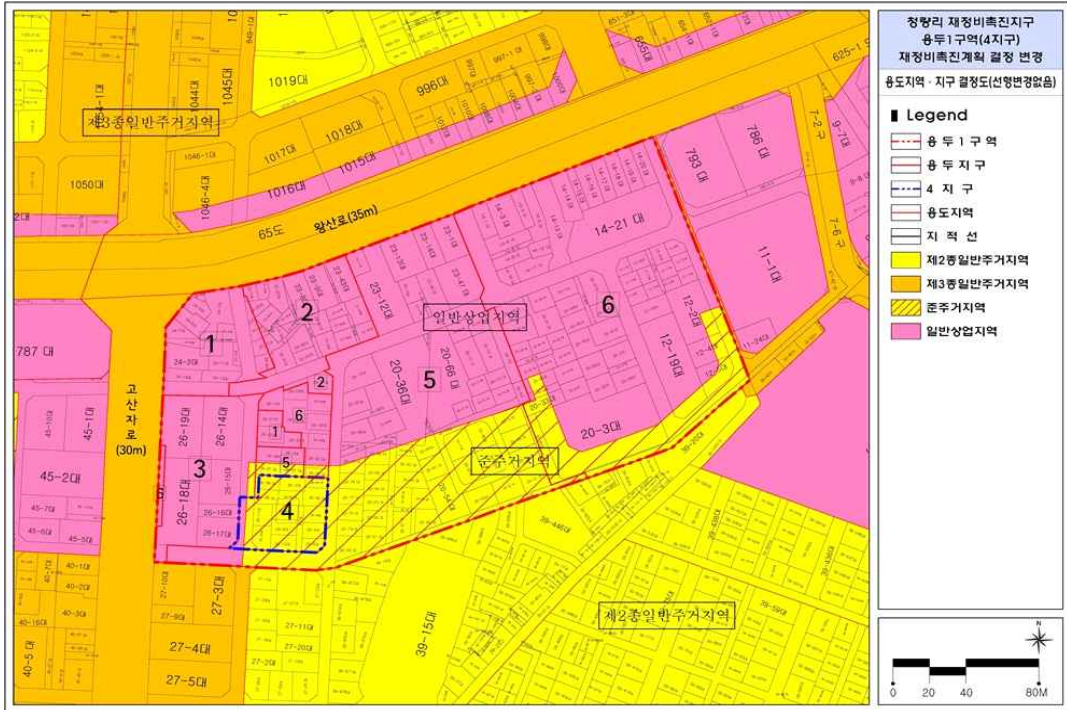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4지구)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선형변경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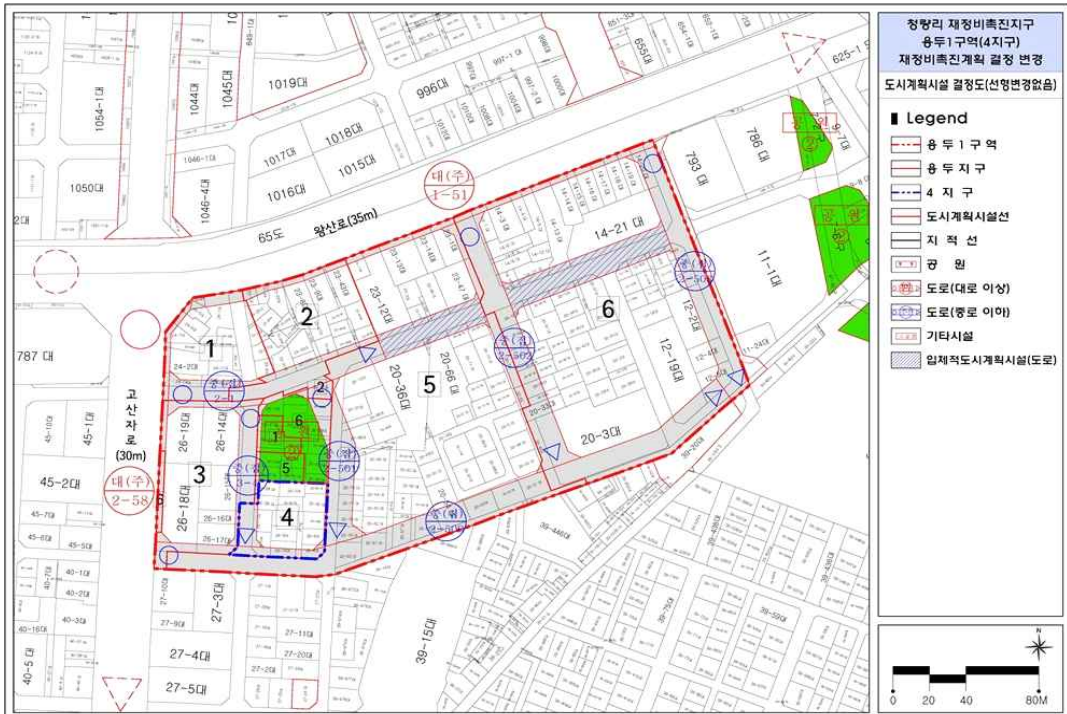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4지구) 공공용지 부담 결정(변경)도 (선형변경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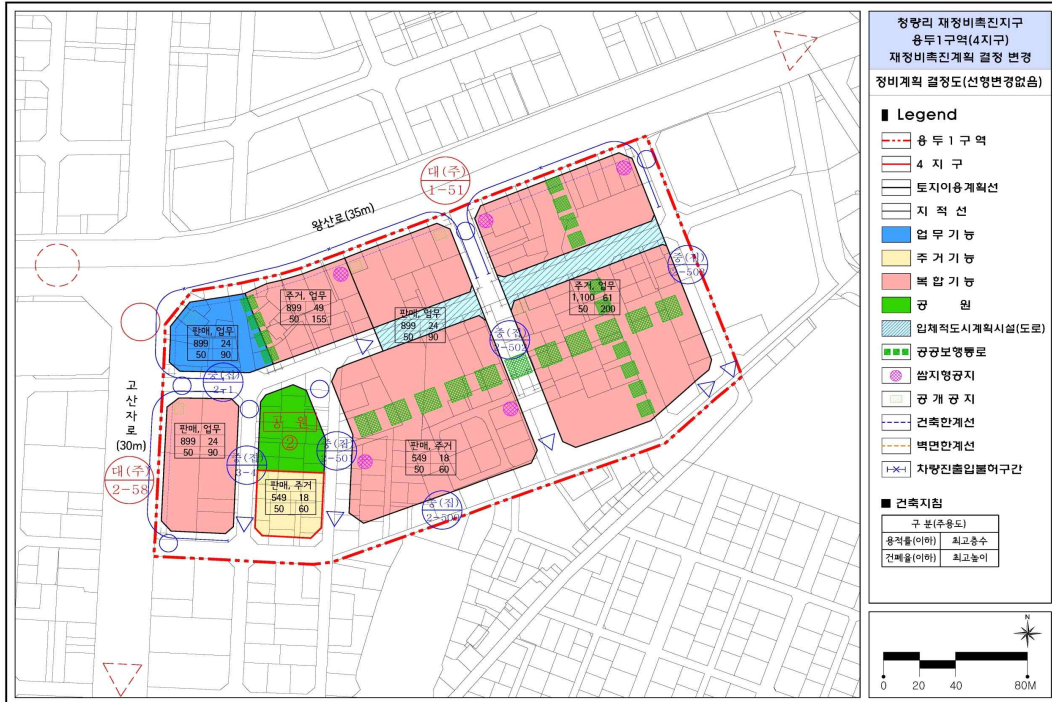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4지구)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선형변경 없음) 】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4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선형변경 없음) 】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4지구) 정비계획결정도 (선형변경 없음)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69호
**도시관리계획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9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27호(2002.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1호(2016.08.25.)호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 따라 재건축정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89호(2017.03.1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강남구 고시 제2022-117호(2022.05.06.)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2025.12.18.)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5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9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

I.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사업부문)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조서(변경)

구분	연번	자치구	지번	면적(ha)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준	허용	상한	법상한					
기정	21	강남구	464	3.64	210 이하	225 이하	242.30 이하	299.56 이하	50 이하	35층 이하 (100m이하)	2	공동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지구단위 계획에 따름)
변경	21	강남구	464	3.19		229.7 이하	248.32 이하	299.56 이하		49층 이하 (170m이하)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재능교육부지 제척

II.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광로	2	18	40	주간선	6,500 (153)	압구정동 (도곡2동 464)	포이동 (개포4동 658-3)	일반 도로	건고시198호 (71.04.07)	언주로
변경	광로	2	18	40~42	주간선	6,500 (153)	압구정동 (도곡2동 464)	포이동 (개포4동 658-3)	일반 도로	건고시198호 (71.04.07)	언주로
기정	광로	3	19	40	주간선	35,306	삼전동 (광로2-28)	방화동 (중로 2-249)	일반 도로	건고503 (69.08.27)	남부순환로
기정	중로	3	404	12	국지 도로	300 (231)	광로2-18	근린공원 6	일반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폭원2m 확폭

※ 원활한 차량 진출입과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언주로변 도로 2m 확폭

※ ()는 사업대상지 내 연장

2) 공간시설(변경)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㉑	녹지	연결녹지	도곡동 464	1,713.00	감) 495.20	1,217.80	서울시고시 제2017-89호	-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내 재능교육(획지2)부지 제척 및 언주로변 도로 2m 확폭(녹지 폭 12m → 10m)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5) 방제시설(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구분	가구	획 지			비고
		위치	위치	면적(㎡)	
기정	1	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획지①	30,048.5	도곡개포한신
			획지②	4,250.5	재능교육
변경	1		획지①	30,077.47	도곡개포한신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건폐율 계획 : 변경없음
 나) 용적률 계획 : 변경없음
 다) 높이 계획 : 변경

구 분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 정	변 경
최고층수 • 평균층수	저층 구간		•최고층수 : 35층이하 •평균층수 : 제한없음	•최고층수 : 35층이하 (특별계획구역19-1 : 49층이하) •평균층수 : 제한없음
		최고 10층이하	•특별계획구역 중 공동주택지에만 해당 - 개포로88길변(주공 5단지변 폭 30m, 주공 6단지변 통경구간 동측 폭 30m) - 개포로110길변(양측 폭 30m 구간) - 남부순환로394길변(양측 폭 30m 구간)	•특별계획구역 중 공동주택지에만 해당 - 개포로88길변(주공 5단지변 폭 30m, 주공 6단지변 통경구간 동측 폭 30m) - 개포로110길변(양측 폭 30m 구간) - 남부순환로394길변(양측 폭 30m 구간)
		최고 7층 이하	•특별계획구역 중 공동주택지에만 해당 - 개원길변 : 양측 폭 25m 구간	•특별계획구역 중 공동주택지에만 해당 - 개원길변 : 양측 폭 25m 구간
	고층 구간	평균층수 30층이하	•현대1차, 개포경남, 우성3차 블록 (블록 전체 계획대지면적의 40%) •현대 2차, 현대 200동, 현대 220동 블록 (블록 전체 계획대지면적의 35%)	•현대1차, 개포경남, 우성3차 블록 (블록 전체 계획대지면적의 40%) •현대 2차, 현대 200동, 현대 220동 블록 (블록 전체 계획대지면적의 35%)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19	강남구 도곡2동	36,473.0	감) 36,473.0	-	도곡한신
변경	특별계획구역19-1	강남구 도곡2동	-	증) 31,953.06	31,953.06	도곡한신
변경	특별계획구역19-2	강남구 도곡2동	-	증) 4,519.94	4,519.94	재능교육

■ 특별계획구역19 - 도곡개포한신아파트(기정)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획지 1	획지 2	
위 치			• 강남구 도곡동 464		-
특별계획구역 면적			• 36,473.0㎡		-
획지(계획대지) 면적			• 30,048.5㎡	• 4,250.5㎡	-
공공시설 면적			• 1,904.56㎡	• 269.44㎡	-
공공시설 비율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6.0% 내외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공기반시설 계획			• 기부채납(순부담) 면적 : 1,904.56㎡(약 6%) - 연결녹지 폭 12m(연주로변)(면적 : 1,443.56㎡) 계획 - 도로 폭 2m확폭(보행자우선도로)(면적 : 461㎡)계획	• 기부채납(순부담) 면적 : 269.44㎡(약 6%) - 연결녹지 폭 12m(연주로변) (면적 : 269.44㎡) 계획	지침도에 따름 : 향후 세부개발계획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 용도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
		허용 용도a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50% 이하	• 50% 이하	-
	용적률	기준 용적률	• 210% 이하	• 210% 이하	-
		허용 용적률	• 230% 이하	• 230% 이하	-
		상한 용적률	• 250% 이하	• 250% 이하	-
	높 이		• 최고층수 35층 이하	• 최저층수 3층 이상	-
	배치		건축한계선 : 남부순환로 : 8m / 이면도로 : 3m 연도형 상가 배치구간 : 남부순환로변 : 폭30m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면 길이가 대지와 접한 가로길이의 70%이상 되도록 배치		-
기타에 관한 사항	경 관		• 경관제크리스트 준용		-
	보행동선		• 단지 주출입구와 우성5차, 우성5차 단지변으로 우성4차, 남부순환로와 연계하는 보행동선 조성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획지 1	획지 2	
차량통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획지1 : 언주로변 진입만 허용, 이면도로변 진·출입 허용)		-
자전거도로	• 언주로변(폭 3m이상) 및 남부순환로변(폭1.5m이상)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

※ 법적상한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신청 시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및 관련법령과 기준을 우선 적용함

※ 보행통선·근린광장·쌔지형공지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할 수 있음

※ 소형주택(임대주택)은 정비계획 수립시 규모를 다양하게 계획(예시 : 주거전용면적 40㎡~59㎡)

※ 부분 임대주택 확보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입하여야 하며, 비율은 60~85㎡, 85㎡이상 세대수의 20% 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

※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함

※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에 따름

※ 상기 변경 특별계획구역을 제외한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특별계획구역의 계획 내용은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9-1 - 도곡개포한신아파트(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획지 1		
위 치		• 강남구 도곡동 464		-
특별계획구역 면적		• 31,953.06㎡		-
획지(계획대지) 면적		• 30,077.47㎡		-
공공시설 면적		• 1,875.59㎡		-
공공시설 비율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6.0% 내외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공기반시설 계획		• 기부채납(순부담) 면적 : 1,875.59㎡(약 5.9%) - 연결녹지 폭 10m(언주로변) (면적 : 1,217.80㎡) 계획 - 도로 폭 2m확폭(언주로변)(면적 : 196.79㎡)계획 - 도로 폭 2m확폭(보행자우선도로)(면적 : 461㎡)계획		지침도에 따름 : 향후 세부개발계획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물의 용도· 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 용도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
		허용 용도a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50% 이하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획지 1	
	요 요 요	기준 용적률	• 210% 이하	-
		허용 용적률	• 230% 이하	-
		상한 용적률	• 250% 이하	-
	높 이		• 최고층수 49층 이하	-
배치	건축한계선		• 남부순환로 : 8m / 이면도로 : 3m	-
	연도형 상가 배치구간		• 남부순환로변 : 폭30m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면 길이가 대지와 접한 가로길이의 70%이상 되도록 배치	-
	담장설치 불허구간		• 열린단지 조성을 위하여 담장설치 불허	-
기타에 관한 사항	경 관		•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
	보행동선		• 단지 주출입구와 우성5차, 우성5차 단지변으로 우성4차, 남부순환로와 연계하는 보행동선 조성	-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연주로변 진출만 허용, 이면도로변 진·출입 허용)	-
	자전거도로		• 연주로변(폭 3m이상) 및 남부순환로변(폭1.5m이상)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		• 남부순환로(북측)~연주29길(남측) : 6m	-

※ 법적상한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신청 시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및 관련법령과 기준을 우선 적용함

※ 보행동선·근린광장·섬지형공지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할 수 있음

※ 국민주택규모 주택(임대주택)은 정비계획 수립시 규모를 다양하게 계획(예시 : 주거전용면적 40㎡~59㎡)

※ 부분 임대주택 확보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입하여야 하며, 비율은 60~85㎡, 85㎡이상 세대수의 20% 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

※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함

※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에 따름

※ 상기 변경 특별계획구역을 제외한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특별계획구역의 계획 내용은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19-2 - 재능교육(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획지 1		
위 치		• 강남구 도곡동 464		-
특별계획구역 면적		• 4,519.94㎡		-
획지(계획대지) 면적		• 4,250.5㎡		-
공공시설 면적		• 269.44㎡		-
공공시설 비율		•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6.0% 내외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공기반시설 계획		• 기부채납(순부담) 면적 : 269.44㎡(약 6%) - 연결녹지 폭 10m(언주로변) (면적 : 269.44㎡) 계획		지침도에 따름 : 향후 세부개발계획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물의 용도· 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 용도A	•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 개포지구단위계획 건축물용도계획 불허용도 분류표 D 준용	-
		허용 용도a	• 업무시설, 1·2층 근린생활시설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기준 용적률	• 210% 이하	-
		허용 용적률	• 230% 이하	-
		상한 용적률	• 250% 이하	-
	높 이		• 최저층수 3층 이상	-
배치	건축한계선	• 남부순환로 : 8m / 이면도로 : 3m		-
	연도형 상가 배치구간	• 남부순환로변 : 폭30m •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면 길이가 대지와 접한 가로길이의 70%이상 되도록 배치		-
기타에 관한 사항	경 관	•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획지 1	
	차량동선	•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연주로변 진·출입 허용)	-
	자전거도로	• 연주로변(폭 3m이상) 및 남부순환로변(폭1.5m이상)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

- ※ 법적상한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신청 시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 및 관련법령과 기준을 우선 적용함
- ※ 보행통선·근린광장·섬지형공지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할 수 있음
- ※ 국민주택규모 주택(임대주택)은 정비계획 수립시 규모를 다양하게 계획(예시 : 주거전용면적 40㎡~59㎡)
- ※ 부분 임대주택 확보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입하여야 하며, 비율은 60~85㎡, 85㎡이상 세대수의 20% 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
- ※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관련법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함
- ※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에 따름

※ 상기 변경 특별계획구역을 제외한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타 특별계획구역의 계획 내용은 변경없음

II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4	36,473.00	감) 4,519.94	31,953.06	-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재능교육(학자2)부지 제척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72.47% ⇒ (1,636,557백만원 - 561,662백만원) / 1,483,172백만원 × 100 = 72.47% - 총 수입 추정 : 1,636,557백만원 - 총 지출 추정 : 561,662백만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1,483,172백만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도곡개포한신아파트 공동주택 소유자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제4항제1호나목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합에서 선정한 (주)하나감정평가법인과 강남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주)호암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여 산출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추정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분양가 추정액 - 권리가액 ◦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 평균액 × 추정비례율 (단위 : 천원)					
	주택형		전유52.72㎡ (23평형)	전유52.73㎡ (23평형)	전유59.48㎡ (26평형)	전유83.56㎡ (32평형)
	종전자산평가 평균액		2,193,206	2,193,613	2,353,864	2,717,100
	권리가액 추정		1,589,475	1,589,770	1,705,909	1,969,156
	추정 분담금	평형	분양가추정액			
		59	1,774,800	185,325	185,030	68,891
		74	2,143,600	554,125	553,830	437,691
		84A	2,299,200	709,725	709,430	593,291
		84B	2,231,900	642,425	642,130	525,991
		104	2,714,100	1,124,625	1,124,330	1,008,191
						744,944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6,473.00	감) 4,519.94	31,953.06	10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174.00	감) 298.41	1,875.59	5.9	-
	도 로	461.00	증) 196.79	657.79	2.1	-
	녹 지	1,713.00	감) 495.20	1,217.80	3.8	연결녹지
획 지	소 계	34,299.00	감) 4,221.53	30,077.47	94.1	-
	획 지 1	30,048.50	증) 28.97	30,077.47	94.1	도곡개포한신
	획 지 2	4,250.50	감) 4,250.50	-	-	재능교육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6,473.00	감) 4,519.94	31,953.06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6,473.00	감) 4,519.94	31,953.06	100.0

※ 재능교육(획지2)부지 제척으로 인한 용도지역 면적 변경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 정	광로	2	18	40	주간선	6,500 (153)	압구정동 (도곡2동 464)	포이동 (개포4동 658-3)	일반 도로	건고시198호 (71.04.07)	연주로
변 경	광로	2	18	40~42	주간선	6,500 (153)	압구정동 (도곡2동 464)	포이동 (개포4동 658-3)	일반 도로	건고시198호 (71.04.07)	연주로
기 정	광로	3	19	40	주간선	35,306	삼전동 (광로2-28)	방화동 (중로2-249)	일반 도로	건고503 (69.08.27)	남부순환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 정	중로	3	404	12	국지 도로	300 (231)	광로2-18	근린공원 6	일반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폭원2m 확폭

※ 원활한 차량 진출입과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연주로변 도로 2m 확폭

※ ()는 사업대상지 내 연장

2)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㉑	녹지	연결녹지	도곡동 464	1,713.00	감) 495.20	1,217.80	서울시고시 제2017-89호	-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내 재능교육(획지2)부지 제척 및 연주로변 도로 2m 확폭(폭 12m → 10m)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경로당	획지1 (공동주택 용지)	228.62	증) 107.6776	336.2976	-
	주민공동시설		1,580.07	증) 2,357.9539	3,938.0239	-
	관리사무소·경비실		166.28	증) 63.796	230.0760	-
	어린이놀이터		1,040.33	감) 44.9500	995.3800	-
	주민운동시설		285.25	감) 23.8300	261.4200	-
	어린이집		355.29	증) 43.8524	399.1424	-
	다함께돌봄센터		126.10	증) 159.6345	285.7345	-
	작은도서관		637.63	증) 49.4413	687.0713	-
	주민카페		154.56	감) 68.3019	86.2581	-
	스카이라운지		-	증) 216.1771	216.1771	-
	맘스데이션		-	증) 21.5670	21.5670	-

※ 시설구분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구분

※ 공동이용시설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도곡개포 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36,473.0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048.5	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10	-	-	10	-	
			획지2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4,250.5							
변경		31,953.06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077.47		9	-	-	9	-	

2)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기 정	도곡개포 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36,473	획지1	30,048.5	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50이하	299.56 이하	100m 이하 /35층 이하		
			획지2	4,250.5		업무시설 및 1·2종근린 생활시설	50이하	250이하	-	100m 이하 /3층 이상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기준 - 전용면적 60㎡이하 : 총세대수의 20%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 총세대수의 60%이상, 전체면적의 50% 이상 • 총세대수 : 816세대									
			구분	전용면적 (㎡)	세대수(세대)		비율(%)		연면적 (㎡)	비율(%)		
					소형	분양						
					60㎡ 이하	49㎡	31	21		6.37	23.04	83.33
			59㎡A	66		42	13.24	15,015.99	9.77			
			59㎡B	14		14	3.43	3,899.82	2.54			
			60~85㎡ 이하	74㎡	-	27	3.31	45.22	16.67	4,689.48	3.05	21.36
				84㎡A		369	45.22			72,342.26	47.07	
				84㎡B		96	11.76			18,864.88	12.27	
			85㎡초과	104㎡A	-	69	8.46	8.21		16,682.08	10.85	
104㎡B	-	67			16,158.08	10.51						
합 계		816		100		153,707.50		100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 85㎡이하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6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8m : 남부순환로변 / 3m : 이면도로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 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 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변경	도곡개포 한신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31,953.06	획지1	30,077.47	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48.32 이하	299.56 이하	170m 이하 /49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 총세대수의 60%이상 • 총세대수 : 792세대													
			구분		전용면적 (㎡)		세대수(세대)		비율(%)		연면적 (㎡)		비율(%)			
							임대 분양									
			60㎡이하		59㎡		94 57		19.1		82.8		21,417.31		13.8	
			60~85㎡ 이하		74㎡		- 35		4.4				6,202.44		4.0	
					84㎡A		- 435		54.9				87,134.28		56.1	
					84㎡B		- 35		4.4				6,997.20		4.5	
			85㎡초과		104㎡		- 136		17.2				33,507.24		21.6	
			합 계				792		100				155,258.67		100	
			- 85㎡이하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2.80%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8m : 남부순환로변 / 3m : 이면도로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은 관련 규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시 조정될 수 있음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기정) - 획지1(도곡개포한신)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계	대지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31,953.06㎡	30,048.5㎡	1,904.56㎡	-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 순부담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1,904.56㎡ - 0㎡ - 0㎡ = 1,904.56㎡							
계획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210%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210% + 15% = 225%							
	※ β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구 분	판 단 기 준				비고		
	서울시 기준	우 수 디자인	•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 시				0%	
			구분	세부항목	적용방법(단위:유형)			
					최소기준	권장기준		
			주동 형식 다양화	1.주거형태 다양화 (1가지유형10%이상)	가.3백세대 미만이고 5동미만	-		2 이상
					나.3백세대 또는 5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1천세대 또는 10동 이상	3 이상		4 이상
					라.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4 이상		5 이상
				2.높이 다양화 (1가지 유형 10%이상)	가.3백세대 미만이고 5개동 미만	-		2 이상
					나.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3.평면 및 단면형태 다양화 (1가지 유형 10%이상)			가.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나.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다.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복층화, 디자인된 혼합형 등)							
	4.입면디자인다양화	가.벽면율	40%이상	50%이상				
나.디자인 다양화								
5.발코니 형태 다양화	가.세대별 외벽길이 30%이상 지양	30%이상	30%이상					
	나.발코니 형태 다양화 (돌출형,개방형 등)							
《예외 규정》					10%			
- 구청장등이 동 심의기준을 준용, 설계경기를 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 참석위원2/3이상 인정시 -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4/5이상 인정시								

구분	판 단 기 준				비고
	지속가능형 건축 구조	라멘 구조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세부평가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5%
			분야	세부평가기준	
		무량판 구조	건축 구조	· 철골콘크리트, 철골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 기둥과 보가 일체화된 라멘 구조 - 기둥과 슬래브가 일체화된 무량판 구조 · 계단실, 엘리베이터 코어, 외기에 면한 측벽, 기타 평면계획상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력벽체 설치 허용	
	공용 설비			· 각 세대별로 공용설비공간은 구조체에서 분리 시공하고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점검구를 확보할 것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 건축비의 1%이상 ※ 신·재생 에너지 설치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친환경 우수 등급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최우수 (85점 이상)		
총 20%적용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225% + (210 × 1.3 × 0.0634) = 242.3%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나머지 대지면적 = 1,904.56㎡ / 30,048.50㎡ = 0.0634					
· 정비계획용적률 = 242.3%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56%이하				

- ※ 위에서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범위 내에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디자인 건축물 등 해당 인센티브항목을 확정하여 승인 또는 허가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변경) - 획지1(도곡개포한신)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계	대지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31,953.06㎡	30,077.47㎡	1,875.59㎡	-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 순부담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1,875.59㎡ - 0㎡ - 0㎡ = 1,875.59㎡				
계획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21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210% + 19.7% = 229.7% ※ β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허용용적률 20% 확보 (공공보행도로 6.7%, 열린단지 5%, 층간소음해소2등급 3%, 방재안전 5% 총 19.7% 적용)				
	구분	인센티브(용적률)			비고
	공공보행도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도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a ※ a=1이하 - 210% x (968.9㎡ / 30,077.47㎡) x 1 = 6.7%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6.7%적용
	열린단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조성(지형도면고시) - 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5%적용
	층간소음해소	•바닥(중량) 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 1등급 5%, 2등급 3%			3%적용 (2등급)
	방재안전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 안전성능을 의무기준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등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5%적용
	합계			총 19.7%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또는1.0)×α[건축물]+0.7×α[현금]) = 229.7% × (1 + 1.3 × 1 × 0.062359) = 248.32%				
	※ α [토지]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토지)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나머지 대지면적 = (1,875.59㎡) / (30,077.47㎡) = 0.062359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248.32%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56%이하				

※ 위에서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변경없음) - 획지2(재능교육)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계

대지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대지(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 순부담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269.44㎡ - 0㎡ - 0㎡ = 269.44㎡

계획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210%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유형	항 목	인센티브 적용 기준	완 화 내 용	비고	
규제형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면적 / 대지면적) × 1.25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또는 공용주차장 설치시	기준용적률 × 0.07		
유도형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 × α		
	건축물용도	권장용도준수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제외건축면적) × 0.15		
	건축물 형태	탐상형건축물 조성기준 준수	기준용적률 × 0.05		
의무형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자연지반 보존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1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으로서 기준용적률 × 0.05		
		중수도시설 설치주	기준용적률 × 0.06		
		빗물이용시설주	기준용적률 × 0.06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준용적률 × 0.08		
		에너지 절약	1등급	기준용적률 × 0.08	
			2등급	기준용적률 × 0.05	
	총 20%적용				

※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 남부순환로변 3종일반주거지역 인센티브기준 준용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210% + 20% = 230%

※ β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1.3α)

= 230% + (210 × 1.3 × 0.0634) = 247.3%

※ α =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나머지 대지면적

= 269.44㎡ / 4,250.50㎡ = 0.0634

• 정비계획용적률 = 247.3%

※ 위에서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바.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분	산출근거	용적률(%), 면적(m ²)	비고
기정	기준용적률	개포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210.0%	-
	허용용적률	「개포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적용	225.0%	-
	정비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을 통한 용적률 완화 허용용적률 x (1+1.3 x 가중치 x α토지 + 0.7 x α건축물)	242.3%	기부채납
	법정상한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299.56%	-
	증가용적률	(법정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28.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299.56% - 242.30%) × 50%		
	국민주택규모주택 면적산출	계획대지면적 × (증가용적률의 1/2이상)	8,602.88m ²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최소면적
		30,048.50m ² × 28.63%		
변경	기준용적률	개포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210.0%	-
	허용용적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항목	229.7%	-
	정비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을 통한 용적률 완화 허용용적률 x (1+1.3 x 가중치 x α토지 + 0.7 x α건축물)	248.32%	기부채납
	법정상한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299.56%	-
	증가용적률	(법정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25.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299.56% - 248.32%) × 50%		
	국민주택규모주택 면적산출	계획대지면적 × (증가용적률의 1/2이상)	7,705.84m ²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최소면적
		30,077.47m ² × 25.62%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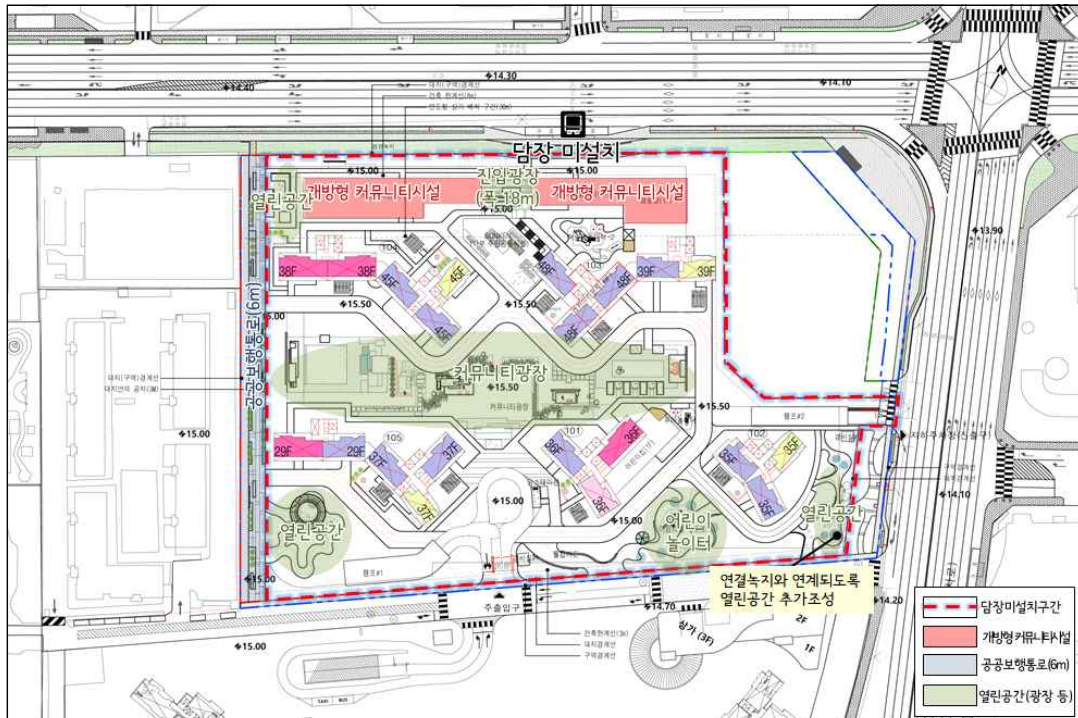
구분	시행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6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 기정 : 620세대 • 변경 : 816세대 • 증) : 196세대	이상없음	-
변경				• 기정 : 620세대 • 변경 : 792세대 • 증) : 172세대		-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가구	획 지			비고
		위치	구분	면적(㎡)	
기정	1	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획지①	30,048.5	도곡개포한신
			획지②	4,250.5	재능교육
변경			획지①	30,077.47	도곡개포한신

IV. 2025년('25.12.18.)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조건부의결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조치계획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위원회	수정가결 · 조건부의결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인 열린단지 계획이 실효성 있도록 재검토 바람	○ 남부순환로변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였으며, 담장을 미설치하여 열린휴게공간 및 놀이터 등 개방시설을 배치하여 단지 외부에서 중앙부까지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포함)변경 관련하여 이후 절차 등을 검토 및 이행바람	○ 금번 정비계획 변경 고시시, 지구단위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하겠음



V. 관계도면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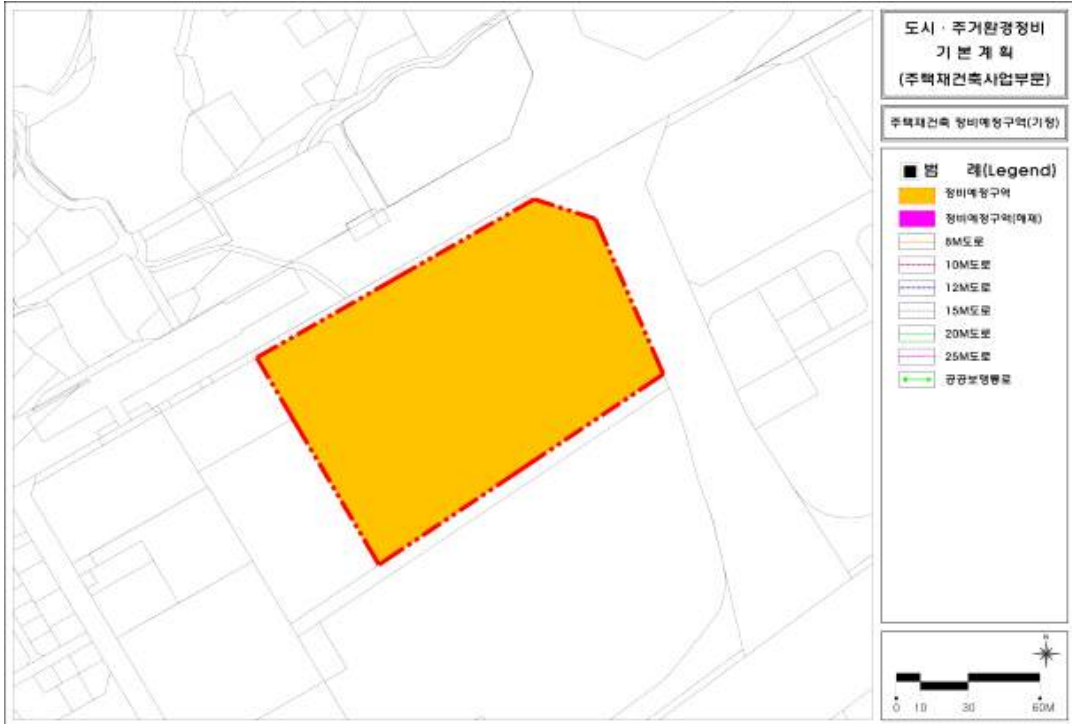
1. 정비예정구역 결정도(기정/변경)
2. 정비구역 결정도(기정/변경)
3.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6.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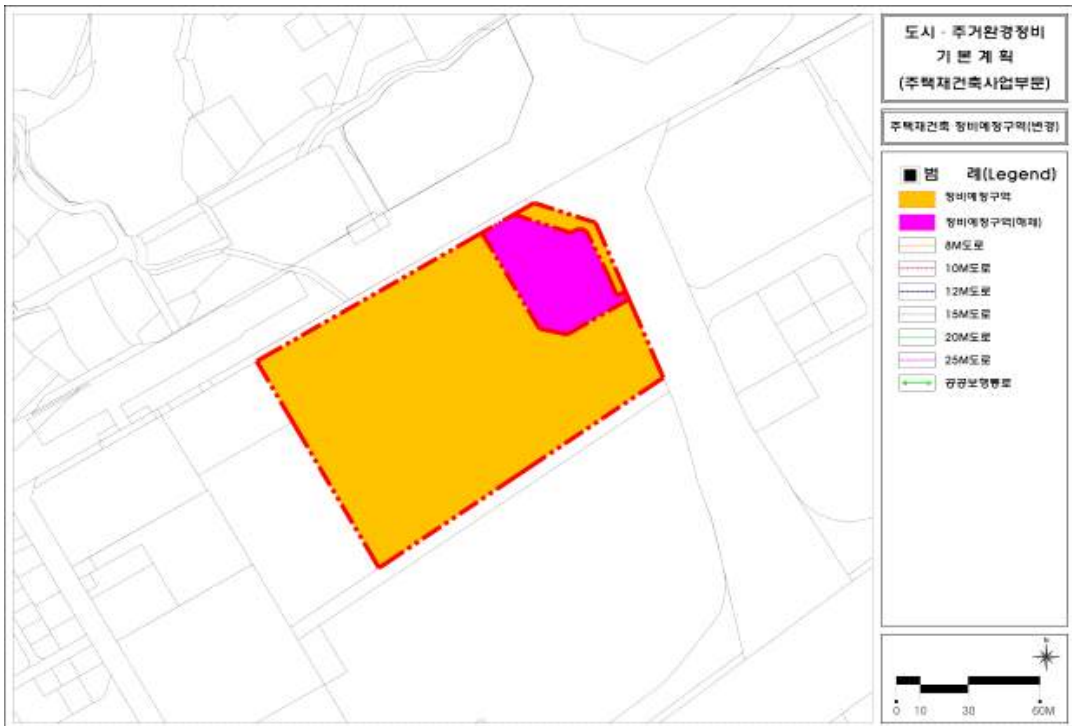
VI.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7) 및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02-3423-609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luris.gi.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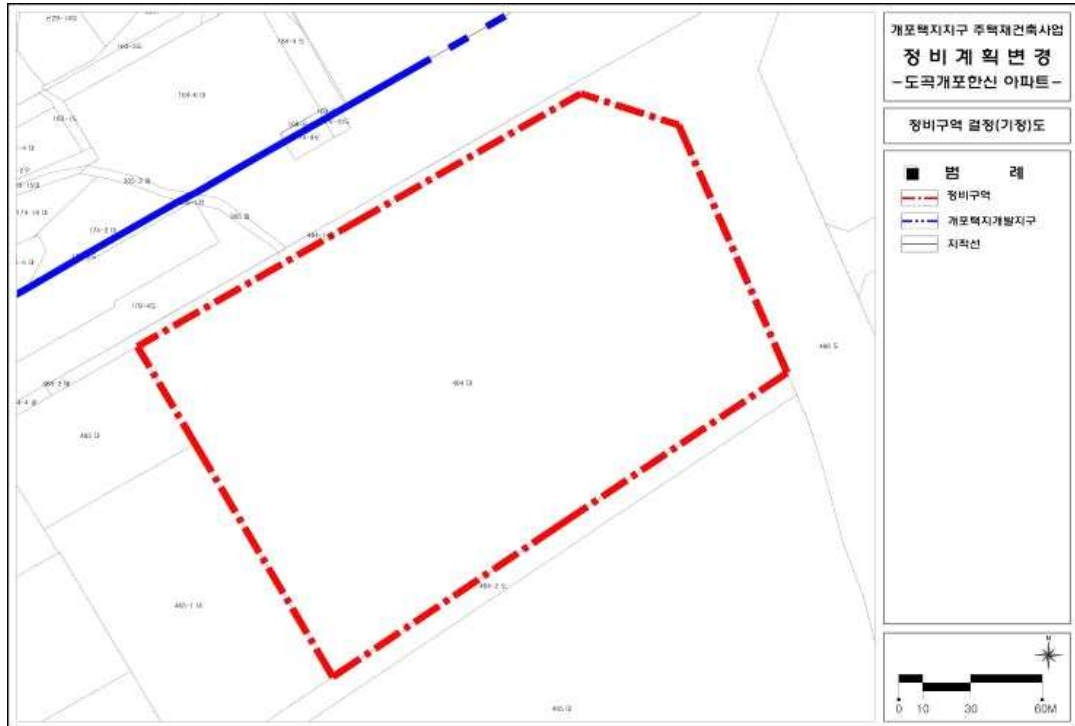
■ 정비예정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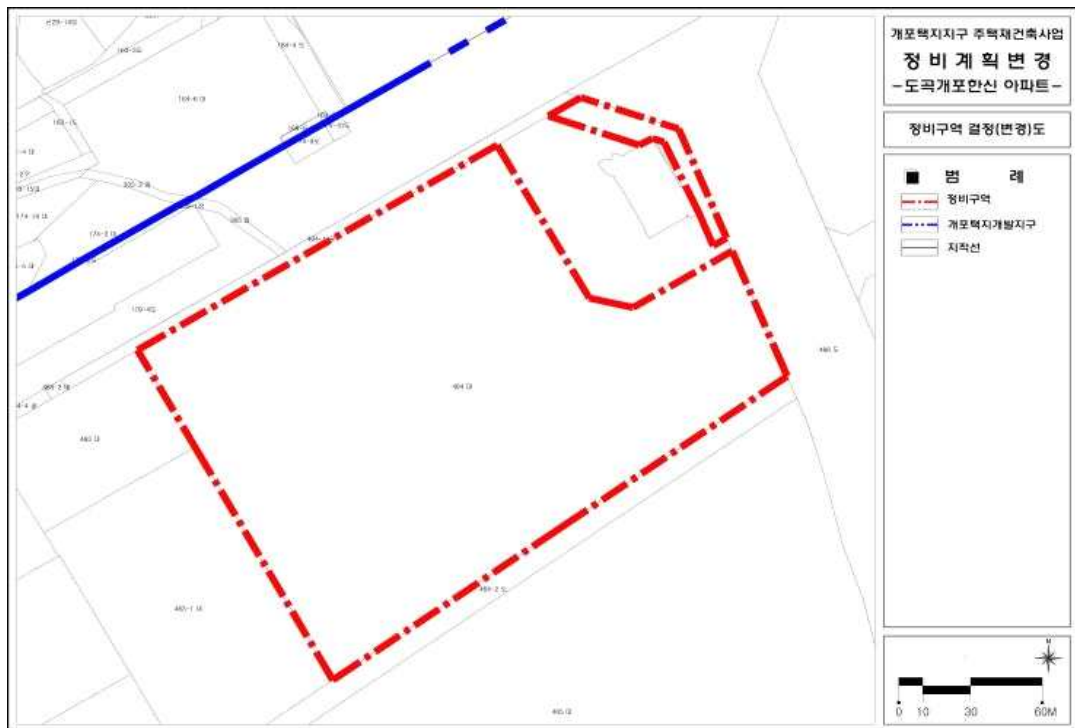
■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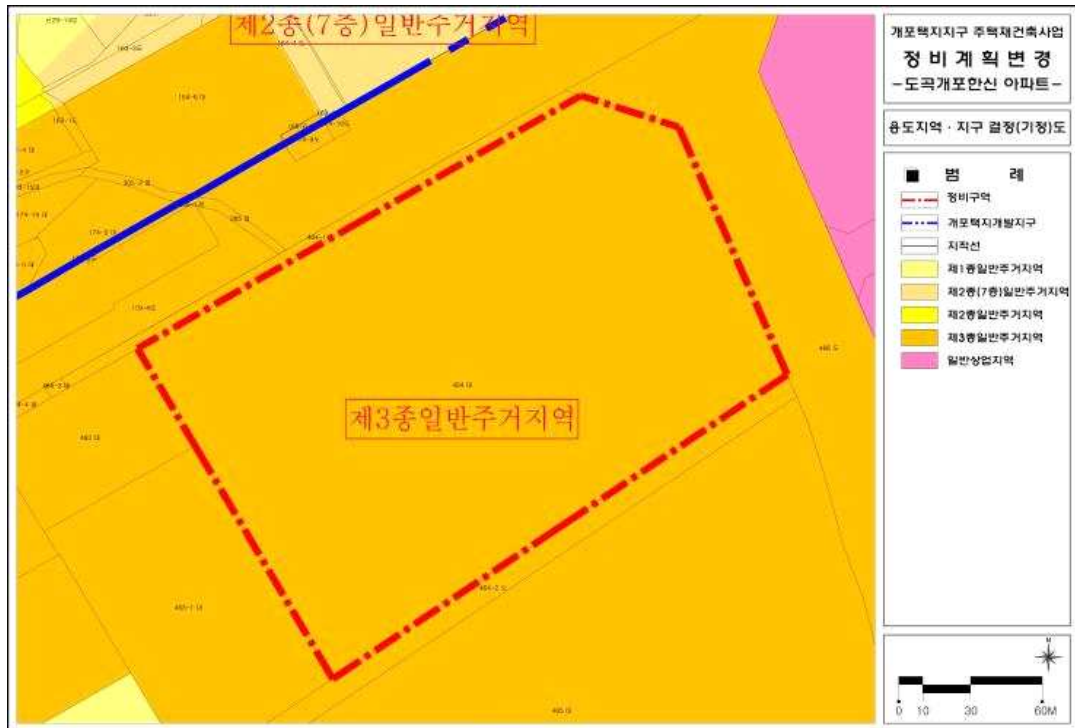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기정)도



■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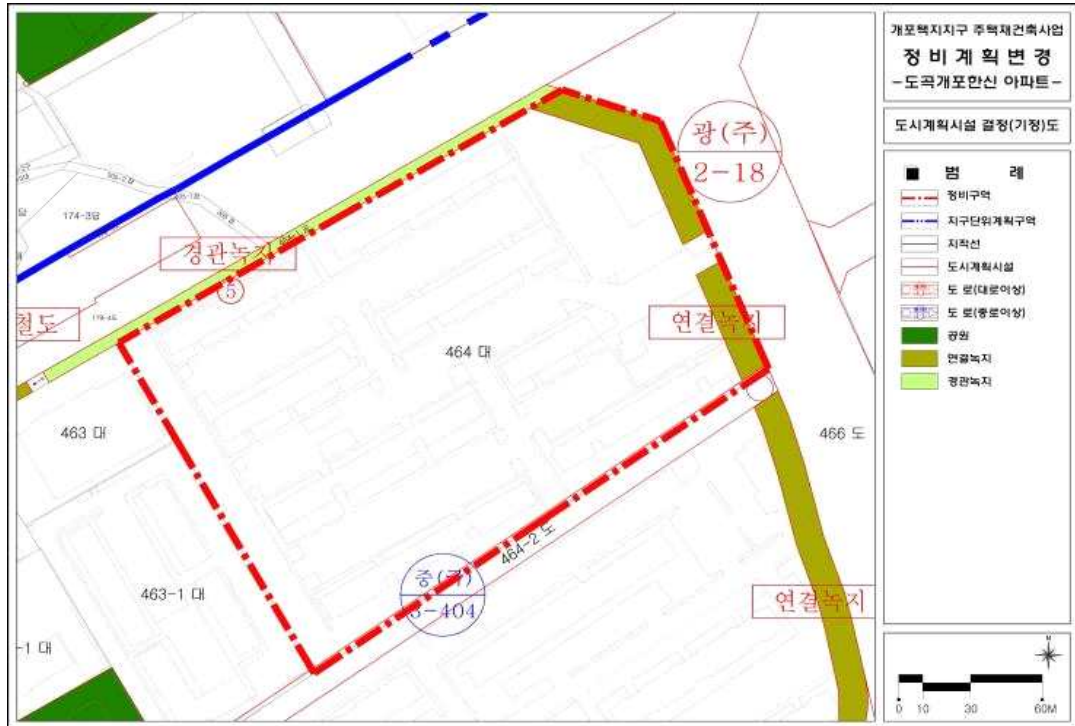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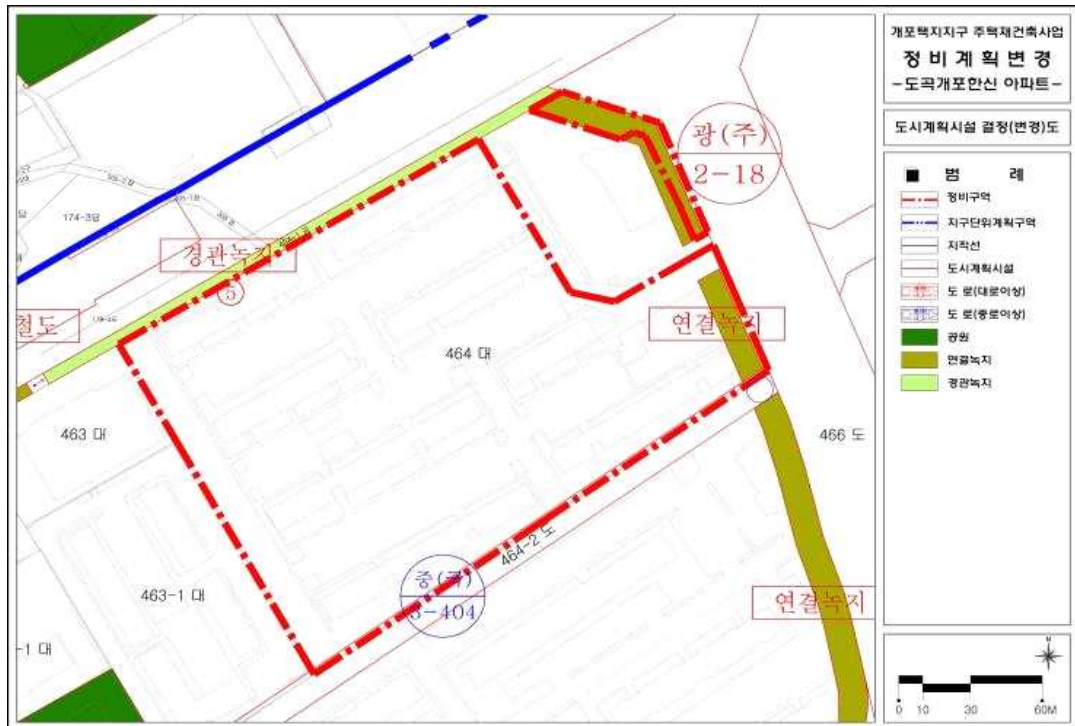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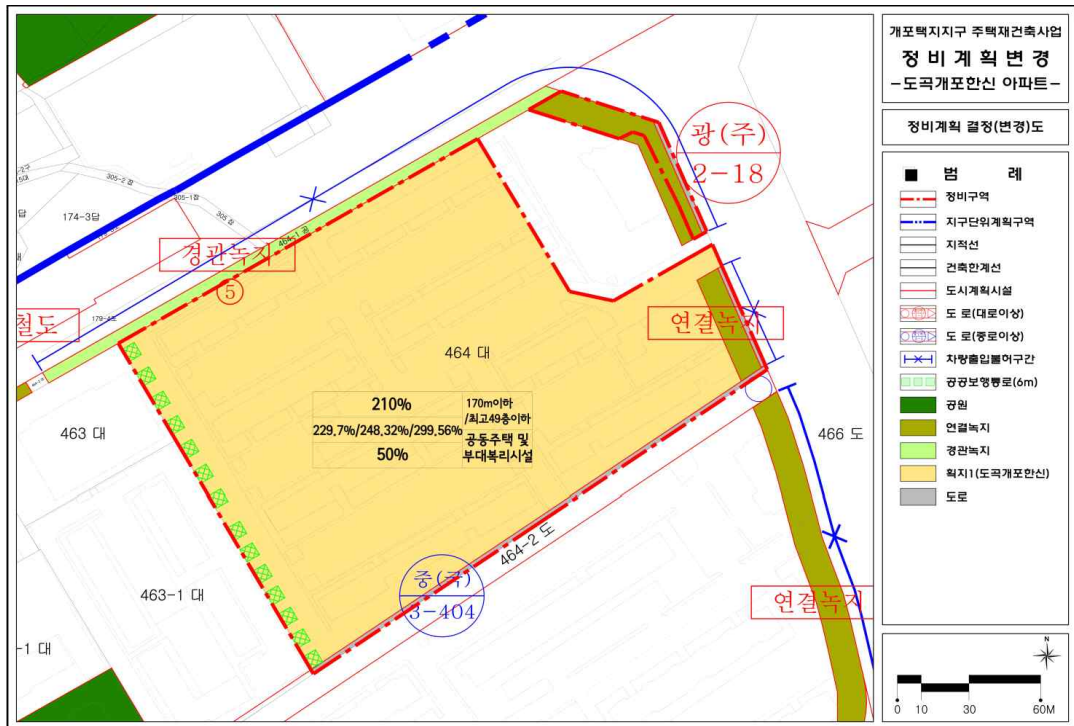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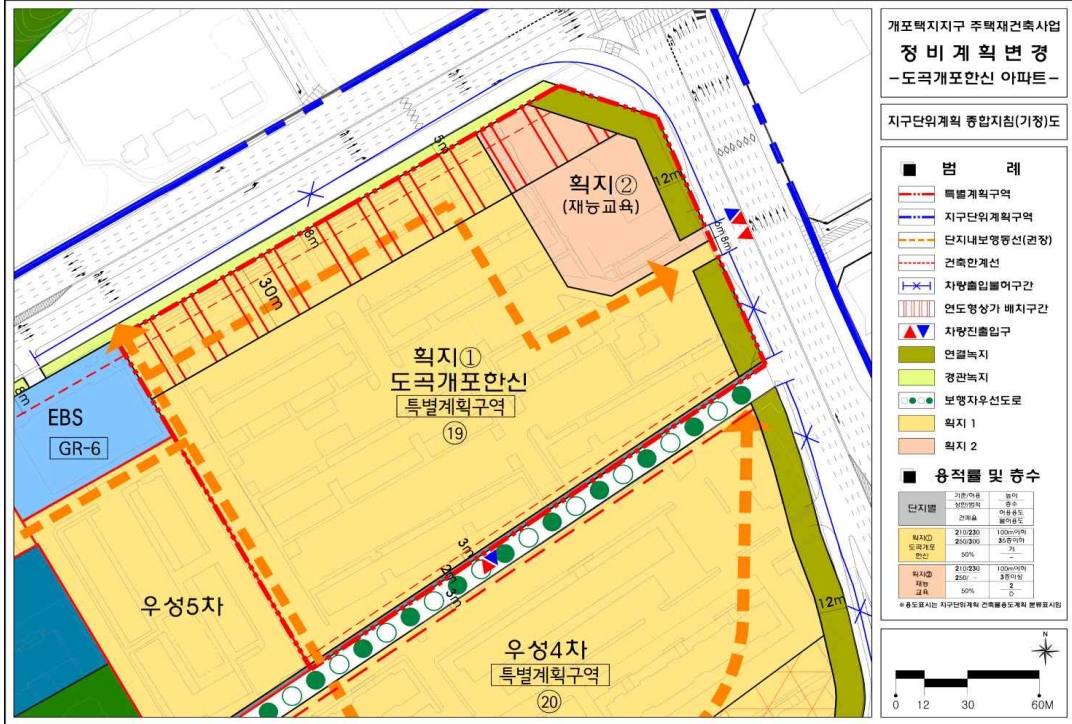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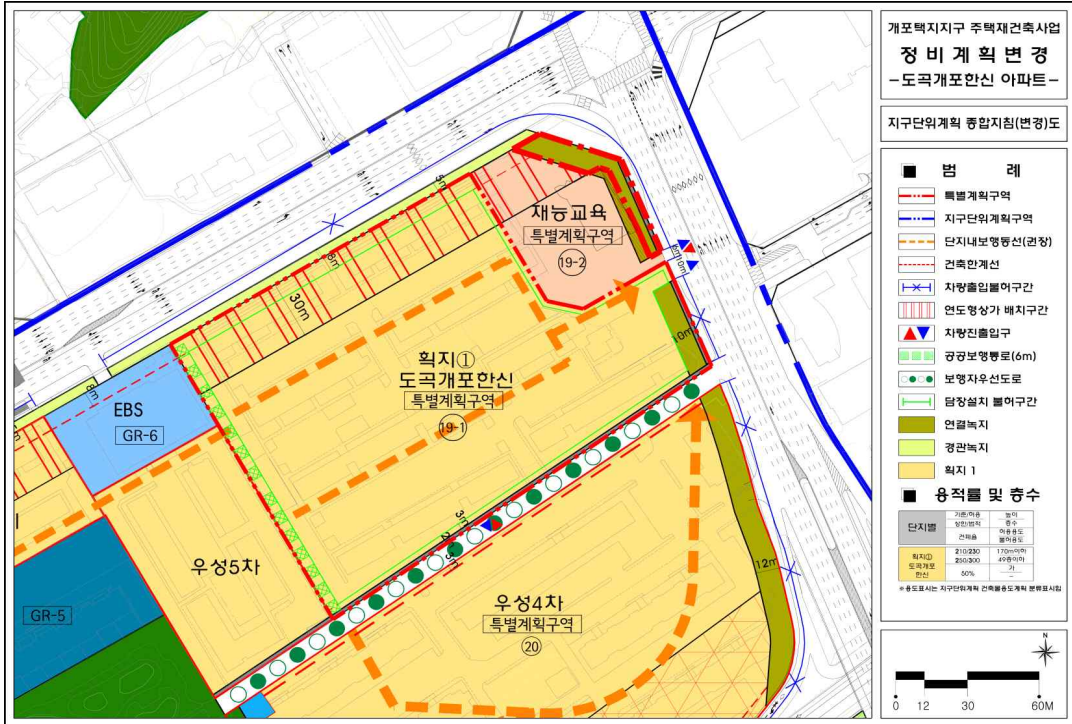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기정)도



■ 지구단위계획 종합지침(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70호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19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2025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주민(재)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송파구 풍납동 219번지 일대	-	증)19,505	19,505	-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3.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101.94% ⇒ (5,387.87억 - 2,048.90억) ÷ 3,275.50억 × 100 ≈ 101.94% - 총 수입 추정 : 약 538,787,000,000원 - 총 지출 추정 : 약 204,889,732,000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약 327,550,310,000원(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개별	보정률방식 : 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 × 보정률(명형별 1.54~1.60)

종전자산 추정액	•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세보정률(KB시세 등 참고)을 적용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하였는바, 추후 사업시행인가 후 정식감정평가시 평형 및 세대별 가격수준 및 그 균형이 달라질 수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람. • 평형별 평균 종전자산 추정액은 아래와 같음.		
	전용면적(㎡)	세대수	평균공시가격(원)
	63.39(구 26평)	55	609,636,364
	98.32(구 36평)	22	713,181,818
	116.96(구 42평)	198	770,090,909
추정 분담금 산출	• 평균종전자산 추정액(원)		
	63.39(구 26평)	55	609,636,364
	98.32(구 36평)	22	713,181,818
	116.96(구 42평)	198	770,090,909
	1,232,145,000		
추정 분담금 산출	• 상가 종전자산추정액은 동일 및 인근단지내 상가의 실거래가 등을 참작하여 (지1~2층) 약 6,110,290,000원으로 약식 추정방식 하였음. • 공동주택 및 상가의 종전자산은 개략적으로 추정한 것으로서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며, 평형별 평균 가격수준으로서 총 위치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a)(원)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59A형(구 25평)	1,024,000,000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1.94%)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부담 / - 환급)
	84A형(구 33평)	1,301,000,000	
	112A형(구 45평)	1,623,000,000	
	상가(전유20㎡)(1층평균)	388,000,000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 비례율 = ((종후 대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총수입) - 총사업비(총지출액)) /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조합원 총재산))

$$= (538,787,000,000 - 204,889,732,000) / 327,550,310,000 \times 100 = 101.94\%$$

■ 총 수입 산출 : 5,387.87억원

구분	공급세대	전용 면적(㎡)	공급 면적(㎡)	분양가 (3.3㎡당) (원)	세대별 분양금액(원)	분양수입(원)	비고
합계					-	538,787,000,000	-
조합원	30	59.95	82.12	41,200,000	1,024,000,000	30,720,000,000	일반분양가 × 85%
	198	84.95	109.95	39,100,000	1,301,000,000	257,598,000,000	

구분	공급세대	전용 면적(㎡)	공급 면적(㎡)	분양가 (3.3㎡당) (원)	세대별 분양금액(원)	분양수입(원)	비고
	47	112.95	148.45	36,100,000	1,623,000,000	76,281,000,000	
	275	-	-	-	-	364,599,000,000	
일반 면분양	12	59.95	82.12	48,500,000	1,205,000,000	14,460,000,000	일반분양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분양가 상한제) 규제지역
	77	84.95	109.95	46,000,000	1,530,000,000	117,810,000,000	
	18	112.95	148.45	42,500,000	1,909,000,000	34,362,000,000	
	107	-	-	-	-	166,632,000,000	
기부 임대	-	-	-	-	-	-	기부채납 (상한용적률)
	-	-	-	-	-	-	
	-	-	-	-	-	-	
소형 임대	24	59.95	82.12	-	128,000,000	3,072,000,000	도정법 제54조 (법적상한용적률)
	7	84.95	109.95	-	174,000,000	1,218,000,000	
	31	-	-	-	-	4,290,000,000	
상가	-	-	240.00	-	-	3,266,000,000	-

■ 총 사업비 산출 : 2,048.90억원

구분	내용	비고
연면적	71,675.62㎡	지하3층 / 지상23층
공사비	162,613,332,000	연면적 3.3㎡당 7,500,000원 기준
기타 사업비	42,276,400,000	예비비 포함 (공사비의 26%)
일반 사업비	204,889,732,000	공사비 + 일반사업비
현금청산 금액	-	중전자산가액의 0%(매도청구)
비례율 산정 총사업비	204,889,732,000	일반사업비 + 예비비 + 현금청산액
총사업비	204,889,732,000	개별정산하는 중도금 및 이주비이자 제외

■ 조합원 중전자산가액 및 추정분담금

- 조합원 중전자산가액 : 풍납미성아파트 중전자산가액
= 3,214.4억원(아파트) + 61.1억원(상가) = 3,275.5억원(전체)

4.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총 계		19,505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628	3.2	-
	도로	628	3.2	순부담
획지	소계	18,877	96.8	-
	획지1	18,877	96.8	공동주택

5.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9,505	-	19,50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9,505	-	19,505	100.0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7	6~8	국지도로	237	소로3-21	종로2-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3	17	8	국지도로	237 (205)	소로3-21	종로2-	일반 도로	-	-	도로확폭
신설	소로	3	A	5	국지도로	174	풍납동 291-26	종로2-	일반 도로	-	-	도로신설

※ ()은 구역내 연장임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면적 기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복리시설	경로당	-	증) 230.0	230.0	-
	어린이집	-	증) 250.0	250.0	개방
	작은도서관	-	증) 120.0	120.0	-
	주민공동시설	-	증) 500.0	500.0	-
	주민운동시설	-	증) 200.0	200.0	-
	어린이놀이터	-	증) 650.0	650.0	개방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	증) 100.0	100.0	-
	경비실	-	증) 30.0	30.0	-
	용역원휴게실	-	증) 50.0	50.0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19,505	획지	19,505	풍납동 219번지	5	-	-	5	-	아파트4동 상가거동

9. 건축시설계획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법적 상한		
신설	풍납미성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9,505	획지	18,877	풍납동 219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60% 이하	221.45% 이하	250% 이하 (건축계획 249.91%)	71.25m이하 /23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413세대(분양 382세대, 공공 31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결정(도시정비법 제54조)								
			건립규모		세대수		비율(%)		비고		
			합계		413		100.0				
			85㎡이하	60㎡이하		66		16.0		공공주택 24세대 포함	
				60㎡초과~85㎡이하		282		68.3		공공주택 7세대 포함	
			85㎡초과		65		15.7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60% 이상(계획 : 84.3%) - 국민주택규모 주택(85㎡ 이하)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심의원화 사항			• 203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17.3%)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 17.3%(허용용적률) x 1.3(사업성 보정계수) = 22.49% - 기준용적률 190% → 허용용적률 212.49% 이하 •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249.91%) - 정비계획용적률(221.45%) = 28.46%의 50%인 14.23%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건축한계선 지정 - 대지경계변 6m, 차도형 전면공지 및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공공보행통로변 양측 건축한계선 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공공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1개소) - 가로축 폭원 : 7m(획지의 동·서 연결)									

■ 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9,505㎡	18,877㎡	628㎡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순부담면적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제공면적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존치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628㎡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9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20%) = 190% + 22.49% = 212.49% • 인센티브 = 17.3%(공공보행통로 6.3% + 열린단지 5.0% + 층간소음해소 3.0% + 친환경건축물 3.0%)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 17.3%(허용용적률) × 1.3(사업성 보정계수) = 22.49%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 [1 + (1.3α)] = 212.49% + [207.3 × 1.3 × 0.03327] = 221.45%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628㎡ ÷ 18,877㎡ = 0.03327				
법적상한용적률	• 소형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법적상한용적률 = 249.91%(계획 기준) 이하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항 목		인센티브량
보행중심 생활공간 조성	공공보행 통로	기준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설정)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a=1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	10.0% 이내
		적용	• 190% x (626.2㎡/18,877㎡)=6.3%	6.3%
	열린단지	기준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지형도면고시)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 후에도 유지)	5.0% 이내
		적용	• 5% 적용	5.0%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	층간소음 해소	기준	•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 1등급 5%, 2등급 3%	5.0% 이내
		적용	•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3% 적용	3.0%
환경친화 안전한 주거지 조성	친환경 건축물	기준	•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3%(6%), 우수 등급 1.5%(3%)	15.0% 이내
		적용	•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3%(6%) 적용	3.0%
합계		총 17.3%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17.3% x 1.3(사업성 보정계수) = 22.49%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하여 계획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 임대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가.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라.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 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가 동일·동시에 공개 추천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천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가)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계획기준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		221.45%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49.91% 이하 (250% 이하)			
공공주택	용적률 증가분(%)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249.91% - 221.45% = 28.46%			
	증가된 용적률의 50%	28.46% X 0.5 = 14.23%			
	의무 연면적	18,877(대지면적) X 14.23% = 2,686.20㎡ 이상			
공공주택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확보계획		세대 규모(㎡)		세대수	지상층 연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합계		31	2,740.53㎡
		59.95㎡	82.12㎡	24	1,970.88㎡
		84.95㎡	109.95㎡	7	769.65㎡

2,740.53㎡
> 2,686.20㎡

10.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주기적인 살수 실시 및 성토사면 초본류 식재 • 수목식재시 조류의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종 식재 • 보존가치가 있거나, 중요성이 있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 • 공사시 가배수로 및 배수구역별 간이침사지 설치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준하여 처리 • 투수성 포장면적 비율을 높여 우수부하 저감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재난방지	· 개발로 발생하는 재난요인들을 원칙적으로 사업지구내에서 저감대책 또는 이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결토록 계획 · 강우시 공사중에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지작업시 절·성토사면의 안정을 기하고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사면 상하부에 측구 등의 배수시설 설치 · 사업지구의 비옥토는 부지공사시 채토하여 가적치장을 설치하여 조경공사시 재활용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반영사항	비고
비오름	비오름 보전등급 향상	○	· 주거지 비오름 · 비오름유형 평가등급 4등급 · 개별비오름 평가등급 제외	· 녹지 확보	
생태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 시가화지역으로 녹지훼손 없음	· 조경녹지 확보에 따른 녹지율증가 · 녹지평가지표1등급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 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사업대상지 내 건축계획 검토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최소화	○	· 기존 주거지역으로 지형 변화 거의 없음	· 현 지형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물순환	생태면적률 30%	○	· 생태면적률 계획 확인 · 자연지반녹지율, 인공지반녹지율 확인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등을 고려하여 30.25%로 생태면적률 산출	
수질	수질오염 최소화	○	· 공사시 우수유출 및 토사유출 · 운영시 우수공급 및 오수발생	· 토사노출부에 비닐덮개 설치 · 기존 시 상수관로부터 우수공급 · 사업대상지 내 우수관로 설치 후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결해 처리	
바람	바람길 확보	○	· 주변 지역에 대한 바람 흐름의 차단	·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건물배치	
열	열환경영향최소화	○	· 열환경 공간유형도 확인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및 옥상녹화 계획수립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발생	· 세륜·측면살수시설, 공사장내 살수 · 청정연료 사용 · 식재를 통한 녹지확보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 송파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처리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에너지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 조사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검토 ·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자재 구입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반영사항	비고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시 건설장비 소음·진동발생 · 운영시 인근도로 교통소음발생	· 필요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경관	SkyLine보전 조망권 확보	○	· 주변과의 조화로운 경관 검토	· 주변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	·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녹지공간 계획을 통해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일조	연속2시간확보	○	· 주변 주거지역에 일부 영향 예상	· 일조 영향 최소화 되도록 건물배치 및 높이 고려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존	계획	증	
신설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방법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75	413	138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교육 환경 보호	공사시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 생활소음 규제기준 <table><tr><td>구 분</td><td>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td><td>낮 (08:00~18:00)</td><td colspan="2">밤 (22:00~05:00)</td></tr><tr><td>주거지역내 공사장</td><td>60dB(A) 이하</td><td>65dB(A) 이하</td><td colspan="2">50dB(A) 이하</td></tr></table>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비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공휴일에 한하여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함 • 생활진동규제기준 <table><tr><td>구 분</td><td>주 간 (06:00~22:00)</td><td colspan="3">심 야 (22:00~06:00)</td></tr><tr><td>주거지역</td><td>65dB(V) 이하</td><td colspan="3">60dB(V) 이하</td></tr></table>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 소음진동 발생 저감대책					구 분	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	낮 (08:00~18:00)	밤 (22:00~05:00)		주거지역내 공사장	60dB(A) 이하	65dB(A) 이하	50dB(A) 이하		구 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65dB(V) 이하	60dB(V) 이하			
		구 분	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	낮 (08:00~18:00)	밤 (22:00~05:00)																						
		주거지역내 공사장	60dB(A) 이하	65dB(A) 이하	50dB(A) 이하																						
		구 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65dB(V) 이하	60dB(V) 이하																							

구분		내용	비고
		-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22조)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소음·진동관리법(제49조2)’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대책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저감효과를 높임 -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임시 통학로 설치 - 공사에 따르는 분진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살수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	
	운영시	- 추후 교통영향평가시 스쿨존 계획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 학교주변구역임을 표지판 등으로 공지하고 경적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추진위/조합 설립~착공전	착공~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현재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사업 추진중으로 주민들이 거주중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종남미성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풍납동 219번지 일대	-	증)19,505	19,505	100.0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9,505	-	19,50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9,505	-	19,505	100.0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7	6~8	국지도로	237	소로3-21	중로2-	일반 도로	-	-	-
변경	소로	3	17	8	국지도로	237 (205)	소로3-21	중로2-	일반 도로	-	-	도로확폭
신설	소로	3	A	5	국지도로	174	풍납동 219-26	중로2-	일반 도로	-	-	도로신설

※ ()은 구역내 연장임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소 계	-	증)18,877	18,877	100.0	-
	A-1	-	증)18,877	18,877	100.0	공동주택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신설	허용용도	A-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신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정상한용적률	
신설	190%	212.49%	221.45%	250%이하 (건축계획 249.91%)	

※ 사업성 보정계수 1.3 적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층간소음해소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등급	
신설	6.3%	5.0%	3.0%	3.0%	총 17.3%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주택 건설	
신설	28.46%	총 28.46%

다) 높이 계획

구 분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신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23층 이하(71.25m)	-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	송파구 풍납동 219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 공공보행도로변 양측 건축한계선 3m 지정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송파구 풍납동 219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차도형 및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3m

2)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측 반영사항	비고
비오름	비오름 보전등급 향상	○	· 주거지 비오름 · 비오름유형 평가등급 4등급 · 개별비오름 평가등급 제외	· 녹지 확보	
생태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 시가화지역으로 녹지훼손 없음	· 조경녹지 확보에 따른 녹지율증가 · 녹지평가지표1등급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 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사업대상지 내 건축계획 검토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최소화	○	· 기존 주거지역으로 지형 변화 거의 없음	· 현 지형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물순환	생태면적률 30%	○	· 생태면적률 계획 확인 · 자연지반녹지율, 인공지반녹지율 확인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등을 고려하여 30.25%로 생태면적률 산출	
수질	수질오염 최소화	○	· 공사시 우수유출 및 토사유출 · 운영시 우수공급 및 오수발생	· 토사노출부에 비닐덮개 설치 · 기존 시 상수관로부터 우수공급 · 사업대상지 내 오수관로 설치 후 기존 시 하수관로에 연결해 처리	
바람	바람길 확보	○	· 주변 지역에 대한 바람 흐름의 차단	· 바람의 진행방향을 고려한 건물배치	
열	열환경영향최소화	○	· 열환경 공간유형도 확인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및 옥상녹화 계획수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예측 반영사항	비고
대기질 ·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발생	· 세륜 · 측면살수시설, 공사장내 살수 · 청정연료 사용 · 식재를 통한 녹지확보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 · 운영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 송파구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처리 ·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에너지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 에너지원 변경가능여부 조사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검토 ·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자재 구입	
소음 · 진동	소음 · 진동 최소화	○	· 공사시 건설장비 소음 · 진동발생 · 운영시 인근도로 교통소음발생	· 필요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	
경관	SkyLine보전 조망권 확보	○	· 주변과의 조화로운 경관 검토	· 주변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 계획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	·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녹지공간 계획을 통해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일조	연속2시간확보	○	· 주변 주거지역에 일부 영향 예상	· 일조 영향 최소화 되도록 건물배치 및 높이 고려	

4)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가.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함.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 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라.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 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가 동일 · 동시에 공개 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주택 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전체세대수대비	전체비율
합 계	413	100	31	7.5	100.0
40㎡이하	-	-	-	-	-
40㎡초과~50㎡이하	-	-	-	-	-
50㎡초과~60㎡이하	66	16.0	24	5.8	77.4
60㎡초과~85㎡이하	282	68.3	7	1.7	22.6
85㎡초과	65	15.7	-	-	-

□ 2025년 제12차('25.12.05.)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 1) 수정사항 : 건축한계선 및 주택공급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 2) 조건사항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수정가결	차량 진출입구는 공공보행통로와의 상충 가능성 및 대상지 일대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위치로의 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	추후 건축·교통 통합심의시 적정위치를 고려하여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음	반영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계획에 반영할 것	추후 실시계획인가전 기반시설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하겠음	반영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4. 정비계획 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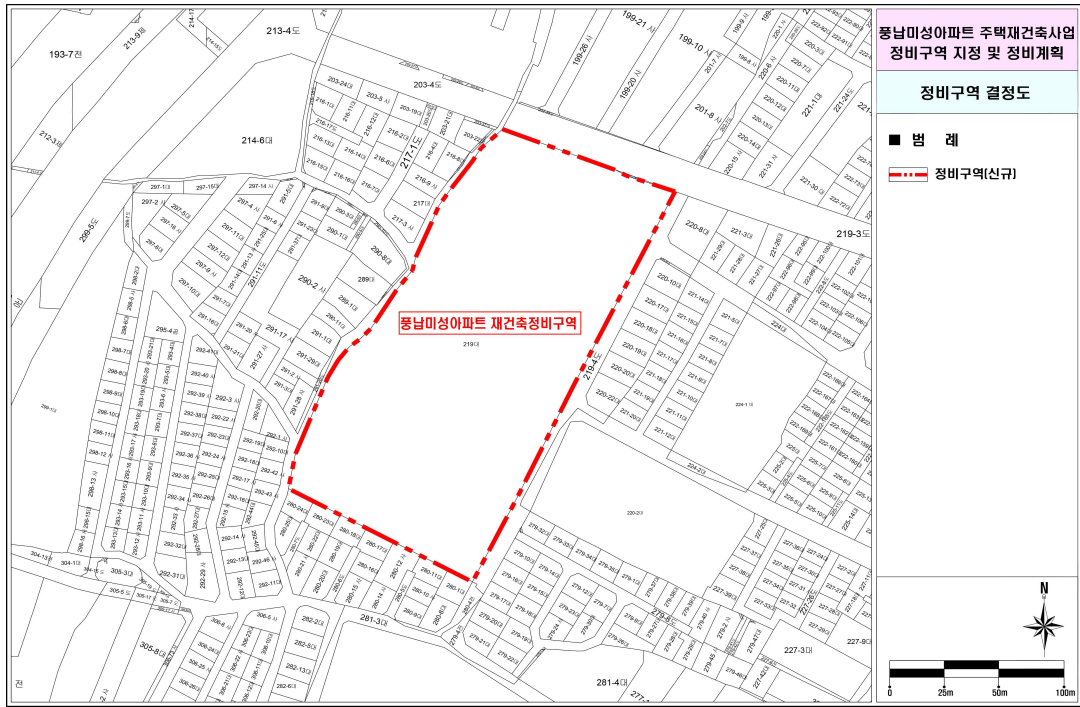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6), 송파구 주택사업과(☎02-2147-2888)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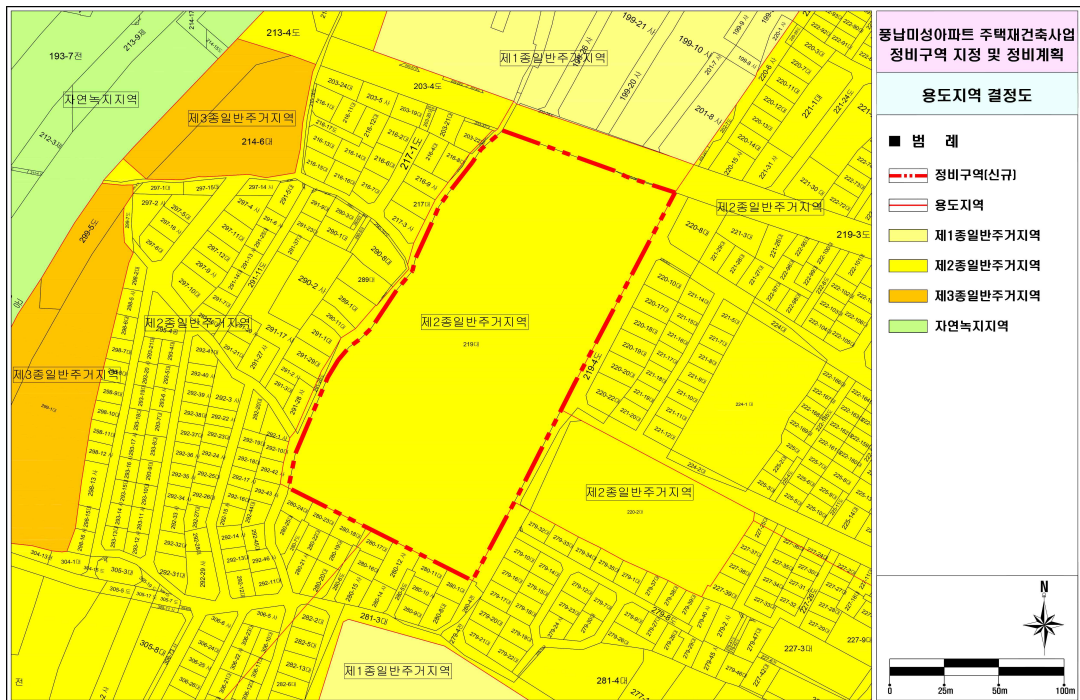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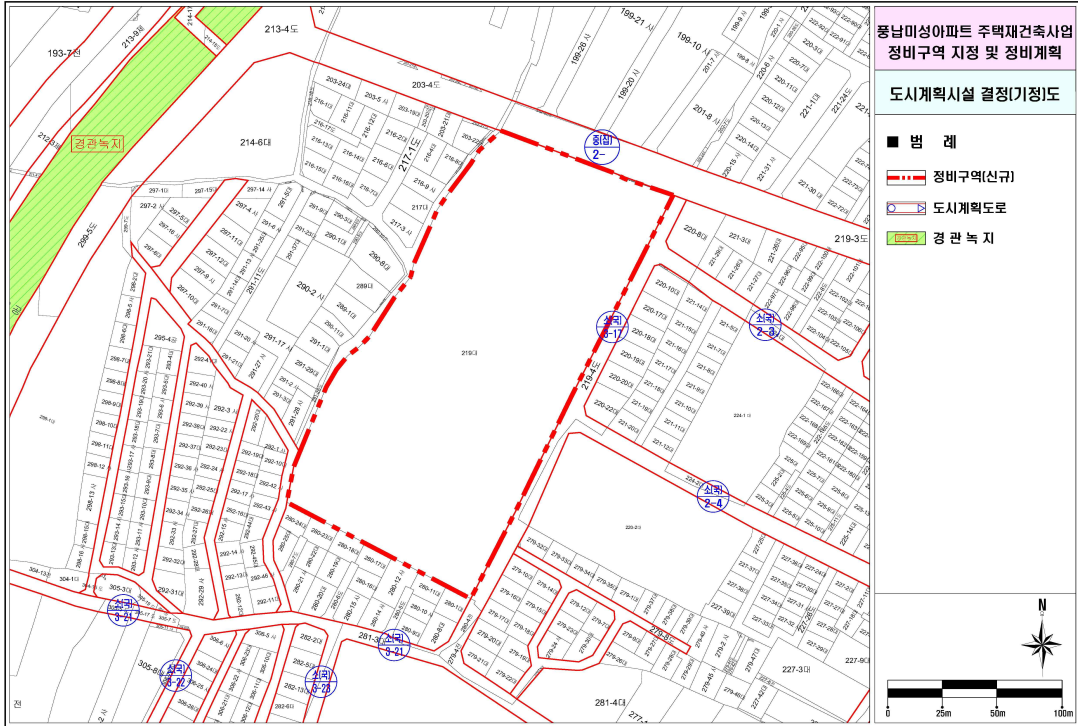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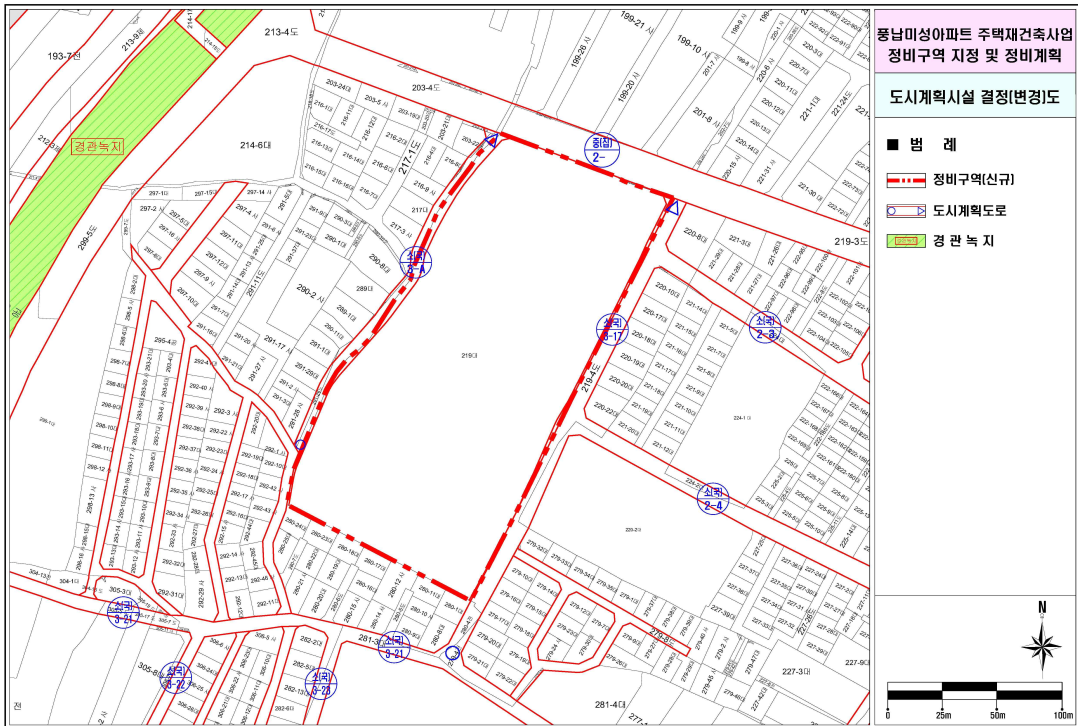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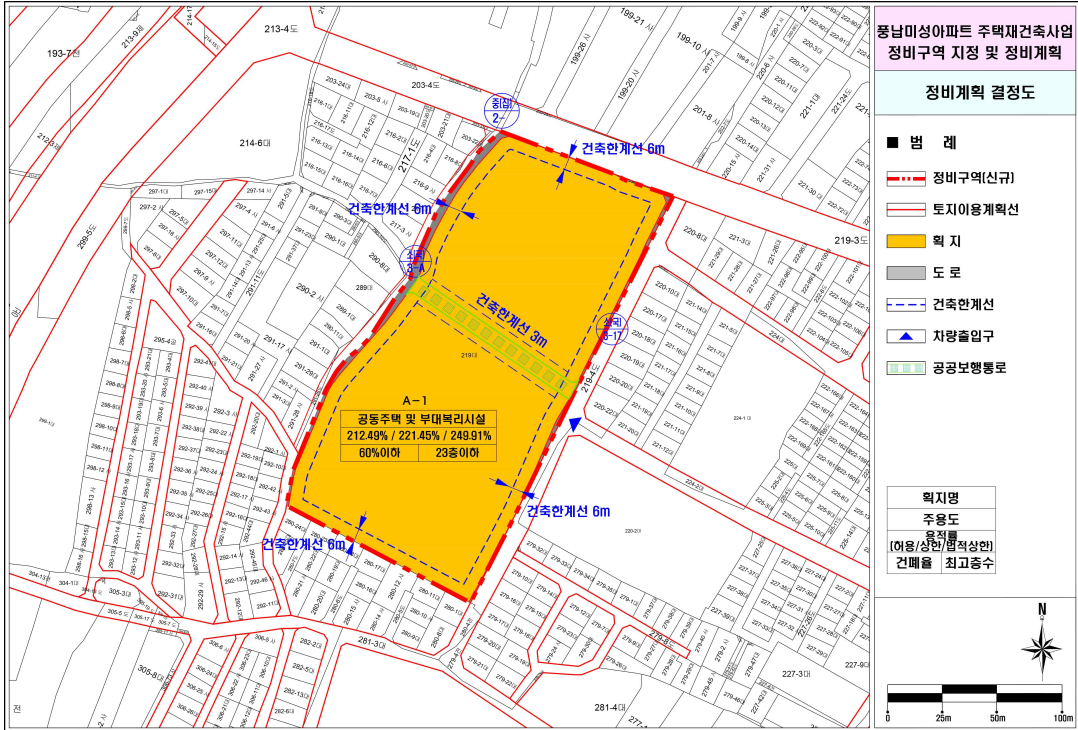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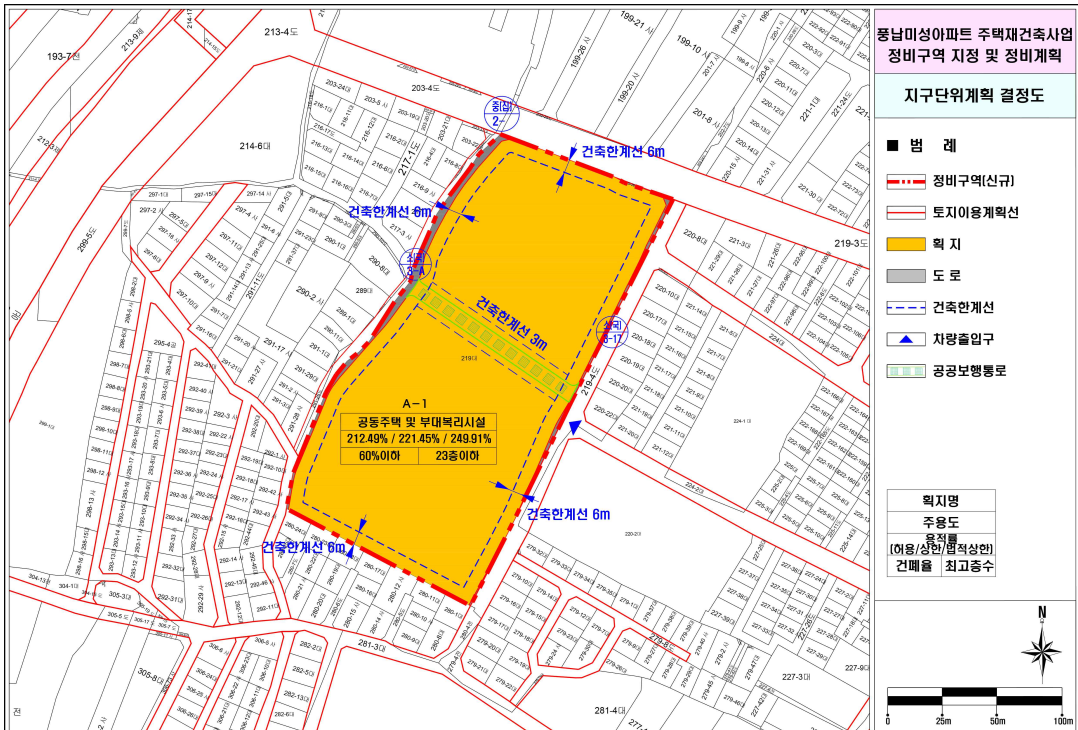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정비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71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지정대상 : 보행자우선도로 2개소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3.6~12	235
2		남부순환로97길		246

2. 위치도(축척 없음) : 따로 붙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행자우선도로 위치도

□ 보행자우선도로 위치도

1) 남부순환로95길



2) 남부순환로97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72호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44호(2022. 8. 18.)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장

1.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	위치	구역면적(㎡)	추진단계	비고 (최초결정고시)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용산구 갈월동 92 일대	17,658.8	조합설립인가 (인가일 : 2023. 4. 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44호 (2022. 8. 18.)

○ 해제(일몰)기한 연장 : 2028. 4. 13. 까지

2.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02-2133-4928)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0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73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3호(2016.9.8.)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동의문1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호(2017.1.12.)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39(호2017.4.20.)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5호(2017.8.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86호(2018.6.14.)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0호(2018.7.19.)호로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29호(2018.9.6.)호로 1단계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26호(2020.4.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6호(2020.7.23.)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92호(2022.12.15) 동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동의문1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2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712호(2026. 3. 5.)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열람공고한 “동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문화시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70 외 1필지
- 소공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70-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 사업
- 명칭 : 동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다. 사업규모

문화시설			소공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대지면적	9,104.9㎡		대지면적	726.3㎡
건축면적	기정	4,080.46㎡		

문화시설			소공원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변경	2,307.45㎡		
연면적	기정	9,088.46㎡		
	변경	5,725.54㎡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기정	7,266.79		
	변경	4,347.28㎡		
건폐율	기정	44.82%		
	변경	25.34%		
용적률	기정	79.81%		
	변경	47.75%		
규 모	기정	41개동(지하2층, 지상4층 / 기존5층 2개동포함)		
	변경	17개동(지하2층, 지상4층 / 기존5층 2개동포함)		
용 도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		
최고높이		25.7m		

－ 사유 : 경희궁 일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맞춰 문화시설 내 건물 면적을 축소하고 조경공간을 확보하여 역사·문화·녹지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

연번	구분	명칭	위치	용도	구조	건축규모				비고
						층수	높이(m)	건축면적(㎡)	연면적(㎡)	
1	기정	A2	170 외 1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목구조	지상1층	4.39	52.56	52.56	
2	기정	A3	170 외 1필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일반목구조	지상1층	4.52	41.37	41.37	
3	기정	A4	170 외 1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목구조	지상1층	4.51	52.88	52.88	
4	기정	A5	170 외 1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목구조	지상1층	4.58	45.81	45.81	
5	기정	B1	170 외 1필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일반목구조	지상1층	4.68	31.12	31.12	
6	기정	B2	170 외 1필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일반목구조	지상1층	4.91	34.84	34.84	
7	기정	B3	170 외 1필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일반목구조	지상1층	4.88	30.37	30.37	
8	기정	B6	170 외 1필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일반목구조	지상1층	4.30	40.09	40.09	

연번	구분	명칭	위치	용도	구조	건축규모				비고
						층수	높이(m)	건축면적(㎡)	연면적(㎡)	
9	기정	B7	170 외 1필지	제2중권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1층	4.42	39.46	39.46	
10	기정	B8	170 외 1필지	제2중권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1층	4.56	50.81	50.81	
11	기정	B9	170 외 1필지	제2중권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1층	4.45	132.51	132.51	
12	기정	C	170 외 1필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제2중권생활시설(사무소)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5층	17.36	142.54	800.86	
13	기정	D	170 외 1필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제2중권생활시설(서점)	조적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5층	25.70	839.83	2,169.09	
14	기정	E1E2	170 외 1필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조적조	지하1층/ 지상2층	6.62	221.43	448.40	
15	기정	E3	170 외 1필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조적조	지하1층/ 지상2층	6.55	99.25	187.97	
16	기정	E4	170 외 1필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조적조	지상2층	6.30	72.35	85.98	
	변경	(삭제)								
17	기정	E5	170 외 1필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조적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2층/ 지상3층	12.35	180.73	601.78	
	변경	(삭제)								
18	기정	E6	170 외 1필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철골구조	지상1층	4.5	148.11	148.11	
19	기정	F1	170 외 1필지	제2중권생활시설(일반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2층	7.21	68.90	99.02	
	변경	(삭제)								
20	기정	F2	170 외 1필지	제2중권생활시설(사무소)	일반목구조	지상2층	7.61	83.66	130.19	
	변경	(삭제)								
21	기정	F3	170 외 1필지	제2중권생활시설(휴게음식점)	조적조	지상2층	6.96	56.70	93.83	
	변경	(삭제)								
22	기정	G1	170 외 1필지	제2중권생활시설(일반음식점)	조적조	지상2층	7.01	124.25	221.50	
	변경	(삭제)								
23	기정	G2	170 외 1필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조적조	지하1층/ 지상2층	6.47	90.99	221.52	
	변경	(삭제)								
24	기정	G3	170 외 1필지	제2중권생활시설(일반음식점)	조적조	지상2층	6.55	78.32	145.69	
	변경	(삭제)								
25	기정	G4	170 외 1필지	제2중권생활시설(휴게음식점)	조적조 철골구조	지상3층	11.66	59.91	172.10	
	변경	(삭제)								
26	기정	G5	170 외 1필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1층	6.75	112.03	159.69	
	변경	(삭제)								

연번	구분	명칭	위치	용도	구조	건축규모				비고
						층수	높이(m)	건축면적(㎡)	연면적(㎡)	
27	기정	G6	170 외 1필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목조	지상1층	3.67	69.95	69.95	
	변경	(삭제)								
28	기정	G7	170 외 1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조적조	지상1층	4.96	79.88	79.88	
	변경	(삭제)								
29	기정	H1	170 외 1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철골조	지상3층	10.90	37.69	113.07	
	변경	(삭제)								
30	기정	H2	170 외 1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2층	10.72	51.44	90.83	
	변경	(삭제)								
31	기정	H3	170 외 1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지상2층	11.03	46.59	84.94	
	변경	(삭제)								
32	기정	H4	170 외 1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4층	13.10	72.40	224.17	
	변경	(삭제)								
33	기정	I1	170 외 1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2층	6.70	74.96	95.88	
	변경	(삭제)								
34	기정	I2	170 외 1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조적조	지하1층/ 지상3층	9.80	60.50	181.14	
	변경	(삭제)								
35	기정	I3	170 외 1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조적조	지상1층	5.50	62.29	62.29	
	변경	(삭제)								
36	기정	I4	170 외 1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2층	6.55	54.15	91.10	
	변경	(삭제)								
37	기정	I5	170 외 1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일반목구조	지상1층	4.40	35.68	35.68	
	변경	(삭제)								
38	기정	I6	170 외 1필지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2층	8.50	86.03	122.67	
	변경	(삭제)								
39	기정	I7	170 외 1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2층	7.10	54.90	80.10	
	변경	(삭제)								
40	기정	I8	170 외 1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일반목구조	지상2층	7.31	58.71	99.92	
	변경	(삭제)								
41	기정	K	170 외 1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서점)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지하2층/ 지상3층	11.50	304.47	1,474.2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9.12.31.까지(2단계 사업 포함)

- 1단계사업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29호(2018. 9. 6.)에 따른 1단계 구역
- 2단계사업 : 1단계 사업 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2호(2024. 1. 11.)로 완료된 부분
제외한 K건물

바.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02-2133-2533, 한국프레스센터 4층)

아. 사용할 토지 및 건물조서 : [붙임] 참조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02-2133-2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대장	문화시설	공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총 계					9,831.2	9,104.9	726.3						
1	신문로2가	170	대	6,141	6,14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도시철 도공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 설정		
2	신문로2가	170-3	대	2,963.9	2,963.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도시철 도공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 설정		
3	신문로2가	170-1	대	726.3		726.3	서울특별시종로구		서울특별시 시도시철 도공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지상권 설정		

○ 건물조서

연번	지번	건물형태	건물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170외1	일반목구조	1F	52.56	52.56	서울특별시					
2	170외1	일반목구조	1F	41.37	41.37	서울특별시					
3	170외1	일반목구조	1F	52.88	52.88	서울특별시					
4	170외1	일반목구조	1F	45.81	45.81	서울특별시					
5	170외1	일반목구조	1F	31.12	31.12	서울특별시					
6	170외1	일반목구조	1F	34.84	34.84	서울특별시					
7	170외1	일반목구조	1F	30.37	30.37	서울특별시					
8	170외1	일반목구조	1F	40.09	40.09	서울특별시					
9	170외1	일반목구조	1F	39.46	39.46	서울특별시					
10	170외1	일반목구조	1F	50.81	50.81	서울특별시					
11	170외1	일반목구조	1F	132.51	132.51	서울특별시					
12	170외1	철근콘크리트구조	B1/5F	142.54	800.86	서울특별시					
13	170외1	조적조 철근콘크리트구조	B1/5F	839.83	2,169.09	서울특별시					
14	170외1	조적조	B1/2F	221.43	448.40	서울특별시					
15	170외1	조적조	B1/2F	99.25	187.97	서울특별시					
16	170외1	조적조	2F	72.35	85.98	서울특별시					삭제
17	170외1	조적조 철근콘크리트구조	B2/3F	180.73	601.78	서울특별시					삭제
18	170외1	철골구조	1F	148.11	148.11	서울특별시					
19	170외1	일반목구조	2F	68.90	99.02	서울특별시					삭제
20	170외1	일반목구조	2F	83.66	130.19	서울특별시					삭제
21	170외1	조적조	2F	56.70	93.83	서울특별시					삭제

연번	지 번	건물형태	건물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	170외1	조적조	2F	124.25	221.50	서울특별시					삭제
23	170외1	조적조	B1/2F	90.99	221.52	서울특별시					삭제
24	170외1	조적조	2F	78.32	145.69	서울특별시					삭제
25	170외1	조적조 철골구조	3F	59.91	172.10	서울특별시					삭제
26	170외1	철근콘크리트구조	B1/1F	112.03	159.69	서울특별시					삭제
27	170외1	목조	1F	69.95	69.95	서울특별시					삭제
28	170외1	조적조	1F	79.88	79.88	서울특별시					삭제
29	170외1	철골조	3F	37.69	113.07	서울특별시					삭제
30	170외1	철근콘크리트구조	2F	51.44	90.83	서울특별시					삭제
31	170외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2F	46.59	84.94	서울특별시					삭제
32	170외1	철근콘크리트구조	4F	72.40	224.17	서울특별시					삭제
33	170외1	일반목구조	2F	74.96	95.88	서울특별시					삭제
34	170외1	조적조	B1/3F	60.50	181.14	서울특별시					삭제
35	170외1	조적조	1F	62.29	62.29	서울특별시					삭제
36	170외1	일반목구조	2F	54.15	91.10	서울특별시					삭제
37	170외1	일반목구조	1F	35.68	35.68	서울특별시					삭제
38	170외1	철근콘크리트구조	1F	86.03	122.67	서울특별시					삭제
39	170외1	일반목구조	2F	54.90	80.10	서울특별시					삭제
40	170외1	일반목구조	2F	58.71	99.92	서울특별시					삭제
41	170외1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B2/3F	304.47	1,474.20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74호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재위탁 고시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재위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수탁기관

- 가. 기관명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나. 대표자 : 황상하
- 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2. 위탁업무

- 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무
- 나.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사무
- 다.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운영
- 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 마.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 제5호에 따른 청년주거상담, 교육 및 정보 제공
- 바.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탁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75호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이하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 2. 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

I.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	-	증) 68,735.5	68,735.5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68,735.5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13,668.5	19.9	
	도 로	6,746.9	9.8	
	주차장	1,013.5	1.5	공간적 범위 결정
	공 원	5,757.0	8.4	
	수도공급설비	151.1	0.2	쌍문2가압장
획 지	소 계	55,067.0	80.1	
	획지①	54,585.4	79.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②	331.0	0.5	단독주택(함석헌 기념관)
	획지③	150.6	0.2	종교시설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8,735.5	-	68,735.5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864.1	-	4,864.1	7.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8,006.0	감) 44,371.7	3,634.3	5.3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14.9	감) 8,452.7	2,062.2	3.0	
	제3종일반주거지역	5,350.5	증) 52,824.4	58,174.9	84.6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쌍문동 81번지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864.1	• 정비기반시설 계획에 따른 용도 지역 재배치
-	쌍문동 81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44,371.7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	쌍문동 81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8,452.7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나. 용도지구 계획 : 해당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 분				금 액(천원)
수 입	합 계			1,227,741,354
	분양주택	조합원	902세대	553,875,000
		일 반	692세대	544,820,000

구 분				금 액(천원)
	임대주택	재개발의무	273세대	77,629,967
		국민주택규모 주택	52세대	7,761,073
	근린생활시설			44,722,000
	매출부가세 불공제분			-1,066,687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계속)

구 분		금 액(천원)
지 출	합 계	801,562,576
	공사비	597,327,088
	보상비	49,950,619
	관리비	6,931,664
	설계비	11,379,000
	감리비	14,217,007
	부대경비	82,949,594
	예비비	38,807,604
종전자산 추산액		418,838,716
추정비례율		101.75%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공사비				
			-10%	-5%	0%	5%	10%
변동률		평균단가 (천원/3.3㎡)	7,200	7,600	8,000	8,400	8,800
분양가 (전용 84㎡ 기준)	10%	31,900	142.13%	135.06%	127.98%	120.91%	113.84%
	5%	30,450	129.01%	121.94%	114.87%	107.80%	100.73%
	0% (기준)	29,000	115.90%	108.82%	101.75%	94.68%	87.61%
	-5%	27,550	102.78%	95.71%	88.64%	81.56%	74.49%
	-10%	26,100	89.66%	82.59%	75.52%	68.45%	61.38%

5.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정	대로	3	37	25~29	보조 간선도로	2,430 (335)	수유동 (대1-8)	창동 (광17호)	일반 도로	-	건고738 ('63.12.24)	노해로
변 경	대로	3	37	25~32	보조 간선도로	2,430 (335)	수유동 (대1-8)	창동 (광17호)	일반 도로	-	건고738 ('63.12.24)	
기 정	소로	3	328	6	국지 도로	138	쌍문동 137-52	쌍문동 137-75	일반 도로	-	건공제9호 ('67.1.21)	노해로55길
변 경	소로	2	100	9	국지 도로	135	쌍문동 137-52	쌍문동 137-75	일반 도로	-	건공제9호 ('67.1.21)	
신 설	소로	2	101	9	국지 도로	238	쌍문동 81-56	쌍문동 81-99	일반 도로	-	-	도봉로123길
신 설	소로	2	102	8	국지 도로	85	쌍문동 80-56	쌍문동 81-56	일반 도로	-	-	해등로17길
기 정	소로	3	318	4	국지 도로	198	쌍문동 137-125	쌍문동 137-2	일반 도로	-	건공제9호 ('67.1.21)	노해로49길
변 경	소로	3	318	4	국지 도로	52	쌍문동 137-125	쌍문동 137-101	일반 도로	-	-	
신 설	소로	3	530	6	국지 도로	218	쌍문동 81-99	쌍문동 137-101	일반 도로	-	-	
기 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52	쌍문동 80-15	쌍문동 80-49	일반 도로	-	-	도봉로121길
변 경	소로	3	531	6	국지 도로	53	쌍문동 80-15	쌍문동 80-49	일반 도로	-	-	
신 설	소로	3	532	6	국지 도로	36	쌍문동 85-5	쌍문동 81-316	일반 도로	-	-	노해로59길
폐지	소로	3	329	4	국지 도로	148	쌍문동 137-28	쌍문동 137-85	일반 도로	-	건공제9호 ('67.1.21)	
폐지	소로	3	330	4	국지 도로	138	쌍문동 137-13	쌍문동 137-20	일반 도로	-	건공제9호 ('67.1.21)	
폐지	소로	3	331	6	국지 도로	104	쌍문동 81-119	쌍문동 65-36	일반 도로	-	건공제9호 ('67.1.21)	

※ ()는 대상지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37	대로 3-37	• 일부구간 완화차로 확보 (폭원 = 25~29m → 25~32m)	• 노해로변 완화차로 설치를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 확대
소로 3-328	소로 2-100	• 도로 연장 및 폭원 확대 (연장 = 138m → 135m 폭원 = 25~28m → 25~31m)	• 원활한 차량 소통 및 학교 통학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폭원 확대 및 노선 정리를 위해 연장
-	소로 2-101	• 도로 신설 (연장 = 238m, 폭원 = 9m)	•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기존 현황도로를 확폭하고 도시계획시설 로 결정(현황 8m → 9m)
-	소로 2-102	• 도로 신설 (연장 = 85m, 폭원 = 8m)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기존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 정
소로 3-318	소로 3-318	• 도로 연장 축소 (연장 = 198m → 52m)	• 정비구역 내 도로 정비 및 신설을 위해 구역에 일부 편입된 구간의 연장 축소
	소로 3-530	• 도로 신설 (연장 = 218m, 폭원 = 6m)	• 이면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도로 신설
소로 3-	소로 3-531	• 도로 연장 (연장 = 52m → 53m)	•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기존 도로 연장 확대
-	소로 3-532	• 도로 신설 (연장 = 36m, 폭원 = 6m)	• 구역 외 종교시설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도로 신설
소로 3-329	-	• 도로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해 효용성이 없는 도로 폐지
소로 3-330	-	• 도로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해 효용성이 없는 도로 폐지
소로 3-331	-	• 도로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해 효용성이 없는 도로 폐지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	주차장 (노외)	쌍문동 85-7번지	422.8	증) 590.7	1,013.5	도봉구고시 제1998-2호 ('98.01.15.)	비도시계획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간적범위 결정
폐 지	-	주차장 (노외)	쌍문동 81-102번지	400.0	감) 400.0	-	도봉구고시 제1997-76호 ('97.1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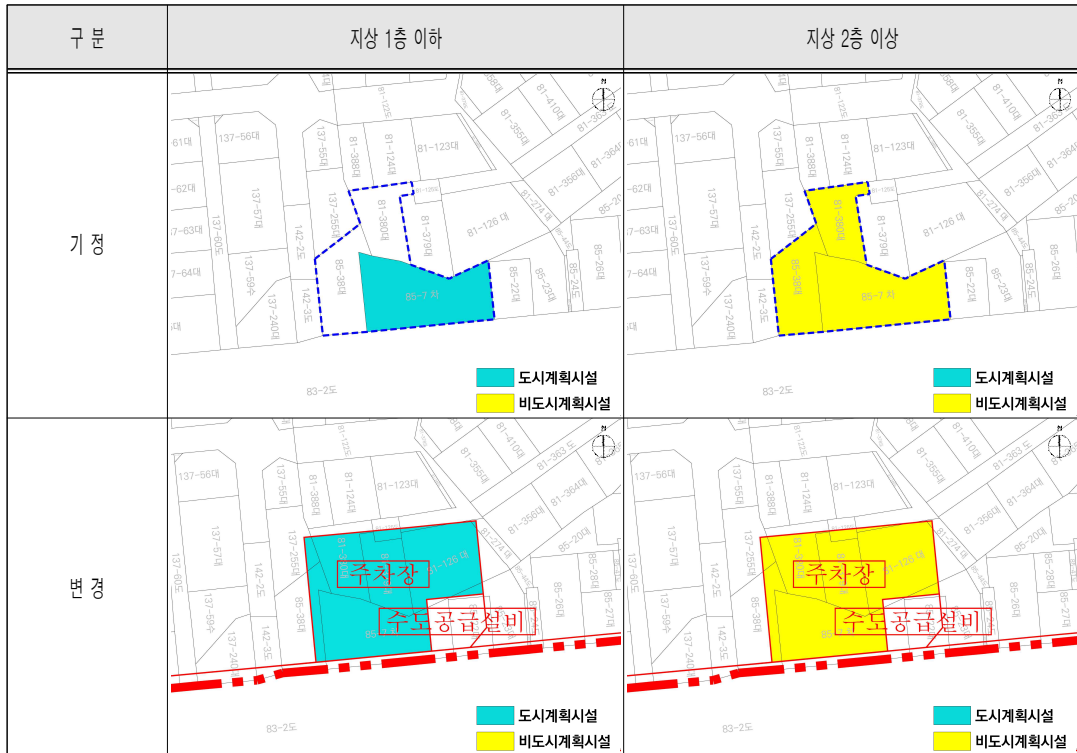
1)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간적범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	주차장 (노외)	쌍문동 85-7번지	지상 1층 이하	422.8	증) 590.7	1,013.5	도봉구고시 제2020-160호 ('20.11.12.)	비도시계획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간적범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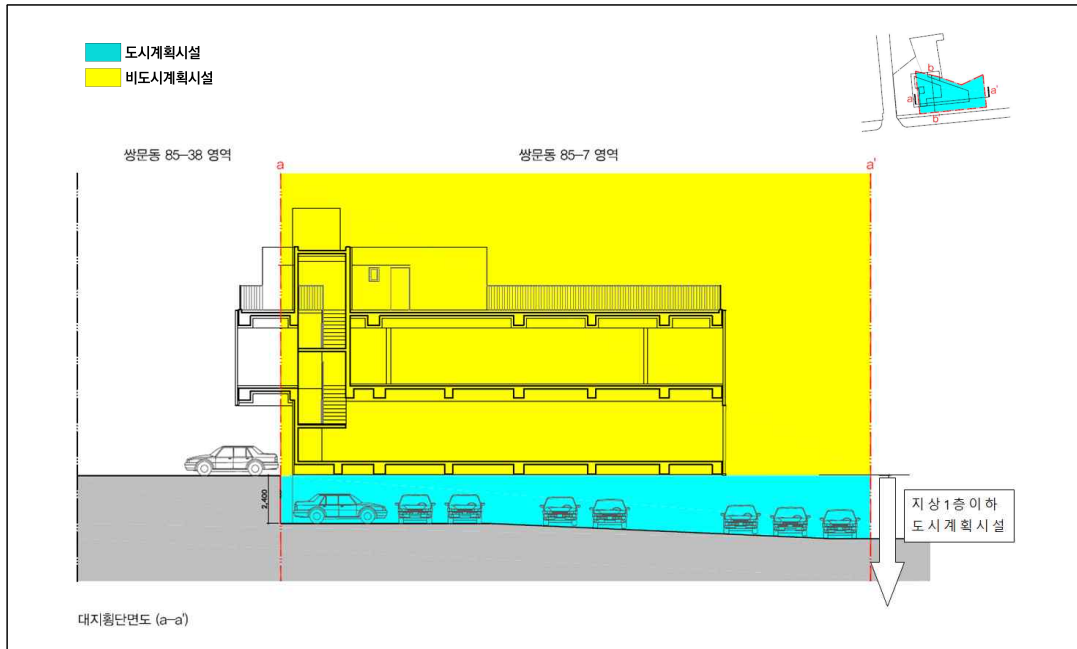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주차장 (노외)	• 주차장 폐지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주차장 폐지
-	주차장 (노외)	• 주차장 면적 변경 및 공간적범위 변경 (422.8㎡ → 1,013.5㎡)	• 쌍문동 일대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주차장 면적 확대 및 필 지 경계를 정형화하고 기 결정된 공간적 범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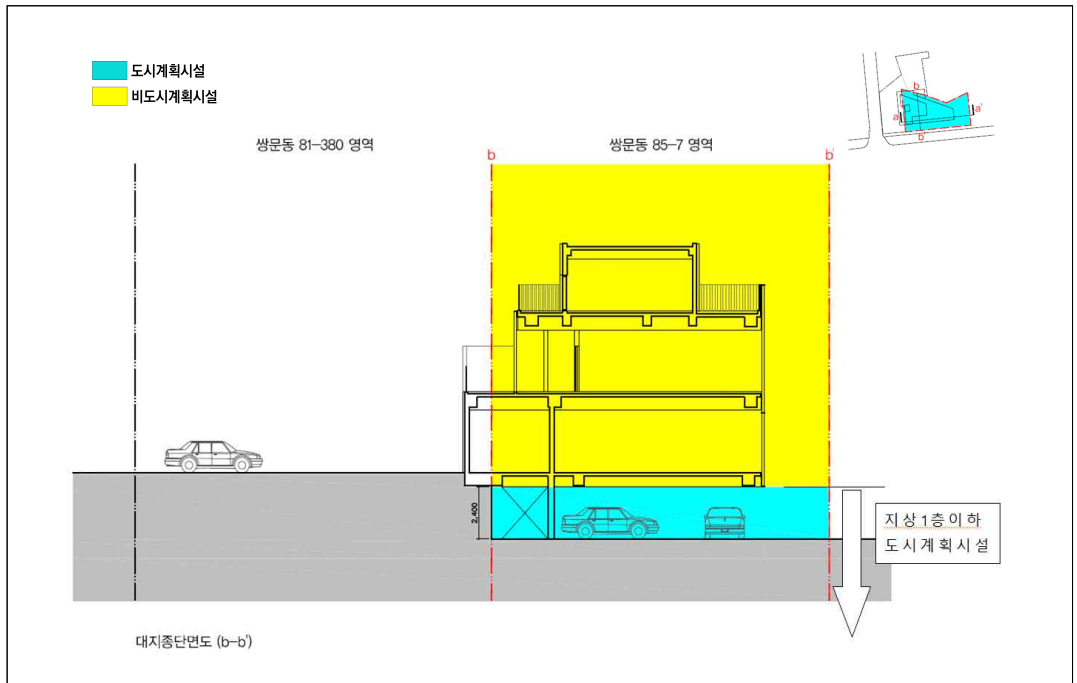
[공간적 범위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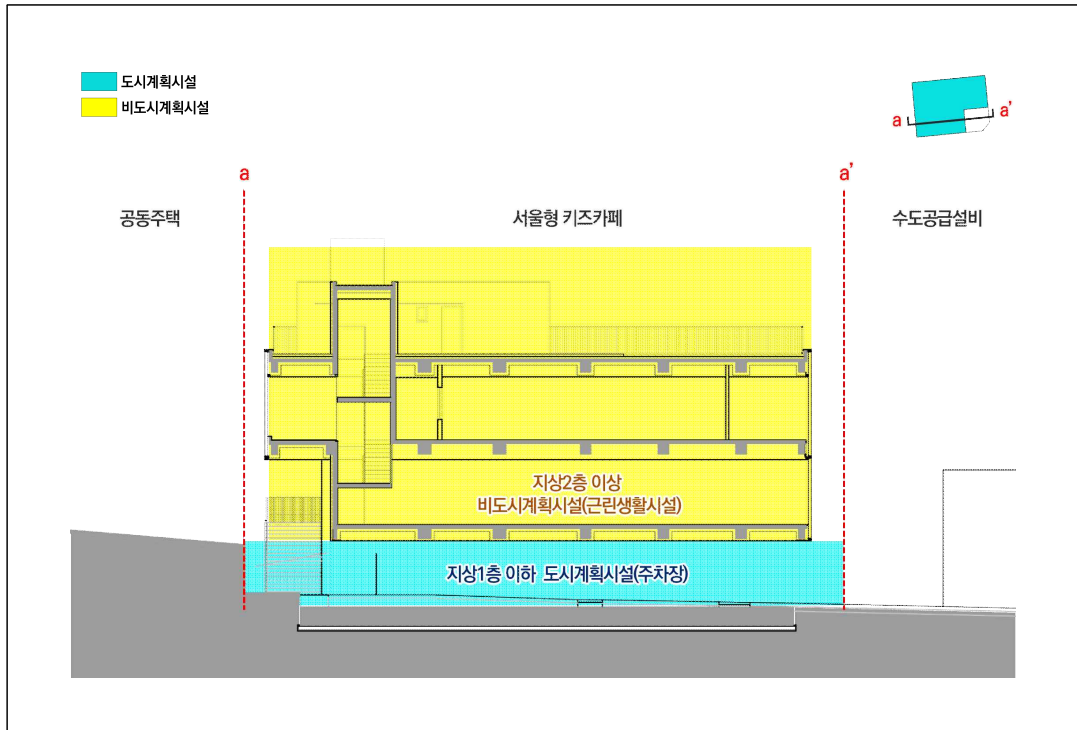
[공간적 범위 결정(기정)도 -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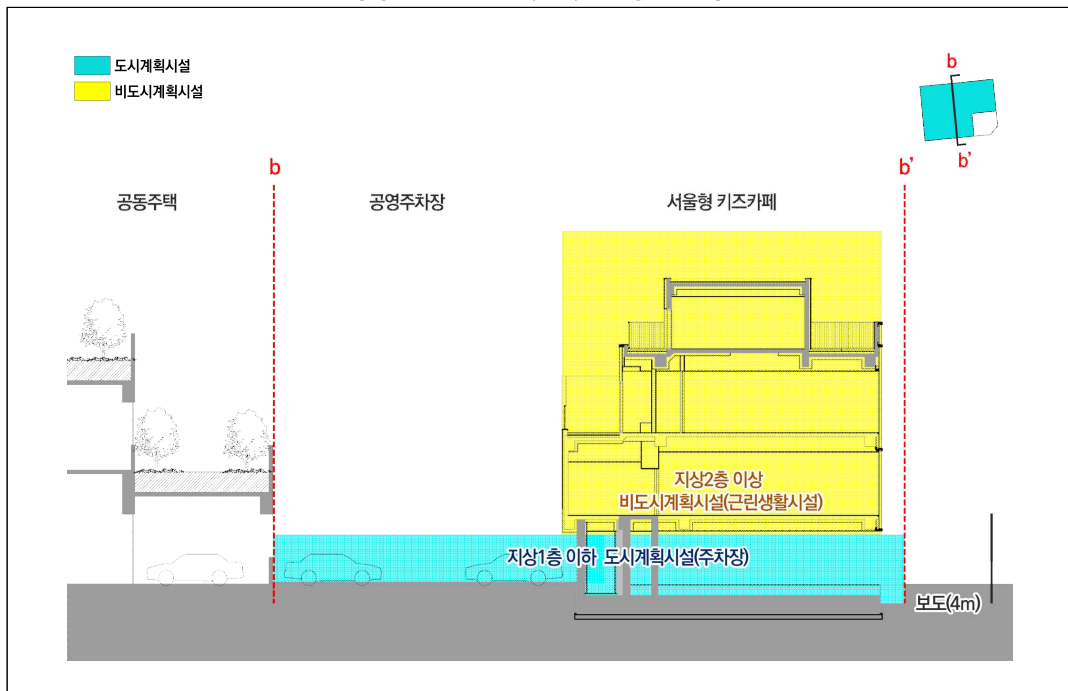
[공간적 범위 결정(기정)도 - 횡단면도]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도 - 종단면도]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도 - 횡단면도]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	공 원	소공원	쌍문동 80-37번지 일대	-	증) 3,241.3	3,241.3	-	
변 경	-	쌍문 근린공원	근린 공원	쌍문동 산240-5 일대	264,718.4	증) 162.9	264,881.3 (162.9)	건고제465호 ('71.08.07.)	
신 설	-	공 원	문화 공원	쌍문동 81-81번지 일대	-	증) 2,352.8	2,352.8	-	

※ ()는 대상지 내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공 원	• 소공원 신설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간선가로변 열린공간 확보 및 지역 주민의 건강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공원 신설
-	쌍문근린공원	• 공원 면적 확대 (264,718.4㎡ → 264,881.3㎡)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경계 정형화를 위해 공원을 계획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쌍문근린공원으로 편입
-	공 원	• 문화공원 신설	• 함석헌 기념관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문화공원 신설

라.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	수 도	쌍문동 137-59번지	151.1	감) 151.1	-	서고시 제251호 ('81.07.04.)	
신 설	-	수도공급설비	쌍문동 85-22번지 일대	-	증) 151.1	151.1	-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수 도	• 수도 폐지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시설 폐지
-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신설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수도공급설비 이전 설치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법 정		계획면적(㎡)	비 고
	소 계		1,000세대 이상 $500\text{㎡} + (\text{세대수}) \times 2 \times 1.25$	5,422.5	7,755.0
신 설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725.0	750.0
		어린이집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725.0	740.0
		어린이놀이터	$500\text{㎡} + (\text{세대수} \times 0.7\text{㎡})$ 이상	-	1,950.0
		작은도서관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98.0	300.0
		주민공동시설	-	-	1,600.0
		개방형커뮤니티	-	-	500.0
		에듀케어커뮤니티	-	-	700.0
		주민운동시설	-	-	950.0
	부대 시설	경비실	-	-	115.0
		관리사무소	$10 + (\text{세대수} - 50) \times 0.05\text{㎡}$	130.45	150.0
	기계·전기실		-	-	1,150.0
	교정서비스시설		-	-	625.9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계	존 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 설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68,735.5	획지①	54,585.4	쌍문동 81번지 일대	272	-	-	272	-	공동주택 및 무대복리시설
			획지②	331.0	쌍문동 81-78번지	1	1	-	-	-	단독주택 (함석헌 기념관)
			획지③	150.6	쌍문동 85-35번지	-	-	-	-	-	종교시설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내 존치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기존 건축물 함께에서 제외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정비 계획	법적 상한	
신설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68,735.5	획지①	54,585.4	쌍문동 8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81.4 이하	300 이하	115m 이하/ 39층 이하
			획지②	331.0	쌍문동 81-78번지	단독주택	관계 법령에 의함			
			획지③	150.6	쌍문동 85-35번지	종교시설	관계 법령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계획 : 1,919세대(분양 1,594세대, 임대 325세대) • 전제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 칭	면 적(㎡)	명 칭	면 적(㎡)				정비 계획	법적 상한	
					건립규모		세대수(세대)		비 율(%)	
					합 계		1,919		100.0	
	60㎡ 이하		40㎡ 이하		302		15.7			
			40 ~ 50㎡		288		15.0			
			50 ~ 60㎡		845		44.0			
	60 ~ 85㎡				444		23.1			
	85㎡ 초과				40		2.2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97.9%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40% 이하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40㎡ 이하 ※ 전체 세대수·연면적,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및 비율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세대수, 연면적 및 임대주택 제외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지정(보도형 전면공지로 계획) - 노해로55길 및 도봉로123길변(일부) : 대지경계선에서 5m 이격 - 그 외 도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3m 이격 - 공공보행통로변 : 공공보행통로로부터 2m 이격						
심의원화 사항				• 용도지역 사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소형주택 공급에 따른 기준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완화(공공보행통로 등 인센티브 및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1개소 및 보차혼용통로 2개소 • 공개공지 위치 지정 : 1개소 • 차량출입구 : 2개소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공개공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 하에 공개공지 형상은 조정 가능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	대지면적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68,735.5	54,585.4	13,668.5	-	2,829.63	3,372.12
공공 시설 제공 면적	소 계	• 순부담률 : 10.86%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13,668.5㎡ - 2,829.63㎡ - 3,372.12㎡ = 7,466.75㎡					
	토 지	• 13,668.5㎡ - 도로 : 6,746.9㎡, 주차장 : 1,013.5㎡, 공원 : 5,757.0㎡, 수도공급설비 : 151.1㎡					
여 가 지 면	기 준	• 기준용적률 : ① + ② = 210.6% 이하 ①용도지역 혼재지역 가중평균 190.6% = {(제2종(7층) 44,371.7㎡×190%) + (제2종 8,452.7㎡×190%) + (제3종 1,761.0㎡ ×210%) = 190.6% ②소형(분양)주택 공급 20% - 167세대 공급 : 40㎡ 이하(82세대), 40~50㎡(17세대), 50~60㎡(68세대)					
	허 용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6% + (① × ②) = 250.6% 이하 ①사업성 보정계수 2.0 ②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20% - 공공보행통로(6.8%), 열린단지(5%), BF인증(3%), 고령서비스시설(2.2%), 층간소음 해소(3%)					
	정비계획 (상 한)	• 상한용적률 : 281.4% 이하 = (기준)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상한 인센티브 산정 시 (기준)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을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값 = 계획 허용용적률 250.6% + (상한용적률 산정용 허용용적률 210.6% × 1.3× 가중치 0.8229 × α토지 0.1368)					

구 분		산 정 내 용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공공시설 제공부지 허용용적률(가중평균) 173.3%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210.6% = 0.8229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 부지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면적 7,466.75㎡ ÷ 부지 면적 54,585.4㎡ = 0.1368
	법적상한	• 300% 이하(건축계획 용적률 299.83%)	

9.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임대주택 건설계획

계획 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40% 이하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40㎡ 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산출 근거	• 전체 세대수 : 1,815세대(1,919세대 - 104세대(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 273세대 • 전체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15% 이상 ⇒ 1,815세대 × 15% = 273세대 ≤ 273세대 계획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40% 이하 40㎡ 이하 규모의 주택 건설 - 273세대 × 30% = 82세대 / 273세대 × 40% = 109세대 ⇒ 82세대 ≤ 109세대 계획 ≤ 109세대

임대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 고
	39.95㎡	53.15㎡	109	5,793.35㎡	획지①
	46.50㎡	63.00㎡	76	4,788.00㎡	
	59.94㎡	81.24㎡	88	7,149.12㎡	
	합 계	-	273	17,730.47㎡	

나.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계획 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 299.83%(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정비계획용적률		• 281.4%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 $299.83\% - 281.4\% = 18.43\%$
	증가용적률의 50%	• $18.43\% \times 50\% = 9.215\%$ • $9.215\% \times 54,585.4\text{㎡}(\text{획지①}) = 5,030.04\text{㎡}$
	의무연면적	• 5,030.04㎡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 고
	59.94㎡	81.24㎡	26	2,122.24㎡	확지①
	84.95㎡	113.95㎡	26	2,962.70㎡	
	합 계	-	52	5,074.94㎡	

다. 소형(분양)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계획 기준	소형(분양)주택 규모를 40㎡ 이하, 40~50㎡ 이하, 50~60㎡ 이하로 계획 시 주택규모별 기준용적률 완화량 차등 적용				
완화 기준	기준용적률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만큼 각 전용면적 주택으로 건설				
소형(분양)주택 확보계획	구 분	최대기준	세대수	공급면적	연면적
	40㎡ 이하	최대 10%	82	53.15㎡	4,358.30㎡
	40~50㎡	최대 15%	17	63.00㎡	1,071.00㎡
	50~60㎡	최대 10%	68	81.24㎡	5,524.32㎡
	합 계	최대 20%	167	-	10,953.62㎡

10.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사업지 진출입구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2개소) - 노해로 진출입구 - 도봉로123길 진출입구(비신호)
	㉔	• 사업지 인접도로 확폭에 따른 차로운영방안제시
	㉕	• 정익여중고입구사거리 북측 접근로 차로 조정을 통한 우회전차로 설치
진출입 동 선	㉖ ㉗ ㉘	• 노해로 완화차로 설치 - 가·감소차로 설치 : B=3.5m, L=132.0m, 테이퍼 포함 - 감속차로 설치 : B=3.5m, L=42.0m, 테이퍼 포함 - 가속차로 설치 : B=3.0m, L=99.0m, 테이퍼 포함
	-	• 진출입구 및 사업지 인접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6.0~14.0m)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	• 사업지 주변도로 보도 재정비 - 신설(턱없는 보도) : 노해로55길 편측(B=2.0m), 도봉로123길 편측(B=2.0~3.5m) - 재정비 : 노해로 편측(B=3.0~4.0m) • 한신초교 후문과 도봉로간 보행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설치
주차시설	-	• 법정주차 및 주차수요대수를 고려한 계획주차대수 확보
교통안전 및 기타	-	•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 사업지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

11.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 보전	자연환경	• 대상지의 지형 및 주변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	-
	생활환경	•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주요 예상지점에 대한 환경영향분석,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 후 사업시행	-
	사회·경제 환경	•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계획을 수립 및 환경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최소화	-
재난 방지	화재	•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수해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 주변지역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 동선체계 구축 단지 내 도로의 노상주차처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범죄예방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범죄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시민 홍보	-

12. 환경성 검토결과

검 토 항 목	목 표 기 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 고
비오톱 및 등·식물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등·식물상 보호	- 비오톱유형평가 : 5등급 - 개별비오톱 : 평가제외 - 생태·자연도 3등급 권역 - 사업대상지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등식물은 분포치 않음	-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 향상 -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	-
녹지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도봉구 내 녹지지역 52.4% - 도봉구 내 개소 기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대부분의 비중 차지	- 조경녹지를 법정면적 이상 확보토록 계획하고 대상지 내에 주변지역과 연계한 녹지계획 수립 - 대상지 내 녹지공간 확보 및 식재 계획을 통한 주변과의 녹지 및 생태 단절 예방	-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공사시 건설장비 및 공사인부에 의한 토양오염 유발 가능성	공사시 현장내 폐유처리 등 금지 및 폐유보관시설 설치시 전량 전문 처리업체 위탁 처리 계획	-
지형·지질	지형·지질 영향 최소화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절성토 비율 미미	- 현 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
물순환	자연물순환 유지	- 물순환 현황도 : 불투수비율이 높은 주거지 및 상업지 - 불투수도양포장 현황도 : 90% 이상 - 공사·운영시 강우시 우수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	- 공사·운영시 적절한 저감대책 수립 - 사업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법적기준 이상 적용 - 저감 효율이 높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함	-

검 토 항 목	목 표 기 준	현행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 고
수질	수질오염 최소화	•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생태·경관보전 지역을 제외한 수질관련 지구·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 • 사업대상지 주변 북측으로 방학천, 남서측으로 우이천이 분포 •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구역 : 한강H	• 주변지역 및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하여 침투트렌치, 침투형 집수정 등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	-
바람·열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사업시행시 건설장비가동 등에 따른 대기오염우려	• 사업시행시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저감대책 수립	-
온실가스·에너지	에너지절약/효율극대화	•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및 에너지 배출량 산정	•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를 발생 예상됨	• 도봉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됨 • 운영시 인근 도로소음이 예상됨	• 가설방음판넬 및 가설헬스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13.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	현행 : 1,208세대 계획 : 1,919세대 증) 711세대	

14.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범 위	내 용	비 고
용도제한을 통한 교육환경 보호	정비구역 전체	• 불허 용도를 통한 유흥업소(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안마원) 등 교육환경을 위해 시설 입지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교육 환경 보호 구역	절대 보호 구역 • 설정기준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호텔, 게임제공업,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21조
		상대 보호 구역 • 설정기준 :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 호텔, 당구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 교육환경에 위해를 주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 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입지 가능	
통학권 보행안전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 지정기준 :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도로부속물 설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등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5.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	• 분명한 시야선 확보 • 적절한 조명의 사용 • 고립지역 개선 • 사각지대의 개선 •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 활동인자 증대 • 영역성 강화 •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 쾌적한 공간설계	
범죄예방 프로그램화	• 능동적 범죄예방체계 및 개방형 공간구조 형성, 통합형 관리시스템 구축 • 가로 및 공원, 구역별로 적합한 시설설치로 효율적인 방법 체계 구축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쌍문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	-	증) 68,735.5	68,735.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8,735.5	-	68,735.5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864.1	-	4,864.1	7.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8,006.0	감) 44,371.7	3,634.3	5.3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14.9	감) 8,452.7	2,062.2	3.0	
	제3종일반주거지역	5,350.5	증) 52,824.4	58,174.9	84.6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쌍문동 81번지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864.1	• 정비기반시설 계획에 따른 용도 지역 재배치
-	쌍문동 81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44,371.7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황
-	쌍문동 81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8,452.7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황

2) 용도지구 계획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정	대로	3	37	25~29	보조 간선도로	2,430 (335)	수유동 (대1-8)	창동 (광17호)	일반 도로	-	건고738 ('63.12.24)	노해로
변 경	대로	3	37	25~32	보조 간선도로	2,430 (335)	수유동 (대1-8)	창동 (광17호)	일반 도로	-	건고738 ('63.12.24)	
기 정	소로	3	328	6	국지 도로	138	쌍문동 137-52	쌍문동 137-75	일반 도로	-	건공제9호 ('67.1.21)	노해로55길
변 경	소로	2	100	9	국지 도로	135	쌍문동 137-52	쌍문동 137-75	일반 도로	-	건공제9호 ('67.1.21)	
신 설	소로	2	101	9	국지 도로	238	쌍문동 81-56	쌍문동 81-99	일반 도로	-	-	도봉로123길
신 설	소로	2	102	8	국지 도로	85	쌍문동 80-56	쌍문동 81-56	일반 도로	-	-	혜등로17길
기 정	소로	3	318	4	국지 도로	198	쌍문동 137-125	쌍문동 137-2	일반 도로	-	건공제9호 ('67.1.21)	노해로49길
변 경	소로	3	318	4	국지 도로	52	쌍문동 137-125	쌍문동 137-101	일반 도로	-	-	
신 설	소로	3	530	6	국지 도로	218	쌍문동 81-99	쌍문동 137-101	일반 도로	-	-	
기 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52	쌍문동 80-15	쌍문동 80-49	일반 도로	-	-	도봉로121길
변 경	소로	3	531	6	국지 도로	53	쌍문동 80-15	쌍문동 80-49	일반 도로	-	-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 설	소로	3	532	6	국지 도로	36	쌍문동 85-5	쌍문동 81-316	일반 도로	-	-	노해로59길
폐지	소로	3	329	4	국지 도로	148	쌍문동 137-28	쌍문동 137-85	일반 도로	-	건공제9호 ('67.1.21)	
폐지	소로	3	330	4	국지 도로	138	쌍문동 137-13	쌍문동 137-20	일반 도로	-	건공제9호 ('67.1.21)	
폐지	소로	3	331	6	국지 도로	104	쌍문동 81-119	쌍문동 65-36	일반 도로	-	건공제9호 ('67.1.21)	

※ ()는 대상지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37	대로 3-37	• 일부구간 완화차로 확보 (폭원 = 25~29m → 25~32m)	• 노해로변 완화차로 설치를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 확대
소로 3-328	소로 2-100	• 도로 연장 및 폭원 확대 (연장 = 138m → 135m 폭원 = 25~28m → 25~31m)	• 원활한 차량 소통 및 학교 통학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폭원 확대 및 노선 정리를 위해 연장
-	소로 2-101	• 도로 신설 (연장 = 238m, 폭원 = 9m)	•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 기존 현황도로를 확폭하고 도시계획시설 로 결정(현황 8m → 9m)
-	소로 2-102	• 도로 신설 (연장 = 85m, 폭원 = 8m)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기존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소로 3-318	소로 3-318	• 도로 연장 축소 (연장 = 198m → 52m)	• 정비구역 내 도로 정비 및 신설을 위해 구역에 일부 편입된 구간의 연 장 축소
	소로 3-530	• 도로 신설 (연장 = 218m, 폭원 = 6m)	• 이면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도로 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	소로 3-531	• 도로 연장 (연장 = 52m → 53m)	•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기존 도로 연장 확대
-	소로 3-532	• 도로 신설 (연장 = 36m, 폭원 = 6m)	• 구역 외 종교시설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도로 신설
소로 3-329	-	• 도로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해 효용성이 없는 도로 폐지
소로 3-330	-	• 도로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해 효용성이 없는 도로 폐지
소로 3-331	-	• 도로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해 효용성이 없는 도로 폐지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	주차장 (노외)	쌍문동 85-7번지	422.8	증) 590.7	1,013.5	도봉구고시 제1998-2호 ('98.01.15.)	비도시계획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간적범위 결정
폐 지	-	주차장 (노외)	쌍문동 81-102번지	400.0	감) 400.0	-	도봉구고시 제1997-76호 ('97.12.08.)	

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간적범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	주차장 (노외)	쌍문동 85-7번지	지상 1층 이하	422.8	증) 590.7	1,013.5	도봉구고시 제2020-160호 ('20.11.12.)	비도시계획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간적범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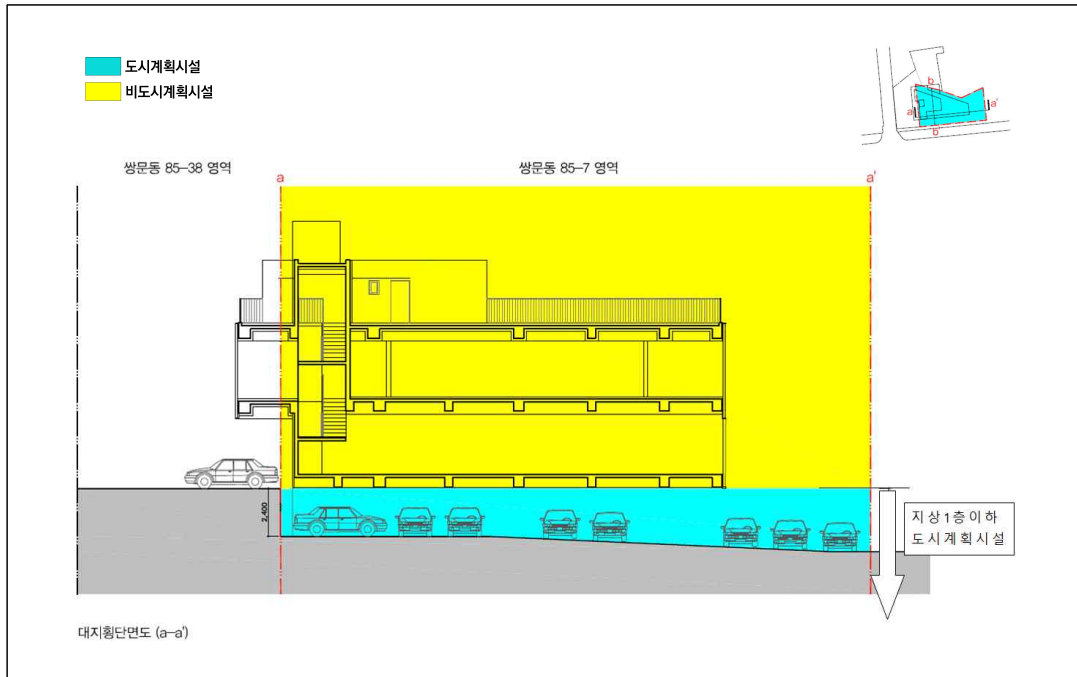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주차장 (노외)	• 주차장 폐지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주차장 폐지
-	주차장 (노외)	• 주차장 면적 변경 및 공간적범위 변경 (422.8㎡ → 1,013.5㎡)	• 뽕문동 일대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주차장 면적 확대 및 필지 경계를 정형화하고 기 결정된 공간적 범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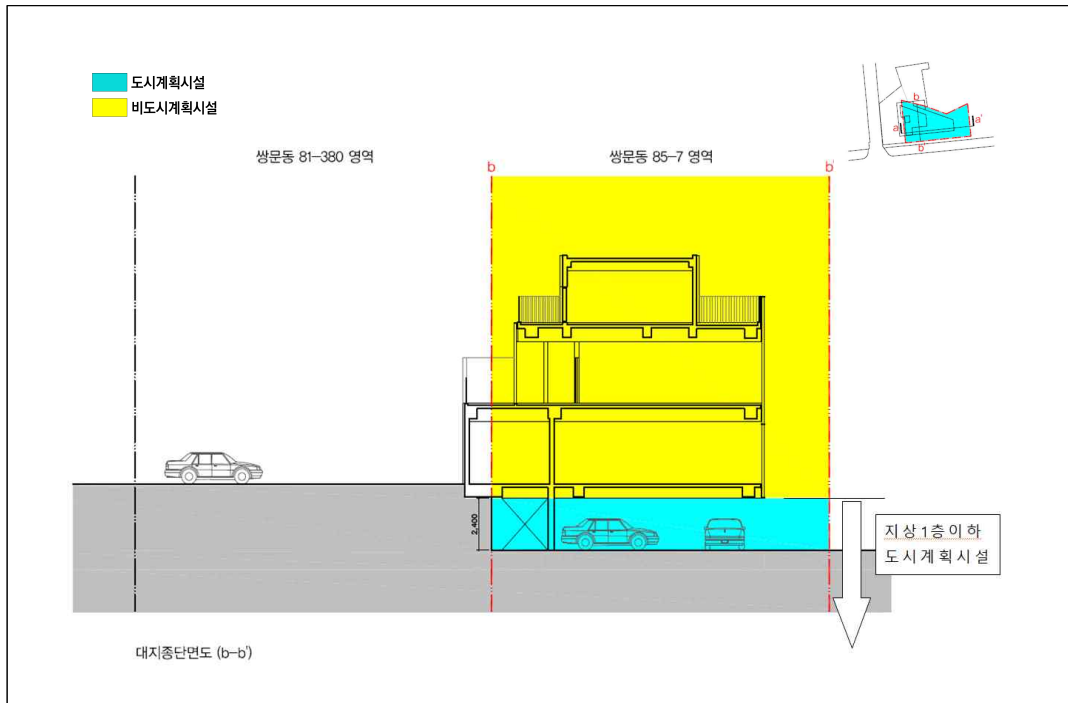
[공간적 범위 결정도]

구분	지상 1층 이하	지상 2층 이상
기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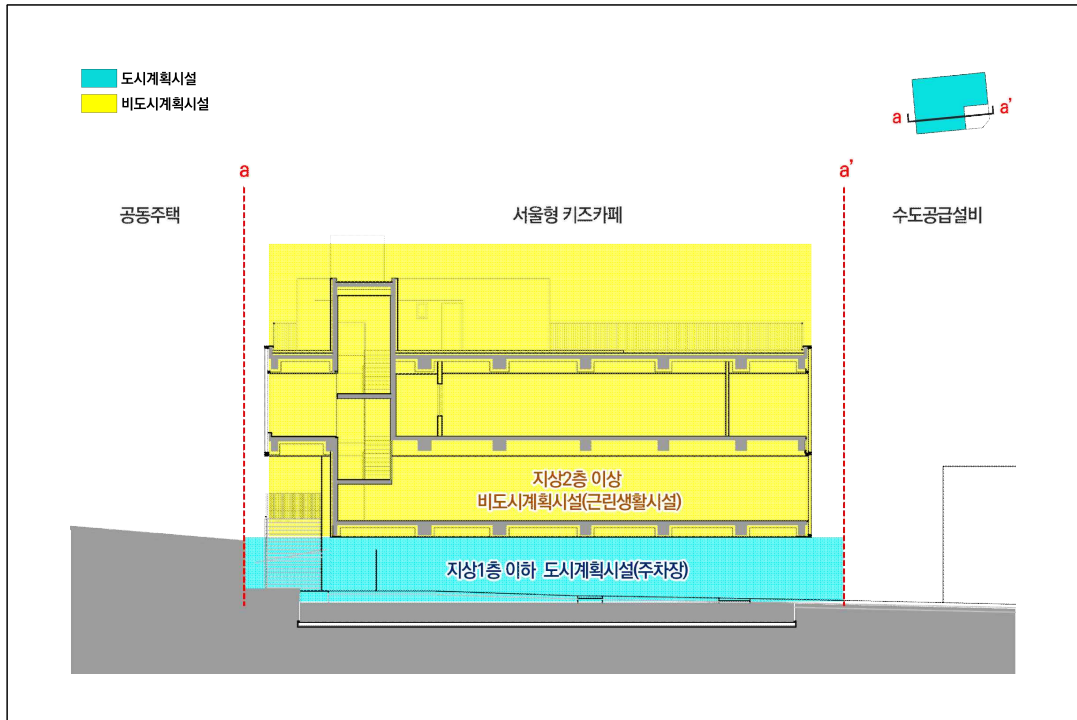
[공간적 범위 결정(기정)도 -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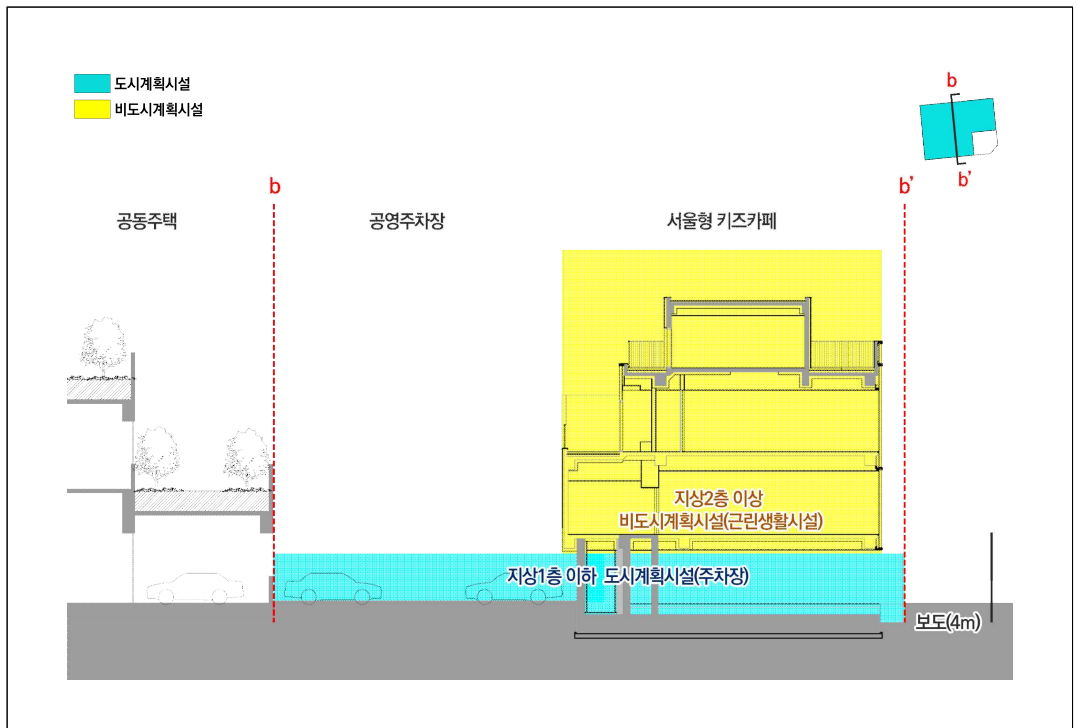
[공간적 범위 결정(기정)도 - 횡단면도]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도 - 종단면도]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도 - 횡단면도]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	공 원	소공원	쌍문동 80-37번지 일대	-	증) 3,241.3	3,241.3	-	
변 경	-	쌍문 근린공원	근린 공원	쌍문동 산240-5 일대	264,718.4	증) 162.9	264,881.3 (162.9)	건고제465호 ('71.08.07.)	
신 설	-	공 원	문화 공원	쌍문동 81-81번지 일대	-	증) 2,352.8	2,352.8	-	

※ ()는 대상지 내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공 원	• 소공원 신설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간선가로변 열린공간 확보 및 지역 주민의 건강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공원 신설
-	쌍문근린공원	• 공원 면적 확대 (264,718.4㎡ → 264,881.3㎡)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경계 정형화를 위해 공원을 계획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쌍문근린공원으로 편입
-	공 원	• 문화공원 신설	• 함석헌 기념관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문화공원 신설

4)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 지	-	수 도	쌍문동 137-59번지	151.1	감) 151.1	-	서고시 제251호 ('81.07.04.)	
신 설	-	수도공급설비	쌍문동 85-22번지 일대	-	증) 151.1	151.1	-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수 도	• 수도 폐지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시설 폐지
-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신설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수도공급설비 이전 설치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획지①	쌍문동 81번지 일대	-	증) 54,585.4	54,585.4	99.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②	쌍문동 81-78번지	-	증) 331.0	331.0	0.6	단독주택 (함석헌 기념관)
	획지③	쌍문동 85-35번지	-	증) 150.6	150.6	0.3	종교시설
합 계			-	증) 55,067.0	55,067.0	100.0	

나.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주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신 설	획지①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에 의한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신 설	획지②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단,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사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신 설	획지③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용 도 지 역	건폐율	비 고
신 설	획지①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 설	획지②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 이하	단독주택 (함석헌 기념관)
신 설	획지③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종교시설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지 역	용적률(%)				비 고
			기 준	허 용	상 한	법적상한	
신 설	획지①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6% 이하	250.6% 이하	281.4% 이하	30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 설	획지②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관련규정에 따름				단독주택 (함석헌 기념관)
신 설	획지③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규정에 따름				종교시설

■ 기준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	40~50㎡ 소형주택 공급	50~60㎡ 소형주택 공급	
신 설	획지①	8.0%	2.0%	10%	20% 적용 (최대 20%)

■ 허용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BF인증	고령 서비스시설	충간소음 해소	
신 설	획지①	6.8%	5%	3%	2.2%	3%	20% 적용 (최대 20%)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토지 기부채납	건축물 기부채납	
신 설	획지①	30.8%	-	

다) 높이 계획

구 분		용 도 지 역	높이(m) / 최고층수	비 고
신 설	획지①	제3종일반주거지역	115m 이하 / 39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 설	획지②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관련규정에 따름	단독주택 (함석헌 기념관)
신 설	획지③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규정에 따름	종교시설

다. 건축물의 배치 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항 목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신 설	건축한계선	노해로55길, 도봉로123길	• 대지경계선에서 5m	결정도 참 조
		그 외 도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3m	결정도 참 조
		공공보행통로변	• 공공보행통로변으로부터 2m	결정도 참 조

2)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구 분	계 획 항 목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신 설	가로 활성화 용도 배치구간 (권장)		노해로	•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 가로의 1/2이 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1층 이상)에 상가를 연도형으로 조성 권장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결정도 참 조
	가로 활성화 시설 배치구간	주민 공동시설 배치구간 (권장)	노해로49길 일부 (정의여중·고 인접 구간) 공공보행통로변	• 주민공동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 가로의 1/2 이 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1층 이상)에 주민공동시설을 연도형으로 조성 권장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결정도 참 조

3) 기타 배치구간

구 분	계 획 항 목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신 설	디자인특화 배치구간(권장)	간선도로 교차로변	• 디자인특화 배치구간 내 주동은 입면 디자인을 차별화해 특색있는 경관 창출	결정도 참 조
	학교변 중저층 배치구간	정의여중·고 인접 구간	• 대상지 이면부 학교 일조 환경을 고려하여 중저층(10~15층)으로 주동 배치	결정도 참 조

라. 경관계획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계 획 항 목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배 치	공동주택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충분히 이격시켜 절·성토와 응력 발생을 최소화 함 • 가로에 대응하는 영역별로 다양한 형태와 높이의 주동 배치 - 역세권 대응 영역 : 노해로변 연도형상가 및 상징적인 경관타워 배치, - 교차로변 디자인 특화주동은 입면 디자인을 차별화해 특색있는 경관 창출 - 저층 주거지 대응 영역 : 저층 주거지에서 단지 내부로 높아지는 주동 배치 - 학교 일조 대응 영역 : 학교 일조 환경을 고려 중·저층(10~15층) 배치
건축물의 방향성		•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주된 세대 향을 남동/남서로 계획하여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건물 진출입구		• 기존 지형과 길을 고려하여, 정비사업 이후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조성 • 보행약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계획
외부공간		• 공원과 연계한 대상지 내부 연결 보행동선 확보(필로티 포함) • 공원과 단지경계부의 지형단차 최소화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계 획 항 목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건축물 외부형태	구역전체	• 공공보행통로(폭 8m 이상)를 통한 동서방향 보행뿐만 아니라 필로티 등을 통한 보행동선 확보로 주변 지역과의 보행 네트워크 연계 • 간선가로 교차로 소공원에 면한 주거동은 창의적인 디자인 특화계획 • 응력을 최소화하는 데크형 대지조성 및 지형단차를 극복하는 수직이동동선 설치로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저층부 외관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질서 있는 입면 계획 권장 •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금지

계 획 항 목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재료 및 색채		- 저채도 위주의 색채계획으로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
진입구 처리		- 주거세대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차출입구는 건축물과 함께 디자인하여 계획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 불필요한 시각 차폐를 지양하고 진입광장 등 열린 공간으로 활용

3) 경관에 관한 계획

계 획 항 목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개방감	공동주택	- 통경축 구간은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설정(폭 20m 이상) ※ 통경축구간은 공공보행통로 방향으로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배치를 억제하는 구간으로 통경축 내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 다만, 자연지형에 의한 처리부분 및 램프, 건축물간의 연결 브릿지와 주민 공동시설, 보행자의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벤치 및 수목식재 등 가능
조명계획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조명 설치계획
스카이라인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 대상지 인근 쌍문역 일대 미래 경관을 고려하여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스카이라인 계획 -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안) ▶ 최고층수 39층 내외 / 중저층 배치구간 10~15층 내외 ▶ 쌍문역 일대 고밀개발과 대상지의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항 목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신 설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지부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도로와 연결한 보행공간은 공공도로의 재질과 패턴과 유사하게 조성하여 공공의 사용에 이질감이 없도록 함	결정도 참 조
신 설	공개공지	공동주택용지 복서측	• 정의여중고 정문과 연계한 휴식공간 제공	결정도 참 조
신 설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용지	• 소공원에서 노해로49길까지 동서로 연결되는 8m 이상의 보행동선 조성	결정도 참 조
신 설	보차혼용통로	노해로, 도봉로123길	• 노해로 및 도봉로123길변 효율적인 교통소통 유도를 위한 보차혼용통로 설치 -노해로 : 폭원 10m 이상, 존치(이전)시설 접속구간 폭원 13m 이상 -도봉로123길 : 폭원 9m 이상 ※보차혼용통로는 24시간 보행자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통행로와 단차를 두어 계획하고 공공시설의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경사로등 설치	결정도 참 조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항 목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신 설	차량진출입구	노해로변 도봉로123길변	• 노해로와 도봉로123길에 차량진출입구 설치	결정도 참 조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항 목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신 설	통경축	공동주택 획지 내	• 공공보행통로변 통경축 구간 확보(폭 20m 이상) - 주민 통학안전 및 단지내 산책공간, 시각적 개방	결정도 참 조
	고령서비스시설	공동주택 획지 내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고령서비스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면적 : 625.9㎡ 이상	

바.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재개발 의무

계획 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40% 이하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40㎡ 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수 제외				
산출 근거	- 전체 세대수 : 1,815세대(1,919세대 - 104세대(법적상한 증가분 제외)) -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 273세대 - 전체 세대수(법적상한 증가분 제외)의 15% 이상 $\Rightarrow 1,815\text{세대} \times 15\% = 273\text{세대} \leq 273\text{세대}$ 계획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40% 이하 40㎡ 이하 규모의 주택 건설 $-273\text{세대} \times 30\% = 82\text{세대} / 273\text{세대} \times 40\% = 109\text{세대}$ $\Rightarrow 82\text{세대} \leq 109\text{세대}$ 계획 $\leq 109\text{세대}$				
임대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 고
	39.95㎡	53.15㎡	109	5,793.35㎡	확지①
	46.50㎡	63.00㎡	76	4,788.00㎡	
	59.94㎡	81.24㎡	88	7,149.12㎡	
	합 계	-	273	17,730.47㎡	

2) 재개발사업 국민주택규모 주택(도시정비법 제54조)

계획 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 299.83%(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정비계획용적률	• 281.4%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 $299.83\% - 281.4\% = 18.43\%$
	증가용적률의 50%	$18.43\% \times 50\% = 9.215\%$ $9.215\% \times 54,585.4\text{㎡(확지①)} = 5,030.04\text{㎡}$

	의무연면적	• 5,030.04㎡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 고
	59.94㎡	81.24㎡	26	2,122.24㎡	획지①
	84.95㎡	113.95㎡	26	2,962.70㎡	
	합 계	-	52	5,074.94㎡	

3) 소형(분양)주택

계획 기준	• 소형(분양)주택 규모를 40㎡ 이하, 40~50㎡ 이하, 50~60㎡ 이하로 계획 시 주택규모별 기준용적을 완화량 차등 적용				
완화 기준	• 기준용적을 완화량에 해당하는 연면적만큼 각 전용면적 주택으로 건설				
소형(분양)주택 확보계획	구 분	최대기준	세대수	공급면적	연면적
	40㎡ 이하	최대 10%	82	53.15㎡	4,358.30㎡
	40~50㎡	최대 15%	17	63.00㎡	1,071.00㎡
	50~60㎡	최대 10%	68	81.24㎡	5,524.32㎡
	합 계	최대 20%	167	-	10,953.62㎡

III. 2026년 제1차(’ 26.02.06)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 분	심의결과	심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제1차 도시계획 수권분과 위원회	수정 가결	• 획지면적, 용적률 계획, 건폐율 계획, 높이 계획, 공공기여계획, 순부담 면적 및 건축선 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을 정비계획(안)으로 반영하였음	수정 사항
		• 주택공급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정상한 증가분 제외)의 40% 이하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세대수 변경	• 주택공급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주택 건설비율(40% 이하)을 반영하였음	
		• 순부담율 산정 방식 변경(순부담면적/획지면적→순부담면적/구역면적, 13.68%→10.86%)	• 순부담율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10.86%로 반영하였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계획 면적 오기 정정 고령서비스 시설 : 625.0㎡→625.9㎡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고령서비스 시설 계획 면적을 625.9㎡로 정정하였음	
		• 8호 조합 등 장방형 주동은 분절을 통한 통경축 및 개방감 확보 방안 검토	• 정비사업 통합심의 등 절차 진행 시 8호 조합 등 장방형 주동 분절을 통한 통경축 및 개방감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음	조건 사항
		• 남측 노해로변 유턴 시 교통안전성 검토	• 정비사업 통합심의 등 절차 진행 시 남측 노해로변 유턴 시 교통안전성을 검토하겠음	
		• 등남측 정의여중교입구사거리 변 우회전 완화차로 확보 방안 검토	• 정의여중교입구사거리 북측 접근로 차로 폭원 조정하여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하였음	
		•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계획에 반영할 것	• 향후 사업 시행 시 대상지와 접한 도로 하부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수요 등을 확인하고, 기반시설 개선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공기여계획에 반영하겠음	

IV. 관련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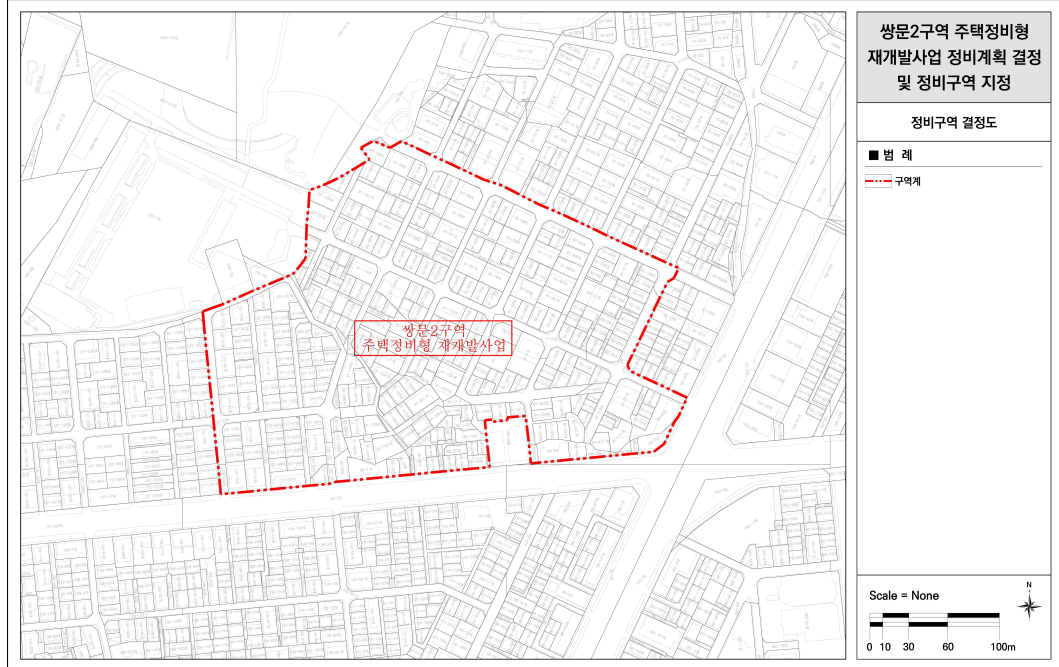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3.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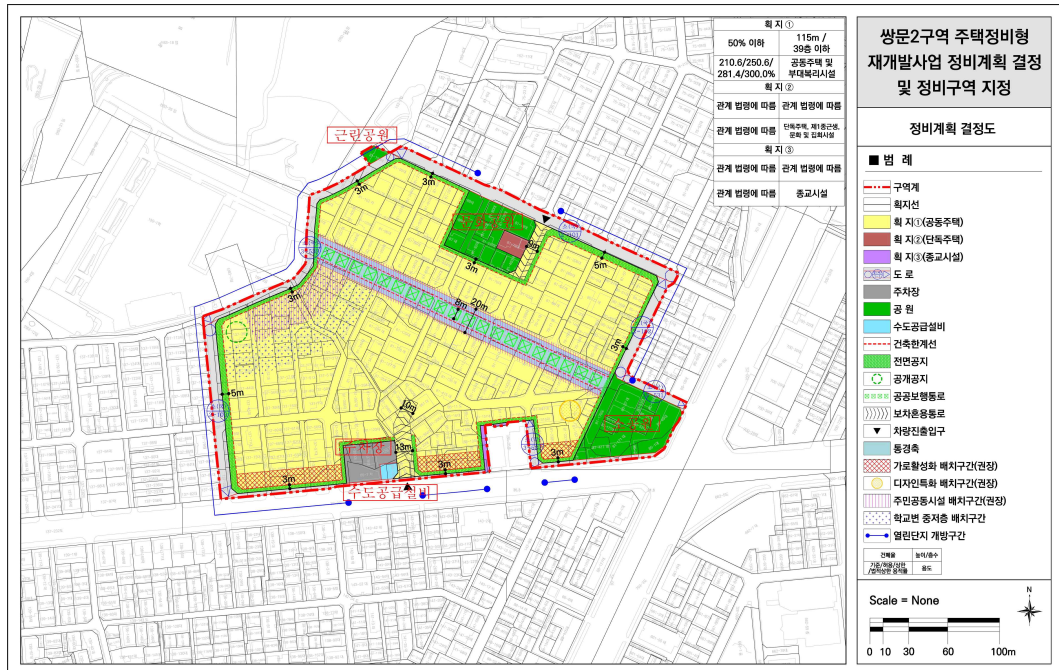
V.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도서 : 생략

V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857),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15)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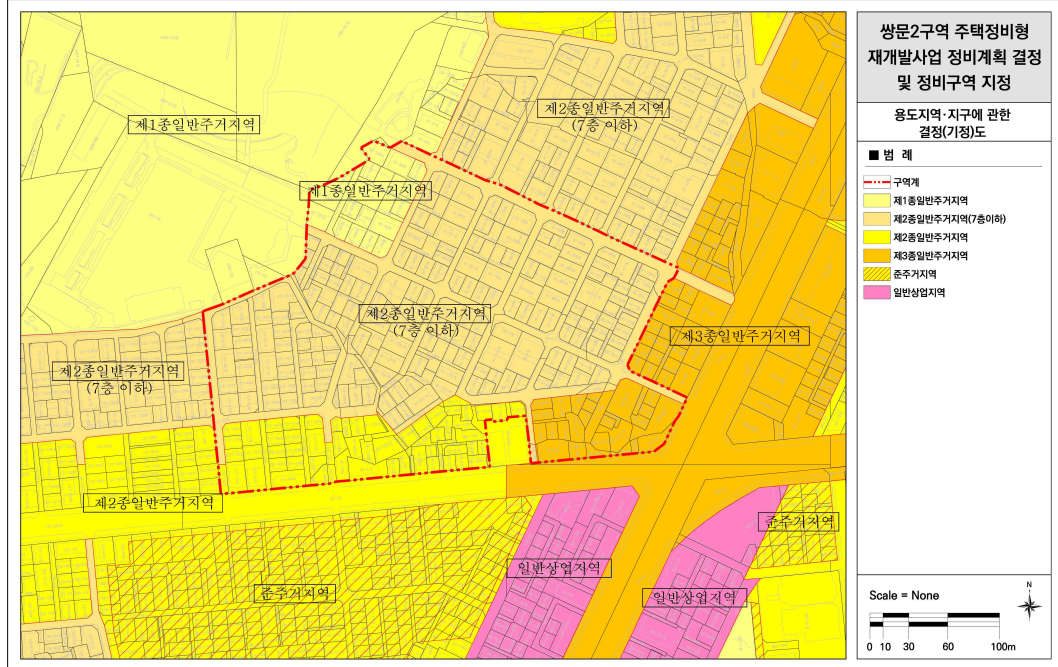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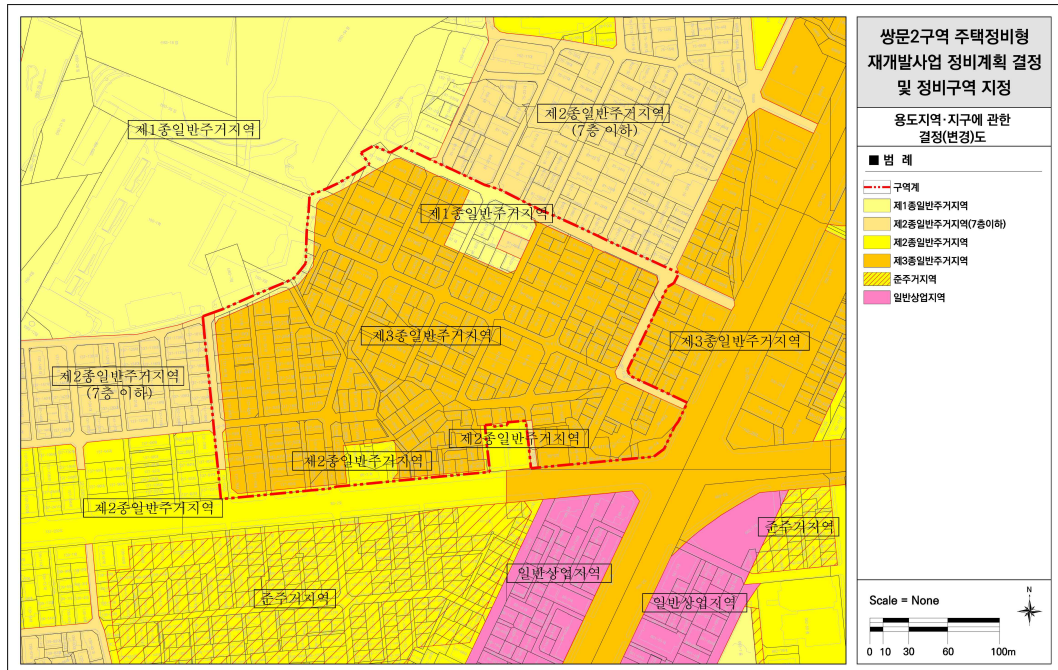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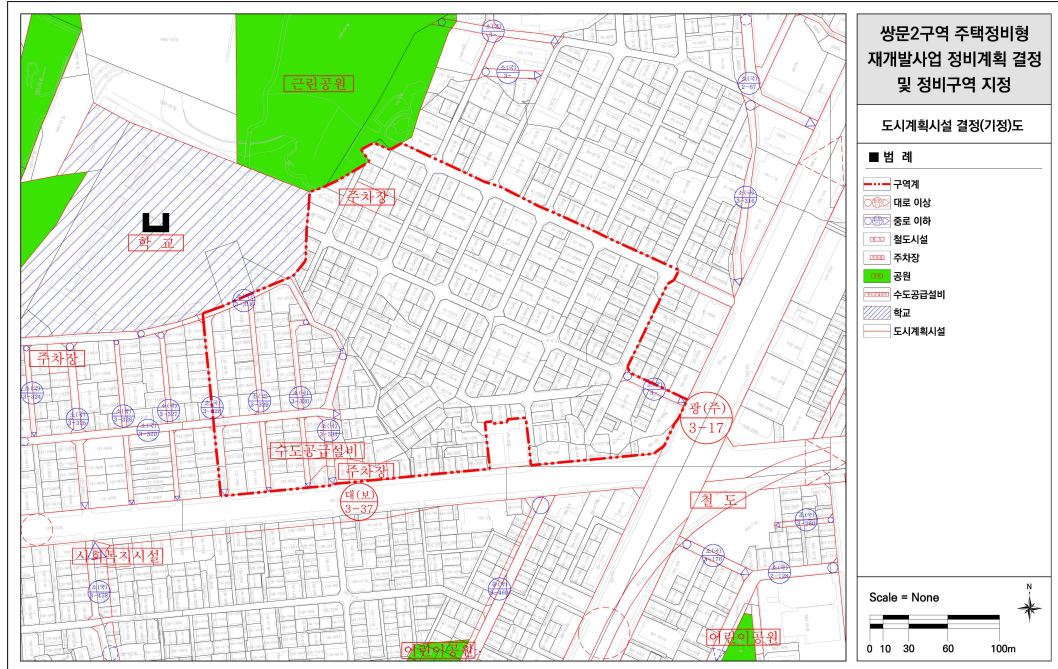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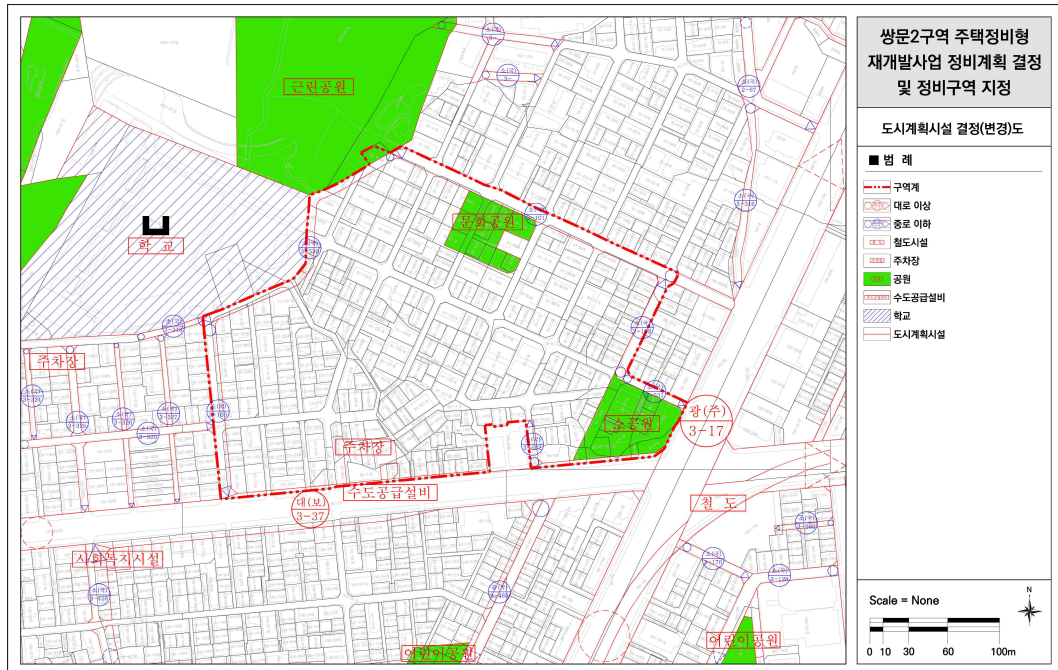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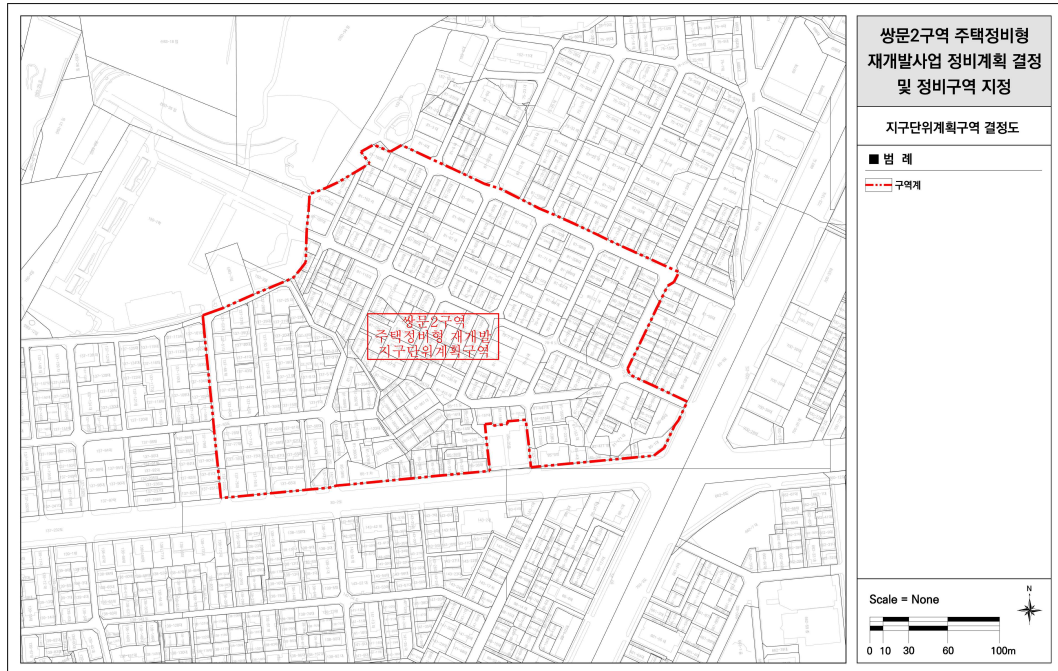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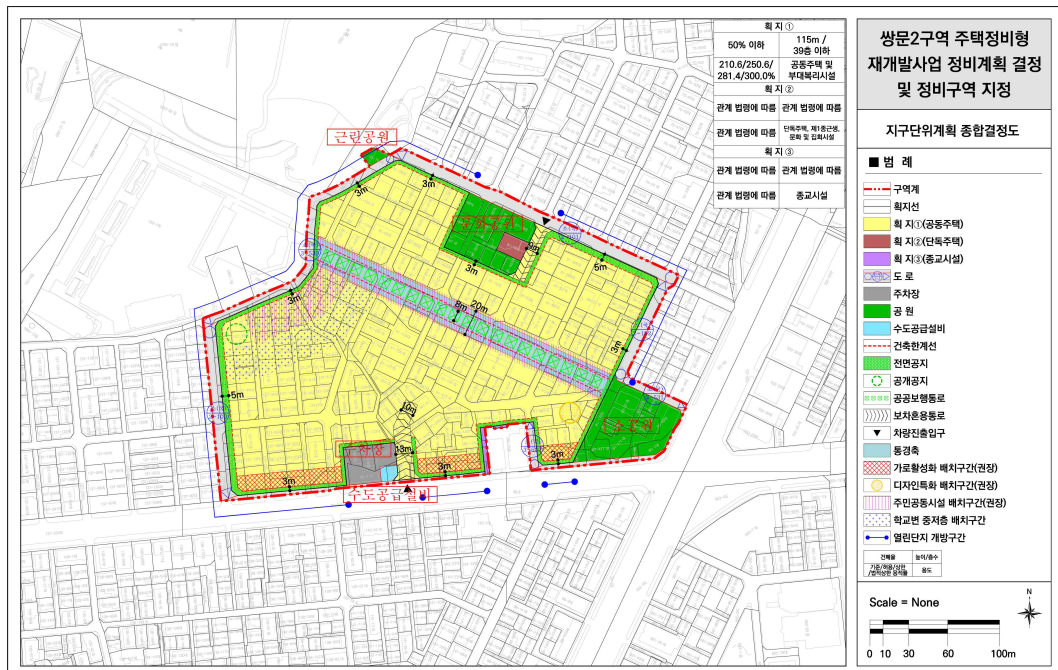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76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6-107호(2026.3.5.)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정정 전	봉산	근린공원	은평구 구산동 산136-5일대	173,845.1	감) 69	173,776.1	1966.02.05.	부분실효
정정 후				179,739.6	감) 69	179,670.6		

※ 봉산근린공원 지정면적 외 변동사항 없음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정정 사유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07호, 2026.3.5.) 내 봉산근린공원 지정 면적 오기로 인한 사항 정정

3. 지형도면(변경없음)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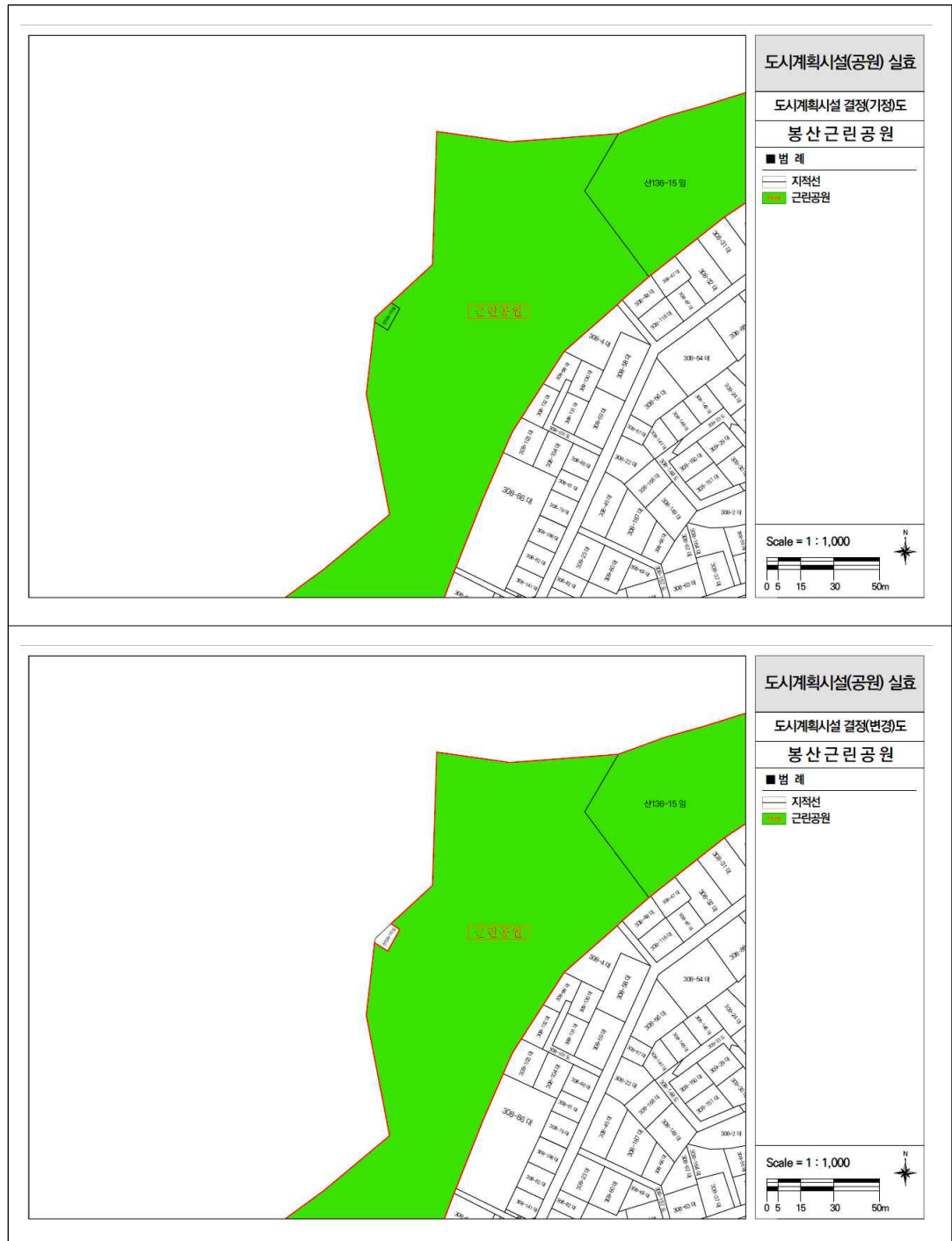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59), 공원조성과(☎02-2133-2075), 해당 자치구 공원담당부서에 각각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 및 변경도면(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77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2025년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2025.11.13.)를 거쳐,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지정의 목적

- 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건축을 통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및 디자인 수준 향상, 공동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나. 주변 공동주택 단지와 공유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가로 형성, 한강변 수변 경관의 공유 등 한강변 주거지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역명	위치	범위	면적(㎡)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09,307.8

※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구역명	면적(㎡)	용도	명칭	대지면적(㎡)	높이	비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109,307.8	복합용지	C1	88,958.7	높이 200m 이하	-

※ 세대수, 면적, 용도 등 세부 개요는 별첨 특별건축구역 관계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특례 적용사항

구역명	특례 적용사항	적용 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적용배제	• 기존 공동주택과 차별화된 평·입면계획 및 새로운 형식의 주동계획으로 창의적인 공동주택 디자인 및 도시경관의 다양성 확보 가능 • 서울특별시 상위계획 (2016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및 관련 계획(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한강변 특화경관 형성 가능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0호)에 따름

※ 추후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해당 내용에 따름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관계 법령에 따름

6.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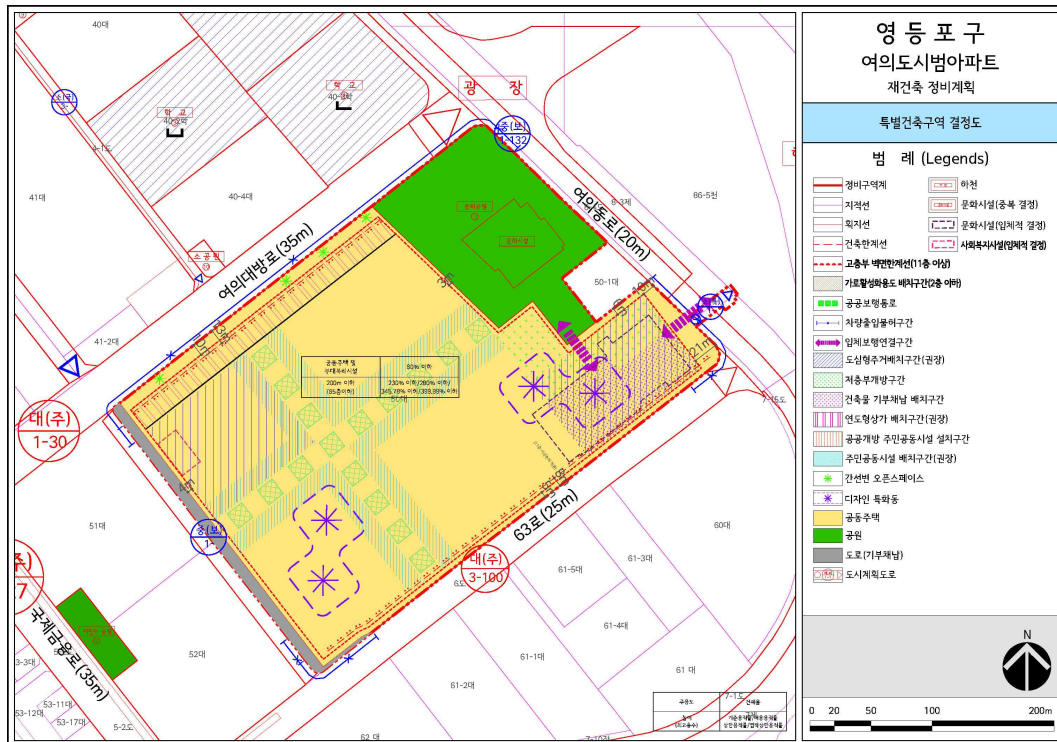
-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주민공동시설로 계획하며 사업 완료 후에도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계획 내용을 포함한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개방시설 :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지역문화센터

7. 기타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된 서류는 서울특별시 주택실 공동주택과(☎ 02-2133-7139), 영등포구 도시공간국 재건축사업과(☎ 02-2670-3543)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992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발송하였고,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체납자 제재 안내
 -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5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권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나.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감치 1,000만원)이상이면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3부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5-09-16 07:21:16	41오0649	김*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	남산1호터널	2025-09-16 08:32:11	107우5337	진*광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홍남로192번길
3	남산3호터널	2025-09-16 10:24:28	199호5282	우*****탈(주)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4	남산3호터널	2025-09-16 10:49:35	265무8687	주식회사 아*****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5	남산3호터널	2025-09-16 11:26:05	276다1687	정*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공단길
6	남산1호터널	2025-09-16 13:29:06	109호2281	(주)굿***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93번길
7	남산1호터널	2025-09-16 13:30:41	107우5337	진*광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홍남로192번길
8	남산3호터널	2025-09-16 13:44:08	33무2800	주식회사 노*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나길
9	남산1호터널	2025-09-16 14:28:50	163다8322	(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10	남산1호터널	2025-09-16 14:44:40	47루2760	A*****I S**F M*****D M*****D E*****I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4길
11	남산3호터널	2025-09-16 14:57:41	46어5305	이*한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2	남산1호터널	2025-09-16 15:13:16	226두7822	박*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30길
13	남산1호터널	2025-09-16 16:54:56	143라5353	김*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4	남산3호터널	2025-09-16 17:13:11	42너8935	홍*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로5길
15	남산1호터널	2025-09-16 18:14:18	66보9051	양*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6길
16	남산1호터널	2025-09-16 18:39:34	315어7115	L*U L*****A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4길
17	남산3호터널	2025-09-16 18:40:39	196우3794	임*영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18	남산3호터널	2025-09-16 19:59:16	105하9792	(유)태***카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19	남산1호터널	2025-09-16 20:42:56	171어4056	김*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20	남산1호터널	2025-09-17 07:15:47	140두1572	주식회사 이*****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1	남산1호터널	2025-09-17 07:27:18	213너4518	주식회사 카**리	경기도 하남시 초일로
22	남산1호터널	2025-09-17 08:01:39	07서8335	박*영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49번길
23	남산3호터널	2025-09-17 08:34:09	29나0147	(주)피*****아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6길
24	남산3호터널	2025-09-17 10:07:51	234무8686	김*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25	남산3호터널	2025-09-17 10:08:36	172라6315	이*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길
26	남산1호터널	2025-09-17 10:28:16	360노9950	한*희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6번안길
27	남산3호터널	2025-09-17 13:10:49	35버0457	주식회사 유****텍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43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8	남산1호터널	2025-09-17 13:42:19	167ㄴ5385	보****씨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29	남산3호터널	2025-09-17 14:04:47	174로6903	이*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0	남산3호터널	2025-09-17 14:28:45	101허4330	씨****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1	남산1호터널	2025-09-17 15:04:50	186저2080	나*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2	남산1호터널	2025-09-17 15:06:26	232누5049	송*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3	남산3호터널	2025-09-17 15:11:56	47거1661	김*정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34	남산3호터널	2025-09-17 15:16:28	325도7910	정*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다길
35	남산3호터널	2025-09-17 15:26:41	22소3997	송*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18길
36	남산3호터널	2025-09-17 16:26:45	342나6968	이*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407번길
37	남산3호터널	2025-09-17 18:58:29	33주7177	(주)씨*****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8	남산1호터널	2025-09-17 19:09:07	36주4878	강*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6길
39	남산3호터널	2025-09-17 19:45:24	01저0634	정*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40	남산1호터널	2025-09-17 20:55:01	61수6712	이*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41	남산3호터널	2025-09-18 08:45:36	357두1316	증**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2	남산1호터널	2025-09-18 08:55:28	57보8113	제***투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57번길
43	남산1호터널	2025-09-18 08:59:43	62러1292	한*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44	남산1호터널	2025-09-18 09:07:31	319서4105	이*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45	남산1호터널	2025-09-18 09:20:05	169다8319	농****인 친***상(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변산로
46	남산1호터널	2025-09-18 10:52:30	07다5362	최*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0아길
47	남산1호터널	2025-09-18 11:01:41	263오2147	최*성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동로
48	남산3호터널	2025-09-18 11:29:29	05다1586	(주)다****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6길
49	남산1호터널	2025-09-18 12:04:43	101허8336	스****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5길
50	남산3호터널	2025-09-18 12:37:03	146하4854	주식회사 미****카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51	남산1호터널	2025-09-18 13:23:25	202조8538	백*순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119번길
52	남산3호터널	2025-09-18 14:38:42	192버5513	서*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1길
53	남산3호터널	2025-09-18 14:43:45	280무7032	주식회사 라****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으뜸로
54	남산3호터널	2025-09-18 14:50:19	222서7458	김*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5	남산3호터널	2025-09-18 15:21:08	109하7093	주식회사 골**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213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56	남산1호터널	2025-09-18 16:07:10	51라6216	우*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7길
57	남산1호터널	2025-09-18 16:39:38	46부4670	S*N S****Y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만삼로108번길
58	남산1호터널	2025-09-18 16:53:36	63두1628	정*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59	남산1호터널	2025-09-18 17:20:24	32라9785	조*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60	남산1호터널	2025-09-18 18:24:24	16모1378	K*M L****Y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343번길
61	남산1호터널	2025-09-18 18:40:26	23버1739	이*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62	남산1호터널	2025-09-18 19:06:29	17우5201	정*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63	남산3호터널	2025-09-18 19:08:46	305주2530	S**N F****U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34길
64	남산1호터널	2025-09-18 19:52:05	141머2434	허*행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65	남산3호터널	2025-09-18 20:20:58	387거9695	김*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2라길
66	남산1호터널	2025-09-19 07:10:13	22보4697	시****설(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627길
67	남산1호터널	2025-09-19 08:06:27	53부5860	(주)동****딩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68	남산3호터널	2025-09-19 08:30:43	29나0147	(주)피****아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6길
69	남산3호터널	2025-09-19 09:40:33	50오4073	임*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44번길
70	남산3호터널	2025-09-19 11:48:46	52부0659	최*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송인로2길
71	남산1호터널	2025-09-19 12:06:46	61고0857	백*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72	남산1호터널	2025-09-19 12:24:24	305주2530	S**N F****U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34길
73	남산3호터널	2025-09-19 12:54:07	188소1747	L* H**G N*N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74	남산3호터널	2025-09-19 14:11:37	21조7493	G*****U S*****N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271번길
75	남산1호터널	2025-09-19 14:21:40	65로4891	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4길
76	남산1호터널	2025-09-19 14:36:45	164서1863	이*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20길
77	남산1호터널	2025-09-19 14:40:22	64머0265	이*연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149번길
78	남산1호터널	2025-09-19 14:43:38	249러6008	허*****트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9	남산1호터널	2025-09-19 14:53:50	48모9651	홍*민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80	남산3호터널	2025-09-19 15:28:31	162버7973	오*현	경기도 양주시 월정로
81	남산1호터널	2025-09-19 15:39:13	50나8659	박*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82	남산1호터널	2025-09-19 16:15:56	279수3954	박*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80번길
83	남산1호터널	2025-09-19 16:21:36	59너7235	라****발(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58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84	남산3호터널	2025-09-19 17:20:09	66조5450	P*****V B*****R M*****O U**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85	남산1호터널	2025-09-19 17:29:04	43소6819	류*화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5길
86	남산1호터널	2025-09-19 17:49:43	177호7676	주식회사 차****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87	남산1호터널	2025-09-19 17:59:59	35버0906	김*수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봉향능바우1길
88	남산3호터널	2025-09-19 18:52:28	322가7337	최*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길
89	남산3호터널	2025-09-19 19:03:10	103라2905	명*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7길
90	남산3호터널	2025-09-19 19:05:04	196우3794	임*영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91	남산3호터널	2025-09-19 19:35:12	60노4661	박*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로
92	남산3호터널	2025-09-19 20:36:30	356노1023	P* 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나길
93	남산3호터널	2025-09-19 20:39:51	186노2006	N**L J***A E*****H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94	남산1호터널	2025-09-19 20:44:31	29나7022	정*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90길
95	남산1호터널	2025-09-19 20:45:54	02라5546	형*준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지석로
96	남산3호터널	2025-09-19 20:52:36	69나9206	주식회사 인*텍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길
97	남산3호터널	2025-09-22 10:15:55	54고5604	최*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98	남산1호터널	2025-09-22 11:40:12	27두0901	이*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9	남산1호터널	2025-09-22 12:06:33	28버1834	(주)에*치 *	경기도 양주시 철봉산로168번길
100	남산1호터널	2025-09-22 13:20:04	171주2785	주식회사 씨*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동문로
101	남산1호터널	2025-09-22 14:15:34	34버9569	장*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시장뒷길
102	남산1호터널	2025-09-22 14:47:48	24조3197	W****S M*****A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03	남산1호터널	2025-09-22 15:14:10	39서0131	백*화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39번길
104	남산3호터널	2025-09-22 15:43:34	50저8289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05	남산1호터널	2025-09-22 17:36:47	11서8656	황*자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106	남산1호터널	2025-09-22 18:38:35	43터7098	김*숙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길
107	남산1호터널	2025-09-22 19:47:45	05두0452	이*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8길
108	남산3호터널	2025-09-22 19:59:15	170조1981	성*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양로50번길
109	남산1호터널	2025-09-23 08:28:06	277거1576	농****인하****원주식회사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한나리길
110	남산1호터널	2025-09-23 09:21:14	32누3150	주식회사 아***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11	남산3호터널	2025-09-23 12:33:38	210다1813	L* L*****E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112	남산1호터널	2025-09-23 12:40:47	28오8295	이*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113	남산3호터널	2025-09-23 12:57:05	134보4545	강*복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114	남산3호터널	2025-09-23 13:27:35	67구5363	F**G J**N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북로2길
115	남산1호터널	2025-09-23 14:44:33	116부6163	김*연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북길
116	남산1호터널	2025-09-23 15:07:41	43더8939	장*광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고길30번길
117	남산1호터널	2025-09-23 16:23:46	66소2104	종***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118	남산1호터널	2025-09-23 17:02:17	16서4009	손*전	경기도 의왕시 갈미1로
119	남산1호터널	2025-09-23 17:16:12	06더6188	의**인 인****단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건천1길
120	남산1호터널	2025-09-23 17:18:19	41누5409	김*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21	남산1호터널	2025-09-23 17:24:24	54누3248	이*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3가길
122	남산1호터널	2025-09-23 17:29:55	179구9529	(주)서**제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7길
123	남산3호터널	2025-09-23 17:36:42	222우3662	(주)아*****기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93번길
124	남산1호터널	2025-09-23 18:49:28	115머3333	K**E B***K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38길
125	남산1호터널	2025-09-23 18:56:35	196우3794	임*영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126	남산1호터널	2025-09-23 19:03:19	36너8494	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127	남산1호터널	2025-09-23 19:21:51	369마6515	K*M A*****Y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18번길
128	남산3호터널	2025-09-23 19:33:28	283보8400	이*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14길
129	남산1호터널	2025-09-23 20:25:01	299주1758	임*래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석성북로
130	남산3호터널	2025-09-24 07:34:58	325오8620	류*형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31	남산1호터널	2025-09-24 08:52:48	108소9023	G*O Y*****N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웃말5길
132	남산3호터널	2025-09-24 10:05:50	222노9955	J*N X*****U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11길
133	남산3호터널	2025-09-24 10:21:08	29나0147	(주)파*****아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6길
134	남산1호터널	2025-09-24 11:04:25	21우7943	안*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35	남산3호터널	2025-09-24 11:38:07	18어3546	P****R T****R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36	남산1호터널	2025-09-24 11:50:34	116주2762	서*석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7	남산3호터널	2025-09-24 12:36:02	50저8289	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38	남산3호터널	2025-09-24 12:43:40	114고9695	엄*용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안성맞춤대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39	남산3호터널	2025-09-24 13:50:25	182거3386	X* Y***N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10길
140	남산3호터널	2025-09-24 14:09:33	255노5140	현***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41	남산1호터널	2025-09-24 14:18:40	245소4100	김*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151번길
142	남산3호터널	2025-09-24 14:59:42	359로9908	주식회사 휴*****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3	남산3호터널	2025-09-24 15:02:42	146호7072	(주)선*****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44	남산1호터널	2025-09-24 15:39:02	10두3999	M*****O C*****A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12가길
145	남산1호터널	2025-09-24 15:57:50	368노9990	Y**G H*****G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50길
146	남산3호터널	2025-09-24 16:50:09	260모8710	서*만	경기도 과천시 용마2로
147	남산3호터널	2025-09-24 17:22:25	159마9114	주식회사 카****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72번길
148	남산3호터널	2025-09-24 17:33:20	344고7902	이*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149	남산3호터널	2025-09-25 08:52:56	325오8620	류*형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50	남산3호터널	2025-09-25 08:57:28	137너1389	X* Z****N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3길
151	남산1호터널	2025-09-25 09:17:13	02로1160	이*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52	남산1호터널	2025-09-25 09:49:39	125호6018	타***수(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53	남산1호터널	2025-09-25 10:13:17	331주5065	주식회사 예*****비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154	남산3호터널	2025-09-25 10:46:34	28로3784	주식회사 트**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인로
155	남산1호터널	2025-09-25 10:47:16	140더1729	D***G V*N L*N	인천광역시 서구 보들6로
156	남산3호터널	2025-09-25 10:57:52	245고6400	L*N K*****I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165번길
157	남산1호터널	2025-09-25 11:05:27	42주5681	H* S* T**N H***G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6길
158	남산1호터널	2025-09-25 11:54:31	377루9007	토*****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59번길
159	남산1호터널	2025-09-25 12:05:40	32로9388	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길
160	남산1호터널	2025-09-25 12:42:01	64려9262	주식회사 시**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161	남산3호터널	2025-09-25 12:58:57	249거3954	김*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18길
162	남산3호터널	2025-09-25 13:45:40	30라0465	이*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117번길
163	남산3호터널	2025-09-25 13:52:58	205려9344	최*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4	남산3호터널	2025-09-25 14:22:20	207두2231	신*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165	남산3호터널	2025-09-25 14:48:51	182더6618	주식회사 속*****사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
166	남산1호터널	2025-09-25 15:54:59	152호2430	비*****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67	남산1호터널	2025-09-25 16:32:08	177호7676	주식회사 차****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68	남산1호터널	2025-09-25 17:04:49	233도7982	송*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9	남산1호터널	2025-09-25 19:04:59	250라5324	(주)블*****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0	남산3호터널	2025-09-25 20:00:15	26주4364	심*섭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6길
171	남산1호터널	2025-09-25 20:27:52	343머4810	경*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72	남산3호터널	2025-09-26 07:40:14	16노4060	서*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4길
173	남산3호터널	2025-09-26 08:35:07	325오8620	류*형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74	남산1호터널	2025-09-26 08:56:52	32로9388	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길
175	남산1호터널	2025-09-26 09:34:38	126로4581	합*회사 케****어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7길
176	남산1호터널	2025-09-26 10:21:31	277누1712	주식회사 다****씨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77	남산1호터널	2025-09-26 10:21:46	35여0330	허*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118번길
178	남산3호터널	2025-09-26 10:42:17	35무7142	안*영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16길
179	남산1호터널	2025-09-26 11:11:41	289여3034	신*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1길
180	남산3호터널	2025-09-26 11:12:08	120로6915	박*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181	남산3호터널	2025-09-26 11:33:46	54오3338	주식회사 성**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82	남산1호터널	2025-09-26 11:58:38	43나9339	성*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7길
183	남산1호터널	2025-09-26 13:05:50	60저3461	옥*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184	남산1호터널	2025-09-26 13:43:05	42부0702	박*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185	남산1호터널	2025-09-26 14:19:13	344러9224	주식회사 스*****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태기3길
186	남산1호터널	2025-09-26 14:28:54	62무5363	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5길
187	남산1호터널	2025-09-26 14:32:11	53루2929	성*모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4길
188	남산3호터널	2025-09-26 15:01:06	378모3037	L*U S*****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29나길
189	남산1호터널	2025-09-26 16:33:18	123우7039	(주)디*츠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190	남산3호터널	2025-09-26 16:47:50	125모2391	제*****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91	남산3호터널	2025-09-26 17:05:20	303모8741	이*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92	남산1호터널	2025-09-26 17:26:04	48모9651	홍*민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홍수로
193	남산3호터널	2025-09-26 18:02:42	68우0182	조*균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2로2길
194	남산1호터널	2025-09-26 18:29:02	54누4821	이*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195	남산1호터널	2025-09-26 18:53:31	272부4209	박*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6	남산3호터널	2025-09-26 19:45:59	392로9123	국****라(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97	남산3호터널	2025-09-26 20:02:50	67라5000	허*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98	남산1호터널	2025-09-26 20:11:20	202구8741	박*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길
199	남산1호터널	2025-09-26 20:37:59	372버7207	K***K J****A L*****E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200	남산3호터널	2025-09-29 07:15:57	103소8249	코****즈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01	남산1호터널	2025-09-29 07:19:44	142머9738	P*****A R*****O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02	남산1호터널	2025-09-29 07:34:43	292루9899	박*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로
203	남산1호터널	2025-09-29 08:46:20	161저2160	이*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대동로
204	남산3호터널	2025-09-29 10:09:21	60두7289	유한회사금****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석교개로
205	남산1호터널	2025-09-29 10:11:41	46루0280	양*혁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7나길
206	남산1호터널	2025-09-29 10:42:50	34로0402	T*****A H*****U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207	남산1호터널	2025-09-29 10:46:29	17보4079	주식회사 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7길
208	남산1호터널	2025-09-29 10:59:15	244여2244	주식회사 예****씨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209	남산1호터널	2025-09-29 11:01:27	353우1295	장*화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359번길
210	남산3호터널	2025-09-29 12:22:21	30더4232	주식회사 화**크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6길
211	남산1호터널	2025-09-29 12:41:21	45로6170	주식회사 시****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212	남산1호터널	2025-09-29 13:39:48	251부7565	G****V S*****K B***R U**i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황서길
213	남산3호터널	2025-09-29 13:44:07	351보4051	A*****R T***R R****D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214	남산3호터널	2025-09-29 14:27:32	123여9765	K*M N*****A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215	남산3호터널	2025-09-29 14:30:36	57나6637	(주)스*****곤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석1로
216	남산1호터널	2025-09-29 15:13:11	56로8330	B*****A T*****D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
217	남산3호터널	2025-09-29 15:34:06	37가4062	주식회사 성*****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218	남산1호터널	2025-09-29 16:02:06	309로2646	주식회사 다*****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상작1길
219	남산3호터널	2025-09-29 16:51:35	224로9142	주식회사 파**2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20	남산3호터널	2025-09-29 16:57:26	109가2400	하*형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5길
221	남산1호터널	2025-09-29 17:41:41	142호7436	주식회사 예****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22	남산1호터널	2025-09-29 17:42:29	285소5765	김*애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223	남산1호터널	2025-09-29 17:57:16	269더3159	이*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224	남산3호터널	2025-09-29 18:25:46	52도8358	이*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225	남산3호터널	2025-09-29 18:54:02	101하9342	주식회사 케****아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226	남산3호터널	2025-09-29 18:56:57	148더8213	Q**N Z*E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13번길
227	남산1호터널	2025-09-29 19:21:12	327루6630	주식회사 가*****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228	남산3호터널	2025-09-29 19:41:15	25노0677	김*석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29	남산3호터널	2025-09-29 20:31:44	149루4217	(주)트*****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230	남산1호터널	2025-09-29 20:46:47	37구4534	정*기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231	남산1호터널	2025-09-30 08:54:06	07부2952	C****N, J****N A****W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232	남산3호터널	2025-09-30 09:24:38	31오8338	정*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3	남산1호터널	2025-09-30 09:43:32	66나2845	조*연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5길
234	남산3호터널	2025-09-30 10:34:02	52저4488	김*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	남산1호터널	2025-09-30 11:15:28	34라7134	H****Y M*****H Y***A A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236	남산1호터널	2025-09-30 12:36:01	182노2897	유*길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237	남산3호터널	2025-09-30 13:51:08	391다8110	주식회사신***대	인천광역시 중구 관창로
238	남산3호터널	2025-09-30 14:00:17	35저9341	에*****아 유한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239	남산1호터널	2025-09-30 14:06:45	52서4367	주식회사 아*****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외로37길
240	남산3호터널	2025-09-30 14:08:32	37고5955	주식회사 아****링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241	남산3호터널	2025-09-30 14:22:24	31나0239	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52다길
242	남산3호터널	2025-09-30 14:55:47	03조0933	K****A B*N K****O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243	남산1호터널	2025-09-30 16:29:04	51루6283	이*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2길
244	남산3호터널	2025-09-30 16:38:54	21두1651	박*성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245	남산1호터널	2025-09-30 17:09:27	175나7105	주식회사 다***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246	남산1호터널	2025-09-30 17:22:47	63저2679	주식회사 아**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247	남산1호터널	2025-09-30 17:59:48	29노8647	김*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940번길
248	남산3호터널	2025-09-30 18:25:42	175모2478	신*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249	남산1호터널	2025-09-30 19:22:28	243수7298	L* H**G L**G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50	남산3호터널	2025-09-30 19:44:57	57루9128	김*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1길
251	남산1호터널	2025-09-30 20:07:58	09나9565	경*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1길
252	남산1호터널	2025-09-30 20:22:29	222허6358	롯데탈(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253	남산1호터널	2025-09-30 20:22:34	222호9317	롯데탈(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254	남산1호터널	2025-10-01 08:00:24	138오2260	윤*식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하1로
255	남산1호터널	2025-10-01 08:28:07	23수2479	A***A B****M T****E	경기도 포천시 어룡길
256	남산1호터널	2025-10-01 08:40:19	56무6957	K*M Y*****Y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648번길
257	남산1호터널	2025-10-01 09:31:47	57고9393	주식회사 지***일	경기도 과천시 궁말로
258	남산1호터널	2025-10-01 09:44:22	59어0457	제*****딩 주식회사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마산길
259	남산1호터널	2025-10-01 10:19:17	03버7441	농****인 등**미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한동길
260	남산1호터널	2025-10-01 10:27:07	13어2745	박*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139번길
261	남산3호터널	2025-10-01 10:37:20	28모5266	장*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50길
262	남산3호터널	2025-10-01 10:55:42	38구7623	김*빈	경기도 과천시 뱃배랭이길
263	남산3호터널	2025-10-01 11:22:06	54오3338	주식회사 성**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264	남산1호터널	2025-10-01 11:49:12	256소4906	주식회사 화**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139번길
265	남산1호터널	2025-10-01 13:08:35	381저1148	김*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
266	남산1호터널	2025-10-01 13:15:53	52서5967	주식회사 계***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8길
267	남산1호터널	2025-10-01 14:03:23	256두6237	(주)오*채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268	남산1호터널	2025-10-01 14:11:14	39력6025	김*석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45번길
269	남산3호터널	2025-10-01 14:38:51	133수4180	김*순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한재무두리2길
270	남산3호터널	2025-10-01 14:53:51	139타6627	송*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228번길
271	남산3호터널	2025-10-01 15:09:59	46어5305	이*한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272	남산3호터널	2025-10-01 16:21:07	310가3249	장*환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73	남산1호터널	2025-10-01 16:38:31	68수6136	배*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5길
274	남산1호터널	2025-10-01 17:59:04	14누8629	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275	남산3호터널	2025-10-01 18:21:16	207마7596	김*호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경강로학곡2길
276	남산1호터널	2025-10-01 18:37:59	109구5558	이*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로
277	남산1호터널	2025-10-01 19:40:53	14어9522	왕*현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278	남산3호터널	2025-10-01 20:07:51	131로4357	주식회사 개*****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1로
279	남산3호터널	2025-10-02 07:06:49	30라0465	이*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117번길
280	남산3호터널	2025-10-02 07:34:08	01고4588	김*규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81	남산1호터널	2025-10-02 09:14:10	43루4704	김*일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2길
282	남산1호터널	2025-10-02 10:46:47	37가1409	주식회사 바**드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283	남산3호터널	2025-10-02 10:51:08	07저0469	L*E S*O Y**N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198번길
284	남산1호터널	2025-10-02 11:52:31	107여9592	(주)한*****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2길
285	남산1호터널	2025-10-02 12:35:23	367버6196	주식회사 피****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286	남산1호터널	2025-10-02 13:15:58	129우9440	김*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6가길
287	남산1호터널	2025-10-02 14:18:28	312도8740	(주)협***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92길
288	남산3호터널	2025-10-02 14:18:43	40부2572	(주)컴***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5길
289	남산1호터널	2025-10-02 14:47:11	11수5655	(주)풍****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290	남산3호터널	2025-10-02 15:19:28	259가5766	Z***G L*****N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변영로105번길
291	남산3호터널	2025-10-02 15:22:43	104로6840	주*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49길
292	남산3호터널	2025-10-02 15:45:27	253버3633	시*****링(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93	남산1호터널	2025-10-02 16:10:51	245누9896	(주)에*****스(상*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1길
294	남산1호터널	2025-10-02 17:15:39	51오3547	박*석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71번길
295	남산3호터널	2025-10-02 17:29:54	01오3960	정*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96	남산1호터널	2025-10-02 17:59:49	54누4821	이*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297	남산3호터널	2025-10-02 18:49:40	193수2533	박*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298	남산1호터널	2025-10-02 20:04:33	24여4491	(주)닥*****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99	남산1호터널	2025-10-02 20:14:56	16나7754	L* Z****O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107길
300	남산1호터널	2025-10-10 07:34:49	36소8522	양*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71길
301	남산3호터널	2025-10-10 09:06:15	264우4564	송*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302	남산1호터널	2025-10-10 09:26:45	129도5685	박*윤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4길
303	남산3호터널	2025-10-10 10:04:00	38나9181	F*****R D****L G**E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304	남산1호터널	2025-10-10 10:49:33	66여1113	유*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2가길
305	남산1호터널	2025-10-10 10:52:31	305주2530	S**N F****U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34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06	남산1호터널	2025-10-10 11:21:22	23도8460	이*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주로
307	남산1호터널	2025-10-10 11:48:02	36버0759	김*성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군로
308	남산1호터널	2025-10-10 12:17:14	12거8748	(주)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309	남산1호터널	2025-10-10 12:18:59	64려9262	주식회사 시**건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310	남산1호터널	2025-10-10 14:13:47	64구8804	박*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311	남산1호터널	2025-10-10 14:53:41	19노7866	N****N P****G T**O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슬라로232번길
312	남산3호터널	2025-10-10 15:06:40	42소0727	M* D***l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1길
313	남산3호터널	2025-10-10 15:09:46	343라7705	하*미	경기도 의왕시 백운안길
314	남산1호터널	2025-10-10 15:16:14	56더8000	주식회사 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9길
315	남산3호터널	2025-10-10 15:18:59	145노2749	R*****Z, J***Y B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316	남산1호터널	2025-10-10 15:29:22	111머5769	주식회사 예*****발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317	남산1호터널	2025-10-10 15:37:17	16다1658	권*성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7길
318	남산1호터널	2025-10-10 16:32:22	65노4677	김*진	경기도 하남시 갑일백제로
319	남산3호터널	2025-10-10 16:32:26	107부4274	황*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320	남산1호터널	2025-10-10 16:39:51	140두3149	A*****A A*****N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버그내2길
321	남산1호터널	2025-10-10 17:36:21	174구2204	장*선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322	남산3호터널	2025-10-10 17:39:58	19보2489	최*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323	남산1호터널	2025-10-10 18:50:09	61라1248	박*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1로2길
324	남산3호터널	2025-10-10 18:56:13	195려6204	대**공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25	남산1호터널	2025-10-10 18:56:15	32무5099	이*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326	남산1호터널	2025-10-10 19:21:33	42무5089	김*진	경기도 시흥시 배곧1로
327	남산1호터널	2025-10-10 19:27:25	187서5239	이*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15길
328	남산1호터널	2025-10-10 19:31:47	225다7349	김*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60가길
329	남산1호터널	2025-10-10 19:33:54	49저4528	김*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131번길
330	남산3호터널	2025-10-10 19:54:26	342두7035	이*봉	경기도 광명시 금당로
331	남산3호터널	2025-10-10 20:00:13	02수4172	주식회사 라****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332	남산1호터널	2025-10-10 20:13:23	09저9687	고*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0길
333	남산1호터널	2025-10-10 20:19:21	51부9406	채*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11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34	남산1호터널	2025-10-13 09:47:42	61더5857	(주)노****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5	남산1호터널	2025-10-13 11:34:52	36로4374	김*진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1길
336	남산3호터널	2025-10-13 11:42:32	56라2035	김*재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마길
337	남산1호터널	2025-10-13 11:47:34	37구3849	X*N M*****G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1길
338	남산1호터널	2025-10-13 12:19:28	54구7736	N*****V *****K R*****N U**i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41번길
339	남산1호터널	2025-10-13 13:14:02	35저9341	에*****아 유한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340	남산1호터널	2025-10-13 13:25:58	16서4009	손*전	경기도 의왕시 갈미1로
341	남산1호터널	2025-10-13 15:05:40	41부6275	임*민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봉로2번길
342	남산3호터널	2025-10-13 15:13:06	23더4364	주식회사 원*****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3길
343	남산1호터널	2025-10-13 15:19:06	275수1522	윤*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336번길
344	남산1호터널	2025-10-13 15:20:03	215머2430	박*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1길
345	남산1호터널	2025-10-13 15:28:13	114모7345	T**N C***G Q**C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옛골로10번길
346	남산1호터널	2025-10-13 15:28:22	16우8154	A*****I A*****I M*****D D****N S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향로
347	남산3호터널	2025-10-13 15:31:10	178도8065	주식회사 바*****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48	남산3호터널	2025-10-13 16:36:28	232우1363	김*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349	남산3호터널	2025-10-13 17:32:01	308다4066	홍*철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350	남산1호터널	2025-10-13 17:43:38	28노7859	신*령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114번길
351	남산1호터널	2025-10-13 17:57:27	350누1775	주식회사 문****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곡현로
352	남산1호터널	2025-10-13 18:02:11	117거6638	김*라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6길
353	남산3호터널	2025-10-13 18:11:16	307노7500	정*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35길
354	남산1호터널	2025-10-13 18:16:24	193소2500	김*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4길
355	남산1호터널	2025-10-13 19:00:53	28루8420	Z**U Y**G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356	남산1호터널	2025-10-14 07:16:23	59누4059	S**N A*****R V*****H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87번길
357	남산1호터널	2025-10-14 07:27:28	140두1572	주식회사 이*****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358	남산1호터널	2025-10-14 09:04:15	63오9052	정*하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8길
359	남산1호터널	2025-10-14 10:17:05	59머5210	임*숙	경기도 광주시 고산별빛1로
360	남산3호터널	2025-10-14 10:20:31	109하6844	주식회사 제***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789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61	남산3호터널	2025-10-14 10:54:48	32어2086	비**브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362	남산3호터널	2025-10-14 11:42:57	06조0437	서*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3길
363	남산3호터널	2025-10-14 12:06:27	12수3314	이*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길
364	남산1호터널	2025-10-14 14:06:02	61더5857	(주)노****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65	남산1호터널	2025-10-14 16:08:39	111라9544	E****Y, H*****H F*****N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366	남산1호터널	2025-10-14 16:11:51	192더2519	주식회사 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67	남산1호터널	2025-10-14 16:25:32	355버2874	김*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레로25길
368	남산1호터널	2025-10-14 17:03:39	340모9589	김*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28번길
369	남산1호터널	2025-10-14 17:35:47	08부5122	J*N C*****N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을마로438번길
370	남산3호터널	2025-10-14 17:45:36	53어8329	한***업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행8로
371	남산1호터널	2025-10-14 19:48:46	175나7105	주식회사 다***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372	남산1호터널	2025-10-14 19:49:29	187서5239	이*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15길
373	남산1호터널	2025-10-15 08:19:07	53조6700	이*춘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로40번길
374	남산1호터널	2025-10-15 08:21:02	160가6765	E*****V S*****I A*****H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
375	남산1호터널	2025-10-15 09:02:32	11조1783	주식회사 넥****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376	남산3호터널	2025-10-15 09:43:04	61더5857	(주)노****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77	남산3호터널	2025-10-15 09:53:57	109하6844	주식회사 제***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789번길
378	남산3호터널	2025-10-15 10:07:13	112보1235	제****크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79	남산1호터널	2025-10-15 11:01:35	301버2852	정*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380	남산1호터널	2025-10-15 12:06:05	157고4856	이*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81	남산1호터널	2025-10-15 12:32:42	16서4009	손*전	경기도 의왕시 갈미1로
382	남산1호터널	2025-10-15 13:04:32	128가1774	조*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383	남산3호터널	2025-10-15 13:56:41	06조0307	주식회사 도*****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384	남산3호터널	2025-10-15 15:47:56	376다3201	사단법인 흥*****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385	남산3호터널	2025-10-15 15:56:04	178도8065	주식회사 바*****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86	남산1호터널	2025-10-15 16:04:08	140여1667	문*임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금곡로79번길
387	남산1호터널	2025-10-15 18:04:40	28오7821	정*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납부자	주소
388	남산1호터널	2025-10-15 18:14:37	278서9041	김*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로8길
389	남산1호터널	2025-10-15 19:34:12	187서5239	이*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사로15길
390	남산1호터널	2025-10-15 20:50:18	46누9532	이*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1	남산1호터널	2025-06-17 20:19:25	155누1166	10,300	쥬레*리	서울시 강남구
2	남산1호터널	2025-06-23 17:56:05	288루1777	10,300	허*우	서울시 강남구
3	남산1호터널	2025-06-24 11:43:00	195호9947	10,300	권*수	서울시 강남구
4	남산3호터널	2025-06-24 14:11:36	145가4181	10,300	호**원	전라북도 원주군
5	남산1호터널	2025-06-25 17:20:08	105주2555	10,300	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6	남산1호터널	2025-06-30 11:25:11	169호3117	10,300	오*진	서울시 강서구
7	남산1호터널	2025-06-30 17:39:44	220하1080	10,300	김*성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8	남산1호터널	2025-07-04 08:38:04	128호4030	10,300	신*준	경기도 시흥시
9	남산1호터널	2025-07-04 14:17:32	133하2831	10,300	황*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0	남산3호터널	2025-07-07 08:04:27	115호4577	10,300	이*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1	남산3호터널	2025-07-07 20:31:50	125호9199	10,300	강*완	서울시 용산구
12	남산1호터널	2025-07-08 09:37:09	199하7693	10,300	쥬폴***캠	경기도 하남시
13	남산1호터널	2025-07-11 12:45:46	171하5349	10,300	JIN D***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4	남산1호터널	2025-07-15 15:59:58	171하4538	10,300	지*영	서울시 서초구
15	남산1호터널	2025-07-16 11:20:02	143호3448	10,300	정*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16	남산1호터널	2025-07-16 19:40:04	196하4938	5,150	김*원	서울시 관악구
17	남산3호터널	2025-07-16 20:24:42	161하1253	10,300	박*환	경기도 의정부시
18	남산1호터널	2025-07-17 16:10:36	198하4907	10,300	현*****링쥬	서울시 종로구
19	남산3호터널	2025-07-17 18:19:31	156하1669	5,150	이*곱	서울시 동작구
20	남산3호터널	2025-07-18 18:25:33	156하1669	5,150	이*곱	서울시 동작구
21	남산1호터널	2025-07-18 18:57:44	101하6661	10,300	이*준	경기도 화성시
22	남산1호터널	2025-07-21 08:17:04	140러5370	10,300	김*중	경기도 부천시
23	남산3호터널	2025-07-21 10:14:15	155라6311	10,300	박*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4	남산3호터널	2025-07-21 17:31:45	126하5767	10,300	사단법인 자라섬 청** ****	경기도 가평군
25	남산3호터널	2025-07-22 19:35:29	156하1669	5,150	이*곱	서울시 동작구
26	남산1호터널	2025-07-23 07:49:57	174호5568	10,300	주식회사 이** **우	서울시 중구
27	남산3호터널	2025-07-24 20:38:49	125하2409	10,300	B*****T	서울시 종로구

순번	요금소	통행일시	차량번호	과태료	납부자	주소
28	남산1호터널	2025-07-25 16:04:53	172허1463	10,300	박*호	인천시 연수구
29	남산3호터널	2025-07-25 18:13:08	125하1997	10,300	이*영	서울시 서초구
30	남산1호터널	2025-07-28 15:48:57	04호3180	10,300	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31	남산3호터널	2025-07-28 19:45:15	208나3851	10,300	주식회사 도****설	경기도 의정부시
32	남산1호터널	2025-07-29 12:34:10	370수3181	10,300	주에*****트	경상북도 경주시
33	남산1호터널	2025-07-30 13:56:39	143호3148	10,300	주식회사 원***텍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34	남산3호터널	2025-07-31 12:40:00	36하1307	10,300	SONG L**G	서울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999호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지원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236호(2026.3.17.) 「2026년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2026년도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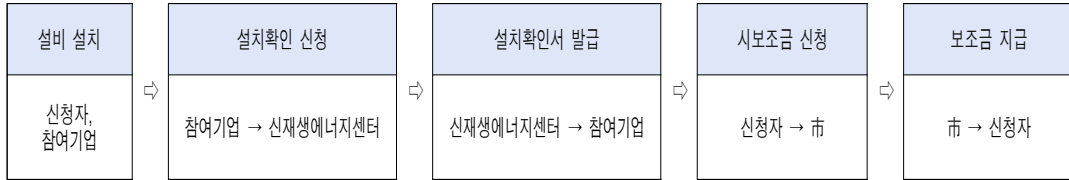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지원규모 : 1백만원
2. 지원대상 : 대상기간 동안 주택에 새로 설치된 태양열·지열 설비
3. 대상기간 : 2025. 12. 01. ~ 2026. 11. 30.
-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확인서 발급일 기준
4. 지원자격(①, ②, ③ 모두 충족)
 - ① 서울 소재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② 대상기간 내 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의 정부 보조금을 수급
 - ③ 설치 에너지원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자
5.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11. 30.(예산한도 내 선착순 마감)
6. 시보조금 지원기준

구 분	지원 용량	시 보조금	비고
태 양 열	20㎡ 이내	㎡당 80천원	호(세대) 당 지원
지 열	17.5kW 이내	kW당 100천원	

- ※ 1. 시보조금 지원신청 접수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2. 지원 예산은 사업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8. 지원 신청서 제출 안내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 26.11.30. 중 선착순 마감(평일 9~18시/토,일,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6)

※ 이메일 주소 : shin01@seoul.go.kr

※ 우편접수 주소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층 녹색에너지과 열에너지사업팀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 접수

- 지원신청서 제출자 중 선착순 접수 마감(접수 순번이 지급 순위)
- 이메일 제출의 경우, 담당자의 접수 완료 통지를 이메일로 받은 날짜순으로 접수 순번 인정
(이메일로 선 접수 후 원본 우편발송 필요)
- 우편 제출의 경우 담당자 접수날짜로 접수 순번 인정
- 시공기업이 대리 신청 가능하고, 여러 건을 일괄 제출 시, 순번 정해서 제출
(시 지원금액이 예산 한도에 다다를 경우, 자체 순번 미기재 건은 접수 불가)
-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요망
(만일의 사고, 전달 착오 등으로 이메일, 우편 제출 신청서가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접수 순번에 불이익을 받거나,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음)

9. 시보조금 지급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한 설치확인서 등 구비서류 확인 후, 하자가 없을 시 신청자(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계좌로 입금
- 시보조금은 매월 접수된 지급신청서를 취합한 후 수시 지급

10. 시보조금 신청 시 구비서류

- 가. 2026년 태양열·지열 주택지원사업 시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1]
-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1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발급)
- 다. 전력 등 에너지사용량 정보제공 동의서[서식2] 1부
- 라. 현장 주요사진 작성 양식(설비 준공 전·후 사진)[서식3]
- 라.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1부
- 마. 에코마일리지 가입확인서 1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좌측 메뉴)
증명서 '에코마일리지 가입확인서' → 출력하기)

11. 주의사항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지원대상자(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계좌로 하되,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대행(시공기업에 한함) 가능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주택 사업 전·후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지원 규모·단가 및 지원 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에코마일리지 가입일은 별도 제한 없음(신청서 제출일 가입도 인정)
- 서울특별시는 설비 설치에 따른 시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발생하는 문제(설비성능 보장, A/S 및 비용 발생, 채권·채무 관계 등), 관련 법규 미준수에 따른 문제, 소음 발생 등의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없음

12. 기타사항

- 정부보조금 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s://www.knrec.or.kr>) 및 그린홈(<https://nr.energy.or.kr>)으로 문의
 -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02-2071-3815)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02-2133-3566)로 문의

- 붙임 1. [서식1] 2026년 주택지원사업(태양열·지열) 시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2. [서식2] 전력 등 에너지사용량 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서식3] 현장 주요 사진 작성 양식 1부. 끝.

[서식 1]

「2026년 주택지원사업(태양열·지열)」 시보조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설치장소					
설치기간		~	센터설치확인일	20 . . .	
신청분야 · 규모		☐ 태 양 열 m ²	☐ 지 열 kW		
공 사 비 (단위 : 원)		총공사비	국고보조금	시 보조금	자부담
시비 신청액		금 원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시공업체		업체명 :	담당자 :	전화 :	
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완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1부(신·재생에너지센터 발급)					
2. 전력 등 에너지사용량 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설비 준공사진 1식(전·후 사진)					
4.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1부					
5. 에코마일리지 가입확인서 1부					

[서식2]

**2026년 태양열·지열 주택지원사업
전력 등 에너지사용량 정보제공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본인은 2026년도 서울시 주택지원사업(태양열·지열)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전력, 일반도시가스 공급사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자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 개인정보 DB 수집의 목적
 - 서울시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의 정책개발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동 사업과 관련되어 전력 및 도시가스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이용방법: 재생에너지 설치 전·후 비교 및 보급 통계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 수집내용: 보조금 지급 대상자 정보(주소, 성명, 전화번호), 에너지 사용량(전기, 가스 등), 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관련 정보(설치업체, 설치용량, 이용률 및 에너지생산량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10년간
- ※ 신청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보급사업 실적관리 등 어려움으로 인해 시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식3]

현장 주요 사진

☐ 설치장소 : 서울시 ○○구 ○○동

☐ 소 유 자 : ○○○

설치 전	설치 후
집열기(태양열), 히트펌프(지열) 등	축열조, 기계실내부(지열) 등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04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제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연번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과금액	반송사유
	성명	주소			
1	오*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85번길 21	차량의 속하중 초과	금515,000원	보관기간경과
2	김*수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108번길 27	차량의 총중량 초과	금515,000원	보관기간경과

※체납액은 2026.2.23.일 기준이며, 가산금 등으로 실제 체납금액은 다를 수 있음.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가.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로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944-5421, 팩스번호: 02-945-507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1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통지서를 우편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사망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6. 4. 2. ~ 2026. 4. 16.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납 기	횟수	금 액(원)
03854617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16가길 7-9, 501호 (오류동)	상하수도요금	25년 1월 납기 ~ 26년 1월 납기	7	202,030

나. 압류 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원)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건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16가길 7-9, 501호 (오류동)	김○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4길 61-23, 나동 602호(창동, 신우프라임시티)	202,030	26.3.13.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서 수도사업소 요금과 배서현(☎02-3146-390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20호

승강기사업자 행정처분(경고) 공시송달 공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승강기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6.4.2. ~ 2026.4.16.(15일간)

2. 송달대상 및 처분 개요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의 원인	예정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쥬신우 유비코스 (이영달)	승강기 유지관리업 서울-6110000-420 -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301호(문래동6가)	승강기유지관리업을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	경고 (' 26.2.23)	법 제44조제1 항 제10호

3. 경고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02)2133-7276으로 문의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21호
승강기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승강기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동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6.4.2. ~ 2026.4.16.(15일간)

2. 송달대상 및 처분 개요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의 원인	처분내용	처분 근거
대성엘리 베이터(주) (서용석)	승강기 유지관리업 서울-6110000-415 -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15, 305호(사당동)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 26.2.23)	법 제44조 제1항 제9호

3.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등록취소 처분 이후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등록증은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02)2133-7276으로 문의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22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양곡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6. 4. 2. ~ 4. 16.

2. 처분대상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허가번호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문일시 및 장소
남양그레인 (강*원)	1-0269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	무실적 3개월 (2025년 11월, 12월, 2026년 1월)	중도매업 허가취소	2026.4.17.(금) 14:0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7층(농수산유통과)

3. 처분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 동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4.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수산유통과(☎02-2133-44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24호

중합건설사업자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6.4.2.~2026.4.16.(14일간)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의견제출 통지기한	처분 근거
원종합건설 (주) (박한상)	건축 공사업 01-5294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99,3층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 공사명 : 다림티센 발안공장 보관소 조성공사 ○ 하도급사 : (주)주성지엠피 ○ 하도공종 : 다림티센 발안공장 보관소 조성공사증 리모델링공사 ○ 하도계약일 : 20251105 ○ 하도금액 : 1074700000 ○ 공사ID : 2299263	시정명령	2026.4.17.(금)	법 제81조 제4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0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2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예고서를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6. 4. 2. ~ 2026. 4. 17.

2. 공시송달 내역(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39244730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5길 90-5, B동 302호	수도요금	2024년 8월 등 9납기	9회	266,920원	해당 내역은 2026. 3. 2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5길 90-5, B동 302호	김*미	710202-2*****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5길 90-5, B동 302호		266,920원	2026. 4. 20. (예정)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고	
		과목	납기	횟수	금액		
042662985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길 55, 501호	수도요금	2024년 10월 등 8납기	8회	194,150원	해당 내역은 2026. 3. 2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길 55	김*기	861018-1***** (수취인불명)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26가길 19, 301호	194,150원	2026. 4. 20. (예정)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4005324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4길 59, 402호	수도요금	2025년 2월 등 7납기	7회	894,830원	해당 내역은 2026. 3. 2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4길 59, 402호	주*염	910806-6*****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4길 59, 402호		894,830원	2026. 4. 20. (예정)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28351308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10길 64, 가동 105호	수도요금	2025년 2월 등 6납기	6회	267,910원	해당 내역은 2026. 3. 2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10길 64, 가동 105호	김*은	640105-2*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10길 64, 가동 105호		267,910원	2026. 4. 20. (예정)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비 고	
		과 목	납 기	횟 수	금 액		
022104439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74, 가동 1015호	수도요금	2025년 2월 등 6납기	9회	152,580원	해당 내역은 2026. 3. 2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74, 가동 1015호	정*훈	790612-1***** (폐문부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로 132, 704동 1301호		152,580원	2026. 4. 20. (예정)

3.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상열(☎ 02-3146-45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52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2층 도시공간전략과(☎02-2133-6978)
영등포구청 본관 5층 도시계획과(☎02-2670-3550)

3. 열람내용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29,539	-	229,539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9,500	39,500	17.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29,539	감) 39,500	190,039	82.8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열람장소 비치 도서로 같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전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게재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5. 의견제출 :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

※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확인 가능

※ 본 열람(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67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폐업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유니베라 서강점	서울 후 제412호	김숙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2길 29, 201호 (서교동)	폐업 (‘26.03.09.)	-	-
2	오휘금천 독산점	서울 후 제756호	고종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6층 612호 (독산동)	폐업 (‘26.03.19.)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7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 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및 본점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6. 04. 02. ~ 2026. 04. 17.(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체납내역 및 압류에 관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고
		과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00592688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27안길 49 (북아현동 251-31)	수도요금	2023.01.31. 외 17 납기	18회	537,040원	등기번호 : 11050-0700-329 7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거주지			
부동산 (건물, 토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27안길 49 (북아현동 251-31)	강**	56070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27안길 49 (북아현동 251-31)		537,040원	2026.04.20.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고
		과목	체납납기	체납횟수	체납액		
0059668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4자길 16, 201호 (북아현동 113-44)	수도요금	2023.01.31. 외 18 납기	19회	585,500원	등기번호 : 11050-0700-329 8 반송사유 : 폐문부재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압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거주지			
부동산 (건물, 토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4자길 16, 201호 (북아현동 113-44)	천**	6105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4자길 16, 2층 에이호 (북아현동)		585,500원	2026.04.20.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재산압류예고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 발생일(2026.04.17.)이 납부기한임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예정일 전 체납액을 납부하실 의사가 있으신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한동수 주무관 (☎ 02-3146-358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71호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따라 부과한 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재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한 사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공 고 명 : 시립장사시설 관리비 및 재사용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2. ~ 2026. 4. 17. (15일간)
3. 안내사항
 - 납부기한 : 2026. 04. 29.
 - 공고대상자는 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운영팀(031-960-0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대상 :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인합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	봉안	19951101-004	10-07-01167	백옥순	이*혁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역곡로489번길	100,000
2	봉안	19951101-005	10-07-01166	장송학	장*익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00,000
3	봉안	19951104-002	10-07-01152	성복덕	성*길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242번길	100,000
4	봉안	19951115-008	10-06-01086	신대식	신*훈	2026-01-29 00:0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강원도 횡성군 우항4길	100,000
5	봉안	19951116-002	10-06-01085	진옥란	김*진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대방동	100,000
6	봉안	19951120-003	10-06-01061	박아람	김*술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100,000
7	봉안	20001101-006	62-01-10005	박영석	박*우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청파로71나길	100,000
8	봉안	20001101-024	62-01-10023	김순용	김*환	2026-01-29 00:00	미배달 기타(반송함 반송)(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80,000
9	봉안	20001101-026	62-01-10025	구영조	구*표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인천 부평구 안남로41번길	100,000
10	봉안	20001101-035	62-01-10034	김양순	최*철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갈현로29길	180,000
11	봉안	20001101-047	62-01-10044	천유순	공*현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소사로247번길	180,000
12	봉안	20001102-021	62-01-10065	강기주	강*호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오금로51길	100,000
13	봉안	20001102-037	62-01-10081	김용백	김*희	2026-01-29 00:00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116번길	100,000
14	봉안	20001104-009	62-01-10127	김금선	오*근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19길	45,000
15	봉안	20001104-045	62-01-10162	이순학	이*원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18길	100,000
16	봉안	20001105-006	62-01-10167	이주녀	이*만	2026-01-29 00:0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동작구 상도5동	100,000
17	봉안	20001106-002	62-01-10198	조석성	이*숙	2026-01-29 00:0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31길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합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8	봉안	20001106-006	62-01-10202	진도원	정*우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신정로13길	100,000
19	봉안	20001107-004	62-01-10234	김금순	이*익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46길	25,000
20	봉안	20001107-008	62-01-10238	임소제	박*규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66길	25,000
21	봉안	20001107-013	62-01-10243	송인광	송*철	2026-01-29 00:0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충청남도 태안군 동문7길	100,000
22	봉안	20001107-026	62-01-10256	최종태	고*자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자양로26길	100,000
23	봉안	20001107-039	62-01-10268	유복희	김*임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강원 평창군 올림픽로	100,000
24	봉안	20001108-006	62-01-10279	박경훈	박*정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0,000
25	봉안	20001110-005	62-01-10355	한광선	한*자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충북 진천군 장기1안길	25,000
26	봉안	20001110-038	62-01-10388	최완식	최*하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허준로	25,000
27	봉안	20001110-042	62-01-10391	임재욱	이*자	2026-01-29 00:00	미배달 기타(반송함수거)(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송파구 오금로	100,000
28	봉안	20001111-006	62-01-10404	조정구	유*추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5,000
29	봉안	20001111-017	62-01-10414	나용자	조*현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부천시 삼작로502번길	180,000
30	봉안	20001111-018	62-01-10415	김종희	김*기	2026-01-29 00:0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관악구 신림로58길	25,000
31	봉안	20001111-034	62-01-10427	원종진	원*구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80,000
32	봉안	20001111-037	62-01-10429	이금자	구*우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100,000
33	봉안	20001112-014	62-01-10448	송기욱	편*준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문성로32길	100,000
34	봉안	20001112-038	62-01-10472	오세만	오*석	2026-01-29 00:0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100,000
35	봉안	20001113-001	62-01-08775	김창희	김*수	2026-01-29 00:0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인천 남동구 만수로75번길	18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합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36	봉안	20001113-054	62-01-10518	오가자	조*남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100,000
37	봉안	20001114-017	62-01-10535	이금순	이*승	2026-01-29 00:0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44길	25,000
38	봉안	20001114-027	66-01-29607	변규영	변*익	2026-01-29 00:0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도봉구 도봉로154길	100,000
39	봉안	20001115-003	62-01-10560	주봉길	주*운	2026-01-29 00:00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광명시 소하로	45,000
40	봉안	20001116-001	62-01-10596	신대운	신*	2026-01-29 00:0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송등길	100,000
41	봉안	20001116-004	62-01-10599	양희영	양*경	2026-01-29 00:00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은평구 연서로16길	180,000
42	봉안	20001116-010	62-01-10604	강대성	강*남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개봉동	100,000
43	봉안	20001116-035	62-01-10629	김형준	김*근	2026-01-29 00:00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노원구 섬밭로	100,000
44	봉안	20001116-041	62-01-10635	강상규	강*후	2026-01-29 00:0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100,000
45	봉안	20001117-015	62-01-10653	이창자	오*숙	2026-01-29 00:0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동작구 사당5동	25,000
46	봉안	20001118-047	62-01-10717	황용출	황*운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138번길	45,000
47	봉안	20001119-026	62-01-10742	우태현	우*현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강서로	100,000
48	봉안	20001120-023	62-01-10772	박한명	박*일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 양천구 목동	100,000
49	봉안	20001120-031	62-01-10780	고병운	고*명	2026-01-29 00:0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동	180,000
50	봉안	20001120-053	62-01-10794	김완배	김*희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망우로71길	100,000
51	봉안	20001121-002	62-01-10796	황금란	이*훈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265길	100,000
52	봉안	20001121-029	62-01-10822	김순녀	전*세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동일로144가길	100,000
53	봉안	20001122-027	62-01-10862	이진호	이*욱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합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54	봉안	20001123-019	62-01-10893	김춘임	박*송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길	100,000
55	봉안	20001124-002	62-01-10914	최규현	최*훈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인천 동구 화도진로106번길	180,000
56	봉안	20001124-012	62-01-10921	최중복	최*수	2026-01-29 00:00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1길	100,000
57	봉안	20001124-039	62-01-10936	이복녀	최*규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경기 파주시 보광로1125번길	100,000
58	봉안	20001125-052	62-01-10983	김복환	김*수	2026-01-29 00:00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강원 춘천시 셋말길	45,000
59	봉안	20001126-025	62-01-11006	연규환	변*섭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충북 증평군 방곡1길	180,000
60	봉안	20001127-007	62-01-11022	김용환	송*석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309번길	100,000
61	봉안	20001127-017	62-01-11032	하분희	김*성	2026-01-29 00:0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2길	25,000
62	봉안	20001127-032	62-01-11047	조왕상	조*우	2026-01-29 00:00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인천 동구 셋골로193번길	45,000
63	봉안	20001128-036	62-01-11087	김종임	최*철	2026-01-29 00:00	미배달 기타(반송함)(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송파구 가락로31길	100,000
64	봉안	20001129-008	62-01-11111	최후전	김*준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경기 시흥시 함송로29번길	100,000
65	봉안	20001129-013	62-01-11115	이창임	김*식	2026-01-29 00:00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은평구 불광로	100,000
66	봉안	20010608-017	63-01-19932	허명임	김*동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경기 김포시 전원로38번길	200,000
67	봉안	20010717-036	63-01-21364	성도제	성*문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1동	75,000
68	봉안	20051102-001	73-05-25906	윤용순	윤*민	2026-01-29 00:0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중구 청구로	75,000
69	봉안	20051104-004	73-05-25914	유효임	박*식	2026-01-29 00:0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8가길	75,000
70	봉안	20051105-005	73-05-25918	김효선	이*형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경기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75,000
71	봉안	20051108-001	73-05-25927	선원자	이*열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경기 시흥시 마유로423번길	7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합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72	봉안	20051109-003	73-05-25933	박재숙	박*학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충북 제천시 응두천로44길	75,000
73	봉안	20051111-004	73-05-25938	백향순	오*석	2026-01-29 00:0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도 광주시 문형새솔길	75,000
74	봉안	20051114-005	73-05-25952	정열이	정*식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29라길	75,000
75	봉안	20051115-001	73-05-25953	유태란	이*희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고척로21길	75,000
76	봉안	20051119-004	73-05-25966	이정례	윤*심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83번길	75,000
77	봉안	20051119-009	73-05-25970	이진교	이*덕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19길	75,000
78	봉안	20051120-004	73-05-25973	신동국	최*순	2026-01-29 00:00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동작구 상도로24길	75,000
79	봉안	20051126-005	73-05-25990	강문희	강*호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경북 경주시 대안길35번길	75,000
80	봉안	20051129-006	73-05-25997	유춘매	김*섭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7다길	75,000
81	봉안	20051130-006	73-02-17504	오귀선	김*규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75,000
82	봉안	20101102-002	51-01-02880	엄홍성	엄*경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 노원구 노원로	75,000
83	봉안	20101106-001	51-01-03173	고제운	고*현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71길	75,000
84	봉안	20101106-010	51-01-03290	권연식	권*열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충남 서산시 장동돌금길	75,000
85	봉안	20101107-002	51-01-03325	이귀만	이*훈	2026-01-29 00:0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강북구 오현로	75,000
86	봉안	20101112-003	51-01-03769	나명자	나*천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75,000
87	봉안	20101119-001	51-01-04118	최선애	김*권	2026-01-29 00:0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75,000
88	봉안	20101128-003	51-01-05102	정수영	정*훈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대구 중구 공평로	75,000
89	봉안	20120131-003	66-01-31500	김판근	김*문	2026-01-29 00:0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1로	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합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90	봉안	20151101-002	41-01-03978	이규덕	이*철	2026-01-29 00:00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구로구 공원로7길	25,000
91	봉안	20151102-002	41-01-04070	김소저	허*호	2026-01-29 00:0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5,000
92	봉안	20151104-002	41-01-04149	신영애	노*현	2026-01-29 00:00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용산구 보광로30길	25,000
93	봉안	20151107-006	41-01-04322	이미경	엄*식	2026-01-29 00:0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5,000
94	봉안	20151109-001	41-01-04407	황신숙	민*홍	2026-01-29 00:0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남양주시 먹갓로28번길	25,000
95	봉안	20151109-003	41-01-04453	주영순	주*덕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 강남구 광평로56길	25,000
96	봉안	20151111-002	41-01-04552	김명옥	이*자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2가길	25,000
97	봉안	20151113-004	41-01-04726	박선영	조*현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 관악구 복은길	25,000
98	봉안	20151113-008	41-01-04745	윤병악	박*철	2026-01-29 00:00	미배달 이사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7길	25,000
99	봉안	20151118-001	41-01-05055	김동일	김*환	2026-01-29 00:00	미배달 수취인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2나길	25,000
100	봉안	20151119-001	41-01-05124	이근성	이*섭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71번길	25,000
101	봉안	20151124-003	41-01-05670	이청자	정*원	2026-01-29 00:0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636번길	25,000
102	봉안	20151125-004	41-01-05744	조인숙	전*준	2026-01-29 00:00	미배달 기타(보관기간경과)(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25길	25,000
103	봉안	20151127-004	41-01-05867	이효옥	최*희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00
104	봉안	20201102-006	71-07-04659	서성식	서*진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9길	25,000
105	봉안	20201104-007	71-08-05396	이옥춘	이*희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25,000
106	봉안	20201109-001	72-09-07253	차명근	차*민	2026-01-29 00:00	수취함두함 (폐문부재)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25,000

연번	구분	관리번호	봉안합번호 표식주번호	사망자	수취인	방문일	배달결과	발송 주소	미납금액
107	봉안	20201111-007	72-10-08060	유동아	이*정	2026-01-29 00:00	미배달 기타(선택등기 반송함에서 수거함)(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57길	25,000
108	봉안	20201116-008	72-12-09616	이정호	김*철	2026-01-29 00:0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7길	25,000
109	봉안	20201116-009	72-12-09634	김옥중	김*중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5,000
110	봉안	20201119-004	72-12-10245	전판철	전*순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4길	25,000
111	봉안	20201121-001	72-14-11127	박승준	박*후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25,000
112	봉안	20201123-003	72-14-11676	정금근	김*수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5,000
113	봉안	20201127-001	72-15-12882	박순복	김*건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25,000
114	봉안	20201127-003	72-15-12907	노창영	노*찬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6가길	25,000
115	분묘	19721107-005	110916	박시윤	박*태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은평구 연서로	235,060
116	분묘	19780331-004	104087	백인희	김*중	2026-01-29 00:0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마포구 신촌로24길	280,370
117	분묘	19871224-006	204193	황금년	김*홍	2026-01-29 00:00	미배달 주소불명(반송불요, 1개월 보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9길	280,370
118	분묘	19920701-011	400422	박장순	박*순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구로구 경인로35길	280,370
119	분묘	19960829-001	11060239	최춘현	최*원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중랑구 신내로	141,600
120	분묘	20101116-001	2002068	마덕일	마*혁	2026-01-29 00:00	수취함투함 (폐문부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5길	767,75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81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박*자 등 346명
4. 공고기간 : 2026. 4. 2. ~ 2026. 4. 22.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26. 4. 2. ~ 2026. 4. 22.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 (<http://cartax.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장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치(<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사전통지서 공시승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220하16**	박*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2-05 17:2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	220하78**	(*)*엔*이*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06 13:09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	229하94**	황*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2-05 17:2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	149하79**	A*J*W*N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05 19:0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	154머73**	(*)*트*퍼*쳐	경기도 하남시	2026-02-06 19:25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6	15소81**	주*희*다*테*하*스	경기도 하남시	2026-03-03 07: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	37가29**	G*L*M*V*R*L*I*O*I* D*N*G*I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07 17:2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	257루82**	박*록	경기도 성남시	2026-03-02 12:4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50,000
9	66로80**	R*K*Y*A*A*	경기도 이천시	2026-03-05 12:0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0	35로28**	정*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2-27 19:2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1	13두94**	중*손*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03 08:22	사당역~이수역	50,000
12	801노23**	장*윤	경기도 가평군	2026-02-06 09:12	구로교~대림사거리	50,000
13	14노68**	이*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04 11:0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4	191보20**	Q*A*Y*N*F*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04 14:0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5	96고66**	이*숙	경상북도 의성군	2026-03-06 10:0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6	69더93**	김*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6-03-06 17:3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7	서울32사67**	오*웅	경기도 파주시	2026-03-06 08:0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8	56거24**	김*욱	경기도 고양시	2026-03-08 20:47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즈산부인과	50,000
19	54다03**	김*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2-26 16: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35	50,000
20	66로80**	R*K*Y*A*A*	경기도 이천시	2026-03-05 12:0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1	서울85자94**	한*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3 15: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2	222하16**	주*희*하*드*스*	경기도 김포시	2026-02-20 15:0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3	157누59**	장*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04 17:3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4	133하69**	프*임*트*주*희*	경기도 성남시	2026-03-04 20:2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5	32버51**	김*현	경기도 용인시	2026-03-05 10:2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6	191하14**	(*)*리*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13 19: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7	서울32자57**	강*세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03 07:4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8	59고43**	한*태	경기도 구리시	2026-03-04 15:0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9	812너82**	청*렌*(미*)	경기도 하남시	2026-02-20 07:5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0	277무21**	박*동	경기도 안산시	2026-03-03 08:31	잠실역~잠실새내역	50,000
31	62구16**	김*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05 08:28	화랑대사거리~삼육대학	50,000
32	109더88**	이*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2-25 11:0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3	63모95**	A*N*K*L*T	경기도 여주시	2026-03-04 09:3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4	82저35**	이*만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05 17:4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5	181호66**	주*희*에*스*흠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2-26 18:0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6	375보27**	P*A*C*E*G*U*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27 15:25	은천삼거리~봉천로사거리	50,000
37	03거84**	이*홍	경기도 성남시	2026-01-16 10:09	북정역~장지교교차로	50,000
38	14두15**	임*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27 10:24	잠원로 204주변	50,000
39	25소05**	박*우	경상북도 경주시	2026-03-06 20:1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0	142호61**	(*)프*렌*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5 11:41	LG에클라트 평안장 앞 이정표	50,000
41	163도81**	H*N*O*G*U*	경기도 평택시	2026-03-03 19:0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2	230허49**	최*영	경기도 성남시	2026-02-15 21:5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3	08더36**	Y*H*O*U*N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2-27 18:28	동산육교~은평뉴타운	50,000
44	서울32자32**	나*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27 08:23	박석교교차로~은평성모병원사거리	50,000
45	63도38**	이*수	경기도 양주시	2026-03-03 08:57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6	146하50**	권*근	경기도 광주시	2026-02-18 23:4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7	63려62**	최*주	경기도 부천시	2026-03-05 09:24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48	167버71**	허*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6-03-03 08:05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49	172호82**	사*글*별*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6-02-24 15:4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0	06보57**	김*연	경기도 평택시	2026-02-23 11:41	잠실3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51	서울31사19**	조*희	경기도 안양시	2026-02-23 11:44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교차로	50,000
52	서울31아82**	김*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2-23 12:56	종합운동장교차로~잠실새내역	50,000
53	서울32아21**	박*운	경기도 구리시	2026-02-24 10:05	삼성교~종합운동장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4	58머31**	류*권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2-24 13:00	종합운동장교차로~잠실새내역	50,000
55	105도39**	권*숙	경기도 성남시	2026-02-24 14:06	잠실3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56	275수72**	주*희*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7 08:16	대치역~도곡역	50,000
57	14너48**	김*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06 19:0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8	69오42**	임*재	서울특별시 중구	2026-01-06 17:10	서초IC~반포IC	50,000
59	198우37**	나*욱	경기도 파주시	2026-02-27 09:02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60	13라42**	전*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26 08:48	성내교	50,000
61	15터87**	이*우	경기도 고양시	2026-03-02 14:17	무악재역~독립문역	50,000
62	서울32아35**	김*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2-26 08:30	온수골사거리~노원역	50,000
63	서울31사40**	정*순	경기도 의정부시	2026-02-27 08:39	온수골사거리~노원역	50,000
64	서울32아37**	최*묵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27 10:40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65	259구37**	(*)*이*킴*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02 22:3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66	39너72**	W*Y*N*A*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6-03-05 08: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67	69나66**	이*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06 17:1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68	37허83**	전*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2-11 19:24	영등포구 새강역 1번출구 앞	50,000
69	서울32자58**	문*열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01 18:5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0	66로80**	R*K*Y*A*A*	경기도 이천시	2026-03-05 09:5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71	56러87**	양*미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3-06 08:3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72	226모55**	김*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2-24 20:05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73	141노85**	그*픽*(*)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6 18: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4	17조11**	유*예	경기도 양주시	2026-03-03 15:4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75	116저69**	Z*E*G*U*U*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5 16:5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76	50수02**	이*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3-02 12:27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77	317루90**	A*A*T*Y*I*A*	경기도 화성시	2026-03-04 17:3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8	42마03**	김*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2-06 11:05	서울교교차로~여의도공원앞교차로	50,000
79	86터20**	최*호	경기도 안산시	2026-03-03 09:28	북정역~장지역	50,000
80	48오08**	정*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3-03 19:14	불광역~연신내역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1	197고39**	김*주	경기도 평택시	2026-03-02 14:0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2	14노68**	이*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04 11:0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83	46보75**	주*회*메*스*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6-03-05 17: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4	서울강남나15**	L*U*O*G*H*G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7 14:01	잠원로 166-17주변	40,000
85	149다98**	주*회*영*엔*	경기도 구리시	2026-03-04 10:5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6	11오71**	김*탁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06 18:1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87	191호18**	주*회*호*파*하*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2-25 07:5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88	63오95**	A*N*K*L*T	경기도 여주시	2026-03-04 09:3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89	90더94**	주*회*아*모*	경기도 화성시	2026-03-03 14:2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90	40주50**	유*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04 09:34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91	325너11**	H*A*G*H*N*Z*U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3-05 17:3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92	381주98**	주*회*코*교*그*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6-03-08 14:12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93	162라55**	안*모	경기도 성남시	2026-03-04 13:24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50,000
94	07부66**	김*근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3-07 09:2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95	17수31**	곽*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05 16:31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96	28너53**	한*완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02 14:41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50,000
97	서울32사82**	김*관	경기도 부천시	2026-03-06 12:09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98	07머69**	이*희	대전광역시 서구	2026-03-03 17:1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99	01누08**	호*개*주*회*	경기도 평택시	2026-03-05 19:28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00	300도63**	김*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04 18:4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01	18무61**	L*F*Z*	경상남도 김해시	2026-03-04 18:0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02	116저69**	Z*E*G*U*U*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4 16:5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03	257러60**	장*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07 15:2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04	97도65**	김*숙	충청북도 단양군	2026-03-04 07:4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05	167조20**	손*용	경기도 화성시	2026-03-01 18:49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스산부인과	50,000
106	32버51**	김*현	경기도 용인시	2026-03-03 09:0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7	11어92**	권*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04 16: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청담동,신영빌딩)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8	93구98**	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6 08: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09	125호95**	장*대	경기도 양주시	2026-02-23 07:4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10	133호63**	임*명	경기도 시흥시	2026-02-24 20:1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11	331여22**	T*A*R*B*R*	경기도 안산시	2026-03-04 18:1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12	216보70**	H*M*N*O*K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3 20:2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13	322고47**	김*은	경기도 성남시	2026-02-20 20:59	압구정역~성수대교	50,000
114	176무56**	김*덕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4 08: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15	147기07**	(*)*스*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07 11:4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16	서울31바32**	최*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3-06 17:1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17	819가47**	주*화*매*커*코*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3-06 18:5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18	230허56**	김*환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24 17:1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19	서울31바52**	정*열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28 09:53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20	194허47**	전*진	충청남도 천안시	2026-02-11 16:2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21	65오02**	권*태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08 07: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22	156호91**	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2-09 09:0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23	서울32사73**	서*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05 11:04	강남소방서앞	50,000
124	서울마포자50**	김*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3-04 12:11	종각역~종로2가교차로	40,000
125	28조13**	김*록	경기도 파주시	2026-03-03 08:57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126	126호53**	(*)*은*	울산광역시 남구	2026-02-18 21:1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27	28무77**	김*선	경기도 부천시	2026-02-28 15:26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128	247러60**	구*환	경기도 용인시	2026-03-04 09:4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29	서울32아54**	장*근	경기도 하남시	2026-02-25 07:33	삼성교~종합운동장교차로	50,000
130	28우44**	이*섭	경기도 용인시	2026-02-25 13:21	강남소방서앞	50,000
131	227모97**	주*화*피*스*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6-02-26 09:53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50,000
132	199하75**	최*준	경기도 화성시	2026-02-18 23:5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33	서울38아65**	김*식	경기도 시흥시	2026-03-06 20:1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34	서울31바26**	오*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2-24 08:35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5	경기98바91**	(*)*드*카*	경기도 부천시	2026-02-28 07:05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60,000
136	116저69**	Z*E*G*U*U*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6 17:1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37	67루31**	최*호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03 09:14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138	50누07**	김*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1-26 12:43	천호대교~광장사거리	50,000
139	275수64**	신*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6-02-28 09:50	천호대교~광장사거리	50,000
140	309여87**	진*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2-28 11:14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41	34조58**	이*훈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03 11:22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42	서울31사88**	박*옥	서울특별시 중구	2026-02-26 19:19	YBM빌딩	50,000
143	182보93**	O*O*B*U*U*A*Y*E*	경기도 고양시	2026-03-02 22:4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44	08부47**	주*회*케*티*인*내*날	경기도 김포시	2026-03-01 18:2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45	111루18**	이*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3-02 13:2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46	370무13**	하*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2-27 18:1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47	63러24**	(*)*비	경기도 수원시	2026-02-27 10:26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48	230하63**	(*)*산*베*트	경기도 성남시	2026-02-25 17:2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49	54구82**	윤*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4 18:3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50	115더40**	주*회*대*악*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3-04 17: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51	157누59**	장*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03-04 17:3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52	101호75**	김*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19 14: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50,000
153	206두96**	유*규	경기도 안산시	2026-03-02 22:3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54	66누35**	김*영	경기도 김포시	2026-03-04 23:53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스산부인과	50,000
155	111조36**	L*M*R*N*	충청북도 청주시	2026-02-28 13:5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56	161허99**	주*회*울*리*퍼*	경기도 연천군	2026-02-27 08:19	숙명여고앞	50,000
157	284마10**	박*숙	전라남도 영광군	2026-02-28 16:4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58	28루28**	(*)*화*업	경기도 양평군	2026-03-05 17:5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9	242다67**	주*회*유*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6 07: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60	08서01**	이*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6-03-03 18:3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61	서울31아31**	오*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3 17:1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62	50가67**	이*학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3-04 09:29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63	83서34**	이*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03 16:28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스산부인과	50,000
164	101하18**	김*선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2-25 20:0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65	825더27**	최*규	경기도 성남시	2026-03-04 08:2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66	12라39**	강*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04 09:2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67	109더88**	이*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6-02-25 11:0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68	140거49**	조*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27 15:57	영등포유통상가교차로~양남사거리	50,000
169	서울38아34**	박*익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06 09:20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170	233호51**	김*영	경기도 하남시	2026-02-23 19:2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71	27조06**	주*화*애*치*디	경기도 구리시	2026-03-03 07:53	몽촌토성역~ 송파구청교차로	50,000
172	338주58**	(*)*앤*스*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5 09: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50,000
173	67도69**	F*N*Y*N*U*	충청남도 아산시	2026-03-05 17:3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74	서울32아28**	이*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3 12: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75	224호43**	(*)*성*트*	경기도 부천시	2026-03-04 08:2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76	22나35**	(*)*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5 10:4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77	03머13**	김*우	경기도 의왕시	2026-03-02 14: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50,000
178	126호53**	(*)*은*	울산광역시 남구	2026-02-18 21:1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79	38로99**	곽*아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03 17:2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80	81나03**	김*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03 17:0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81	116저69**	Z*E*G*U*U*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6 17:0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82	38무82**	이*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3-07 13:0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83	14라79**	지*복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08 14:53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84	서울87자11**	최*엽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02-24 14:51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185	230호36**	김*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13 17: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86	04조11**	오*희	충청북도 청주시	2026-02-24 11:2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87	38수41**	권*용	경기도 성남시	2026-03-03 15:0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88	서울31사24**	홍*범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2-26 15:10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역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9	275수72**	파*지*발*식*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2-27 15:07	종합운동장교차로~잠실새내역	50,000
190	서울31바82**	이*흔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2-25 09: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48 (여의도동)	50,000
191	59너58**	주*희*디*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4 07: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2	서울32바76**	김*국	경기도 김포시	2026-03-06 12:26	롯데백화점앞	50,000
193	서울관악하14**	정*민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06 12:36	롯데백화점앞	40,000
194	서울31아81**	정*명	경기도 양주시	2026-03-06 16:04	경기고등학교앞	50,000
195	108보36**	진*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28 21:10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196	296나45**	심*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02 10:5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97	49라43**	박*모	충청북도 청주시	2026-03-02 15:3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98	176하71**	박*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2-24 19:2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99	경기90배14**	이*화	경기도 양주시	2026-03-05 08:34	태릉~화랑대사거리	50,000
200	24다48**	박*혁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05 10:24	은천삼거리~봉천고개	50,000
201	12저54**	김*옥	경기도 하남시	2026-03-03 17: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02	223저35**	유*혁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2-27 19:4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03	312저76**	남*명환	경기도 성남시	2026-03-05 09: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04	29러57**	지*기	경기도 김포시	2026-03-03 18:5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05	379누41**	X*O*G*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01 14:2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06	339보84**	(*)*준*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4 08: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07	60주23**	정*선	경기도 수원시	2026-02-28 12:3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08	63저71**	임*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03 08: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09	68무92**	이*순	경기도 광주시	2026-03-01 10:2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10	103마57**	허*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1 19:1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11	45노02**	이*창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03 08:2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212	186가98**	김*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06 17: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13	820루70**	(*)*너*스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03 17:4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14	43구28**	이*진	경기도 광주시	2026-03-04 09:2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15	80모75**	이*민	경기도 광주시	2026-03-02 14:01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6	812다16**	유*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04 16:26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17	224하22**	썬*티*(*)	경상북도 포항시	2026-02-19 18:07	사당역~이수역	50,000
218	800주13**	주*회*가*개*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13 08:1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19	59도14**	김*석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04 18:23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20	199호50**	하*희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3-01 22:25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스산부인과	50,000
221	197하81**	윤*용	경기도 광주시	2026-02-20 17:3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22	03수43**	서*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02 11:00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50,000
223	824너48**	황*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03 07:2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24	05나32**	지*빈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6-03-03 18:5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25	53저70**	강*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05 17:4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26	서울32자51**	천*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2-25 16:01	은천삼거리~봉천로사거리	50,000
227	서울31사28**	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3-07 10:40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28	서울31사49**	김*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03 14:17	영등포구 셋강역 1번출구 앞	50,000
229	223허89**	김*원	경기도 평택시	2026-01-05 08:32	내곡교~어린이병원	50,000
230	04소10**	G*O*W*H*N*I	경기도 화성시	2026-03-02 10:57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231	14노68**	이*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6-03-04 11:0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32	서울32아31**	우*진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6-03-03 12:33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33	97도59**	김*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05 07:2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34	342무13**	주*회*타*	경기도 김포시	2026-03-06 09:4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35	30구72**	문*욱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6-03-03 09: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36	74오36**	Q*A*W*X*N*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05 17:09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237	19너16**	이*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6 07:5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38	95도15**	주*회*원*치*크	인천광역시 서구	2026-02-26 10:51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39	222허95**	박*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6-02-26 17:0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40	서울32바17**	김*용	인천광역시 서구	2026-02-24 14:03	영등포구 셋강역 1번출구 앞	50,000
241	서울32바22**	김*빈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3-05 11:30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42	서울32바20**	송*복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2-26 16:42	영등포구 셋강역 1번출구 앞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43	126오96**	유*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06 08:14	대치역~도곡역	50,000
244	서울32아45**	박*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04 16:03	삼성교차로~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245	194허47**	전*진	충청남도 천안시	2026-02-11 16:1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46	321누63**	황*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2-28 01:22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247	67마27**	이*현	대구광역시 동구	2026-03-03 18:1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48	14너72**	정*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6 18:0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49	서울38아65**	전*오	경기도 화성시	2026-03-06 16:49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50,000
250	22더42**	이*선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04 18:3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51	191보20**	Q*A*Y*N*F*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06 20: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52	43허03**	윤*현	경기도 광주시	2026-02-23 15:5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53	160호33**	주*희*마*스*브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6-02-25 16:3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54	292주58**	이*희	경기도 용인시	2026-03-04 19:3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55	116저69**	Z*E*G*U*U*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5 16:5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56	서울31자71**	정*석	경기도 양주시	2026-03-03 11: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지하 76 (여의도동)	50,000
257	서울32사88**	최*필	경기도 광명시	2026-02-27 12:25	종합운동장역	50,000
258	25주31**	이*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04 19:00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59	66로80**	R*K*Y*A*A*	경기도 이천시	2026-03-05 09:5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60	133호63**	임*명	경기도 시흥시	2026-02-24 20: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61	193하70**	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7 13: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62	서울31아72**	이*건	경기도 광주시	2026-03-01 15:35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50,000
263	65다46**	임*영	경기도 수원시	2026-03-03 08:5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64	43수38**	김*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3-03 19:3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65	51누05**	손*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6-03-03 13: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66	서울31아57**	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6-03-05 09:2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67	97두29**	주*희*전*철*	경기도 고양시	2026-02-27 17:07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50,000
268	75오61**	(*)*렐*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5 10:30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269	75오61**	(*)*렐*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7 17:03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70	75오61**	(*)*렐*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7 10:38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271	75오61**	(*)*렐*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5 16:51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272	101히42**	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2-22 10:5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73	191호97**	법*법*웅*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4 17:4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74	34히98**	애*타*(*)*e*η*η*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19 08:1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75	223히91**	(*)*이*이*설*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6-02-24 08: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76	143765**	한*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6-03-03 09:42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77	379어66**	곽*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2-16 00:2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78	382두88**	(*)*이*플*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5 20:1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79	155라63**	김*현	충청북도 제천시	2026-02-14 23:49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80	41우56**	T*L*(*)*J*N*V*H*(*)*A*B *R*A*H*U*(*)*N*G*i	경기도 의정부시	2026-03-06 09:1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81	152호41**	이*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6-02-18 13:27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82	155라63**	김*현	충청북도 제천시	2026-02-14 23:4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83	337도63**	M*N*X*A*G*U	경기도 평택시	2026-03-08 16:3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84	서울06나55**	김*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3-04 09:0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60,000
285	09라52**	주*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3-06 17:2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86	경기06오67**	(*)*제*산*	경기도 고양시	2026-03-03 09:4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60,000
287	374나84**	노*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2-27 16:3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88	374나84**	노*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6-02-27 16:2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89	28조02**	이*늘	인천광역시 서구	2026-02-27 15:5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90	50노58**	정*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2026-03-05 09:4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91	803수26**	(*)*이*인*스*리*	경기도 시흥시	2026-03-05 08:3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92	48서26**	주*희*더*유*스*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3-03 09:2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3	63너29**	주*희*더*한*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7 10: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4	26수96**	K*A*V*L*R*i	경기도 안산시	2026-02-28 14:5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95	10러50**	J*N*H*N*U*	경기도 안성시	2026-03-03 07: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96	175허86**	주*회*유*은*랜*이*연*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21 15:24	국제금융로8길	50,000
297	310조59**	장*익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06 16:54	남태령고개~남태령역	50,000
298	서울81배43**	정*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6-02-24 12:57	강남소방서앞	50,000
299	101나45**	G*O*A*J*	경기도 시흥시	2026-02-27 17:01	응암역~구산역	50,000
300	194머98**	변*형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6-03-05 14:12	풍납사거리~강동구청역	50,000
301	90너65**	(*)*성*코*크	경기도 포천시	2026-03-04 08:4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02	154서99**	서*립*식*사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04 09:1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03	28주02**	권*기	충청남도 천안시	2026-03-04 13:52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304	263저60**	김*아	경기도 파주시	2026-02-23 10: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05	706여53**	L*X*A*T*A*G	충청남도 천안시	2026-03-05 17:39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60,000
306	43마71**	라*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1-08 16:50	여의도역~ 광장아파트	50,000
307	108다73**	주*회*알*건*	경기도 고양시	2026-03-06 07:5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08	19무71**	김*구	경기도 안양시	2026-03-03 13:4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09	349무54**	한*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03-04 08:52	우장초등학교~화곡역	50,000
310	경기49바48**	송*식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26 09:53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50,000
311	29머42**	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02-14 21:0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12	383서98**	가*개*주*회*	광주광역시 북구	2026-03-06 08:0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13	09라64**	전*이	경기도 이천시	2026-02-27 20:3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14	53주02**	황*한	세종특별자치시	2026-03-06 17:5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15	24두90**	신*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6-03-07 16:3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16	100보28**	김*봉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3-04 08:2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17	225로20**	주*회*더*이*엔*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3-05 18:2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18	25주77**	K*M*L*D*M*R	경기도 안산시	2026-02-27 15:47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34 (신사동)	50,000
319	83오97**	K*M*V*T*A*A	경기도 안산시	2026-03-04 08:2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20	83로08**	강*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6-03-03 13:36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50,000
321	05우58**	윤*철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3-04 09: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22	78도98**	주*희*이*에*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6-02-27 10:46	삼양입구사거리~미아역	60,000
323	65모17**	박*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6-03-03 18:3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24	48주49**	L*X*A*C*U*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2026-03-05 17:1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25	03주34**	황*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2-19 17:15	윤중중학교앞교차로~수정아파트앞	50,000
326	135저69**	고*준	경기도 성남시	2026-03-04 08: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27	인천30바24**	최*환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6-03-03 09:3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28	서울31자15**	이*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6-02-27 11:14	서울잠실2동우체국	50,000
329	220하35**	주*희*전*오*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6-02-25 10:57	반포역~논현역	50,000
330	125하48**	장*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6-02-19 17:1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31	18고19**	이*희	경기도 동두천시	2026-03-05 10:5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32	42고69**	장*영	전라남도 무안군	2026-03-02 10:52	은평지문교~구파발사거리	50,000
333	171호97**	(*)*은*지*탁*	경기도 고양시	2026-02-16 12:57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34	서울38아62**	정*근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6-02-25 15:06	종합운동장교차로~잠실새내역교차로	50,000
335	서울83자22**	김*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02-25 15:06	종합운동장교차로~잠실새내역교차로	50,000
336	경기32바19**	성*택*유*희*	경기도 성남시	2026-03-02 20:47	영등포구 셋강역 1번출구 앞	50,000
337	142도71**	박*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6-02-11 17:03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338	서울32아19**	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6-02-13 17:41	봉원고가차도~연세대교차로	50,000
339	256우12**	주*희*라*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03-04 09:16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340	97수75**	이*훈	인천광역시 서구	2026-03-04 09:16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341	08부07**	백*주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6-03-05 07:0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42	54여52**	L*H*N*M*I	경기도 오산시	2026-03-06 14:3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43	191보20**	Q*A*Y*N*F*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6-03-06 20:4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44	173모97**	고*	경기도 남양주시	2026-03-06 13:3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45	197호43**	주*희*이*테*	경기도 남양주시	2026-02-23 15: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46	97서74**	주*희*소*한*	경기도 용인시	2026-03-03 07: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빙서류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방문 없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작성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지침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인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실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령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견제출서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00가0000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00로 00길 00주변 0000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사건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000 - 제출자 주소 : 00시 00구 00로 00,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000-0000-0000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자기 납부하고자 하면 앞면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자기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종	이륜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u.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86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02-2133-1565),
양천구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02-2620-3503)
3. 열람내용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가. 구역명 :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에 관한 사항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 2)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 3) 공공기여계획 결정 : 변경없음
 - 4) 건축계획 결정(변경)(안)
 -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 나) 건축물 용도 결정 : 변경없음
 - 다)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라)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마)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15	목동 914-5번지	-	증) 20,566.5	20,566.5	체육시설 (한마음 공영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16	목동 914번지	-	증) 20,000.0	20,000.0	운동장 (목동운동장 제척부지)
신설	특별계획구역17	목동 914번지	-	증) 106,133.4	106,133.4	운동장(목동운동장)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내용	변경사유
신설	특별계획구역15 신설 (증 20,566.5㎡)	· 노후화 및 저이용 상태의 공공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 하고, 주변 개발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신설
	특별계획구역16 신설 (증 20,000.0㎡)	
	특별계획구역17 신설 (증 106,133.4㎡)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게재 생략된 내용(세부 조서,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 게재된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4. 관계도서 : 열람 편의를 위해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5.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청 서부권 사업과 또는 양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서(열람장소 비치 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공람(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부권사업과(☎02-2133-1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89호

도시관리계획(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개 구역)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등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높이) 기준 등” 결정 변경]**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높이) 기준 등”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사항 : 도시관리계획(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개 구역) 결정(변경)(안)
3. 열람내용
 - ①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 구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자연경관지구와 중첩되는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9개 구역

자치구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종로	경복궁 서측, 부암동, 혜화·명륜동
중구	필동 일대, 회현동 일대
성북	정릉3동 제1종
강북	서울휴먼타운(능안골)
광진	광나루역, 화양1지구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도시계획조례 제34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에 따른 ‘건폐율 및 높이 계획’ 기준 및 완화 사항 변경

4.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청 도시관리과(☎02-2133-6298)

종로구 건축과(☎2148-2813),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953)

강북구 도시계획과(☎901-6873),

광진구 도시계획과(☎450-7692)

성북구 도시계획과(☎2241-2682)

4. 관계도서 : 붙임참조, 열람장소 비치

-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

[붙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종로구

○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기 정			
■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물길영향구역	60% 이하	제1층 일반주거지역, 제2층 일반주거지역
		30% 이하	자연경관지구
-	일반관리구역-3	30% 이하	자연경관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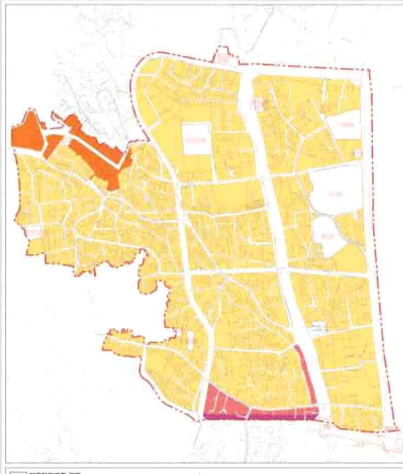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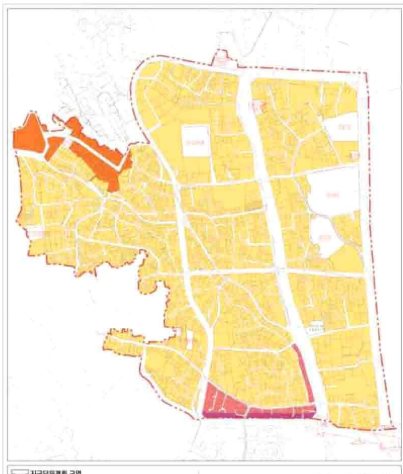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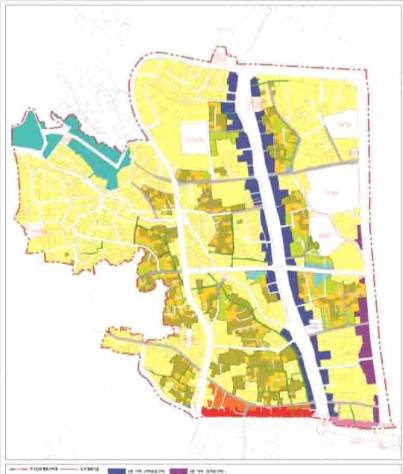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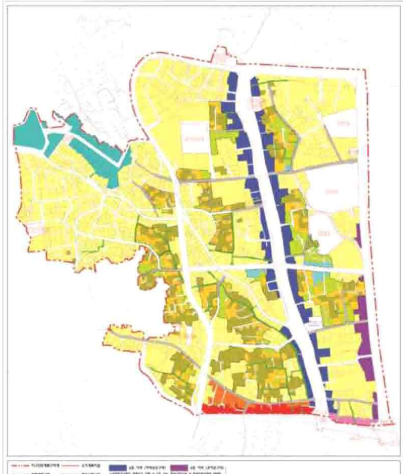
변 경			
■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물길영향구역	60% 이하	제1층 일반주거지역, 제2층 일반주거지역
		40% 이하	자연경관지구
-	일반관리구역-3	40% 이하	자연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르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기 정			
■ 높이 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적용 구역	높 이	비 고
-	물길영향구역	3층(12m) 이하	· 가로구역 높이 적용으로 도로사선제한 배제 (저층부면연계선에 저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 · 단, 한옥건축 시 한옥지정 구역 높이 적용 (도로사선제한 배제) · 6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는 2층 한옥 허용
	일반관리구역-3	3층(12m) 이하	· 도로사선제한 적용 · 단, 한옥건축 시 한옥지정 구역 높이 적용 (도로사선제한 배제) · 6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는 2층 한옥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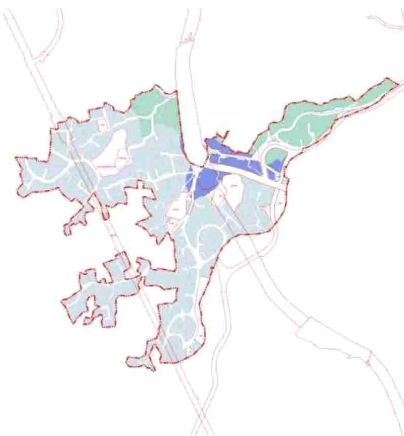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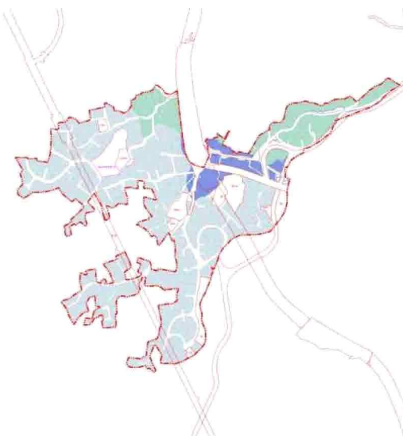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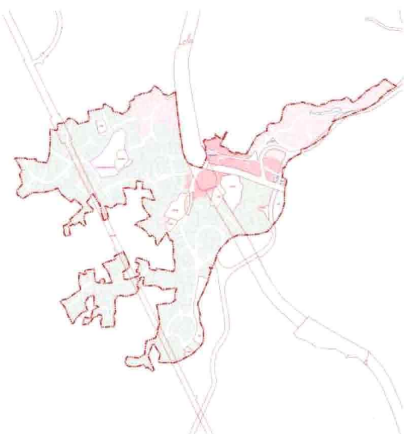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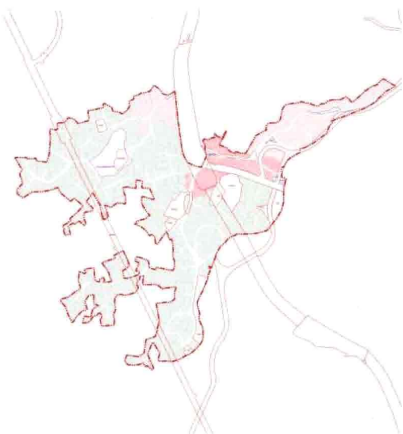
변 경			
■ 높이 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적용 구역	높 이	비 고
-	물길영향구역 (자연경관지구)	4층 이하 16m 이하	· 가로구역 높이 적용으로 도로사선제한 배제 (저층부면연계선에 저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 · 단, 한옥건축 시 한옥지정 구역 높이 적용 (도로사선제한 배제) · 6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는 2층 한옥 허용
	일반관리구역-3	4층(16m) 이하	· 도로사선제한 적용 · 단, 한옥건축 시 한옥지정 구역 높이 적용 (도로사선제한 배제) · 6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는 2층 한옥 허용

※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계획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름

구분	기 정	변 경
건폐율에 관한 결정도	 건축물 계획에 관한 결정도 : 기정	 건축물 계획에 관한 결정도 : 변경
높이에 관한 결정도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도 : 기정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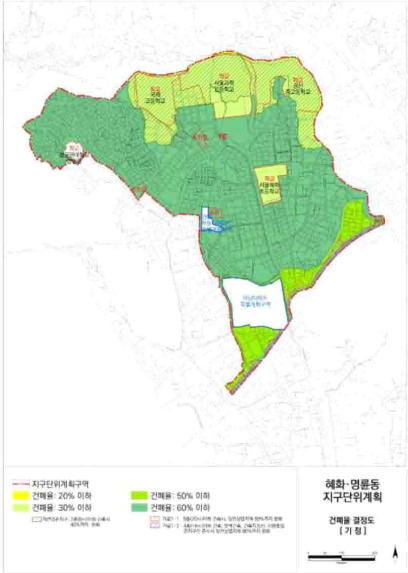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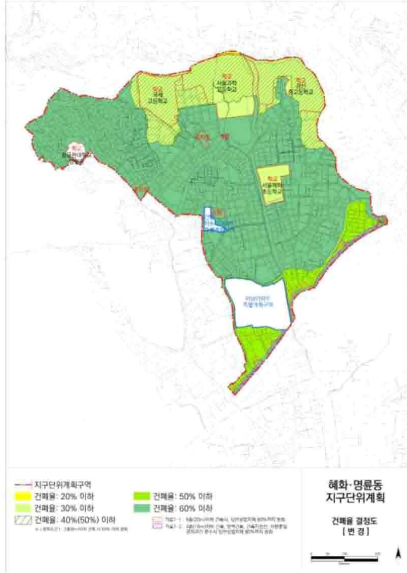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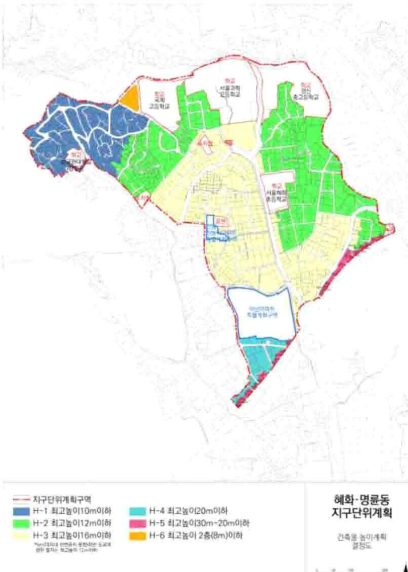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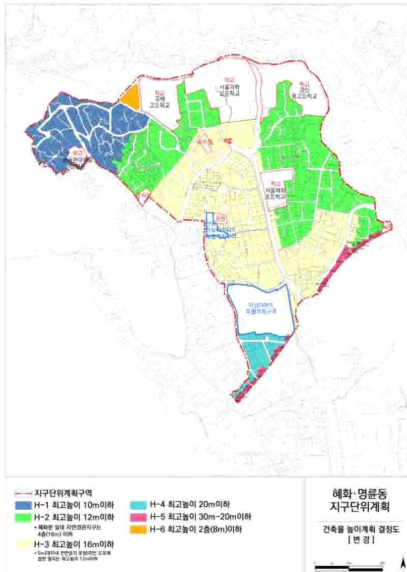
○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구분	기 정					변 경				
	■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고	도면 표시	적용구역		비고
	-	인왕 구역	C	제1층 일반 주거 지역	60% 이하		-	인왕 구역	C	제1층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자연경관지구	30% 이하					자연경관지구 40% 이하
	-	백악 구역	D	대상지 내부	제1층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백악 구역	D	제1층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자연경관지구	30% 이하					자연경관지구 40% 이하
						※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건폐율 완화 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폐율 완화 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적용구역		완화조건		계획 내용	비고	도면 표시	적용구역	
	-	자연 경관 지구	인왕 구역	높이 8m(2층)이하 건축 시	40% 이하			-	자연 경관 지구	인왕 구역
			백악 구역	용도 계획 연계시 - 주거용도 - 단독주택 건축 시 -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건축 시	40% 이하					백악 구역
				높이 계획 연계시 - 기타용도 - 높이 8m(2층) 이하 건축 시	4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34조 제3항 제2호 나목 외,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높이 계획 결정(변경) 조서					■ 높이 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적용구역		높이		비고	도면 표시	적용구역		비고
	-	인왕 구역	C	제1층 일반 주거 지역	최고고도지구 · 20m 이하		-	인왕 구역	C	최고고도지구 20m 이하
				자연경관지구	· 3층(12m)이하					자연경관지구 4층 이하 16m 이하
	-	백악 구역	D	대상지 내부	최고고도지구 · 20m 이하		-	백악 구역	D	최고고도지구 20m 이하
				자연경관지구	· 3층(12m)이하					자연경관지구 4층 이하 16m 이하
						※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계획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름				

구분	기 정	변 경
건폐율에 관한 결정도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결정도(기정) scale 1:5,000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결정도(변경) scale 1:5,000
높이에 관한 결정도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높이 결정도(기정) scale 1:5,000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높이 결정도(변경) scale 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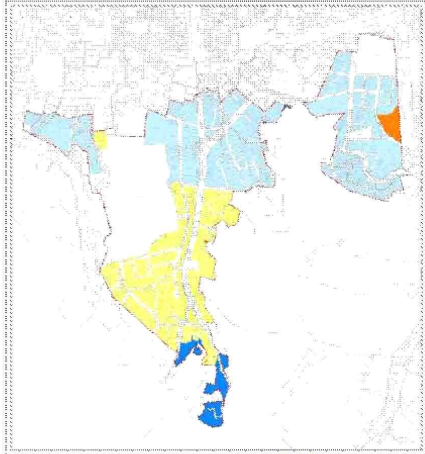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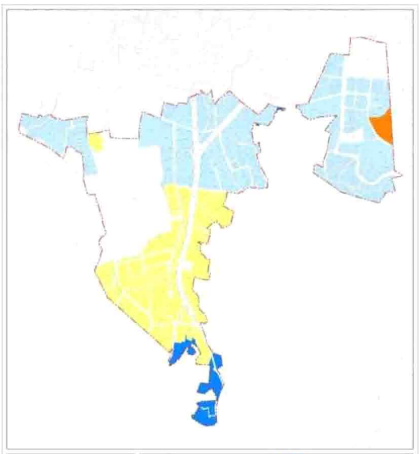
○ 해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구분	기 정					변 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건폐율 완화	비 고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건폐율 완화	비 고
	-	자연경관 지구	30% 이하	40% 이하	높이계획과 연계하여 완화기준 충족 시 완화	-	자연경관지구	40% 이하	50% 이하	높이계획과 연계하여 완화 기준 충족 시 완화
	■ 건폐율 완화 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폐율 완화 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적용구역	완화조건	계획내용	비고	도면 표시	적용구역	완화조건	계획내용	비고
	-	자연경관지구	층수계획 연계	2층(8m)이하 건축 시 40%까지 완화	-	-	자연경관지구	층수계획 연계	2층(8m)이하 건축 시 50%까지 완화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34조 제3항 제2호 나목 외,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름				
	■ 높이 계획 결정(변경) 조서					■ 높이 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적용구역	높 이	비 고		도면 표시	적용구역	높 이	비 고	
	-	H-2 해화1 해화2-1 명륜2-2 명륜3 가로3-2	최고높이 12m 이하	해화 성곽마을 해화문 일대 자연경관지구 명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명륜시장길 입구	경사지붕 경사도 10:3~10:6 이내인 경우 1.5m이하까지 높이산정에서 제외.	-	H-2 해화1 해화2-1 명륜2-2 명륜3 가로3-2	4층 이하 16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해화문 일대 자연경관지구 명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해화 성곽마을 명륜시장길 입구	경사지붕 경사도 10:3~10:6 이내인 경우 1.5m이하까지 높이산정에서 제외.
	※ 한옥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2층 이하로 하며, 최고높이=h+0.65a(1층h=4, 2층h=7, a=건물폭)를 적용. ※ 건축물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2조(높이산정 기준)를 따름.					※ 한옥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2층 이하로 하며, 최고높이=h+0.65a(1층h=4, 2층h=7, a=건물폭)를 적용. ※ 건축물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2조(높이산정 기준)를 따름. ※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계획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름				

구분	기 정	변 경
건폐율에 관한 결정도	 해화·명문동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결정도 【기 정】	 해화·명문동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결정도 【변 경】
높이에 관한 결정도	 해화·명문동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높이 결정도	 해화·명문동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높이 결정도 【변 경】

□ 중 구

○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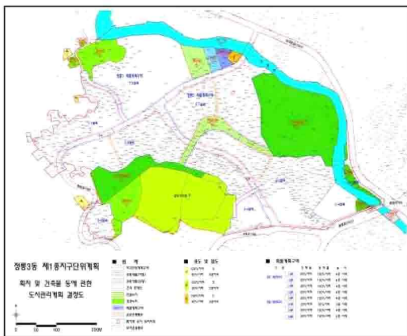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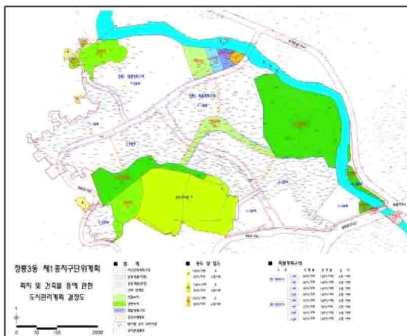
구분	기 정	변 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건폐율 결정 조서 <table><tr><th>도면 표시</th><th>적용구역</th><th>건폐율</th><th>비 고</th></tr><tr><td>-</td><td>자연경관지구</td><td>30% 이하</td><td></td></tr></table>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자연경관지구	30% 이하		■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table><tr><th>도면 표시</th><th>적용구역</th><th>건폐율</th><th>비 고</th></tr><tr><td>-</td><td>자연경관지구</td><td>40% 이하</td><td></td></tr></table> ※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름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자연경관지구	40% 이하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자연경관지구	30% 이하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자연경관지구	40% 이하																
구 분	기 정	변 경																
건폐율에 관한 결정도																		

○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구분		기 정					변 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건폐율 결정 조서					■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table><tr><th>도면 표시</th><th>적용구역</th><th>건폐율</th><th colspan="2">비 고</th></tr><tr><td>-</td><td>자연경관지구</td><td>30% 이하</td><td colspan="2"></td></tr></table>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자연경관지구	30% 이하			<table><tr><th>도면 표시</th><th>적용구역</th><th>건폐율</th><th colspan="2">비 고</th></tr><tr><td>-</td><td>자연경관지구</td><td>40% 이하</td><td colspan="2"></td></tr></table>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자연경관지구	40% 이하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자연경관지구	30% 이하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자연경관지구	40% 이하																																														
	■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table><tr><th>도면 표시</th><th>적용구역</th><th>위치</th><th>구분</th><th>계획내용</th><th>비 고</th></tr><tr><td rowspan="2"></td><td rowspan="2">도심주거 구역 A 제2층일반 주거지역 제2층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1층일반 주거지역</td><td rowspan="2">주거 특화 구역 남산 연접 지역</td><td>건 폐 율</td><td>자연 경관 지구 • 30%이하</td><td></td></tr><tr><td>건 폐 율 완 화</td><td>자연 경관 지구 • 8m(2층)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40% 이하 완화</td><td></td></tr><tr><td rowspan="2"></td><td rowspan="2">도심주거 구역 B 제3층·제2 층 제1층 일반주거 지역</td><td rowspan="2">주거· 상업 지원 구역 명동· 남대문 시장 연접 지역</td><td>건 폐 율</td><td>자연 경관 지구 • 30%이하</td><td></td></tr><tr><td>건 폐 율 완 화</td><td>자연 경관 지구 • 8m(2층)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40% 이하 완화</td><td></td></tr></table>					도면 표시	적용구역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심주거 구역 A 제2층일반 주거지역 제2층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1층일반 주거지역	주거 특화 구역 남산 연접 지역	건 폐 율	자연 경관 지구 • 30%이하		건 폐 율 완 화	자연 경관 지구 • 8m(2층)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40% 이하 완화			도심주거 구역 B 제3층·제2 층 제1층 일반주거 지역	주거· 상업 지원 구역 명동· 남대문 시장 연접 지역	건 폐 율	자연 경관 지구 • 30%이하		건 폐 율 완 화	자연 경관 지구 • 8m(2층)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40% 이하 완화		<table><tr><th>도면 표시</th><th>적용구역</th><th>위치</th><th>건폐율</th><th>비고</th></tr><tr><td></td><td>도심주거구역 A 제2층일반주거지역 제2층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1층일반주거지역</td><td>주거특화구역 남산연접지역</td><td>40%이하</td><td>자연 경관 지구</td></tr><tr><td></td><td>도심주거구역 B 제3층·제2층·제1층 일반주거지역</td><td>주거·상업 지원구역 명동·남대문 시장 연접 지역</td><td>40%이하</td><td>자연 경관 지구</td></tr></table>					도면 표시	적용구역	위치	건폐율	비고		도심주거구역 A 제2층일반주거지역 제2층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1층일반주거지역	주거특화구역 남산연접지역	40%이하	자연 경관 지구		도심주거구역 B 제3층·제2층·제1층 일반주거지역	주거·상업 지원구역 명동·남대문 시장 연접 지역	40%이하	자연 경관 지구
	도면 표시	적용구역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심주거 구역 A 제2층일반 주거지역 제2층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1층일반 주거지역	주거 특화 구역 남산 연접 지역	건 폐 율	자연 경관 지구 • 30%이하																																												
건 폐 율 완 화				자연 경관 지구 • 8m(2층)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40% 이하 완화																																													
	도심주거 구역 B 제3층·제2 층 제1층 일반주거 지역	주거· 상업 지원 구역 명동· 남대문 시장 연접 지역	건 폐 율	자연 경관 지구 • 30%이하																																													
			건 폐 율 완 화	자연 경관 지구 • 8m(2층)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40% 이하 완화																																													
도면 표시	적용구역	위치	건폐율	비고																																													
	도심주거구역 A 제2층일반주거지역 제2층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1층일반주거지역	주거특화구역 남산연접지역	40%이하	자연 경관 지구																																													
	도심주거구역 B 제3층·제2층·제1층 일반주거지역	주거·상업 지원구역 명동·남대문 시장 연접 지역	40%이하	자연 경관 지구																																													
※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름					※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름																																												
구 분		기 정					변 경																																										
건폐율에 관한 결정도																																																	

□ 성북구

○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table><tr><th>도면 표시</th><th>적용구역</th><th>건폐율</th><th>비 고</th></tr><tr><td>-</td><td>B(성모수녀원 일대)</td><td>30% 이하</td><td></td></tr></table>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B(성모수녀원 일대)	30% 이하		■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table><tr><th>도면 표시</th><th>적용구역</th><th>건폐율</th><th>비 고</th></tr><tr><td>-</td><td>B(성모수녀원 일대)</td><td>40% 이하</td><td>자연경관지구</td></tr></table> ※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름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B(성모수녀원 일대)	40% 이하	자연경관지구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B(성모수녀원 일대)	30% 이하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B(성모수녀원 일대)	40% 이하	자연경관지구															
	■ 높이 계획 결정(변경) 조서 <table><tr><th>도면 표시</th><th>적용구역</th><th>높 이</th><th>비 고</th></tr><tr><td>-</td><td>B(성모수녀원 일대)</td><td>3층이하 (12m 미만)</td><td>자연경관지구</td></tr></table>	도면 표시	적용구역	높 이	비 고	-	B(성모수녀원 일대)	3층이하 (12m 미만)	자연경관지구	■높이 계획 결정(변경) 조서 <table><tr><th>도면 표시</th><th>적용구역</th><th>높 이</th><th>비 고</th></tr><tr><td>-</td><td>B(성모수녀원 일대)</td><td>4층 이하 16m 이하</td><td>자연경관지구</td></tr></table> ※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계획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름	도면 표시	적용구역	높 이	비 고	-	B(성모수녀원 일대)	4층 이하 16m 이하	자연경관지구
	도면 표시	적용구역	높 이	비 고														
-	B(성모수녀원 일대)	3층이하 (12m 미만)	자연경관지구															
도면 표시	적용구역	높 이	비 고															
-	B(성모수녀원 일대)	4층 이하 16m 이하	자연경관지구															
구 분	기 정	변 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강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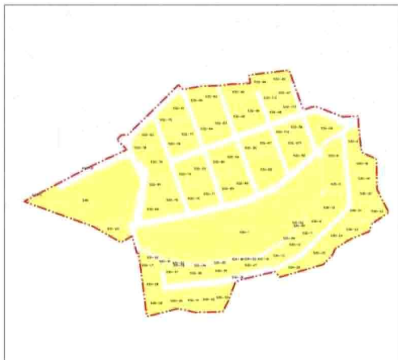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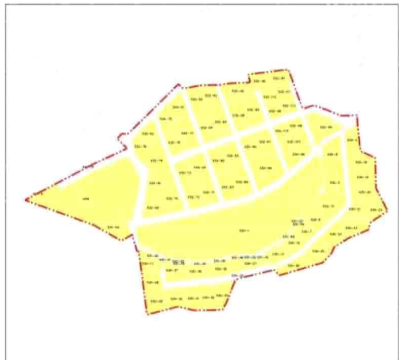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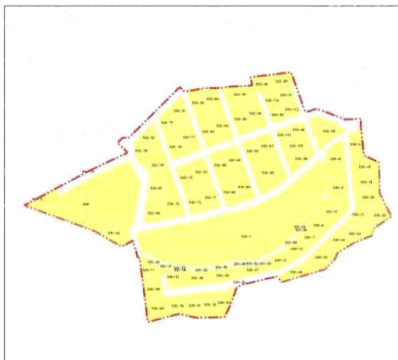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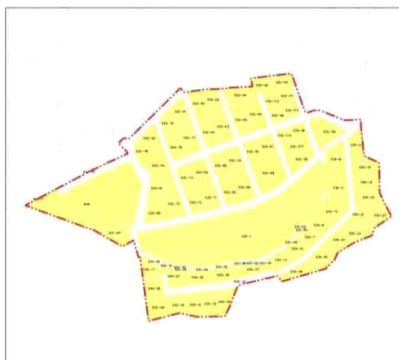
○ 서울휴먼타운(농안골) 지구단위계획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3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 및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10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4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 및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10조	
	■ 건폐율 완화계획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완화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적용 구역	완화조건	계획 내용	도면 표시	적용 구역	완화조건	건폐율	
-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전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준수시) 1. 높이 2층, 8m 이하 건축시 - 단, 경사지붕으로 조성 시 지붕조성 높이는 제외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 ①항에 따른 다락은 층수에 서 제외 2. 건축물 형태 중 지붕에 대 한 권장지침 준수시 3. 그린 존 중 녹색주차장에 관한 권장지침 준수시 - 단, 지형으로 인해 녹색주차 장 설치가 불가능하여 차고 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린 존 중 차고 및 차고문의 처 리에 관한 권장지침 준수 4. 그린 존 중 담장, 대문, 전 면마당에 관한 권장지침 준 수시 - 단, 조성 유형별로 해당되는 지침 적용 ※ 단, 3,4번은 강북구 '건축위 원회' 또는 '건축디자인위원 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부 지여건 등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 및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10조	건폐 율 40% 이하	-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전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준수시) 1. 높이 2층, 8m 이하 건축시 - 단, 경사지붕으로 조성 시 지붕조성 높이는 제외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 ①항에 따른 다락은 층수에 서 제외 2. 건축물 형태 중 지붕에 대 한 권장지침 준수시 3. 그린 존 중 녹색주차장에 관한 권장지침 준수시 - 단, 지형으로 인해 녹색주차 장 설치가 불가능하여 차고 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린 존 중 차고 및 차고문의 처 리에 관한 권장지침 준수 4. 그린 존 중 담장, 대문, 전 면마당에 관한 권장지침 준 수시 - 단, 조성 유형별로 해당되는 지침 적용 ※ 단, 3,4번은 강북구 '건축위 원회' 또는 '건축디자인위원 회'의 사전자문을 통해 부 지여건 등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 및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10조	50% 이하
	■ 높이 계획 결정(변경) 조서				■ 높이 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적용구역	높 이	비 고	도면 표시	적용구역	높 이	비 고	
	-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높이 : 3층, 12m 이하 - 지하층은 지표면에서 1m 이상 노출 금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 및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10조	-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4층 이하, 16m 이하 (지하층은 지표면에서 1m 이상 노출 금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 및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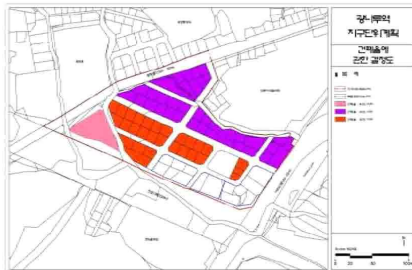
※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름

※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름

구 분	기 정	변 경
건폐율에 관한 결정도	 서울특별시(농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20% (농지 80%) 간척지(농지) 면적: 1,000㎡ 간척지(농지) 면적: 1,000㎡	 서울특별시(농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20% (농지 80%) 간척지(농지) 면적: 1,000㎡ 간척지(농지) 면적: 1,000㎡
높이에 관한 결정도	 서울특별시(농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높이: 10m (농지 10m 이상 높을 수 있음) 간척지(농지) 면적: 1,000㎡ 간척지(농지) 면적: 1,000㎡	 서울특별시(농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높이: 10m (농지 10m 이상 높을 수 있음) 간척지(농지) 면적: 1,000㎡ 간척지(농지) 면적: 1,000㎡

□ 광진구

○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

구분	기 정	변 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table><tr><th>도면 표시</th><th>용도지역</th><th>건폐율</th><th>비 고</th></tr><tr><td>-</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30% 이하</td><td>자연경관지구</td></tr></table>	도면 표시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	제1종일반주거지역	30% 이하	자연경관지구	■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table><tr><th>도면 표시</th><th>적용구역</th><th>건폐율</th><th>비 고</th></tr><tr><td>-</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40% 이하</td><td>자연경관지구</td></tr></table> ※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름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제1종일반주거지역	40% 이하	자연경관지구
	도면 표시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	제1종일반주거지역	30% 이하	자연경관지구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제1종일반주거지역	40% 이하	자연경관지구															
	■ 높이 계획 결정(변경) 조서 <table><tr><th>도면 표시</th><th>적용구역</th><th>높 이</th><th>비 고</th></tr><tr><td>-</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12m 이하</td><td>자연경관지구</td></tr></table>	도면 표시	적용구역	높 이	비 고	-	제1종일반주거지역	12m 이하	자연경관지구	■높이 계획 결정(변경) 조서 <table><tr><th>도면 표시</th><th>적용구역</th><th>높 이</th><th>비 고</th></tr><tr><td>-</td><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4층 이하 16m 이하</td><td>자연경관지구</td></tr></table> ※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계획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름	도면 표시	적용구역	높 이	비 고	-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16m 이하	자연경관지구
도면 표시	적용구역	높 이	비 고															
-	제1종일반주거지역	12m 이하	자연경관지구															
도면 표시	적용구역	높 이	비 고															
-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16m 이하	자연경관지구															
구 분	기 정	변 경																
건폐율에 관한 결정도																		
																		

○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화양7특별계획구역)

구 분	기 정	변 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table><tr><th>도면 표시</th><th>적용구역</th><th>건폐율</th><th>비 고</th></tr><tr><td>-</td><td>화양7특별계획구역</td><td>30% 이하</td><td>자연경관지구</td></tr></table>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화양7특별계획구역	30% 이하	자연경관지구	■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table><tr><th>도면 표시</th><th>적용구역</th><th>건폐율</th><th>비 고</th></tr><tr><td>-</td><td>화양7특별계획구역</td><td>40% 이하</td><td>자연경관지구</td></tr></table> ※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름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화양7특별계획구역	40% 이하	자연경관지구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화양7특별계획구역	30% 이하	자연경관지구															
도면 표시	적용구역	건폐율	비 고															
-	화양7특별계획구역	40% 이하	자연경관지구															
	■ 높이 계획 결정(변경) 조서 <table><tr><th>도면 표시</th><th>적용구역</th><th>높 이</th><th>비 고</th></tr><tr><td>-</td><td>화양7특별계획구역</td><td>12m 이하</td><td>자연경관지구</td></tr></table>	도면 표시	적용구역	높 이	비 고	-	화양7특별계획구역	12m 이하	자연경관지구	■ 높이 계획 결정(변경) 조서 <table><tr><th>도면 표시</th><th>적용구역</th><th>높 이</th><th>비 고</th></tr><tr><td>-</td><td>화양7특별계획구역</td><td>4층 이하 16m 이하</td><td>자연경관지구</td></tr></table> ※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계획 완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름	도면 표시	적용구역	높 이	비 고	-	화양7특별계획구역	4층 이하 16m 이하	자연경관지구
	도면 표시	적용구역	높 이	비 고														
-	화양7특별계획구역	12m 이하	자연경관지구															
도면 표시	적용구역	높 이	비 고															
-	화양7특별계획구역	4층 이하 16m 이하	자연경관지구															
구 분	기 정	변 경																
건폐율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90호

국가유산수리업등 신규 등록 공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 국가유산수리업등 신규 등록 현황

업체명	수리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영업장 소재지	수리 등록일 (신고일)
시시한연구소 건축사무소	실측설계업 (02-01-0011)	김군언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16가길 18, 3층	'26.03.2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04) 또는 문화유산보존과(☎ 02-2133-26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09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위법행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해산등기·청산의무 이행 안내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된 서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하여, 위법행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해산등기·청산절차 이행 안내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공고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위법행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해산등기·청산의무 이행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제88조(과태료)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송달대상

연번	인가번호 (설립인가일)	인가 취소처분	조합명	이사장 (청산인)	주소지
1	서울특별시 제2012-8호 (2012.4.5.)	2025.11.2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166호)	서현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미	서울특별시 중랑구

4. 공시송달 기간: 2026. 4. 2. ~ 2026. 4. 16.(14일간)

5. 제출사항

가. 제출기한: 2026. 5. 18.

나. 제출자료

- 1) 2019년~2025년 모든 이사회, 총회 의사록 일체
- 2) 2019년~2025년 이사장 급여 내역 일체
- 3) 2019년~2025년 모든 차입 내역 및 각 차용증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공정경제과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전자우편(hyeonjj@seoul.go.kr)

- ※ 모든 자료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시 원본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기한 내 미제출 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준수사항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해산등기 하여야 하며 등기를 게을리 할 경우 동법 제88조 제3항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산등기 이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5조에 따라 잔여재산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청산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민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 처분 방법을 총회 의결을 통해 정하고 해당 사항에 대해 처분행정청의 잔여재산 처분인가를 받은 후 재산 처분하여야 합니다.(다음 페이지 서식 첨부)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경제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담당자(02-2133-5478, hyeonjj@seoul.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재산 처분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조합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이 사 장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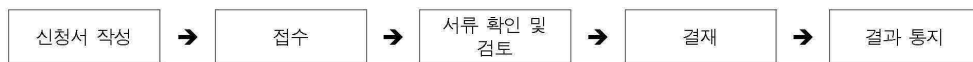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 1. 4.>

청 산 종 결 신 고 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산조합·연합회 · 전국연합회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2조 및 「민법」 제9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신고인(청산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100호

2개년(2026~2027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공고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하여 2026년 및 2027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1. 연도별 공급시설 공사계획

연 도 별	구 간 수	배관설치연장(m)	공사비(백만원)	보급대상(가구)
계	277	26,481	32,966	47,187
2026년	176	14,439	18,610	23,725
2027년	101	12,042	14,356	23,462

2. 회사별 공급시설 설치계획

○ 2026년도

회 사 명	구 간 수	배관설치연장(m)	공사비(백만원)	보급대상(가구)
계	176	14,439	18,610	23,725
서울도시가스	74	4,951	6,282	10,651
코원에너지서비스	19	3,556	4,619	2,349
에스코	49	4,669	4,777	9,681
대륜이엔에스	16	458	551	75
귀뚜라미에너지	18	805	2,381	969

○ 2027년도

회 사 명	구 간 수	배관설치연장(m)	공사비(백만원)	보급대상(가구)
계	101	12,042	14,356	23,462
서울도시가스	33	3,540	5,574	9,823
코원에너지서비스	6	1,390	2,060	192
에스코	53	5,712	3,991	11,735

회 사 명	구 간 수	배관설치연장(m)	공사비(백만원)	보급대상(가구)
대륜이엔에스	6	600	240	80
귀뚜라미에너지	3	800	2,491	1,632

3.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

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각 자치구 환경과 등 관계부서에 비치

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시정소식 → 서울시보

4. 문의처

가.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 02-2133-3711)

나. 각 자치구 환경과 등 관계부서

다.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회사명	통합콜센터	홈페이지	공급권역
서울도시가스㈜	1588-5788	www.seoulgas.co.kr	서울 중서부
코원에너지서비스㈜	1599-3366	www.ko-one.co.kr	서울 동남부
주에스코	1544-3131	www.lsyesco.com	서울 중동부
주대륜이엔에스	1566-6116	www.daeryunens.com	서울 북동부
주귀뚜라미에너지	1670-4700	kituramienergy.co.kr	서울 남서부



2026년도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

2026년 3월

서울특별시

□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 시행계획

1. 2026년 시행 계획

○ 자치구별

자치구별	구간수	배관설치연장 (m)	공사비 (백만원)	공급가구 (가구)	비고	구간수				
						서울	표원	예스코	대륜	귀뚜라미
계	176	14,439	18,610	23,725		74	19	49	16	18
종로	12	1,459	1,318	828		1		11		12
중구	6	348	711	267				6		6
용산	8	652	815	676		5		3		8
성동	9	870	638	2,922				9		9
광진	5	380	425	965				5		5
동대문	5	450	459	377				5		5
종랑	5	282	317	1,586				5		5
성북	4	580	407	1,742				3	1	4
강북	2	54	55	20					2	2
도봉	4	198	171	15					4	4
노원	9	106	285	20					9	9
은평	8	1,560	1,487	2,757		8				8
서대문	11	468	561	731		9		2		11
마포	7	364	564	1,107		7				7
양천	7	165	610	173		3				7
강서	9	478	687	8		9				9
구로	4	425	1,090	477					4	4
금천	10	265	803	320					10	10
영등포	13	491	657	385		13				13
동작	3	787	722	841		3				3
관악	9	227	384	4		9				9
서초	12	2,583	3,182	5,415		7	5			12
강남	5	411	827	309			5			5
송파	6	696	893	1,244			6			6

강동	3	140	541	536	3	3
----	---	-----	-----	-----	---	---

○ 회사별

회사명	구간수	배관설치연장 (m)	공사비 (백만원)	공급가구 (가구)	비고
계	176	14,439	18,610	23,725	
서울	74	4,951	6,282	10,651	
교원	19	3,556	4,619	2,349	
에스코	49	4,669	4,777	9,681	
대륜	16	458	551	75	
귀뚜라미	18	805	2,381	969	

□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 시행계획

2. 2026년 회사별 통계(정리)

○ 배관설치연장 (m)

자치구별	합계	서울	코원	에스코	대륜	귀뚜라미
계	14,439	4,951	3,556	4,669	458	805
종로	1,459	150		1,309		
중구	348			348		
용산	652	192		460		
성동	870			870		
광진	380			380		
동대문	450			450		
중랑	282			282		
성북	580			480	100	
강북	54				54	
도봉	198				198	
노원	106				106	
은평	1,560	1,560				
서대문	468	378		90		
마포	364	364				
양천	165	50				115
강서	478	478				
구로	425					425
금천	265					265
영등포	491	491				
동작	787	787				
관악	227	227				
서초	2,583	274	2,309			
강남	411		411			
송파	696		696			
강동	140		140			

○ 투자비 (백만원)

자치구별	합계	서울	코원	에스코	대륜	귀뚜라미
계	18,610	6,282	4,619	4,777	551	2,381
종로	1,318	50		1,268		
중구	711			711		
용산	815	295		520		
성동	638			638		
광진	425			425		
동대문	459			459		
종량	317			317		
성북	407			367	40	
강북	55				55	
도봉	171				171	
노원	285				285	
은평	1,487	1,487				
서대문	561	490		71		
마포	564	564				
양천	610	122				488
강서	687	687				
구로	1,090					1,090
금천	803					803
영등포	657	657				
동작	722	722				
관악	384	384				
서초	3,182	824	2,358			
강남	827		827			
송파	893		893			
강동	541		541			

○ 공급가구(가구)

자치구별	합계	서울	코원	에스코	대륜	귀뚜라미
계	23,725	10,651	2,349	9,681	75	969
종로	828	1		827		
중구	267			267		
용산	676	6		670		
성동	2,922			2,922		
광진	965			965		
동대문	377			377		
종랑	1,586			1,586		
성북	1,742			1,722	20	
강북	20				20	
도봉	15				15	
노원	20				20	
은평	2,757	2,757				
서대문	731	386		345		
마포	1,107	1,107				
양천	173	1				172
강서	8	8				
구로	477					477
금천	320					320
영등포	385	385				
동작	841	841				
관악	4	4				
서초	5,415	5,155	260			
강남	309		309			
송파	1,244		1,244			
강동	536		536			

□ 풍 로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착공						
합계												
서울도시가스(주)												
1	서울	영업투자 비계획	종로구	소계		3	11		150	1	50	
(주)에스코												
1	(주)에스코	공평 15,16 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인사동	인사동 87	인사동 87	1	1	40	27	78		
2	(주)에스코	동송동 31-14 정화예술대학	동송동	동송동 31-14	동송동 31-14	5	5	40	2	17		
3	(주)에스코	북촌로 43 아모레퍼시픽 (26.07 준공)	가회동	가회동 79-14	가회동 79-14	5	5	40	2	17		
4	(주)에스코	세운4구역 도시정비 재개발 (26.07 준공)	예지동	예지동 85	예지동 85	9	9	550	152	315	지역정합기	
5	(주)에스코	승인동 주상복합 200-16 (KT114부지)	승인동	승인동 200-16	승인동 200-16	2	2	80	505	124		
6	(주)에스코	창신동 25-1 종산홍보 기업빌딩	창신동	창신동 25-1	창신동 25-1	6	6	30	3	13		
7	(주)에스코	기타 소규모				1	12	200	120	350		
8	(주)에스코	관수동 146-6 주변	관수동	관수동 20	관수동 146-6	6	7	130	9	110	미공급지역	
9	(주)에스코	낙원동 213-4	낙원동	낙원동 213-2	낙원동 213-7	5	6	40	1	35	미공급지역	
10	(주)에스코	낙원동 290-1	낙원동	낙원동 284-6	낙원동 290-1	6	7	35	6	30	미공급지역	
11	(주)에스코	관철동 173-3 장기사용배관 교체공사	관철동	관철동 13-22	관철동 13-22	3	10	124	180	장기사용설비		

□ 중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착공	준공						
합계													
(위예스코)													
1	(위예스코)	순화동 6-12(마포로5구역 9-1지구) 27.3월, 26.11월	순화동	순화동 6-12	순화동 6-15	8	8		348	267	711		
2	(위예스코)	예장동 8-145(서울 창조산업 허브·애니메이션)26.12월	예장동	예장동 8-1	예장동 8-1	9	9		348	267	711		
3	(위예스코)	을지로3가 65-14 일대(을지로3가 제 12지구)26.9월	을지로	을지로3가	을지로3가	9	9		10	4	26		
4	(위예스코)	기타 소규모				1	12		20	7	33		
5	(위예스코)	충무로2가 110-5 상상공원 장기사용배관 교체공사	남산동1가	남산동1가 1	충무로2가 10	3	10		150	120	285		
6	(위예스코)	정동 34-24 장기사용배관 교체공사	서소문동	서소문동 54	정동 34-23	3	10		66		210	장기사용설비	
									92		138	장기사용설비	

□ 용 산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기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 점	종 점	착공	준공					
합계												
서울도시가스(주)												
1	서울	신계동 5-18호 인근 공급관 공사	신계동	신계동 7-38	신계동 5-11	10	11	60	1	61	미공급지역(이월)	
2	서울	원호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관공사	용문동	용문동 38-14	용문동 38-7	5	5	120	5	101		
3	서울	청암동 168-24호 인입밸브 교체	청암동	청암동 168-2	청암동 168-2	9	9	3		32		
4	서울	원호로1가 48-15 정압기 더블밸브 교체	원호로1가	원호로1가 48	원호로1가 48	5	5	6		70		
5	서울	한강로3가65-5호 한강조교 인입밸브 교체	한강로3가	한강로3가65	한강로3가65	6	6	3		31	창기사용설비 안전투자	
(주)에스코												
1	(주)에스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이태원동	이태원동 22	이태원동 22	9	11	300	540	428	지역정합기	
2	(주)에스코	한국일보 신정사	갈월동	갈월동 98-11	갈월동 98-11	11	11	10	10	30		
3	(주)에스코	기타소규모				1	12	150	120	62		

□ 성 동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합계								
		(주)에스코		소계			870	2,922	638	
1	(주)에스코	성수동1가 656-421(오티에르 포레, -	성수동1	성수동1가 656-42	대지경계	6	60	287	25	
2	(주)에스코	성수동2가 278 일대(한국지엠 동서울	성수동2	성수동2가 278	대지경계	9	70	1	44	
3	(주)에스코	성수동2가 278-17 지식산업센터(공정	성수동2	성수동2가 278-17	대지경계	7	50	10	32	
4	(주)에스코	성수동2가 279 업무시설	성수동2	성수동2가 279	대지경계	5	220	5	92	
5	(주)에스코	용답동 108-1호(정계 리버뷰자이), 2	용답동	용답동 108-1호(정	대지경계	4	170	1,670	71	
6	(주)에스코	용답동 223-2(천호대로78길 58, 서울	용답동	용답동 223-2	대지경계	9	50	20	32	
7	(주)에스코	용답동 68-2 청년주택	용답동	용답동 68-2	대지경계	1	50	230	21	
8	(주)에스코	하왕실리동 958-1(하왕실리 청년주택	하왕실리	하왕실리동 958-1	대지경계	8	50	459	21	
9	(주)에스코	기타소규모				1	150	240	300	

□ 광진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착공						
합계												
		(주)에스코										
1	(주)에스코	구의동 246-10호 청년주택	구의동	구의동 246-10	구의동 246-10	1	1	10	439	25		
2	(주)에스코	구의동 592-39 강변센트럴아파트 근생	구의동	구의동 592-39	구의동 592-39	6	6	60	10	60		
3	(주)에스코	구의동 592-39 강변역센트럴아파트 신축	구의동	구의동 592-39	구의동 592-39	6	6	60	215	25		
4	(주)에스코	중곡동 613-3호(숙박시설)	중곡동	중곡동 613-2	중곡동 613-3	5	5	50	1	31		
5	(주)에스코	기타소규모				-	1	12	200	300	284	

□ 동대문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 사 명	동 명	시 점	종 점	착공	준공				
합계											
		(주)에스코			소계			450	377	459	
1	(주)에스코	이문3-2구역 아이파크자이3단지 (이문3-2구역)	이문동	이문동 264-42	이문동 419-8	3	3	45	152	39	
2	(주)에스코	제기동 1050번지 근린생활시설 (26.0)	제기동	제기동 1050	제기동 1050	2	2	45	20	19	
3	(주)에스코	제기동 892-65 파밀리에더센트럴아파트	제기동	제기동 892-65	제기동 892-65	2	2	20	76	16	
4	(주)에스코	기타 소규모			-	1	12	230	120	300	
5	(주)에스코	청량리동 283 청량리먹자골목	청량리동	청량리동 444-7	청량리동 283	5	7	110	9	85	마곡금지역

□ 중량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 사 명	동 명	시 점	종 점	착공	준공					
합계												
		(주)에스코			소계				282	1,586	317	
1	(주)에스코	망우동490-7	망우동4	망우동490-7	망우동490-7		9	9	12	44	38	
2	(주)에스코	묵동8번지 청년주택	묵동8번	묵동8번지	묵동8번지		5	5	30	724	13	
3	(주)에스코	상봉동 116-49호	상봉동	상봉동 116-49	상봉동 116-49		6	6	20	299	8	
4	(주)에스코	중화동 세광하나타운 재건축(리모델링)	중화동	중화동 296-44	중화동 296-44		9	9	20	219	8	
5	(주)에스코	기타 소규모			-		1	12	200	300	250	

□ 성 복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 (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착공	준공				
합계											
	(주)에스코										
1	(주)에스코	보문5구역 재개발 (26.7월)	보문동1	보문동1가 196-1	보문동1가 196-1	2	2	10	199	14	
2	(주)에스코	삼선5구역 재개발(27.4월 준공)	삼선동2	삼선동2가 296번	삼선동2가 296번	9	9	320	1,223	269	
3	(주)에스코	기타 소규모			-	1	12	150	300	84	
	(주)대륜E&S										
1	대륜	소규모 공사	장위동	장위동	장위동	10	11	100	20	40	

□ 강 복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 사 명	동 명	시 점	종 점	착 공	준 공						
		합계											
		(주)대륜E&S				소계				54	20	55	
1	대륜	소규모 공사	수유동	수유동	수유동	수유동	수유동	10월	11월	54	20	55	
2	대륜	노후구조물 밸브 교체공사(SKSUGMV10	수유동	수유동	수유동	수유동	수유동	11월	11월	50	20	30	
										4		25	정기사용설비

□ 도 복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 (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 사 명	동 명	시 점	종 점							착공
합계												
		(주)대륜E&S						198	15	171		
1	대륜	도봉동 275-7 주변공급관 설치공	도봉동	도봉동	도봉동 637-7	도봉동 274-6	10월	11월	140	5	86	의무적투자
2	대륜	소규모 공사	쌍문동	쌍문동	쌍문동	쌍문동	10월	11월	50	10	20	
3	대륜	노후구조물 벨브 교체공사(SDBH)	방학동	방학동	방학동 708	방학동 708	10월	10월	4		35	장기사용설비
4	대륜	노후구조물 벨브 교체공사(SDSM2MV0001)	쌍문동	쌍문동	쌍문동 56	쌍문동 56	11월	11월	4		30	장기사용설비

□ 노원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 (월)		배관연장 (m)	공금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착공	준공				
합계											
(주)대륜E&S											
1	대륜	소규모 공사	중계동	소계				106	20	285	
2	대륜	소규모 공사	하계동	하계동		10월	10월	40	10	25	
3	대륜	노후구조물 벨브 교체공사(SNSG2MV004)	상계동	상계동 387-18		5월	5월	4	10	25	장기사용설비
4	대륜	노후구조물 벨브 교체공사(SNSG5MV003)	상계동	상계동 172		6월	6월	4		35	장기사용설비
5	대륜	노후구조물 벨브 교체공사(SNSG7MV002)	상계동	상계동 2-26		7월	7월	4		35	장기사용설비
6	대륜	노후구조물 벨브 교체공사(SNSG9MV001)	상계동	상계동 645		8월	8월	4		30	장기사용설비
7	대륜	노후구조물 벨브 교체공사(SNSG1M)	중계동	중계동 580		9월	9월	4		40	장기사용설비
8	대륜	노후구조물 벨브 교체공사(SNSG1M)	중계동	중계동 362-3		10월	10월	4		35	장기사용설비
9	대륜	노후 정류기 교체공사(상계역산 정류)	상계동	상계동 173-1		9월	12월	2		25	장기사용설비

□ 인 평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금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합계										
서울도시가스㈜										
1	서울	갈현동 456-2호 인근 공금관 공사	갈현동	갈현동 456-5	갈현동 456-2	6	70	3	70	미공금지역
2	서울	대조1구역 인근 지역정압기 및 본공금관 공사	대조동	대조동 91-20	대조동 88-353	7	1,000	2,451	849	2025년 이월공사
3	서울	진관동 175 국립한국문학관 공금관 공사	진관동	진관동 151	진관동 175-152	5	127	2	158	
4	서울	중산동 삼표복합시설 인근 공금관 공사	중산동	중산동 221-10	중산동 223-15	9	200	300	234	
5	서울	역촌동 54-8호 공금관 밸브 교체공사	역촌동	역촌동 54-8	역촌동 54-8	7	7		29	
6	서울	역촌동 27-14호 공금관 밸브 교체공사	역촌동	역촌동 27-14	역촌동 27-14	8	3		33	
7	서울	응암1동 97-37호 공금관 밸브 채기공사	응암동	응암1동 97-37	응암1동 97-37	9	3		64	
8	서울	영업투자 비계획	은평구			3	11	1	50	

□ 서 대 문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명		공 사 구 간			중 점	공사기간 (월)	배관연장 (m)	공금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동 명	시 점							
합계												
서울도시가스(주)												
1	서울	대신동 85-9호 인근 공금관 공사	대신동	대신동 50	대신동 85-9	11	70	2	69	미공급지역 (이월)		
2	서울	연희동 187-59호 인근 공금관 공사	연희동	연희동 188-88	연희동 187-59	5	30	1	34	미공급지역		
3	서울	북가좌동 여세권 청년주택 인근 공금관 공사	북가좌동	북가좌2동 333-8	북가좌2동 333-1	4	90	382	101			
4	서울	창전동 72-2호 벨브교체공사	창전동	창전동 72-2	창전동 72-2	5	8		65			
5	서울	홍은동 93-3번지 벨브교체공사	홍은동	홍은동 93-3	홍은동 93-3	6	8		65			
6	서울	대신동 85번지 하니솔빌딩B동 인입벨브교체공사	대신동	대신동 85	대신동 85	7	8		39	정기사용설비 안전투자		
7	서울	북가좌동 306-17호 벨브교체공사	북가좌동	북가좌동 306-17	북가좌동 306-17	8	7		38			
8	서울	연희동 114-13호 벨브교체공사	연희동	연희동 114-13	연희동 114-13	9	7		29			
9	서울	영입투자 비계획	서대문구			3	150	1	50			
(주)에스코												
1	(주)에스코	영전동 서대문영전반도유모라	영전동	영전동 69-20번지	영전동 69-20번지	3	40	315	31			
2	(주)에스코	기타 소규모				1	50	30	40			

□ 마 포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 (월)	배관연장 (m)	공급기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합계								
		서울도시가스㈜								
1	서울	마포동 292-72호 인근 공급관 공사	도화동	마포동 292-67	마포동 292-72	8	96	6	90	미공급지역
2	서울	공덕1구역재건축 공급관공사	공덕동	아현동415-4	공덕동103-12	6	52	1,101	92	
3	서울	아현동 738번지 인근 증합LOOP 공사	아현동	아현동 738	아현동 738	5	194		165	
4	서울	아현동 397-3호 증합밸브 교체공사	아현동	아현동 397-3	아현동 397-3	6	3		40	
5	서울	도화동 353번지 인입밸브 교체 공사	도화동	도화동 353	도화동 353	7	5		52	
6	서울	서교동의 정압실 인입밸브 교체공사	서교동	서교동 360-2	서교동 360-2	8	9		72	장기사용밸브 안전투수
7	서울	도화동 366번지 인입밸브 교체공사	도화동	도화동 36	도화동 36	9	5		53	장기사용밸브 안전투수

□ 양 천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 명	동 명	시 점	종 점	착공	준공					
합계												
서울도시가스(주)												
1	서울	신월동 136-6호 인근 공급관 공사	신월동	신월동	신월동	6	6	30	1	122		
2	서울	신월5동 26번지 중앙 밸브 교체공	신월동	신월5동	신월5동	9	9	10		40	미공급지역	
3	서울	신월5동 1053번지 중앙 밸브 절거	신월동	신월5동	신월5동	10	10	10		50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귀뚜라미도시가스(주)												
1	귀뚜라미	신정동 177-20 주변 배관공사	신정7	177-20	177-73	7	10	45	0	70.0	환산양 구성	
2	귀뚜라미	신정동 1159-16 주변 배관공사	신정3	1159-16	1158-27	7	10	20	0	31.0	환산양 구성	
3	귀뚜라미	신월4동 441-1	신월4	441-1	441-1	4	10	5	0	25.0	장기사용설비(밸브) 안전투자	
4	귀뚜라미	관내소규모				1	12	45	172	362.0		

□ 강서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 (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 명	시 점	종 점	착공	준공				
합계											
서울도시가스㈜											
1	서울	공평동 45-38 인근 공급관 공사	공평동	공평동 45-62	공평동 45-38	8	8	478	8	687	
2	서울	화곡동 897-14 인근 공급관 공사	화곡동	화곡동 897-22	화곡동 897-15	9	9	120	1	107	미공급지역
3	서울	화곡동 1067-21 인근 공급관 공사	화곡동	화곡동 1067-19	화곡동 1067-21	5	5	95	3	79	미공급지역(25년 이월)
4	서울	등촌1주택 공공청사 기부채납 인입관공사	등촌동	등촌1동 366-55	등촌1동 366-61	6	6	63	1	62	미공급지역
5	서울	화곡화성 정압기 교체공사	화곡동	화곡본동 24-180	화곡본동 24-180	7	7	27	2	26	
6	서울	정곡초등학교 중앙 인입밸브 교체공사(방화3동)	방화동	방화3동 836	방화3동 836	8	8	10		249	
7	서울	등촌3동 669-2 저압 밸브 교체공사	등촌동	등촌3동 669-2	등촌3동 669-2	4	4	5		38	
8	서울	등촌3동 684-3 중앙 밸브 교체공사	등촌동	등촌3동 684-3	등촌3동 684-3	5	5	4		37	
9	서울	영업투자비 비계획	강서구			3	11	150	1	50	

□ 구로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착공	준공					
합계												
	귀뚜라미도시가스(주)											
1	귀뚜라미	구로동 111 주변 배관공사	구로5	547-31	111	3	6	20	0	46.0	환산망 구성	
2	귀뚜라미	구로동 532-3 주변 배관공사	구로5	532-3	533-7	3	6	35	0	54.0	환산망 구성	
3	귀뚜라미	개봉2동 403-225	개봉2	403-225	403-225	4	10	5	0	25.0	정기사용설비(벨트)	
4	귀뚜라미	관내소규모				1	12	365	477	965.0		

□ 금 천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합계													
		귀뚜라미도시가스㈜							265	320	803		
1	귀뚜라미	시흥동 879-24 주변 배관공사	시흥1	소계		879-24	879-20	7	10	37	5	58.0	신규공사
2	귀뚜라미	가산동 345-25	가산			345-25	345-25	4	10	5	0	25.0	장기사용설비(헬브) 안전투자
3	귀뚜라미	가산동 769	가산			769	769	4	10	5	0	25.0	장기사용설비(헬브) 안전투자
4	귀뚜라미	독산1동 300-17	독산1			300-17	300-17	4	10	5	0	25.0	장기사용설비(헬브) 안전투자
5	귀뚜라미	시흥1동 123-2	시흥1			123-2	123-2	4	10	5	0	25.0	장기사용설비(헬브) 안전투자
6	귀뚜라미	가산동 326-4	가산			326-4	326-4	4	10	5	0	25.0	장기사용설비(헬브) 안전투자
7	귀뚜라미	독산2동 1043-57	독산2			1043-57	1043-57	4	10	5	0	25.0	장기사용설비(헬브) 안전투자
8	귀뚜라미	시흥5동 908	시흥5			908	908	4	10	5	0	25.0	장기사용설비(헬브) 안전투자
9	귀뚜라미	시흥5동 908-24	시흥5			908-24	908-24	4	10	5	0	25.0	장기사용설비(헬브) 안전투자
10	귀뚜라미	관내소규모						1	12	188	315	545.0	

□ 영등포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 (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정	중정					
합계										
서울도시가스(주)										
소계										
1	서울	신길7동 1354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신길동	신길7동 1367-1호	신길7동 1354번지	7	7	40	38	31
2	서울	대림동 664-20번지, 26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대림동	대림동 664번지	대림동 664-26번지	7	7	70	80	50
3	서울	신길7동1300번지 역세권정년주택 신축공사	신길동	신길7동 450-38호	신길7동 1300번지	10	10	116	264	92
4	서울	삼화인쇄 양평동부지 개발사업 본관 공사	양평동	문래6가 10	양평1가 19	11	11	76	2	102
5	서울	대림동 성신병원 앞 뱃브 교체공사	대림동	대림1동 952-12	대림1동 952-12	4	4	4	57	
6	서울	신광장공원 사거리 뱃브 교체공사	신길동	신길5동 433-2	신길5동 433-2	5	5	4	59	
7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 인입뱃브 교체공사	여의도	여의도동 45-11	여의도동 45-11	7	7	4	25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8	서울	영등포4가 178호 뱃브정거 공사	영등포동	영등포4가 178	영등포4가 178	6	6	4	37	
9	서울	신길4동 223-7 앞 뱃브 교체공사	신길동	신길4동 223-7	신길4동 223-7	8	8	4	58	
10	서울	신길1동 영신초고 인입뱃브 교체공사	신길동	신길1동 121	신길1동 121	9	9	9	25	
11	서울	영등포6가 안세빌딩 인입뱃브 교체공사	영등포동	영등포6가 8-3	영등포6가 8-3	10	10	4	34	
12	서울	당산동3가 성화빌딩 인입뱃브 교체공사	당산동	당산동3가 388	당산동3가 388	11	11	6	37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13	서울	영등투자 비계획	영등포구			3	11	150	1	50

☐ 부속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금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합계										
서울도시가스㈜										
1	서울	노원진 K-Meat예세권 정년주택 인근 공급관공사	노원진동	소계			787	841	722	
				대방동 88-19		10	632	840	624	
2	서울	대방동 502 대방약국앞 중앙밸브 교체공사	대방동	대방동 502		7	5		48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3	서울	영입투자 비계회	동작구			3	11	1	50	

□ 관 약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 사 명	동 명	시 점	종 점						
		합계									
		서울도시가스(주)									
1	서울	봉천동 678-1호 인근 공급관 공사		보라매동 678-2호	보라매동 678-1호	9	9	42	3	25	미공급지역
2	서울	대학동 1519-2호 앞 하수관통배관 이설공사	대학동	대학동 1519-2호	대학동 1519-2호	4	4	8		58	
3	서울	청룡동 928-4호 앞 하수관통배관 이설공사	청룡동	청룡동 928-4호	청룡동 928-4호	5	5	4		29	
4	서울	미성동 607-73호 및 신원12동 청암밸브(양면) 교체공사	미성동	미성동 607-73호	미성동 607-73호	6	6	3		39	
5	서울	삼성동 300-6호 앞 중압밸브(공급) 교체공사	삼성동	삼성동 300-6호	삼성동 300-6호	7	7	4		46	
6	서울	서원동 1641-62호 앞 중압밸브(공급) 교체공사	서원동	서원동 1641-62호	서원동 1641-62호	8	8	4		30	
7	서울	서원동 1641-3단지 중압밸브 및 중간압 배관 교체(공급) 공사	서원동	서원동 1641-3	서원동 1641-3	9	9	8		78	
8	서울	성현동 1021번시 봉천동 5호 중압밸브(양면) 교체공사	성현동	성현동 1021	성현동 1021	10	10	4		29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9	서울	영업투자 비계획				3	11	150	1	50	

□ 서 초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착공	준공				
합계											
서울도시가스(주)											
1	서울	반포본동아파트(제3주구) 정압기 설치공사	반포동	반포본동	반포본동	4	4	56	2,091	280	
2	서울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구역 공급관공사	방배동	방배동 95	방배동 95	5	5	28	3,064	64	
3	서울	이수~과천 복합터널 이설공사	방배동	방배본동	방배본동	5	5	178		326	
4	서울	방배4동 1823번지 MP80A 인입밸브교체	방배동	방배4동 1823	방배4동 1823	6	6	3		32	장기사용설비 안전투
5	서울	방배1동 925-9 인입밸브 교체공사	방배동	방배1동 925-9	방배1동 925-9	7	7	3		37	장기사용설비 안전투
6	서울	서초3동 1541-1호 중앙밸브교체공사	서초동	서초3동 1541-1호	서초3동 1541-1호	8	8	3		41	
7	서울	방배3동 1038 방배대우 정압실 인입 밸브 교체공사	방배동	방배3동 1038	방배3동 1038	10	10	3		44	장기사용설비 안전투
코원에너지서비스(주)											
1	코원에너지서비스	내곡동 374번지 현인마을 도시개발	내곡동	374일대	374일대	5	12	510	-	1,278	
2	코원에너지서비스	내곡동 374번지 현인마을 도시개발	내곡동	374일대	374일대	9	12	1,475	259	464	
3	코원에너지서비스	남부순환로 342길 56-58 공급관 공사	양재동	172-2	177-2	5	8	264	1	226	(25 의무투자) 미 공급지역 보급화대
4	코원에너지서비스	장기사용배관 교체공사	양재동	77	76	6	9	60	-	21	(26 의무투자) 장 기사용설비 안전투
5	코원에너지서비스	소규모	서초구 일원서초구 일원			1	12	-	-	369	

□ 강남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중점	착공	준공					
합계												
코원에너지서비스㈜												
1	코원에너지서비스	도곡동 540 도곡상호아파트 주	도곡동	540	540	4	12	101	308	108		
2	코원에너지서비스	신사동 574-2 공급관	신사동	549-5	574-2	10	12	100	1	70		
3	코원에너지서비스	장기사용배관 교체공사	삼정동	156-5	156	6	9	150	-	340	(26 의무투자)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 1979년 설비	
4	코원에너지서비스	장기사용배관 교체공사	삼정동	21-4	21	6	9	60	-	86	(26 의무투자) 장기사용설비 안전투자 - 1979년 설비	
5	코원에너지서비스	소규모	강남구 일원		강남구 일원	1	12	-	-	223		

□ 송파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금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	비고
		공 사 명	동 명	시 점	종 점	착공	준공				
합계											
코원에너지서비스㈜											
1	코원에너지서비스㈜	송파구 오금동 162 송파창의혁신 공공주	오금동	162	162	4	12	405	1,244	234	'25년 말주 끝, SH 공사지연으로 '26년 시행
2	코원에너지서비스㈜	장기사용배관 교체공사	풍납동	388-6	388-6	6	9	35	-	52	(26 의정부지) 장기사용설비 안 전투자 - 1994년 설비
3	코원에너지서비스㈜	장기사용배관 교체공사	가락동	159-5	159-23	6	9	180	-	287	(26 의정부지) 장기사용설비 안 전투자 - 1986년 설비
4	코원에너지서비스㈜	장기사용배관 교체공사	삼전동	102-3	102-4	6	9	40	-	15.0	(26 의정부지) 장기사용설비 안 전투자 - 1993년 설비
5	코원에너지서비스㈜	장기사용배관 교체공사	가락동	125-1	125-2	6	9	36	-	76.0	(26 의정부지) 장기사용설비 안 전투자 - 1986년 설비
6	코원에너지서비스㈜	소규모		송파구 일원	송파구 일원	1	12	-	-	229	

□ 강 동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금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	비고
		공사명	동	시 점	종점		착공	준공					
합계													
										140	536	541	
							소계			140	536	541	
1	코원에너지서비스(주)	강동구 성내동 382-6 공금관	성내동		381	382-6	6	9	50	281	35		
2	코원에너지서비스(주)	강동구 길동 416-11 공금관	길동		446	416-11	6	9	90	255	63		
3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소규모	강동구 일원강동구 일원					1	12	-	-	443	

2027년도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

2027년 3월

서울특별시

□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 시행계획

1. 2027년 시행 계획

○ 자치구별

자치구별	구간수	배관설치연장 (m)	공사비 (백만원)	공급가구 (기구)	비고	서울 33	표원 6	예스코 6	미포 53	미포 6	귀뚜라미 3	계 101
종로	11	842	479	1,861		1	1	10	11			11
중구	6	790	548	275				6				6
용산	4	320	883	174		2		2				4
성동	11	1,370	901	3,583				11				11
광진	2	480	302	479				2				2
동대문	14	1,390	978	3,286				14				14
중랑	5	530	383	1,589				5				5
성북	3	300	250	270				1	2			3
강북	1	150	60	10					1			1
도봉	2	250	100	30					2			2
노원	1	100	40	20					1			1
은평	4	455	826	77		4						4
서대문	4	320	169	336		2		2				4
마포	1	63	159	2		1						1
양진	2	175	753	286		1				1		2
강서	4	720	963	1		4						4
구로	1	410	1,160	807							1	1
금진	1	240	828	539						1		1
영등포	8	836	1,134	114		8						8
동작	7	716	1,075	3,816		7						7
관악	1	150	50	1		1						1
서초	5	1,435	1,440	5,905		2	3					5
강남	1	0	223	0			1					1
송파	1	0	229	0			1					1
강동	1	0	443	0			1					1

○ 회사별

회사명	구간수	배관설치연장 (m)	공사비 (백만원)	공급가구 (기구)	비고
계	101	12,042	14,356	23,462	
서울	33	3,540	5,574	9,823	
표원	6	1,390	2,060	192	
예스코	53	5,712	3,991	11,735	
미포	6	600	240	80	
귀뚜라미	3	800	2,491	1,632	

□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 시행계획

2. 2027년 회사별 통계(정리)

○ 배관설치연장 (m)

자치구별	합계	서울	코원	에스코	대륜	귀뚜라미
계	12,042	3,540	1,390	5,712	600	800
종로	842	150		692		
중구	790			790		
용산	320	200		120		
성동	1,370			1,370		
광진	480			480		
동대문	1,390			1,390		
중랑	530			530		
성북	300			200	100	
강북	150				150	
도봉	250				250	
노원	100				100	
은평	455	455				
서대문	320	180		140		
마포	63	63				
양천	175	25				150
강서	720	720				
구로	410					410
금천	240					240
영등포	836	836				
동작	716	716				
관악	150	150				
서초	1,435	45	1,390			
강남	0		0			
송파	0		0			
강동	0		0			

○ 투자비 (백만원)

자치구별	합계	서울	코원	에스코	대륜	귀뚜라미
계	14,356	5,574	2,060	3,991	240	2,491
종로	479	50		429		
중구	548			548		
용산	863	723		140		
성동	901			901		
광진	302			302		
동대문	978			978		
종량	383			383		
성북	250			210	40	
강북	60				60	
도봉	100				100	
노원	40				40	
은평	826	826				
서대문	169	69		100		
마포	159	159				
양천	753	250				503
강서	963	963				
구로	1,160					1,160
금천	828					828
영등포	1,134	1,134				
동작	1,075	1,075				
관악	50	50				
서초	1,440	275	1,165			
강남	223		223			
송파	229		229			
강동	443		443			

○ 공급가구(가구)

자치구별	합계	서울	코원	에스코	대륜	귀뚜라미
계	23,462	9,823	192	11,735	80	1,632
종로	1,861	1		1,860		
중구	275			275		
용산	174	0		174		
성동	3,583			3,583		
광진	479			479		
동대문	3,286			3,286		
종랑	1,589			1,589		
성북	270			250	20	
강북	10				10	
도봉	30				30	
노원	20				20	
은평	77	77				
서대문	336	97		239		
마포	2	2				
양천	286	0				286
강서	1	1				
구로	807					807
금천	539					539
영등포	114	114				
동작	3,816	3,816				
관악	1	1				
서초	5,906	5,714	192			
강남	0		0			
송파	0		0			
강동	0		0			

□ 정 보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합계									
		서울도시가스㈜									
1	서울도시가스	영업투자 비계획(1건)	종로구	소계				842	1,861	479	
		㈜에스코									
1	㈜에스코	관철동 33-1 업무시설 신축 (27.10 준공)	관철동	관철동 33-1	관철동 33-1	6	6	10	-	6	
2	㈜에스코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교남동	교남동 28	교남동 28	1	1	80	500	61	
3	㈜에스코	송인동 1370 오피스텔 (27.05 준공)	송인동	송인동 1370	송인동 1370	4	4	50	237	23	
4	㈜에스코	일본대사관 재건축	종학동	종학동 18-11	종학동 18-11	10	10	10	1	16	
5	㈜에스코	종로경찰서 -2 신축	경운동	경운동 90-18	경운동 90-18	6	6	15	1	19	
6	㈜에스코	종로구청 (문화재 발굴 진행중)	수송동	수송동 146-2	수송동 146-2	9	10	10	1	16	
7	㈜에스코	토속촌 근린생활시설 신축 (27.05 준공)	통의동	통의동 70	통의동 70	4	4	12	1	15	
8	㈜에스코	효제동 21-3 업무시설 신축 (유적발굴)	효제동	효제동 21-3	효제동 21-3	11	11	15	1	16	
9	㈜에스코	효제동 98번지 일대 업무시설+근생(2)	효제동	효제동 98	효제동 98	5	5	40	868	17	
10	㈜에스코	기타소규모				1	12	450	250	239	

□ 증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 명	동 명	시 점	종 점	착공	준공					
		합계										
		(주)에스코										
1	(주)에스코	세운6구역 일대 관로 공사	을지로	을지로4가		산림동 85	9	11	200	-	206	배관 선투자
2	(주)에스코	소공동 부영호텔(준공 25.8월 -> 지연)	소공동	소공동 112		소공동 112	9	9	10	10	26	
3	(주)에스코	순화동 6-1(마포로5구역 9-1지구), 지연	순화동	순화동 6-15		순화동 6-15	8	8	10	136	18	
4	(주)에스코	예관동 52-11(인쇄스마트뱅크빌, 지연)	예관동	예관동 52-1		예관동 52-1	8	8	10	5	16	
5	(주)에스코	을지로3가 51(을지로3가 9지구)(27.10월, 근생 100m)	을지로	을지로3가 5		을지로3가 5	8	8	10	4	19	
6	(주)에스코	기타소규모					1	12	550	120	263	

구산영 ☐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판연장 (m)	공금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	점	종	점					
합계													
서울도시가스(주)													
1	서울	원호1가 정암실 LOOP공사		원호로1가	원호1가12	원호1가46	7	7	150	0	723		
2	서울	노후밸브 교체 10개소		용산구			3	11	50		590		

□ 광진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착공	준공								
		합계										480	479	302	
		(주)에스코										480	479	302	
1	(주)에스코	자양동 694번지(현대한창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양동	자양동 694번지	자양동 694번지	9	9	30	129	13				
2	(주)에스코	기타소규모					1	12	450	350	289				
3															
4															
5															
6															
7															
8															
9															
10															
11															

□ 동대문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착공	준공				
합계											
(주)에스코											
1	(주)에스코	담십리동 952(담십리 자동차부품상가 재	담십리동	담십리동 952	담십리동 952	6	6	30	709	13	-
2	(주)에스코	신이문역 시영개성사업	이문동	이문동 217-6	이문동 217-6	3	4	80	2	34	-
3	(주)에스코	용두1구역 4지구	용두동	용두동 47-7	용두동 26-3	4	4	60	80	25	-
4	(주)에스코	용두동 255-53 청광빌딩 재건축 (셀거진	용두동	용두동 255-53	용두동 255-53	7	8	50	4	36	-
5	(주)에스코	이문동 189번지(신이문역 행복주택)	이문동	이문동 54	이문동 189	7	7	100	300	42	-
6	(주)에스코	진농동 103-236 (진농 9구역 공공재개발	진농동	진농동 103-236	진농동 103-236	10	11	100	3	122	-
7	(주)에스코	진농동 591-2, 6, 8호 오피스텔	진농동	진농동 591-2호	진농동 591-2호	9	9	30	76	28	-
8	(주)에스코	진농동 691-2(서울대표도서관)	진농동	진농동 691-2	진농동 691-2	11	12	20	4	63	-
9	(주)에스코	제기4구역 힐스테이트 라센트	제기동	제기동 288	제기동 288	10	11	130	909	85	-
10	(주)에스코	제기6구역 SK건설 주택재개발	제기동	제기동 120-104	제기동 120-104	5	5	50	423	41	-
11	(주)에스코	청광리동 368번지 KT부지요진와이시티	청광리동	청광리동 368	청광리동 368	12	12	20	155	33	-
12	(주)에스코	청광리동 46번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광리동	청광리동 46	청광리동 46	5	6	20	238	33	-
13	(주)에스코	홍릉첨단의료기기 센터	청광리동	청광리동 950	청광리동 950	12	12	90	3	57	-
14	(주)에스코	기타소규모				1	12	610	380	369	-

□ 종 랑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착공	준공				
합계											
(주)에스코											
1	(주)에스코	(영도연립) 여세권 공동주택	민목동	민목동 1362	민목동 238번지	1	1	20	200	20	
2	(주)에스코	면목행정문화중심 복합타운	민목동	면목동 378-1C	면목동 378-1C	11	12	20	702	8	
3	(주)에스코	신내동482-1호(신일빌라)	신내동4	신내동482-1	면목동 1248	9	9	20	68	20	
4	(주)에스코	중랑역라운프라이빗아파트	중화동	중화동 296-44	민목본동 69-1	2	2	20	219	20	
5	(주)에스코	기타소규모				1	12	450	400	315	

□ 성 복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 (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착공	준공				
합계											
		(주)에스코			소계			300	270	250	
1	(주)에스코	기타소규모				1	12	200	250	210	
		(주)대륜E&S			소계			100	20	40	
1	대륜	소규모 공사		석관동	석관동	10월	10월	50	10	20	자체
2	대륜	소규모 공사		월곡동	월곡동	6월	7월	50	10	20	자체

□ 인 평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 사 명	동 명	시 점	종 점	착 공	준공					
합계												
서울도시가스㈜												
1	서울	신사동 237-538외 2필지 주상복합	신사동	신사동 237-446	신사동 237-538	6	6		55	76	36	
2	서울	증산5구역 재개발 원인자 이설공사	증산동	증산동 157-28	증산동 157-28	9	9		200		150	
3	서울	노후 펌프 교체공사 (10개소)	은평구			3	11		50		590	
4	서울	영인투자 비계획	은평구			3	11		150	1	50	

□ 서 대 문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 사 명		공사기간 (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동 명	시 점	종 점	착공	준공						
합계												
서울도시가스(주)												
1	서울	서울 연희 공공주택지구	연희동	연희동 533	연희동 446-27	7	7		30	96	19	
2	서울	영암투자 비계획	서대문구			3	11		150	1	50	
(주)에스코												
1	(주)에스코	미근동 165(서대문경찰서)	미근동	미근동 165	미근동 165	6	6		10	9	16	
2	(주)에스코	기타소규모				1	12		130	230	84	

□ 마 포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 (월)	배관연장 (m)	공금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합계					63	2	159	
		서울도시가스㈜					63	2	159	
1	서울	마포 한류 공연장 신축공사	마포동	용강동 51-1	마포동 36-1	10	63	2	159	
2										
3										
4										
5										
6										

□ 양천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착공	준공						
합계													
		서울도시가스(주)							25	0	250		
1	서울	노후밸브 교체공사 5개소					양천구	3	11	25	250		
		귀뚜라미도시가스(주)							150	286	503		
1	귀뚜라미	관내소규모						1	12	150	286	503.0	

□ 구 로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착공	준공					
합계												
	귀뚜라미 도시가스(주)				소계				410	807	1,160	
1	귀뚜라미	관내소규모					1	12	410	807	1160.0	

□ 금 천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기구 (기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	명	시	점	착공	종공					
합계													
	귀뚜라미도시가스(주)												
1	귀뚜라미							1	12	240	539	828.0	

□ 영등포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 (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등 명	시 점	종 점					
합계										
서울도시가스㈜										
1	서울	영등포동8가 74-4 오피스텔 신축공사	영등포동	영등포동8가 73	영등포동8가 74-4	5	51	52	153	
2	서울	여의도동14-23호 오피스텔 신축공사	여의도동	여의도동 14-27	여의도동 14-23	6	50	60	156	
3	서울	대림동665영업용 시설공사	대림동	대림동 664-17	대림동 665	9	50	1	31	
4	서울	여의도동 62단지 인근 저밀도 배관 교체공사	여의도동	여의도동 61-3	여의도동 62	7	250		176	
5	서울	영등포4가 442단지 인근 저밀도 배관 철거 및 재연결공사	영등포동	영등포동4가 142	영등포동4가 442-2	8	260		278	
6	서울	신길1동 7-2호 인근 배관 철거공사	신길동	신길1동 7-2	신길1동 7-2	10	-		40	
7	서울	노후 밸브 교체공사 5개소	영등포구			3	11	25	250	
8	서울	영암투자 비계획	영등포구			3	11	150	1	50
9										
10										
11										

☐ 동 작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합계											
서울도시가스㈜											
1	서울	확석9구역	확석동	확석동 74-70	확석동 69-42	5	5	25	1,564	130	자체
2	서울	노량진2구역재정비촉진 재개발	노량진동	노량진동 312-26	노량진동 312-23	6	6	30	411	43	자체
3	서울	노량진본동지역주택조합	노량진동	노량진본동 344-21	노량진본동 379-22	9	9	230	823	274	자체
4	서울	노량진동 56-1 KT청년주택	노량진동	노량진동 54-11	노량진동 56-1	10	10	172	397	246	자체
5	서울	사당동 250-27번지 일대(남성역일대) 재개발	사당동	사당동 1131	사당동 249-1	11	11	105	620	305	자체
6	서울	사당동 139-22호 중앙 세타밸브 설치공사	사당동	사당동 139-22	사당동 139-22	9	9	4		27	자체
7	서울	영업투자 비계획	동작구			3	11	150	1	50	자체
8											
9											

구하권 ☐[illegible]

□ 서 초 구

[illegible]

구
남
강
□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공사명	동명	시점	종점	착공	준공						
합계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소계				0	0	223		
1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소규모			강남구 일원	강남구 일원	1	12		-	-	223		

□ 송파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 (월)		배관연장 (m)	공급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	비고
		공사명	동	명	시	점	종				
합계											
	코원에너지서비스㈜										
1	코원에너지서비스㈜ 소규모				송파구 일원송파구 일원		1	12	-	229	

□ 강 동 구

관리 NO	회사명	공 사 구 간					공사기간(월)		배관연장 (m)	공금가구 (가구)	투자비 (백만)	비고
		공사명	동	시	점	점	착공	준공				
		합계										
		코원에너지서비스(주)										
1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소규모			강동구 일원강동구 일원		1	12	-	-	443	자체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6-4호

2026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 퇴직 (25.11.14.)

소속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직위	(전)사장	성명	번호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액)	감소액 (실거래가액)		
▶ 토지(소계)			20,000	64,268	0	84,268	
본인	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125번지 1,071.10㎡ 중 1.29㎡ (총면적 1,071.10㎡ 증가, 지분면적 1.29㎡ 증가)	0	15,847 (15,847)	0	15,847	재건축 공유지분 취득

(단위 : 천원)

본인	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213번지 987.10㎡ 중 1.19㎡ (총면적 987.10㎡ 증가, 지분면적 1.19㎡ 증가)	0	14,640 (14,640)	0	14,640	재건축 공유지분 취득
본인	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24번지 932.60㎡ 중 1.13㎡ (총면적 932.60㎡ 증가, 지분면적 1.13㎡ 증가)	0	13,889 (13,889)	0	13,889	재건축 공유지분 취득
본인	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87번지 95.20㎡ 중 0.11㎡ (총면적 95.20㎡ 증가, 지분면적 0.11㎡ 증가)	0	1,409 (1,409)	0	1,409	재건축 공유지분 취득
본인	도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88번지 602.00㎡ 중 0.73㎡ (총면적 602.00㎡ 증가, 지분면적 0.73㎡ 증가)	0	8,940 (8,940)	0	8,940	재건축 공유지분 취득
본인	대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0-98번지 589.40㎡ 중 0.75㎡ (총면적 589.40㎡ 증가, 지분면적 0.75㎡ 증가)	0	9,275 (9,275)	0	9,275	재건축 공유지분 취득
장남	임야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산 230번지 29,765.00㎡ 중 4,960.00㎡	10,000	134	0	10,134	공시지가 변동
차남	임야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산 230번지 29,765.00㎡ 중 4,960.00㎡	10,000	134	0	10,134	공시지가 변동
▶ 건물(소계)			3,170,000	34,880	0	3,204,88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건물 3,557.00㎡ 중 87.54㎡	2,240,000	30,000	0	2,270,000	공시지가 변동
본인	아파트(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건물 84,725.50㎡ 중 84.96㎡	930,000	0	0	930,000	변동없음

본인	사무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건물 280.00㎡ 중 0.33㎡ (건물 총면적 280.00㎡ 증가, 지분면적 0.33㎡ 증가)	0	4,880 (4,880)	0	4,880	재건축 공유지분 취득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6,500	0	100	6,400	
본인	자동차	2010년식 그랜드 체로키 배기량(3,600cc)	6,500	0	100	6,400	감가상각
▶ 예금(소계)			581,168	302,755	167,139	716,784	
본인		NH투자증권 1, 국민은행 78,456(14,181 감소), 대신증권 3,047(3,010 증가), 미래에셋증권 104,760(104,760 증가), 삼성증권 6, 유안타증권 3, 한화손해보험 1,526(224 증가)	93,986	107,994	14,181	187,799	예금 및 투자수익 증가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510, 국민은행 56,923(16,375 증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2,783(15,925 증가), 삼성생명보험 4,404, 삼성증권 6,527(2,569 증가)	66,278	51,727	16,858	101,147	
장남		(주)KEB하나은행 7,970(2,050 증가), 국민은행 4,298(4,029 증가), 미래에셋증권 79,228(64,311 감소), 빙썸 50(50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47,963(107,963 증가), 신한은행 700(700 증가), 키움증권 58,549(37,069 감소)	285,346	140,784	127,372	298,758	
차남		(주)KEB하나은행 8,270(2,250 증가), 국민은행 66,273(3,359 감소), 신한은행 106, 중소기업은행 135, 키움증권 54,296(5,369 감소)	135,558	2,250	8,728	129,080	
▶ 증권(소계)			4,703	6,871	4,209	7,365	

배우자	상장주식	삼성전자우 10주, 카카오페이 2주	494	357	0	851	가격 변동
차남		ALPHABETINC 2주(2주 증가), AMAZONCOMINC 2주(2주 증가), AMERSPORTSINC 0주(50주 감소), ANAVEXLIFESCENCESCORPORATION 0주(40주 감소), DATADOGINC 1주(1주 증가), ELILILLYANDCOMPANY 1주(1주 증가), GEAROSPACE 1주(1주 증가), KINGSOFTCLOUDHLDGSLTDSPONADSEACHR 0주(50주 감소), MONGODBINC 4주(4주 증가), ONDASHOLDINGSINC 0주(200주 감소), VISTAENERGYS.A.B.DEC.V.SPONADSEAC 10주(10주 증가)	4,209	6,514	4,209	6,514	가격 변동
	상장주식						
▶ 채무(소계)			475,800	0	105,800	37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임대보증금	370,000	0	0	370,000	
장남	금융채무	국민은행 0(105,800 감소)	105,800	0	105,800	0	전액 상환
▶ 콜동품 및 예술품(소계)			7,200	0	0	7,200	
본인		병풍 (동양화 8폭 병풍, 40cm*150cmCm, 미산, 1900년대 초)	6,000	0	0	6,000	
배우자		현판 (한자 해독불가, 60cm*30cmCm, 이삼만, 1700년대 추정)	1,200	0	0	1,200	
▶ 가상자산(소계)			0	13,420	0	13,420	

장남		비트코인 0.09084082개 (0.09084082개 증가)	0	13,420	0	13,420	폐수 및 가격 변동
		총 계	3,313,771	422,194	65,648	3,670,317	증감액: 356,546천원 (가액변동: 30,525천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훈령]

◆ 서울특별시교육훈령 제22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폐지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록물 관리 체계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법령 간 불일치와 중복 운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삭제·정비 권고를 받은 바 있음
- 다.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하고 효율적이며 통합적인 기록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와 훈령을 통합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제9912호, 2026. 1. 8.)함에 따라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기록관 운영 규정」 폐지

구 고 시

◆ 마포구고시 제2026-54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65호(1976.7.15.)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86호(2002.3.2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11호(2018.9.27.), 제2025-398호(2025.7.24.)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된 마포구 상수동 72-1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마포구 상수동 72-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 명칭 : 홍익대학교 뉴홍익 증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 시설 결정 면적 : 94,508㎡
- 2) 규모

건물명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	비고
뉴홍익	기정	-	-	-	-	금회 증축
	금회계획안	17,766.85㎡	149,690.54㎡	48,213.47㎡	지하6층, 지상9층	
제2신관	기정	1,058.05㎡	9,809.10㎡	8,838.00㎡	지하1층, 지상10층	뉴홍익 증축에 따른 대수선
	금회계획안	927.43㎡	9,755.12㎡	8,784.02㎡	지하1층, 지상10층	
홍문관	기정	3,886.61㎡	61,941.91㎡	30,180.74㎡	지하6층, 지상16층	뉴홍익 증축에 따른 대수선
	금회계획안	3,886.61㎡	61,120.97㎡	30,180.74㎡	지하6층, 지상16층	
아트앤 디자인밸리	기정	1,746.78㎡	17,094.50㎡	1,820.05㎡	지하4층, 지상2층	뉴홍익 증축에 따른 대수선
	금회계획안	1,746.78㎡	17,081.70㎡	1,820.05㎡	지하4층, 지상2층	
합 계	기정	6,691.44㎡	88,845.51㎡	40,838.79㎡		

건물명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	비고
	금회계획안	24,327.67㎡	237,648.33㎡	88,998.28㎡		
증 · 감		17,636.23㎡	148,802.82㎡	48,159.4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학교법인 홍익학원

2)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72-1번지 일대

마. 사업의 시행기간 : 2026. 5. 29. ~ 2030. 5. 28.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8-62	도	70.5	70.5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94				
2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8-19	대	403.5	403.5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94				
3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36-54	대	122	122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94				
4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36-53	대	315	315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94				
5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36-15	대	262	262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94				
6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436-2	학	2,626	2,626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94				
7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학	92,750	90,709	학교법인 홍익학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94				
합계				96,549	94,508						

◆ 강서구고시 제2026-4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2007.12.28)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5호(2020.12.24.)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된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관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른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43-2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용지(H1블록))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
- 2) 명칭 : 강서구 마곡지구 내 마곡노인종합복지관

다. 사업시행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대지면적	1,700㎡		-		
연 면 적	2,732.30㎡		-		
건축면적	744.80㎡		-		
건 폐 율	43.81%		-		법정 50% 이하
용 적 륜	147.27%		-		법정 200% 이하
층 수	지하1층~지상4층		-		
용 도	지하1층 ~지상4층	노유자시설 2,732.30㎡	지하1층 ~지상4층	노유자시설 2,660.33㎡	
			지상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71.97㎡	

구 분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주 차 장	21대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1) 사업시행자 : 당초- (주)이랜드월드

변경- 강서구청장

2) 주 소 : 당초-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59

변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마. 시행기간

1) 인가일로부터 ~ 2026. 4.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시설 면적 (㎡)	소유자		관계인(사업시행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마곡동	743-2	대	1,700	2,732.30	강서구청장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장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02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건축과(☎02-2600-6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고시 제2026-37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구로구 개봉동 170-33 일원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7호(2023.12.28.)로 결정(변경) 고시되고 구로구 고시 제2025-184호(2025.11.13.)로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중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공공기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구로구청장

I. 변경결정 취지

- 중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한 구로구 개봉동 170-33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기여 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②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공공기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공기여 계획(기정)

구 분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 기여율	공공기여면적					비고 (구성비)
				구 분	구성비	총면적	부지제공	환산부지	
제3종일반 주거지역 → 근린 상업지역	250%	600%	부지면적의 29.17% 이상 (788.09㎡)	합 계	29.20%	789.02㎡	182.13㎡	606.89㎡	100.0%
				공공주택	-	-	-	-	
				지역필요시설 (공공산후조리원)	29.20%	789.02㎡	182.13㎡	606.89㎡	
				기준 788.09㎡(29.17%) ≤ 계획 789.02㎡(29.20%)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운영기준」 4-1-1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 환산함

주2) 공공기여시설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따르며,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건축허가 시점에 관한 관리청과 사업자가 각각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한 단위면적 당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하여 확정하되, 토지가치산정 기준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시점으로 함

주3) 공공기여시설은 세부건축계획 성능수준, 설비 등 조성계획을 관할 관리청과 협의 후 건축 인·허가 시 확정하여 준공 시 기부채납함

주4)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도로(중로3-4) 가각부의 기부채납 부분은 공공기여 산정에서 제외

■ 공공기여 계획(변경)

구 분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 기여율	공공기여면적					비고 (구성비)
				구 분	구성비	총면적	부지제공	환산부지	
제3종일반 주거지역 → 근린 상업지역	250%	600%	부지면적의 29.17% 이상 (788.09㎡)	합 계	29.20%	788.96㎡	250.43㎡	538.53㎡	100.0%
				지역필요시설 (공공산후조리원)	29.20%	788.96㎡	250.43㎡	538.53㎡	
				기준 788.09㎡(29.17%) ≤ 계획 788.96㎡(29.20%)					

주1) 「서울특별시 역사권 활성화 운영기준」 4-1-1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 환산함

주2) 공공기여시설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따르며,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건축허가 시점에 관할 관리청과 사업자가 각각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한 단위면적 당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하여 확정하되, 토지가치산정 기준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시점으로 함

주3) 공공기여시설은 세부건축계획 성능수준, 설비 등 조성계획을 관할 관리청과 협의 후 건축 인·허가 시 확정하여 준공 시 기부채납함

주4)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도로(중로3-4) 가각부의 기부채납 부분은 공공기여 산정에서 제외

■ 공공기여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 공공기여면적 - 총면적 : 789.02㎡ - 부지제공 : 182.13㎡ - 환산부지 : 606.89㎡	- 공공기여면적 - 총면적 : 788.96㎡ - 부지제공 : 250.43㎡ - 환산부지 : 538.53㎡	감정평가 결과('26. 2.13.)를 반영한 공공기여 계획 변경

■ 공공기여시설 세부내역(기정)

구 분	총 공공 기여면적	부지 제공면적	환산 부지면적	공공기여율 (비 율)	지상 연면적	지하 연면적	연면적 계	비고 (관리청)
공공주택	-	-	-	-	-	-	-	-
지역필요시설 (공공산후조리원)	789.02㎡	182.13㎡	606.89㎡	29.20% (100.0%)	1,017.33㎡	661.77㎡	1,679.10㎡	구로구
계	789.02㎡	182.13㎡	606.89㎡	29.20% (100.0%)	1,017.33㎡	661.77㎡	1,679.10㎡	-

■ 공공기여시설 세부내역(변경)

구 분	총 공공 기여면적	부지 제공면적	환산 부지면적	공공기여율 (비 율)	지상 연면적	지하 연면적	연면적 계	비고 (관리청)
지역필요시설 (공공산후조리원)	788.96㎡	250.43㎡	538.53㎡	29.20% (100.0%)	1,323.90㎡	1,006.91㎡	2,330.81㎡	구로구
계	788.96㎡	250.43㎡	538.53㎡	29.20% (100.0%)	1,323.90㎡	1,006.91㎡	2,330.81㎡	-

■ 공공기여시설 세부내역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총 연면적 - 1,679.10㎡	총 연면적 - 2,330.81㎡	감정평가 결과('26. 2.13.)를 반영한 공공기여 세부내역 변경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 변경없음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6.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변경
 - 가. 기준용적률의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변경없음
 - 나. 용적률 유형별 인센티브 계획 기준 : 변경없음
 - 다. 개봉동 170-3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변경

■ 기정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9.17% 이상	부지면적의 29.20% 계획	기준 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6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함
	공공기여시설 설치기준	- 공공주택 30% 이상 권장 - 한가지 유형의 시설이 50%를 초과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	지역필요시설 29.20%(100.0%)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 지상 용적률 10% 이상 - 전체 연면적 20% 이상	- 주거 : 비주거 = 83.33% : 16.67% - 주거 : 비주거 = 79.86% : 20.14%		
	주거비율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적용	주거용적률 499.96%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 공공주택 : 전용 85㎡ 이하 - 민간주택(분양) : 기준 없음	- 공공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 - 전용 29㎡(299세대) -		
건축물 형태	서울형	3가지 의무적 이행 적용	2가지 이행적용(역사문화 해당없음)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주거환경 정책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역사문화 보전(해당 시)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100세대 미만인 경우 : 100㎡ 이상	• 세대당 1.5㎡ 이상 확보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510.46㎡ 이상 계획 - 용도 : 도서관		

주1) 「서울특별시 역사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주2) 향후, 건축계획 및 인허가 등에 따라 역사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에서 계획내용의 면적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29.17% 이상	● 부지면적의 29.20% 계획	기준 용적률 250%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함	
	공공기여시설 설치기준	● 공공주택 30% 이상 권장 ● 한가지 유형의 시설이 50%를 초과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	● 지역필요시설 29.20%(100.0%)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비율	● 지상 용적률 10% 이상 ● 전체 연면적 20% 이상	● 주거 : 비주거 = 83.34% : 16.66% ● 주거 : 비주거 = 79.50% : 20.50%			
	주거비율	●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적용	● 주거용적률 500.00%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 공공주택 : 전용 85㎡ 이하	● 공공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 - 전용 29㎡(299세대)			상한 용적률 600% 부여
		● 민간주택(분양) : 기준 없음	-			
건축물 형태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3가지 의무적 이행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역사문화 보전(해당 시)	● 2가지 이행적용(역사문화 해당없음)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설치대 상이 아닌 100세대 미만인 경우 : 100㎡ 이상	● 세대당 1.5㎡이상 확보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516.22 ㎡ 계획 - 용도 : 도서관			

주1) 「서울특별시 역사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주2) 향후, 건축계획 및 인허가 등에 따라 역사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에서 계획내용의 면적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용적률 적용기준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 지상 용적률 비주거비율 : 16.67% - 전체 연면적 비주거비율 : 20.14% - 주거 용적률 : 499.96% - 주민공동시설 면적 : 510.46㎡	- 지상 용적률 비주거비율 : 16.66% - 전체 연면적 비주거비율 : 20.50% - 주거 용적률 : 500.00% - 주민공동시설 면적 : 516.22㎡	건축심의('25.12. 9.) 및 감정평가 결과('26. 2.13.)에 따라 계획내용의 면적 및 비율 변경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Ⅲ. 관계도면 : 불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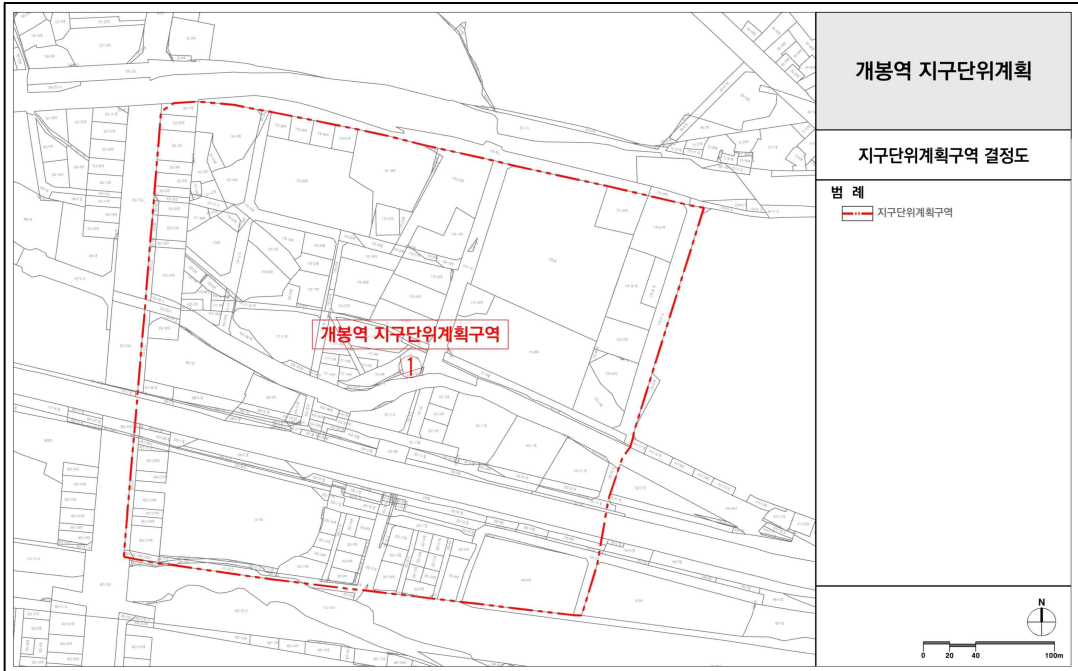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28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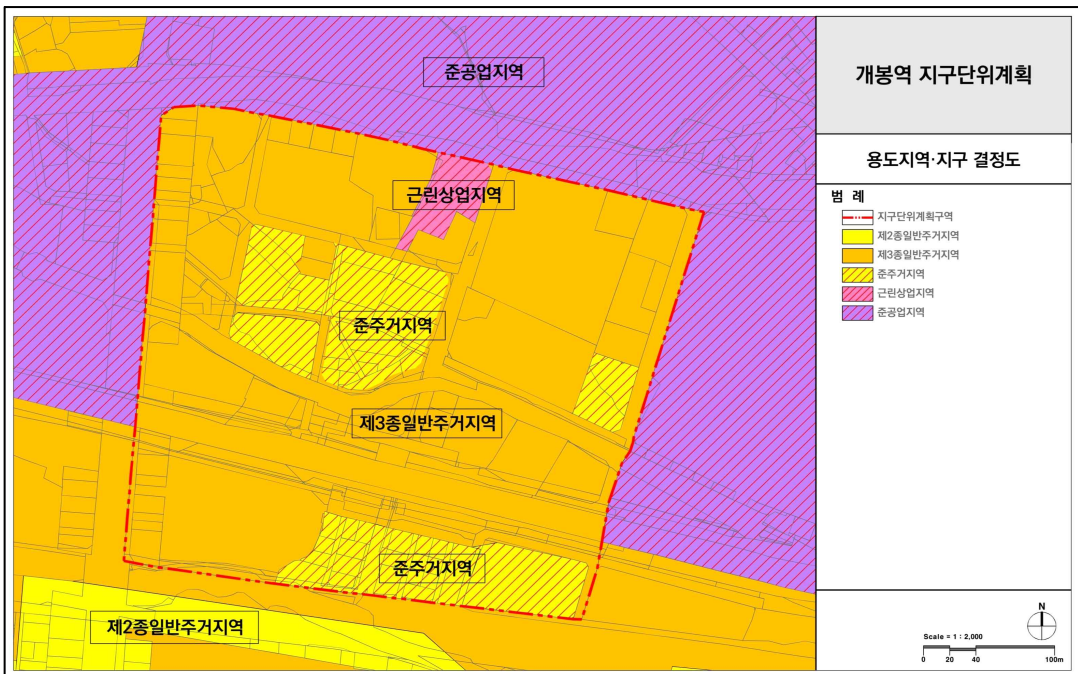
※ 고시문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공간포털 (<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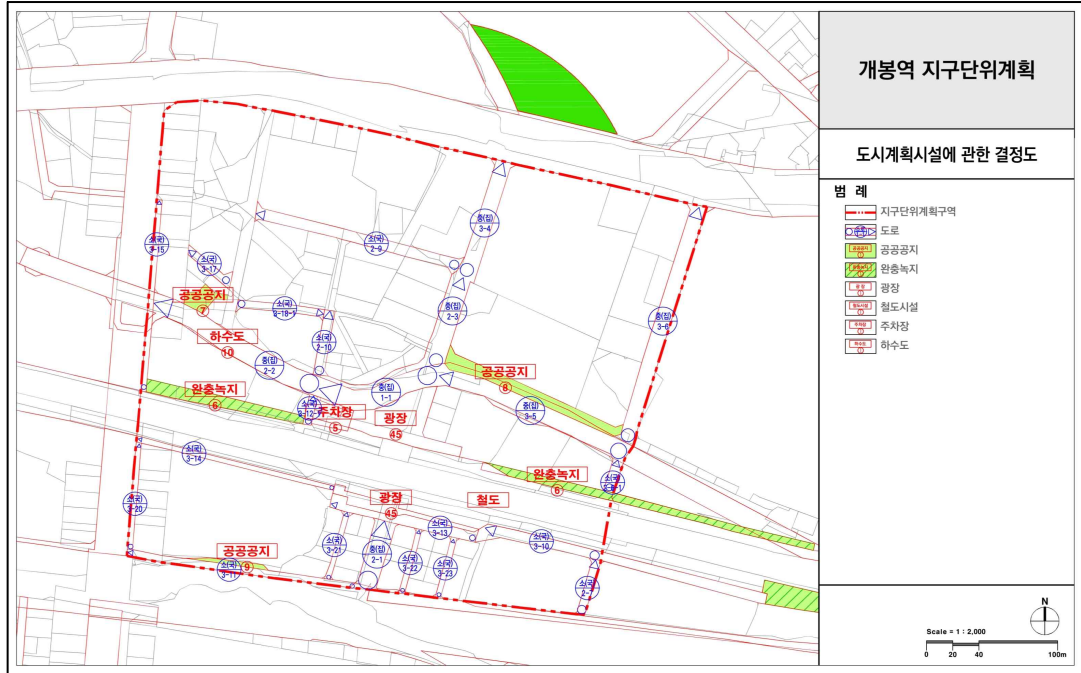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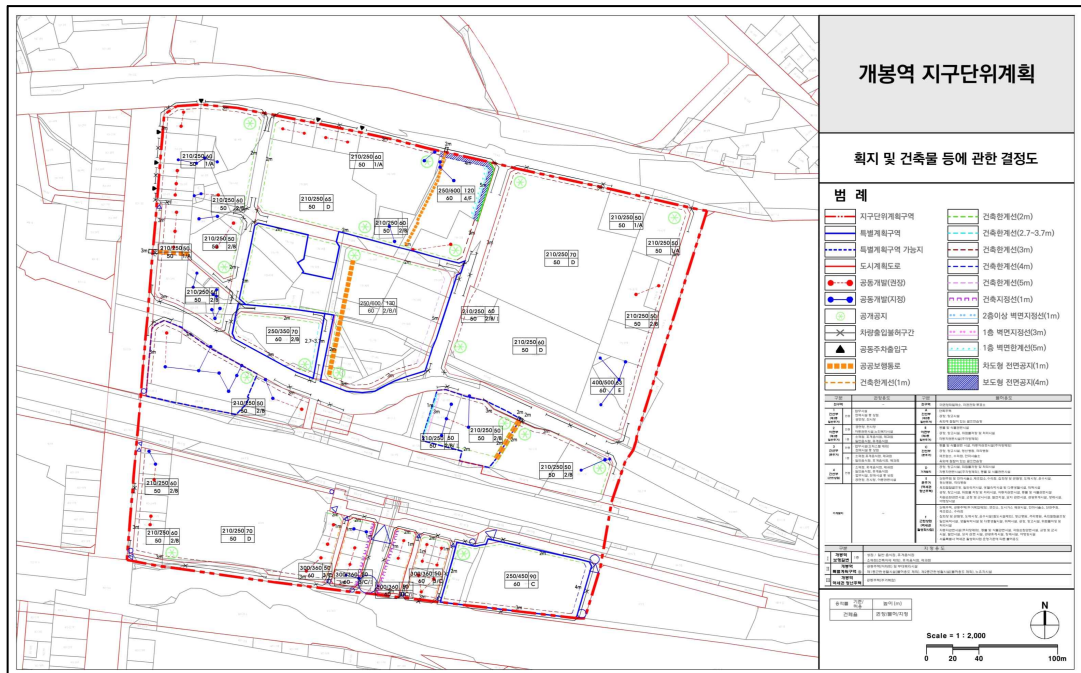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서초구고시 제2026-77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2020. 9. 24.)로 결정 고시된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 3. 12.)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 초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체계 개편으로 결정된 인센티브 항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가. 용도지역이 유지되는 지역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기정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비고
구분	유형			
스마트 도시	UAM시설	기준용적률× 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산업 육성			
	로봇친화형 건축물	기준용적률× 0.03~0.05	·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시 - 최우수 0.05, 우수 0.03	
탄소중립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용적률× 0.05	·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	
	저영향 개발	기준용적률× 0.05	·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분담량 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비고
구분	유형			
디자인 혁신	특색있는 건축설계	기준용적률× 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기준용적률× 0.03~0.0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 - 최우수 0.05, 우수 0.04, 일반 0.03	
녹지생태 도심	입체녹지 조성	기준용적률× 0.05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 녹지 조성기준 상 인정한다 이상 설치 시	
	공공보행통로 설치	기준용적률× 0.03	· 공공보행통로에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 시	
지역맞춤	역사문화 특성 보전	기준용적률× 0.03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지역특화용도 도입			
	전선지중화 설치			

■ 변경 : (A)주거 및 (B)생활지원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비고
구분	유형			
탄소중립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용적률× 0.05	·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	
	저영향 개발	기준용적률× 0.05	·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 - 빗물분담량 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	※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자료 작성 후 자치구 물순환주관부서 및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협의
녹지생태 도심	입체녹지 조성	기준용적률× 0.05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 녹지 조성기준 상 인정한다 이상 설치 시 (법적 설치의무 면적 제외)	※ 개방형 녹지 인정 한도 - 대지면적 3천㎡미만: 25% - 대지면적 5천㎡미만: 35% - 대지면적 8천㎡미만: 40% - 대지면적 8천㎡이상: 45%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비고
구분	유형			
	공공보행통로 설치	기준용적률× 0.03	• 공동개발, 건축협정 등을 통해 해당 블록을 관통하는 폭 2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고 지역권 설정 시	
지역맞춤	전선지중화 설치	기준용적률× 0.03	• 지상 전주, 전선 등을 지중화 또는 가로지장물을 대지 내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저영향 개발 항목의 경우 상한용적률과 중복 적용 금지

■ 변경 : (C) 업무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비고
구분	유형			
탄소중립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용적률× 0.05	•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	
	저영향 개발	기준용적률× 0.05	•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 - 빗물분담량 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	※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자료 작성 후 자치구 물순환주관부서 및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협의
디자인 혁신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기준용적률× 0.03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BF인증)을 인증하는 경우	
녹지생태 도심	입체녹지 조성	기준용적률× 0.05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 녹지 조성기준 상 인정한도 이상 설치 시 (법적 설치의무 면적 제외)	※개방형 녹지 인정 한도 - 대지면적 3천㎡미만: 25% - 대지면적 5천㎡미만: 35% - 대지면적 8천㎡미만: 40% - 대지면적 8천㎡이상: 45%
지역맞춤	지역특화용도	기준용적률× 0.03	• 업무 용도를 지상 연면적의 50% 이상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면적 제외)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비고
구분	유형			
	전선지중화 설치	기준용적률× 0.03	· 지상 전주, 전선 등을 지중화 또는 가로지장물을 대지 내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저영향 개발 항목의 경우 상한용적률과 중복 적용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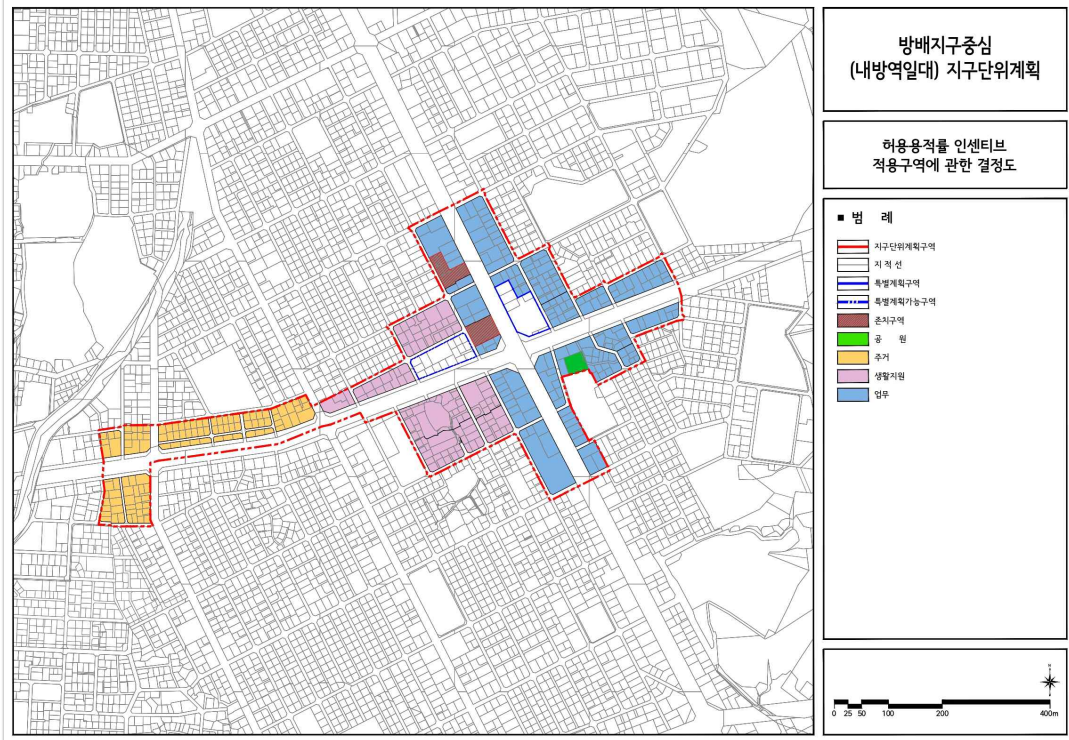
나. 기타 결정사항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아래의 관계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02-2155-681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구역에 관한 결정도



◆ 서초구고시 제2026-78호

도시관리계획(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81호(2022. 12. 8.)로 결정 고시된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 3. 12.)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 초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체계 개편으로 결정된 인센티브 항목을 구체화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적정 높이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가. 용도지역이 유지되는 지역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기정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비고
구분	유형			
스마트 도시	UAM시설	기준용적률× 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스마트산업 육성			
	로봇친화형 건축물	기준용적률× 0.03~0.05	·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시 - 최우수 0.05, 우수 0.03	
탄소중립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용적률× 0.05	·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	
	저영향 개발	기준용적률× 0.05	·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분담량 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비고
구분	유형			
디자인 혁신	특색있는 건축설계	기준용적률× 0.03 이하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공공시설 연계 경관사업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기준용적률× 0.03~0.0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 - 최우수 0.05, 우수 0.04, 일반 0.03	
녹지생태 도심	입체녹지 조성	기준용적률× 0.05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 녹지 조성기준 상 인정한도 이상 설치 시	
	공공보행통로 설치	기준용적률× 0.03	• 공공보행통로에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설정 시	
지역맞춤	역사문화 특성 보전	기준용적률× 0.03	•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서면동의를 통해 결정	
	지역특화용도 도입			
	전선지중화 설치			

■ 변경 : (A)주거 및 (B)생활지원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비고
구분	유형			
탄소중립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용적률× 0.05	•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	
	저영향 개발	기준용적률× 0.05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 - 빗물분담량 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	※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자료 작성 후 자치구 물순환주관부서 및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협의
녹지생태 도심	입체녹지 조성	기준용적률× 0.05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 녹지 조성기준 상 인정한도 이상 설치 시 (법적 설치의무 면적 제외)	※ 개방형녹지 인정 한도 - 대지면적 3천㎡미만: 25% - 대지면적 5천㎡미만: 35% - 대지면적 8천㎡미만: 40% - 대지면적 8천㎡이상: 45%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비고
구분	유형			
	공공보행통로 설치	기준용적률× 0.03	· 공동개발, 건축협정 등을 통해 해당 블록을 관통하는 폭 2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고 지역권 설정 시	
지역맞춤	전선지중화 설치	기준용적률× 0.03	· 지상 전주, 전선 등을 지중화 또는 가로지장물을 대지 내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저영향 개발 항목의 경우 상한용적률과 중복 적용 금지

■ 변경 : (C)상업

인센티브 항목		산정기준	계획기준	비고
구분	유형			
탄소중립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용적률× 0.05	· 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	
	저영향 개발	기준용적률× 0.05	·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 - 빗물분담량 기준의 1.2배 이상 설치 · 그 외 -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	※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자료 작성 후 자치구 물순환주관부서 및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 협의
디자인 혁신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기준용적률× 0.03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BF인증)을 인증하는 경우	
녹지생태 도심	입체녹지 조성	기준용적률× 0.05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 녹지 조성기준 상 인정한도 이상 설치 시 (법적 설치의무 면적 제외)	※ 개방형 녹지 인정 한도 - 대지면적 3천㎡미만: 25% - 대지면적 5천㎡미만: 35% - 대지면적 8천㎡미만: 40% - 대지면적 8천㎡이상: 45%
지역맞춤	지역특화용도	기준용적률× 0.03	· 업무 용도를 지상 연면적의 50% 이상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면적 제외)	
	전선지중화 설치	기준용적률× 0.03	· 지상 전주, 전선 등을 지중화 또는 가로지장물을 대지 내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저영향 개발 항목의 경우 상한용적률과 중복 적용 금지

나.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

■ 기정

구분		높이계획	비고
간선부	강남대로변(일반상업지역)	100m이하	· 강남대로 가로구역 최고높이 적용
	효령로변(제3종일반주거지역)	60m이하	· 블록별 평균높이, 용도지역별 높이기준, 건폐율/용적률을 고려한 높이 적용
	서운로변(제3종일반주거지역)	30m이하	
이면부	강남대로 이면부(제3종일반주거지역)	40m이하	· 강남대로 가로구역 최고높이 적용
	효령로 이면부(제3종일반주거지역)	30m이하	· 블록별 평균높이 적용
	마산말공원 일대(이면부)(제3종일반주거지역)	30m이하	
	한전아트센터 서측(제2종일반주거지역)	25m이하	

■ 변경

구분		높이계획	비고
간선부	강남대로변(일반상업지역)	100m이하	· 강남대로 가로구역 최고높이 적용
	효령로변(제3종일반주거지역)	60m이하	· 블록별 평균높이, 용도지역별 높이기준, 건폐율/용적률을 고려한 높이 적용
	서운로변(제3종일반주거지역)	36m이하	
이면부	강남대로 이면부(제3종일반주거지역)	40m이하	· 강남대로 가로구역 최고높이 적용
	효령로 이면부(제3종일반주거지역)	36m이하	· 블록별 평균높이 적용
	마산말공원 일대(이면부)(제3종일반주거지역)	36m이하	
	한전아트센터 서측(제2종일반주거지역)	25m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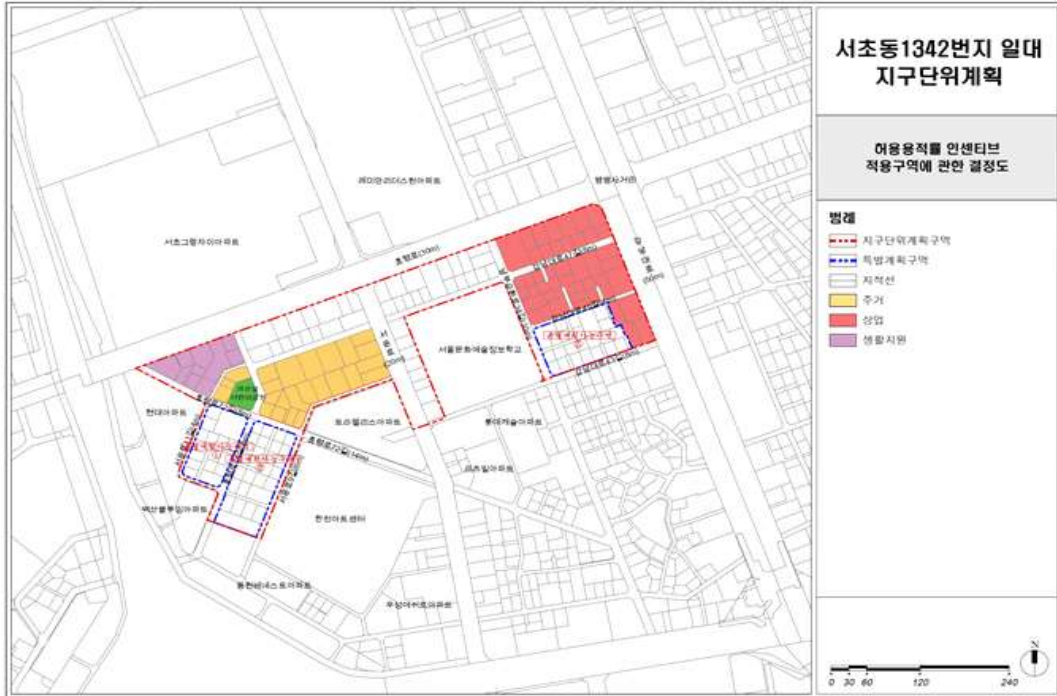
다. 기타 결정사항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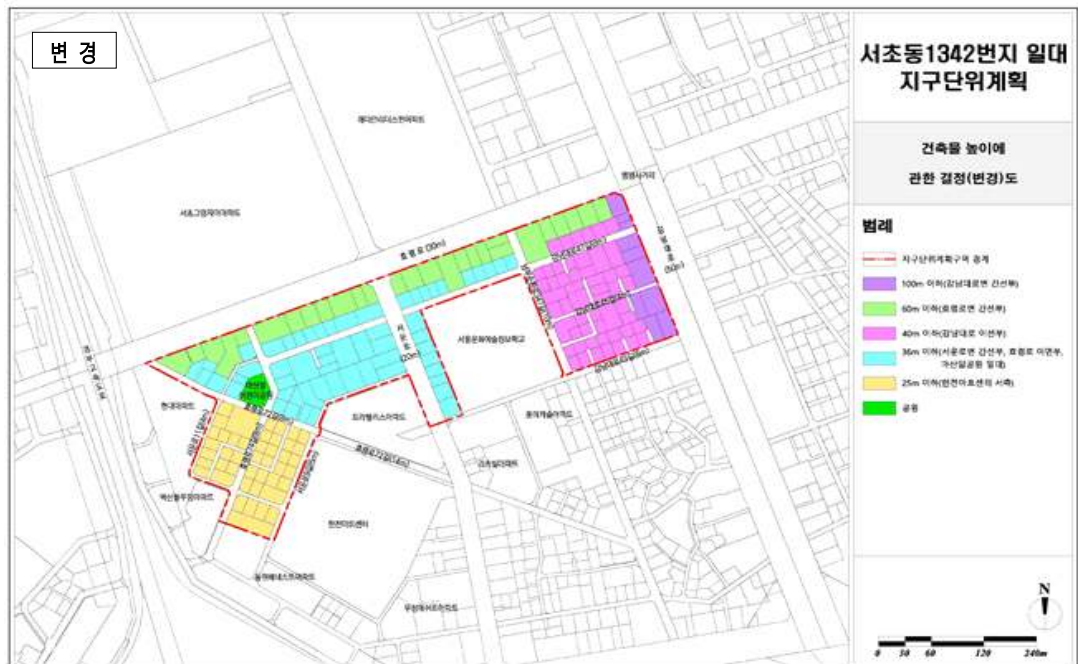
※ 아래의 관계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02-2155-681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구역에 관한 결정도



[붙임2]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도



◆ 서초구고시 제2026-79호

도시관리계획(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1호(2010. 4.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19호(2025. 12. 30.)로 지구단위계획 변경(20차) 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공고 제2026-246호로 열람 공고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6. 3. 12.)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 초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대상 도서관은 공공주택지구 내 문화·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도서관으로, 주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편의와 공간활용성 확보를 위한 편익시설 도입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정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811,616.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1호 (2010. 4. 27.)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없음)

라.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 공공시설 용지(변경)

구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도서관	용도	기정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불허용도

구분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변경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제98조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등) : 30% 이내 ※ 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은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개별 건축계획 수용
	형태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색채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5m ~ 3m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서관 용지 허용용도 변경	• 대상 도서관은 공공주택지구 내 문화,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시설로서 금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허용용도를 주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등) 도입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없음)

3. 2026년 제1차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조건사항
 - 도시계획시설 도서관 주기능 유지와 이용자 편의 및 시설의 공간활용성을 고려한 상세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계획인가(변경) 진행 시,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절차 추진 필요

4.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02-2155-681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강동구고시 제2026-51호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3호(2020. 6. 25.)로 결정(변경)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고덕1동 단독주택지) 내 고덕동 542-3번지에 지정된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강 동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고덕1동 단독주택지) 내 고덕동 542-3번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대상지에 지정된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해제하고, 공동주차 출입구를 지정(경미한 사항)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아리수로 (고덕동 542-3번지)	- 아리수로변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및 공동주차출입구 계획 - 최대개발규모 이내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한 차량출입 이면부 유도 - 부득이 공동개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출입 최소화를 위해 공동주차출입구 운영	아리수로변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해제(고덕동 542-3번지)	결정도 참 조
공동주차출입구		-	공동주차출입구 1개소 지정	

-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고덕동 542-3번지)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해제 및 공동주차출입구 지정	공동개발이 어려워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일부 해제하고 공동주차출입구 지정을 통해 개발 필지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III. 관계도서: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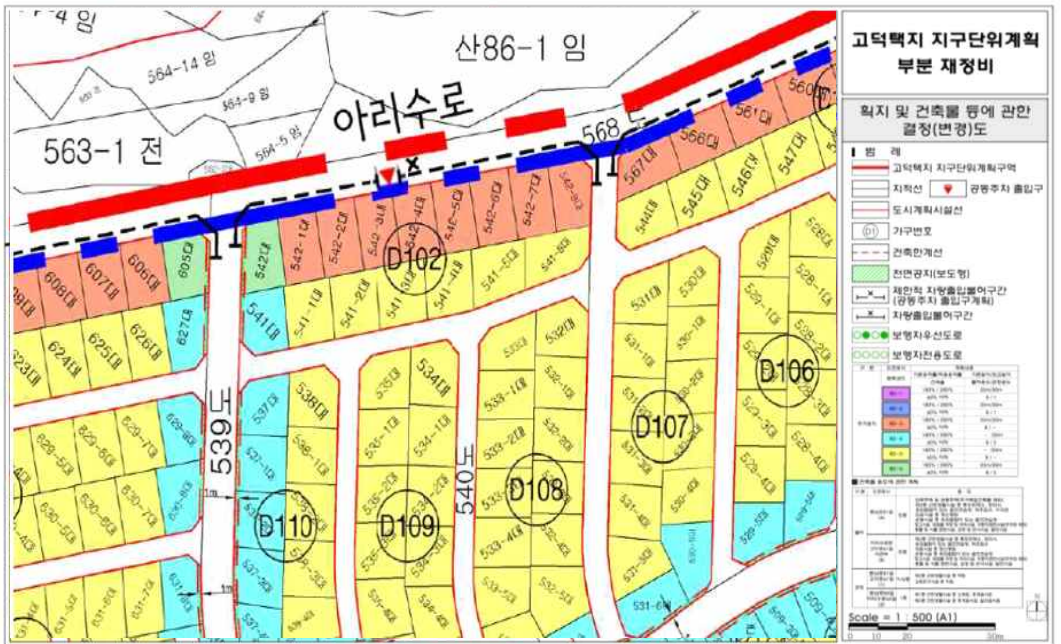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기 정]



[변경]



◆ 강동구고시 제2026-54호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5호(2006.5.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29호(2006.9.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강동구 고시 제2025-158호(2025.9.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암사역사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6년 4월 2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당초: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33-3호 등 7필지
- 변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33-3호 등 8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라. 시설관리청(변경없음): 서울특별시청

마. 사업의내용(변경없음): 공원조성(토지보상)

바. 규 모(변경없음): 토지보상 13,314㎡

사. 사업기간(변경없음):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9. 12. 31일까지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따로 붙임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관리명세	
계	7필지	8필지		13,314	13,314	13,314	13,314							
1	암사동 133-3	암사동 133-3	전	4,601	4,601	4,601	4,601	임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1/2				
								맹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 ** ***호(**동, ****아파트)	7/20				
								맹준	서울특별시 중구 **로 ** ***호(**동, ****아파트)	3/20				
2	암사동 143-4	암사동 143-4	전	1,650	825	1,650	825	김*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 *** ***호(**동)	494.4/ 1650				
								오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 ***호(**동)	330.6/ 1650	서울***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 ***(**동) ***지점	근저당권	
								엘***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 ***호(**동)	1/2	동서울***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 ***(**동) ***지점	근저당권	
3		암사동			825		825	김*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 *** ***호(**동)	494.4/ 165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역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관리명세	
4	암사동 136-2	암사동 136-2	전	1,587	1,587	1,587	1,587	오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길 ***호(***동)	330.6/ 1650	서울***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 ***(**동) ***지점	근저당권	
								헬*** 농림회사 법인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길 **	1/2	동서울**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중랑구 ***로 ***(**동) ***지점	근저당권	
								이*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로 52, ***동 ***호(**동, *****)	80/ 1920				
								홍*기	인천광역시 서구 ***로 ***, ***동 ***호(**동, *** ****)	80/ 1920				
								이*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로 119, ***동 ***호(**동, ****아파트)	240/ 1920				
								김*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로***길 55, ***동 ****호(**동, *****)	80/ 1920				
								김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길 ***-*, ***호(*동)	80/ 1920				
								이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 ****호(**동, *****)	160/ 1920				
								강*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로 ***, ***동 ***호(*동, *****)	80/ 1920				
								김*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길 **, ***동 ****호(**동, ****아파트)	160/ 1920				
								송*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로 **, ***동 ****호(*동, *****)	960/ 11520				

연번	소재지		지목	지역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관리명세	
								김*옥	경기도 군포시 **로***길 **~**, ***동 *****호(**동, *****아파트)	160/ 11520				
								김*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160/ 11520				
								김*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로***길 **, ***동 *****호(동, *****)	160/ 11520				
								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길 **~**, ***호(**동)	320/ 11520				
								김*명	미합중국 *****, 위*주, 사*****, **가 ***	160/ 11520				
								김*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길 **, ***동 ***호(**동, *****아파트)	80/ 1920				
5	암사동 138-3		전	91	91	91		박*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로*길 **, *동 ***호(**동, **아파트)	80/ 1920				
								안*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 ***동 ***호(**동, *****)	240/ 1920				
								안*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 ***, ***동 ***호(**동, *****)	240/ 1920				
								이*엽	서울특별시 동작구 **로 ***, ***호 (**동, **아파트)	1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원도 원주시 **로 32/(*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관리자	
6	암사동 213		대	3,754	3,754	3,754	3,754	박*정	미합중국 *****, **주 스*, *****	1/2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로** (****가) 도***센터지점	근저당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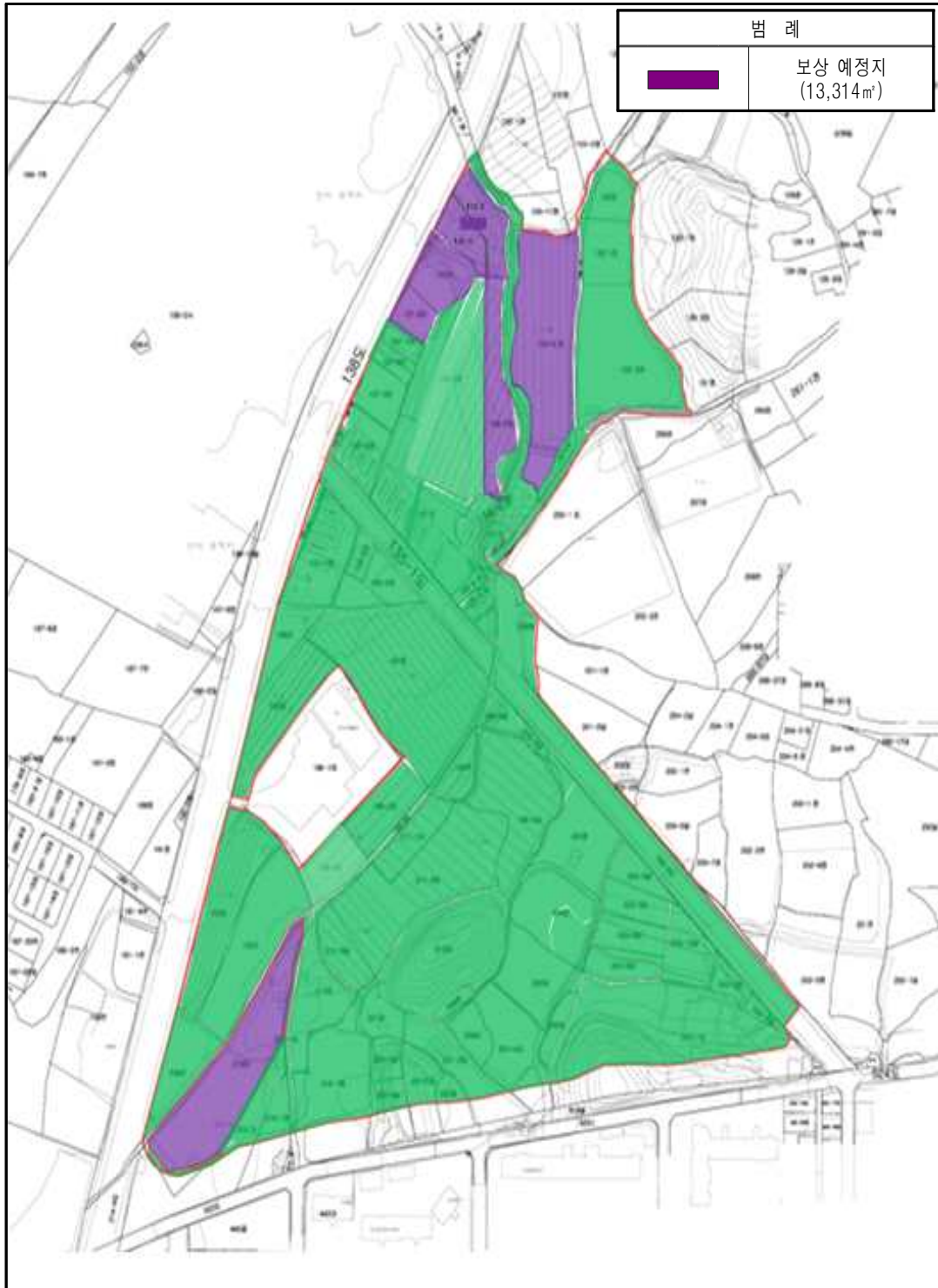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이*버트*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길 **, ***동 *****호(**동, *****아파트)	125/ 3754	서울특별시	-	구분지상권	표지 문제
								이*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길 **, ***동 *****호(**동, *****아파트)	495/ 3754				
								박*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길 **, ***동 *****호(**동, *****아파트)	125/ 3754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로 ** (****가)	근저당권	
7	암사동 137	암사동 137	전	1,102	1,102	1,102	1,102	서울 **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길 *, ***동 ***호(**동, ****아파트)	1	이*수	-	근저당권	
8	암사동 137-8	암사동 137-8	전	529	529	529	529	최*래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길 ****-**, ***호(****동)	1	강동**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 *** (**당)**지점	근저당권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단위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수량	단위	성명	주소	
1	암사동 133-3		비닐하우스	15mx6m	1	1	개	박*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길 ** ***동 ***호 (**동, *****0파트)	
2			비닐하우스	15mx6m	1	1	개			
3			비닐하우스	7mx6m	1	1	개			
4			비닐하우스	7mx6m	1	1	개			
5			비닐하우스	7mx6m	1	1	개			
6			비닐하우스	107mx6m	1	1	개			
7			비닐하우스	95mx6m	1	1	개			
8			비닐하우스	85mx6m	1	1	개			
9			비닐하우스	73mx6m	1	1	개			
10			비닐하우스	10mx4m	1	1	개			
11	암사동 137-8	암사동 137-8	펜스	10m	1	1	개	최*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길 ***동 ***호(***동)	
12			비닐하우스	20mx6m	1	1	개			

보 상 용 지 도



구 공 고

◆ 동대문구공고 제2026-480호

답십리자동차부품상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69호(2020.09.0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80호(2024.06.13.)로 공원결정(변경)된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위치, 면적,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명	공원(소공원)
위 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5
면 적	1,695.0㎡
주요내용	휴게마당, 앉음벽, 조형벤치 등 (시설면적 331.00㎡)

- 열람기간: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 열람장소: 동대문구청 정원도시과 (☎02-2127-4775)
- 본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인 정원도시과(☎02-2127-4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소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

1. 총괄표 (동대문구 답십리동 952-5)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695.00	331.00	-	-	-	30	
기 반 시 설	소 계	270.29	270.29	-	-	-	-	
	도 로	270.29	270.29	-	-	-	-	
조 경 시 설		-	-	-	-	-	2	
휴 양 시 설		60.71	60.71	-	-	-	7	
관 리 시 설		-	-	-	-	-	21	
녹지 및 기타		1364.00	-	-	-	-	-	19.53%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최 초								비 고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695.00	331.00	-	-	-	-	30	시설율 19.53%
기반 시설	소 계		270.29	270.29	-	-	-	-	-	
	도 로	도로	270.29	270.29	-	-	-	-	-	
조경 시설	소 계		-	-	-	-	-	-	2	
	조경석쌓기	⑤	-	-	-	-	-	-	(2)	
휴양시설	소계		60.71	60.71	-	-	-	-	7	
	휴게마당-1	가	10.32	10.32	-	-	-	-		
	조형벤치	①	-	-	-	-	-	-	(1)	
	휴게마당-2	나	41.15	41.15	-	-	-	-		
	야외테이블	②	-	-	-	-	-	-	(4)	
	휴게쉼터	다	9.24	9.24	-	-	-	-		
	앉음벽	③	(5.29)	(5.29)	-	-	-	-	(1)	
	앉음벽	④	(3.95)	(3.95)	-	-	-	-	(1)	
관리 시설	소 계		-	-	-	-	-	-	21	
	볼라드	⑥	-	-	-	-	-	-	(3)	
	공원 안내판	⑦	-	-	-	-	-	-	(1)	
	지하주차장 안내판	⑧	-	-	-	-	-	-	(1)	
	공원등	⑨	-	-	-	-	-	-	(12)	
	CCTV	⑩	-	-	-	-	-	-	(4)	
녹지 및 기타	소 계		1,364.00	-	-	-	-	-	-	
	녹지 및 기타		1,364.00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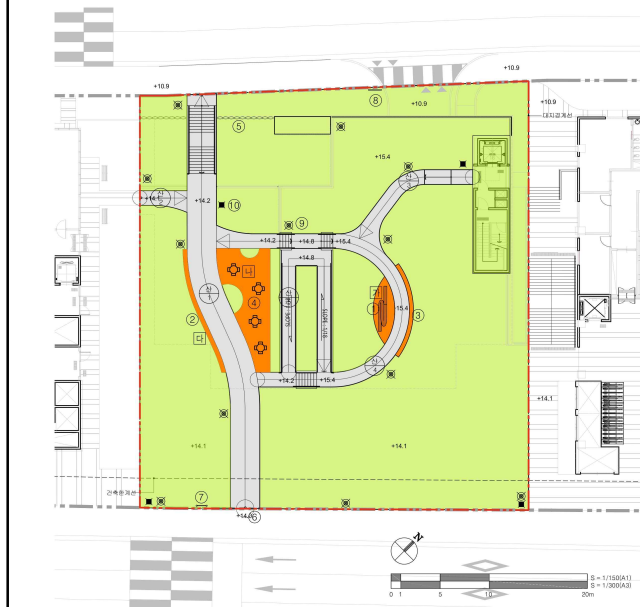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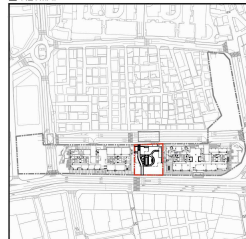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106.4	270.29				
산책로	소 계			106.4	270.29				
	-	1	3.0	43.0	129.00	산책로	남동쪽 공원경계	북서쪽 공원경계	
	-	2	1.5	4.8	7.20	산책로	남서측 공원경계	산-1 산책로	
	-	3	1.5	14.4	21.60	산책로	북서측 공원경계	산-3 산책로	
	-	4	1.5	41.7	62.55	산책로	산-3 산책로	산-3 산책로	
	-	5	1.5	26.9	40.35	산책로	산-4 산책로	산-4 산책로	
	-	-	-	-	9.59	산책로			가각부

조성계획총괄도

소공원



■ KEYMAP



■ 조성계획총괄표

구분	종류	시설명	부지면적(㎡)	건물면적(㎡)	유형구분	비고
	합 계		331.00	331.00	30	시설률 19.83%
주요시설	주 소		270.29	270.29	30	
	도로		270.29	270.29	-	
주요시설	주 소	주 소	-	-	2	
	주 소	주 소	-	60.71	7	
주요시설	기	주 소	10.32	10.32	-	
	기	주 소	-	-	(3)	
	기	주 소	41.15	41.15	-	
	기	주 소	-	-	(4)	
	기	주 소	5.24	5.24	-	
주요시설	기	주 소	(5.26)	(5.26)	(1)	
	기	주 소	(3.85)	(3.85)	(3)	
	기	주 소	-	-	(2)	
	기	주 소	-	-	(1)	
	기	주 소	-	-	(1)	
주요시설	기	주 소	-	-	(1)	
	기	주 소	-	-	(1)	
	기	주 소	-	-	(1)	
	기	주 소	-	-	(1)	
	기	주 소	-	-	(1)	
주요시설	기	주 소	1,384.00	-	-	
	기	주 소	1,384.00	-	-	

◆ 성북구공고 제2026-613호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48호(2024.09.19.)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변경)된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성 북 구 청 장

가.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

나. 공원명칭 :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

다. 면 적 : 11,610.0㎡

라. 조성계획결정도 및 결정조서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열람기간 : 2026.04.02.(목) ~ 2026.04.16.(목)

바. 열람장소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사. 기타사항

- －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주거정비과 ☎ 02-2241-28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총 계	11,610.00	4,168.11				29	
기 반 시 설	소 계	1,899.67					
	도 로	178.54					
	광 장	1,721.13				4	
조 경 시 설	1,007.34	1,007.34					
휴 양 시 설	384.16	384.16				20	
운 동 시 설	986.91	986.91				2	
관 리 시 설	-	-				3	
녹지 및 기타	7,331.92	-				-	
시 설 율 (법정 40%)	$(4,278.08 / 11,610.00) \times 100 = 36.85\%$						
건 폐 율 (법정 20%)	$(0.00 / 11,610.00) \times 100 = 0.0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1,610.00	4,278.08					29	
기 반 시 설	소계		1,899.67	1,899.67						
	도로		178.54	178.54						
	광장	소계		1,721.13	1,721.13				4	
		중앙마당	가-1	1,721.13	1,721.13					
		앉음벽	①	-	-				4	
조경 시설	소계		1,007.34	1,007.34						
	데크로드		나-1	587.10	587.10					
	화계		나-2	289.70	289.70					
	흙막이		나-3	130.54	130.54					
휴 양 시 설	소계		384.16	384.16					20	
	휴게데크-1		다-1	106.48	106.48					
	휴게데크-2		다-2	112.38	112.38					
	휴게데크-3		다-3	85.69	85.69					
	포켓가든-1		다-4	28.08	28.08					
	포켓가든-2		다-5	13.91	13.91					
	포켓가든-3		다-6	18.87	18.87					
	포켓가든-4		다-7	18.75	18.75					
	파고라		②	-	-				2	
	그늘벤치		③	-	-				7	
	등의자		④	-	-				11	
미 세 시 설	소계		986.91	986.91					2	
	헬시가든		라-1	431.22	431.22					
	미니파크골프장		라-2	555.69	555.69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복합운동시설-1	⑤	-	-					1	
	복합운동시설-2	⑥	-	-					1	
	소계		-	-					3	
	공원안내판	⑦	-	-					3	
녹지 및 기타	소계		7,331.92	-						
	녹 지		7,331.92	-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70.0	178.54				
신설	소 계				70.0	178.54				
	소로	3	1	2.5	67.5	168.54	진입로	외부보행로	중앙광장	
	소로	3	2	4	2.5	10.0	진입로	외부보행로	데크로드	

장위15구역 그린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도면

조성계획도



열 램 의 건 서

공 고 명	장위15구역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최초) 결정을 위한 열람 · 공고		
열람기간	2026.04.02.(목) ~ 2026.04.16.(목)		
의 건 제 출 인	주소	(전화번호 :)	
	성명	생년월일	
의 건 내 용			

2026. . .

제 출 인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

◆ 노원구공고 제2026-591호

도시관리계획(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

도시관리계획(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6.1.28.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노 원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2026.4.2. ~ 2026.4.16.)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02-2116-3866)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월계동 46-1 일대	-	증 82,158.4	82,158.4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 게재된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라.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본 재열람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도시관리과(☎02-2116-38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공고 제2026-649호

도시계획시설(물푸레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19호(2012.8.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42호(2025.5.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61호(2026.2.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물푸레근린공원에 대하여,
2.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본 열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351-80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56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물푸레근린공원 산책로 조성공사

다.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고양삼송·지축·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 교통개선 대책 노선 중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도심 내 물푸레근린공원을 조성(변경)하여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에 있음

○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지	사업면적(규모)	사업기간
물푸레근린공원 산책로 조성공사	진관동 56	9,706㎡	사업인가일로부터~2029.12.3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용현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최초 고시일로부터 ~ 2029.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

사.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351-8027)

아. 열람기간 : 공고일(2026년 4월 2일)로부터 14일간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주소	성명	주소	관할 청	
계	합계(총필지)		68,815.7	9,706							
1	은행구 진관동 56	공	68,815.7	9,706	서울특별시						

◆ 마포구공고 제2026-577호

**신촌지역 마포3구역 및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제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56호(2020.12.17.), 마포구 고시 제2021-224호(2021.11.1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42호(2023.06.15.)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포함)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5-1814호(2025.11.06.)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03.04.)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이내에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마포구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마 포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6.04.02. ~ 2026.05.04. (30일 이상)
2. 공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65)
3.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제출(전자문서 포함, bus921@mapo.go.kr)
4. 공람내용 : 신촌지역 마포3구역 및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신촌지역 마포3구역)

1.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역 마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

가, 정비구역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노고산동 31-6 일대	8,657.8	-

나. 정비지구 조서 (변경)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정비유형	사업시행 지구면적(㎡)	사업계획		비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기정 변경	신촌지역 마포3구역	3-1지구 1지구	노고산동 31-6 일대	일반정비지 구	1,576.1	1,464.0	112.1	-
기정 변경		3-2지구 2지구	노고산동 31-11 일대	일반정비지 구	2,577.5	2,403.0	174.5	-
기정 변경		3-3지구 3지구	노고산동 31-77 일대	일반정비지 구	3,245.0	2,995.9	398.9 635.1	-
기정 변경		3-4지구 4지구	노고산동 31-90 일대	존치지구	915.3	891.2	24.1	-
		합 계			8,313.9	7,754.1	709.6 834.7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1. 지구명칭 변경	1. 사업명칭 단순화 등을 위해 명칭 변경	-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변경없음)

4)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비고
기정	- 민간이 사업시행지구의 정비계획을 변경 제한할 경우 사업시행지구 변경 등 세부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절차 이행	-
변경	- 향후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분할 시행 · 일반정비지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사업 시행 · 존치지구 :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존치지구 관리방안에 따름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면적 (㎡)	지구명	획 지		비고
				위치	획지면적(㎡)	
기정 변경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1지구 1지구	노고산동 31-6 일대	1,464.0	-
기정 변경			3-2지구 2지구	노고산동 31-11 일대	2,403.0	-
기정 변경			3-3지구 3지구	노고산동 31-77 일대	2,995.9	-
기정 변경			3-4지구 4지구	노고산동 31-90 일대	891.2	-

2. 정비계획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8,657.8	100.0	-
상업지역	소 계	8,657.8	100.0	
	일반상업지역	8,657.8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없음)

※ ' 19.04.18. 서울시고시 제2019-12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라 미관지구 폐지반영

※ ' 24.10.24. 서울시고시 제2024-50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방화지구) 결정(변경)]에 따라 방화지구 폐지반영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 분	비고
합계			8,657.8	100	-
정비기반시설	도로		903.7	10.4	-
획지	기정	변경	7,754.1	89.6	-
	3-1지구	1지구	1,464.0	16.9	-
	3-2지구	2지구	2,403.0	27.8	-
	3-3지구	3지구	2,995.9	34.6	-
	3-4지구	4지구	891.2	10.3	존치

※ 상기 사항은 추후 측량성과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① 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6	12	국지 도로	40	노고산동 31-17	노고산동 31-22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7.8)	-
기정	소로	1	3	8-10	국지 도로	167	노고산동 31-76	노고산동 31-23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7.8)	-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30	노고산동 31-4	노고산동 31-2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7.8)	-

나.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변경)

구분		시행면적(㎡)	획지면적(㎡)	분담면적(㎡)	건축물제공(㎡)	순부담비율(%)	비고
기정	1지구	1,576.1	1,464.0	112.1	-	7.1	-
기정	2지구	2,577.5	2,403.0	174.5	-	6.8	-
기정	3지구	3,245.0	2,995.9	249.1	149.8	12.3	-
변경	3지구	3,245.0	2,995.9	249.1	386.0	19.6	-
기정	4지구	915.3	891.2	24.1	-	2.6	-
계		8,313.9	7,754.1	559.8	504.5	8.5% 이상	-

※ 향후 존치지구에서 신축하는 경우 3구역 평균 순부담률(8.5%이상) 적용.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기반시설 부담 계획 변경	건축물 제공 면적 변경 등	-

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변경없음)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구분	구역구분		지구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1지구	1,464.0	노고산동 31-77 일대	25	1	-	24	-	-
변경			1지구								
기정			3-2지구	2,403.0	노고산동 31-77 일대						
변경			2지구								
기정			3-3지구	2,995.9	노고산동 31-77 일대						
변경			3지구								
기정			3-4지구	891.2	노고산동 31-77 일대						
변경			4지구								

※ 지구명칭 변경 외 변경사항 없음

7)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지구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3 지구	2,995.9	노고산동 31-77 일대	주거	60 이하	기존 394 이하 허용 684 이하 상한 806.5 이하	100 이하	-
변경			3지구			주거	60 이하	기존 600 이하 허용 694 이하 상한 993 이하	155 이하	-

※ 3지구 외 변경없음(기재생략)

8)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변경)

: 추후 지구별로 사업시행을 위한 건축계획 등이 구체화되는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별도 제시

9)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0)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변경없음)

11)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일반상업지역	- 2030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주거공급계획에 따라 주거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1/2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 의무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전용85㎡)이하로 확보한다.	-
변경			- 2030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주거공급계획에 따라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며(비주거용도는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 의무) 중심지 위 계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주거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한다. - 비주거비율 산정 시 비주거면적은 용적률과 연면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2)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4)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변경없음)

구분	항 목	지점	교통검토 및 개선방안	시행주체	시행시기	비고
기정	가로 및 교차로	-	주변지역 개발계획 반영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서), 2020.8」 개선방안 반영	개별사업 시행자	개별사업 완료전	
변경			주변지역 개발계획 반영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서), 2024.03」 개선방안 반영	개별사업 시행자	개별사업 완료전	

※ 개별사업 시행자 : 신촌지역 마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외부 사업시행자

※ 주변지역 개발계획반영 외 변경없음 (기재생략)

15)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6)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17) 구역 내 옛길, 옛 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I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1. 정비지구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지구 조서(변경)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치	정비유형	사업시행 지구면적(㎡)	사업계획		비고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3-3지구	노고산동 31-77 일대	일반정비지 구	3,245.0	2,995.9	398.9	-
변경		3지구					635.1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지구명칭 변경 기반시설 부담면적 변경	사업명칭 단순화 등을 위해 명칭 변경 건축물 제공 면적 변경	-

3)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	259세대 (계획 288세대)	임대51세대 포함
변경				269세대 (계획 298세대)	임대15세대 포함

4)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해당없음)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명	위치	획지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3지구	노고산동 31-77 일대	2,995.9	-
변경			3지구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지구명칭 변경	사업명칭 단순화 등을 위해 명칭 변경	-

2. 정비계획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245.0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245.0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없음)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245.0	100.0	-
정비기반시설	도 로	249.1	7.7	-
획지	획 지	2,995.9	92.3	-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조서

①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6	12	국지 도로	40 (40)	노고산동 31-17	노고산동 31-22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 정리사업('67.7.8)	-
기정	소로	1	3	8-10	국지 도로	167 (75)	노고산동 31-76	노고산동 31-23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 정리사업('67.7.8)	-

※ ()는 지구 내 연장임

나.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확보) 계획 (변경)

①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변경)

구분	시행지구 면적 (㎡)	획지 면적 (㎡)	정비 기반시설 면적 (㎡)	계획 기반 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 내 폐지 국공유지	기반시설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비고
							정비기반 시설 등 (토지) 부담면적	건축물 기부채납 부담면적	순부담률합 계	
기정	3,245	2,995.9	249.1	-	-	149.8	398.9	-	12.3	구역 내 평균부담률 8.5% 이상
변경	3,245	2,995.9	249.1	-	-	-	249.1	386	19.6	

※ 순부담률 산출 : 순부담면적 ÷ (시행지구 면적 - 계획기반시설내 기존공공용지 면적 - 대지 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기반시설 부담 계획 변경	건축물 제공 면적 변경 등	-

②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확보) 계획

구분	시설명	위치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398.9	(증)236.2	635.1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토지	도로		노고산동 31-77, -79, -80, -84, -85, -86, -91, -120, -139 일부	249.1	-	249.1	-
		임대주택 부속토지 (주거비율완화)		임대주택 22세대 부속토지	149.8	(감) 149.8	-	-
		공공임대 업무시설	청년창업 정보교육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토지지분	-	(증) 70.0	70.0	-
		공공지원 시설	외국인 주민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토지지분	-	(증) 75.0	75.0	-
	건물	공공임대 업무시설	청년창업 정보교육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	(증) 116.0	116.0	토지환산면 적
		공공지원 시설	외국인 주민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	(증) 125.0	125.0	토지환산면 적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주거비율완화 공공임대주택 삭제 기반시설 부담면적 변경	2030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에 따라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삭제 적용 건축물 제공 면적 변경	-

③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관리청
신설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1,027.7	마포구청장
신설	외국인주민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1,097.9	서울특별시(다문화담당관)
기정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공공임대주택 22세대 분 부속토지	149.8	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
변경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삭제	0.0	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
기정	도로	노고산동 31-77, -79, -80, -84, -85, -86, -91, -120, -139 일부	249.1	마포구청장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 면적 · 형태 등 조정될 수 있음

※ 공공청사는 관리청으로 귀속되며, 해당 관리청에서 운영 및 관리함

※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시, 준공인가 전 관리청 부서와 협의하여 조성(안)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건축계획(안) 변경될 수 있음

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내 용	면 적(m ²)
기정	지하	5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355.62
		4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85.22
		3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85.22
		2층	주민공동시설 (용역원 휴게실, 입주자 회의실, 택배보관소, 계절창고)	185.22
	합 계			911.28
변경	지하	6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51.51
		5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91.79
		4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91.79
		3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91.79
		2층	주민공동시설 (계절창고)	191.79
		1층	주민공동시설 (스크린골프)	101.64
	지상	1층	주민공동시설 (스터디카페, 피트니스센터, 랫룸)	179.10
		4층	주민공동시설 (루프탑 카페, 어린이 놀이터)	28.83
		5층	주민공동시설 (게스트하우스)	66.97
	합 계			1,195.21

※ 공동이용시설 설치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예정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구분	구역 구분		지구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m ²)	명칭	면적(m ²)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변경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3지구 3지구	2,995.9	노고산동 31-77 일대	18	-	-	18	-	-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지구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8,657.8	3-3 지구	2,995.9	노고산동 31-77 일대	주거	60 이하	기준 394 이하 허용 684 이하 상한 806.5 이하	100 이하	-
변경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3지구			주거	60 이하	기준 600 이하 허용 694 이하 상한 993 이하	155 이하	-

- ① 기준용적률 : 394%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290% 적용

구분	목 표	인센티브 대상	기 준		적용(안)	
의무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등급 준수 시 허용용적률 총량의 1/2 부여	최대 100%	100%	29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				
계획 유도	도시경제 활성화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한 시설	정률방식 (보상계수 0.25)	최대 100%	100%	
		대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생활SOC 문화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정률부여(0.2)	최대 50%	12%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유도	정량부여(30%)	최대 50%	50%	
		무장애도시조성				
	안전, 방재	방재관련시설	정량부여(30%)	최대 30%	30%	

-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22.5% 적용

공공시설	$\begin{aligned} \text{산식} &= 1.3a \times (\text{기준용적률} + \text{공공기여 인센티브}) \\ &= 1.3 \times \{(\text{도로 } 249.1\text{㎡} + \text{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 149.8\text{㎡}) \div (2,995.9\text{㎡} - 149.8\text{㎡})\} \\ &\quad \times (394\% + 290\%) \\ &= 1.3 \times 0.14015 \times 684\% = 124.62\% \end{aligned}$
------	---

※ ① + ② + ③ = 806.5% 이하 적용

-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량 : 94% 적용

목 표	인센티브 대상	기 준		적용(안)	
친환경 개발	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정량부여(20%)	최대 20%	20%	94% 적용
보행가로 활성화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정률부여(3.0)	최대 100%	34%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량부여(20%)	최대 20%	20%	
	상·하수도 개량	100m 이상	최대 20%	20%	

- ③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94.9% 적용

		공공시설 산식 = 허용용적률×(1.3×가중치×α토지+1.2×α건축물) = 694.00%×[(1.3×가중치1.0×α토지0.138237) + (1.2×α건축물0.084535)] = 888.9%(완화량 194.9%)																														
		④ 친환경 초과등급 인중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04.1% 적용 제로에너지 건축물 초과등급 인중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11%+ 녹색건축 우수 6%)(15%적용) = 694.00% × (0.15) = 104.1% → 친환경 인센티브 = 104.1% ※ ①+②+③+④ = 993% 이하 적용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련계획	기정	• 최고높이 : 100.0m																														
	변경	• 최고높이 : 155.0m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h>적용계획</th></tr><tr><td>①</td><td>기준높이</td><td>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신촌 지역중심 : 130m</td><td>130m</td></tr><tr><td>②</td><td>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완화높이 (α)</td><td>=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130.00m × (249.1㎡ + 241.0㎡) ÷ 3,245.0㎡ = 130.00m × (635.1㎡÷3,245.0㎡) = 25.44m</td><td>25.44m</td></tr><tr><td colspan="2">합 계</td><td>① + ② = 155.44m (155m 소수점 아래 절삭)</td><td>155.0m</td></tr></table> ※ α는 기준높이에서 기부채납(공공용지 등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구 분		내 용	적용계획	①	기준높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신촌 지역중심 : 130m	130m	②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완화높이 (α)	=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130.00m × (249.1㎡ + 241.0㎡) ÷ 3,245.0㎡ = 130.00m × (635.1㎡÷3,245.0㎡) = 25.44m	25.44m	합 계		① + ② = 155.44m (155m 소수점 아래 절삭)	155.0m														
		구 분		내 용	적용계획																											
		①	기준높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신촌 지역중심 : 130m	130m																											
②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완화높이 (α)	=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 130.00m × (249.1㎡ + 241.0㎡) ÷ 3,245.0㎡ = 130.00m × (635.1㎡÷3,245.0㎡) = 25.44m	25.44m																												
합 계		① + ② = 155.44m (155m 소수점 아래 절삭)	155.0m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기정	•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43호) • 건립 규모 및 비율 <table><tr><th>구 분</th><th>전용면적(㎡)</th><th colspan="2">세대수</th><th colspan="2">비율(%)</th></tr><tr><td rowspan="2">일반분양</td><td>40㎡ 이하</td><td colspan="2">15</td><td colspan="2" rowspan="2">82.3</td></tr><tr><td>40㎡ 초과 ~ 60㎡ 이하</td><td colspan="2">222</td></tr><tr><td rowspan="2">공공임대1)</td><td>40㎡ 이하</td><td>33</td><td rowspan="2">51</td><td>11.5(64.7)</td><td rowspan="2">17.7 (100.0)</td></tr><tr><td>40㎡ 초과 ~ 60㎡ 이하</td><td>18</td><td>6.2 (35.3)</td></tr><tr><td colspan="2">합 계</td><td colspan="2">288</td><td colspan="2">100.0</td></tr></table> 주1) 공공임대주택 21세대에 해당하는 대지지분(149.8㎡) 기부채납 ※ 기부채납하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및 대지지분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지지분 149.8㎡ 이상 범위 내) ※ ()는 공공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일반분양	40㎡ 이하	15		82.3		40㎡ 초과 ~ 60㎡ 이하	222		공공임대1)	40㎡ 이하	33	51	11.5(64.7)	17.7 (100.0)	40㎡ 초과 ~ 60㎡ 이하	18	6.2 (35.3)	합 계		288		100.0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일반분양	40㎡ 이하	15		82.3																										
			40㎡ 초과 ~ 60㎡ 이하	222																												
공공임대1)	40㎡ 이하	33	51	11.5(64.7)	17.7 (100.0)																											
	40㎡ 초과 ~ 60㎡ 이하	18		6.2 (35.3)																												
합 계		288		100.0																												

공공주택 및
주거비율 완화에
대한 계획

변경

기정

공공주택 공급계획

구분

일반상업지역

비고

① 재개발 의무 임대

288세대 × 5% = 14.4세대 ⇒ 계획 15세대

②
주거비율

용적률

연면적

세대수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비주거비율 (비주거용적률 / 계획용적률)) + 400%}] ÷ 2
= [684% - {(684% × 0.1623) + 400%}] ÷ 2 = 86.5% 이상
⇒ 계획 105.28%

확보 기준 용적률 × 획지면적 = 86.5% × 2,995.9㎡
= 지상 연면적 2,591.5㎡ 이상
⇒ 계획 3,154.12㎡

확보계획
지상연면적(공급면적) ÷ 임대주택공급면적(전용36A형, 전용49B형)
= 전용 36A형(1,834.78㎡ ÷ 36.20㎡)
+ 전용 49B형(1,319.34㎡ ÷ 48.06㎡)
= 전용 36A형(33세대) + 전용 49B형(18세대)
⇒ 51세대

③ 총 공공주택 세대수

① 정비사업 의무 임대 15세대 < ② 주거비율 완화 임대 51세대
(큰 값 적용 ⇒ 총 51세대)

①, ②
중복 인정
가능

· 주거비율 : 85.88%(전체연면적기준), 89.98%(전체용적률 기준)
※ 주거용용적률 400% → 745.34%(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별표16 라목1호에 따라 완화)

변경

공공주택 공급계획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441호, 2025.08.14.)

건립 규모 및 비율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일반분양

40㎡ 이하

32

95.0

40㎡ 초과 ~ 60㎡ 이하

212

60㎡ 초과 ~ 85㎡ 이하

38

85㎡ 초과

1

재개발 의무임대1)

40㎡ 이하

5

15

1.7 (34.0)

5.0 (100.0)

40㎡ 초과 ~ 60㎡ 이하

10

3.3 (66.0)

합 계

298

100.00

주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15세대
※ ()는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변경

공공주택 공급계획

		구분	일반상업지역	비고
		① 재개발 의무 임대	= 298세대 × 5% = 14.9세대 ⇒ 계획 15세대	
		② 주거비율	①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비주거용도는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 의무)	
		② 총 공공주택 세대수	① 정비사업 의무 임대 15세대	
		· 주거비율 : 88.5%(전체면면적기준), 87.2%(전체용적률 기준) ※ 주거용용적률 400% → 859.84%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 별표16 라목1호에 따라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 건축지정선 : 백범로변 3m • 건축한계선 : 이면부 2m • 고층부(4층 이상) 벽면한계선 : 백범로변 6m		
	변경	• 건축한계선 : 백범로변 3m, 이면부 2m • 고층부(4층 이상) 벽면한계선 : 백범로변 6m		
대지내 공지계획 (공개공지)	기정	• 획지별 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확보기준면적 이상을 설치		
기타에 관한 사항	기정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구간 : 백범로 변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백범로변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용적률, 높이 등 변경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적용에 따른 변경	-

8)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종전자산 추산액)은 약식 감정평가한 감정평가 금액, 총사업비(종후 평가금액 추산액)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평가) 이 나와야 확정할 수 있지만, 분담금을 추산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추산액)를 로 작성(단, 정확성을 위해 약식 종후평가 권장)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임의 산정(A)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 1,000,000(가정)(⑦) - (A)의 개별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비율 = 1,000,000(⑦) / 91,284,022(④) ≒ 1.0955%(⑧) - (A)의 개별 대지평가차액 = 1,027,438(⑤) × 1.0955%(⑧) ≒ 11,255(⑨) - (A)의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1,000,000(⑦) + 11,255(⑨) = 1,011,255(⑩) - (A)의 지분율 = 1,011,255(⑩) / 415,046,701(①+②) ≒ 0.2436%																																																																											
추정 수익률	• 추정수익률(사업시행에 따른 개별 종전자산의 수익률) : 102.73% - 개별 권리가액 상당액 / 개별 종전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 100%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방식 -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 개별 분담금인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사업시행자 지급), 그 반대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사업시행자 정수) • (A)의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10억원 가정에 따른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예시) <table> <tr> <th colspan="2">구분</th><th>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 천원)</th><th>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th><th>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권리가액 상당액, 천원)</th><th>개별 분담금 (천원)</th><th></th></tr> <tr> <td rowspan="7">아파트</td><td>59A</td><td>56,000</td><td>1,416,699</td><td>1,011,255</td><td>405,444</td><td>가</td></tr> <tr> <td>59B</td><td>56,000</td><td>1,419,874</td><td>1,011,255</td><td>408,619</td><td>가</td></tr> <tr> <td>59C</td><td>56,000</td><td>1,418,374</td><td>1,011,255</td><td>407,118</td><td>가</td></tr> <tr> <td>59D</td><td>56,000</td><td>1,414,140</td><td>1,011,255</td><td>402,885</td><td>가</td></tr> <tr> <td>39A</td><td>50,000</td><td>841,920</td><td>1,011,255</td><td>-169,335</td><td>가</td></tr> <tr> <td>84A</td><td>56,000</td><td>1,990,649</td><td>1,011,255</td><td>979,393</td><td>가</td></tr> <tr> <td>133A</td><td>56,000</td><td>3,214,786</td><td>1,011,255</td><td>2,203,531</td><td>가</td></tr> <tr> <td>업무 시설</td><td>지상3층 전용1,050.8㎡</td><td>10,760</td><td>3,420,421</td><td>1,011,255</td><td>2,409,165</td><td>가</td></tr> <tr> <td rowspan="2">근린 생활 시설</td><td>지상1층 (전용443.7㎡)</td><td>13,990</td><td>1,877,805</td><td>1,011,255</td><td>866,550</td><td>가</td></tr> <tr> <td>지하1층 (전용92.4㎡)</td><td>19,983</td><td>558,558</td><td>1,011,255</td><td>-452,697</td><td>가</td></tr> </table>						구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 천원)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권리가액 상당액, 천원)	개별 분담금 (천원)		아파트	59A	56,000	1,416,699	1,011,255	405,444	가	59B	56,000	1,419,874	1,011,255	408,619	가	59C	56,000	1,418,374	1,011,255	407,118	가	59D	56,000	1,414,140	1,011,255	402,885	가	39A	50,000	841,920	1,011,255	-169,335	가	84A	56,000	1,990,649	1,011,255	979,393	가	133A	56,000	3,214,786	1,011,255	2,203,531	가	업무 시설	지상3층 전용1,050.8㎡	10,760	3,420,421	1,011,255	2,409,165	가	근린 생활 시설	지상1층 (전용443.7㎡)	13,990	1,877,805	1,011,255	866,550	가	지하1층 (전용92.4㎡)	19,983	558,558	1,011,255	-452,697	가
구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 천원)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권리가액 상당액, 천원)	개별 분담금 (천원)																																																																							
아파트	59A	56,000	1,416,699	1,011,255	405,444	가																																																																						
	59B	56,000	1,419,874	1,011,255	408,619	가																																																																						
	59C	56,000	1,418,374	1,011,255	407,118	가																																																																						
	59D	56,000	1,414,140	1,011,255	402,885	가																																																																						
	39A	50,000	841,920	1,011,255	-169,335	가																																																																						
	84A	56,000	1,990,649	1,011,255	979,393	가																																																																						
	133A	56,000	3,214,786	1,011,255	2,203,531	가																																																																						
업무 시설	지상3층 전용1,050.8㎡	10,760	3,420,421	1,011,255	2,409,165	가																																																																						
근린 생활 시설	지상1층 (전용443.7㎡)	13,990	1,877,805	1,011,255	866,550	가																																																																						
	지하1층 (전용92.4㎡)	19,983	558,558	1,011,255	-452,697	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부담(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구분되는 경우, 1인 시행)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정비구역의 주택별실 현황(변경없음)

· 건축물 동수

용도별 허가유무별						비고
주거용			비주거용			
소계	유허가	무허가	소계	유허가	무허가	
5	5	-	9	9	-	-

· 거주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변경)

건립 규모		기정	변경	증감	비율
합 계		288	298	증 10	100%
85㎡이하	30㎡초과~40㎡이하	48	37	감 11	12.4%
	40㎡초과~50㎡이하	240	-	감 240	-
	50㎡초과~60㎡이하	-	222	증 222	74.5%
	60㎡초과~85㎡이하	-	38	증 38	12.8%
85㎡초과		-	1	증 1	0.3%

10)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가. 세입자 주거대책 - 세입자 전부 퇴거 완료

나.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변경)

구 분	수용세대수(호)		비고
공공임대주택	기정	51	-
	변경	15	
분양주택	기정	237	-
	변경	283	
합 계	기정	288	-
	변경	298	

11)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규모 (전용, ㎡)	세대수	연면적(㎡)	비고
기정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내	2,995.9	1	36.20	15세대(5.2%)	1,282.25	총 건립세대수 288세대
변경				39.66	5세대	421.97	총 건립세대수 298세대
				59.86	2세대	253.69	
				59.90	2세대	254.04	
				59.94	3세대	381.71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규모 (전용, ㎡)	세대수	연면적(㎡)	비고
				59.99	3세대	381.58	
				소계	15세대(5%)	1,692.99	

12)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4)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변경) ※ 정비계획 결정도서 참조

구분	항 목	지점	교통검토 및 개선방안	시행주체	시행시기
기정	가로 및 교차로	-	주변지역 개발계획 반영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서), 2020.8」 개선방안 반영	개별사업 시행자	개별사업 완료전
			- 중로 3-6 단기간 편도 10m도로 장기간 왕복 12m도로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전
변경			주변지역 개발계획 반영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서), 2024.03」 개선방안 반영	개별사업 시행자	개별사업 완료전
			- 중로 3-6 단기간 왕복 10도로 장기간 왕복 12m도로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전

※ 개별사업시행자 : 신촌지역 마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외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 신촌지역 마포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부 사업시행자

※ 주변지역 개발계획반영 외 변경없음 (기재생략)

15)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 도로 등의 주변에서 내부, 내부에서 외부주변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 -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조성 - 수목, 조경 등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 공간구조 다양화 또는 건물 내 상가, 사무실 등을 유치하여 지역주민 활동 활성화 유도 - 건축물 외벽의 경우,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설치 지양 - 출입구, 대지경계 등으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 계획 - 건축물의 출입구, 지하층,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 등의 공간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16)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해당없음)

17) 구역 내 옛길, 옛 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문화자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 (해당없음)

Ⅲ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대문구, 마포구 신촌로터리 일대	548,255.2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548,255.2	100.0	-
주거지역	소 계	330,060.4	60.2	-
	제1종일반주거지역	6,248.0	1.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5,379.1	2.8	
	제2종일반주거지역	58,827.4	10.7	
	제3종일반주거지역	135,329.5	24.7	
	준주거지역	114,276.4	20.9	
상업지역	소 계	218,194.8	39.8	
	일반상업지역	218,194.8	39.8	

2)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없음)

※ ' 19.04.18. 서울시고시 제2019-12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에 따라 미관지구 일괄폐지

※ ' 24.10.24. 서울시고시 제2024-50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방화지구) 결정(변경)]에 따라 방화지구 일괄폐지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	12	국지 도로	40 (40)	노고산동 31-17	노고산동 31-22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 정리사업('67.7.8)	-
기정	소로	1	3	8-10	국지 도로	167 (75)	노고산동 31-76	노고산동 31-23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 정리사업('67.7.8)	-

※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외 기재 생략, ()는 지구 내 연장임

4) 기부채납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시행지구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 기반시설 면적 (㎡)	계획기반 시설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 국공유지	기반시설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비고
							정비기반 시설 등 (토지) 부담률	건축물 기부채납 부담률	합계	
기정	3,245	2,995.9	249.1	-	-	149.8	398.9	-	12.3	구역 내 평균부담률 8.5% 이상
변경	3,245	2,995.9	249.1	-	-	-	249.1	386	19.6	

※ 특별계획구역6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외 기재 생략

※ 순부담률 산출 : 순부담면적 ÷ (시행지구 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면적 - 대지 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4)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6 (신촌지역 마포3구역)	마포구 노고산동 31-6번지 일대	8,657.8	-

※ 특별계획구역6 신촌지역 마포3구역 외 기재 생략

5) 특별계획구역6 계획지침(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좌 등	-
용도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해당없음	폐지
건축물 용도	관장 용도	•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함), 판매, 업무, 관 광숙박,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좌 등	세부개발 계획시 제시된 관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
	불허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 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 양화로변 외 지역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위락시설 허용	좌 등	전 총
건폐율		• 60% 이하	좌 등	-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 일반상업지역 : 600% / 800% 이하 • 일반상업지역(용도지역 상향기준 적용지역) : 300% 이하 / 63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600% 이하 / 880% 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최고높이		• 100m 이하	130m + α 이하	기준높이 130m

※ 특별계획구역은 용도 밀도, 최고높이 이외의 사항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세부
개발계획)에서 정한바에 따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획지계획 등)

- ※ 건축물 권장용도 변경사항은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함.
- ※ α 는 기준높이에서 기부채납(공공용지 등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용적률 : 300/630/2배 → 600/880/2배 높이 : 최고100m 이하 → 최고130m + α 이하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에 따라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높이 계획을 반영함	-

IV. 특별계획구역 6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6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마포구 노고산동 31-6번지 일대	3,245	-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245.0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245.0	100.0	-

3) 용도지구 결정조서 (해당없음)

4)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	12	국지 도로	40 (40)	노고산동 31-17	노고산동 31-22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7.8)	-
기정	소로	1	3	8-10	국지 도로	167 (75)	노고산동 31-76	노고산동 31-23	일반 도로	-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 ('67.7.8)	-

※ ()는 지구 내 연장임

5) 기부채납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시행지구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 기반시설 면적 (㎡)	계획기반 시설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 국공유지	기반시설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비고
							정비기반 시설 등 (토지) 부담률	건축물 기부채납 부담률	합계	
기정	3,245	2,995.9	249.1	-	-	149.8	398.9	-	12.3	구역내 평균부담률 8.5% 이상
변경	3,245	2,995.9	249.1	-	-	-	249.1	386	19.6	

※ 순부담률 산출 : 순부담면적 ÷ (시행지구 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면적 - 대지 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 변경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기반시설 부담 계획 변경	건축물 제공 면적 변경 등	-

6)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관리청
신설	청년창업정보교육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1,027.7	마포구청장
신설	외국인주민센터	지상2층 건축물 일부	1,097.9	서울특별시청(다문화담당관)
기정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공공임대주택 22세대 분 부속토지	149.8	서울특별시청(임대주택과)
변경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삭제	0.0	서울특별시청(임대주택과)
기정	도로	노고산동 31-77, -79, -80, -84, -85, -86, -91, -120, -139 일부	249.1	마포구청장

※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 면적 · 형태 등 조정될 수 있음

※ 공공청사는 관리청으로 귀속되며, 해당 관리청에서 운영 및 관리함

※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시, 준공인가 전 관리청 부서와 협의하여 조성(안)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건축계획(안) 변경될 수 있음

7)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특별계획구역 6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함), 판매, 업무, 관광숙박,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불허 용도 (전층)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 양화로변 외 지역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위락시설 허용	
건폐율		60% 이하	

구 분		특별계획구역 6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세부개발계획	비 고
용적률 (기준/허용/상한)	기정	394% 이하 / 684% 이하 / 806.5% 이하	
	변경	600% 이하 / 694% 이하 / 993% 이하	
최고높이	기정	100m 이하	
	변경	155m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 건축지정선 : 백범로변 3m • 건축한계선 : 이면부 2m • 고층부(4층 이상) 벽면한계선 : 백범로변 6m	
	변경	• 건축한계선 : 백범로변 3m, 이면부 2m • 고층부(4층 이상) 벽면한계선 : 백범로변 6m	
기타에 관한 사항	기정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설치구간 : 백범로 변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백범로 변	

5. 관계도면 : 생략(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계획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향후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로구공고 제2026-674호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공원(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을 위한 열람공고

서고 제211호('14.06.05)로 도시관리계획[구로구 온수동 대흥, 성원, 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결정(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공원1·2(소공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최초)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구로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현황

가. 시설명 :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소공원1·2

공원명	위치	면적	비고
소공원1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44-1	1,331.00㎡	
소공원2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45-31	3,097.00㎡	

2. 공고내용 :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공원1·2(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안)

가. 목적 :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변 개발사업과 쉼터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공원조성계획(안) : 공원 내 휴양시설 등 에 따른 시설면적 반영

공원명	구분	면적	비고
소공원1	도로 및 광장	228.08㎡	
	휴양시설	3.84㎡	
	녹지	1,099.08㎡	

공원명	구 분	면 적	비 고
소공원2	도로 및 광장	516.20㎡	
	휴양시설	7.88㎡	
	운동시설	50.07㎡	
	녹지	2,522.85㎡	

3. 열람기간 : 2026. 4. 02. ~ 4. 16.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02-860-2321)

5.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구로구 은수동 대풍, 성원, 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공원1(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속 마 물			공작물 응답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반 시설	계	3,097.00	574.15	-	-	-	16	
	소 계	516.20	516.20	-	-	-	16	
	도 로	408.95	408.95	-	-	-	-	
	광 장	107.25	107.25	-	-	-	-	
조경 시설		-	-	-	-	-	-	
휴양 시설		7.88	7.88	-	-	-	12	
유희 시설		-	-	-	-	-	-	
운동 시설		50.07	50.07	-	-	-	3	
교 양 시설		-	-	-	-	-	-	

구	부	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용수 (통)	바닥면적 (㎡)	연면적 (㎡)		
	편익시설	-	-	-	-	-	-	
	관리시설	-	-	-	-	-	1	
	녹지및기타	2,522.85	2,522.85	-	-	-	-	
시설 양분 (제한없음)		(574.15.00/3,097.00 x 100 = 18.54%						
건 폐 율 (보정 20%)		(0.00/3,097.00) x 100 = 0.0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축물(㎡)		공적률 (%)	비 고
								비면적	연면적		
기반 시설	합 계			3,097.00	574.15	-	-	-	-	16	18.54%
	소계	-	-	516.20	516.20	-	-	-	-	-	16.67%
	도로	-	-	408.95	408.95	-	-	-	-	-	
	광장	가	온수동 45-31	107.25	107.25	-	-	-	-	-	
	광장	가-1	온수동 45-31	66.67	66.67	-	-	-	-	-	
조경 시설	광장	가-2	온수동 45-31	40.58	40.58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축물(㎡)		공작물 공정률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환경 부서 시설	소계	-	-	7.88	7.88	-	-	-	-	12	0.25%
	휴게소	나	온수동 45-31	7.88	7.88	-	-	-	-	-	
		나-1	온수동 45-31	0.92	0.92	-	-	-	-	-	
		나-2	온수동 45-31	1.28	1.28	-	-	-	-	-	
		나-3	온수동 45-31	0.92	0.92	-	-	-	-	-	
		나-4	온수동 45-31	0.92	0.92	-	-	-	-	-	
		나-5	온수동 45-31	1.28	1.28	-	-	-	-	-	
		나-6	온수동 45-31	1.28	1.28	-	-	-	-	-	
		나-7	온수동 45-31	1.28	1.28	-	-	-	-	-	
	폐교라	①	-	-	-	-	-	-	-	2	
	임용부	②	-	-	-	-	-	-	-	3	
	등유자	③	-	-	-	-	-	-	-	7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축물(㎡)		공작물 응답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소계	-	-	50.07	50.07	-	-	-	-	3	1.62%
	체력단련장	마	온수동 45-31	50.07	50.07	-	-	-	-	3	
	체어웨이트	④	-	-	-	-	-	-	-	1	
	트윈트위스트	⑤	-	-	-	-	-	-	-	1	
	롤링웨이트	⑥	-	-	-	-	-	-	-	1	
관리시설	소계	-	-	-	-	-	-	-	-	1	
	총합안내판	⑦	-	-	-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	-	2,522.85	2,522.85	-	-	-	-	-	81.46%
	녹지	-	-	2,522.85	2,522.85	-	-	-	-	-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260.8	408.95				
신설	소로	3	1	3.0	13.6	40.76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1	
		3	2	2.0	7.7	15.48	진입로	서측경계	광장1	
		3	3	1.5	127.5	191.31	산책로	소로3-4	소로3-4	
		3	4	1.5	39.2	58.83	산책로	소로3-3	소로3-3	
		3	5	1.5	15.7	23.61	산책로	소로3-4	소로3-3	
		3	6	1.5	29.2	43.85	산책로	소로3-3	소로3-3	
		3	7	1.2	22.6	27.14	산책로	소로3-3	소로3-3	
		3	8	1.5	5.3	7.97	연결로	소로3-4	광장2	

조성계획도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소공원1



조성계획총괄표

구분	사업명	비율	부담비율 (%)	사업비 (천원)	공급비율 (%)
기	합계		3,007.00	574.15	18
	소재		3,007.00	519.20	-
	소재		3,007.00	519.20	16.67
기	소재	가	102.25	102.25	100
	소재	가-1	66.67	66.67	100
	소재	가-2	35.57	35.57	100
기	소재	가-1	7.88	7.88	100
	소재	가-2	7.88	7.88	100
	소재	가-3	1.28	1.28	100
기	소재	가-4	0.92	0.92	100
	소재	가-5	1.28	1.28	100
	소재	가-6	1.28	1.28	100
기	소재	가-7	1.28	1.28	100
	소재	가-8	1.28	1.28	100
	소재	가-9	1.28	1.28	100
기	소재	가-10	1.28	1.28	100
	소재	가-11	1.28	1.28	100
	소재	가-12	1.28	1.28	100
기	소재	가-13	1.28	1.28	100
	소재	가-14	1.28	1.28	100
	소재	가-15	1.28	1.28	100
기	소재	가-16	1.28	1.28	100
	소재	가-17	1.28	1.28	100
	소재	가-18	1.28	1.28	100
기	소재	가-19	1.28	1.28	100
	소재	가-20	1.28	1.28	100
	소재	가-21	1.28	1.28	100
기	소재	가-22	1.28	1.28	100
	소재	가-23	1.28	1.28	100
	소재	가-24	1.28	1.28	100
기	소재	가-25	1.28	1.28	100
	소재	가-26	1.28	1.28	100
	소재	가-27	1.28	1.28	100
기	소재	가-28	1.28	1.28	100
	소재	가-29	1.28	1.28	100
	소재	가-30	1.28	1.28	100
기	소재	가-31	1.28	1.28	100
	소재	가-32	1.28	1.28	100
	소재	가-33	1.28	1.28	100
기	소재	가-34	1.28	1.28	100
	소재	가-35	1.28	1.28	100
	소재	가-36	1.28	1.28	100
기	소재	가-37	1.28	1.28	100
	소재	가-38	1.28	1.28	100
	소재	가-39	1.28	1.28	100
기	소재	가-40	1.28	1.28	100
	소재	가-41	1.28	1.28	100
	소재	가-42	1.28	1.28	100
기	소재	가-43	1.28	1.28	100
	소재	가-44	1.28	1.28	100
	소재	가-45	1.28	1.28	100
기	소재	가-46	1.28	1.28	100
	소재	가-47	1.28	1.28	100
	소재	가-48	1.28	1.28	100
기	소재	가-49	1.28	1.28	100
	소재	가-50	1.28	1.28	100
	소재	가-51	1.28	1.28	100
기	소재	가-52	1.28	1.28	100
	소재	가-53	1.28	1.28	100
	소재	가-54	1.28	1.28	100
기	소재	가-55	1.28	1.28	100
	소재	가-56	1.28	1.28	100
	소재	가-57	1.28	1.28	100
기	소재	가-58	1.28	1.28	100
	소재	가-59	1.28	1.28	100
	소재	가-60	1.28	1.28	100
기	소재	가-61	1.28	1.28	100
	소재	가-62	1.28	1.28	100
	소재	가-63	1.28	1.28	100
기	소재	가-64	1.28	1.28	100
	소재	가-65	1.28	1.28	100
	소재	가-66	1.28	1.28	100
기	소재	가-67	1.28	1.28	100
	소재	가-68	1.28	1.28	100
	소재	가-69	1.28	1.28	100
기	소재	가-70	1.28	1.28	100
	소재	가-71	1.28	1.28	100
	소재	가-72	1.28	1.28	100
기	소재	가-73	1.28	1.28	100
	소재	가-74	1.28	1.28	100
	소재	가-75	1.28	1.28	100
기	소재	가-76	1.28	1.28	100
	소재	가-77	1.28	1.28	100
	소재	가-78	1.28	1.28	100
기	소재	가-79	1.28	1.28	100
	소재	가-80	1.28	1.28	100
	소재	가-81	1.28	1.28	100
기	소재	가-82	1.28	1.28	100
	소재	가-83	1.28	1.28	100
	소재	가-84	1.28	1.28	100
기	소재	가-85	1.28	1.28	100
	소재	가-86	1.28	1.28	100
	소재	가-87	1.28	1.28	100
기	소재	가-88	1.28	1.28	100
	소재	가-89	1.28	1.28	100
	소재	가-90	1.28	1.28	100
기	소재	가-91	1.28	1.28	100
	소재	가-92	1.28	1.28	100
	소재	가-93	1.28	1.28	100
기	소재	가-94	1.28	1.28	100
	소재	가-95	1.28	1.28	100
	소재	가-96	1.28	1.28	100
기	소재	가-97	1.28	1.28	100
	소재	가-98	1.28	1.28	100
	소재	가-99	1.28	1.28	100
기	소재	가-100	1.28	1.28	100
	소재	가-101	1.28	1.28	100
	소재	가-102	1.28	1.28	100
기	소재	가-103	1.28	1.28	100
	소재	가-104	1.28	1.28	100
	소재	가-105	1.28	1.28	100
기	소재	가-106	1.28	1.28	100
	소재	가-107	1.28	1.28	100
	소재	가-108	1.28	1.28	100
기	소재	가-109	1.28	1.28	100
	소재	가-110	1.28	1.28	100
	소재	가-111	1.28	1.28	100
기	소재	가-112	1.28	1.28	100
	소재	가-113	1.28	1.28	100
	소재	가-114	1.28	1.28	100
기	소재	가-115	1.28	1.28	100
	소재	가-116	1.28	1.28	100
	소재	가-117	1.28	1.28	100
기	소재	가-118	1.28	1.28	100
	소재	가-119	1.28	1.28	100
	소재	가-120	1.28	1.28	100
기	소재	가-121	1.28	1.28	100
	소재	가-122	1.28	1.28	100
	소재	가-123	1.28	1.28	100
기	소재	가-124	1.28	1.28	100
	소재	가-125	1.28	1.28	100
	소재	가-126	1.28	1.28	100
기	소재	가-127	1.28	1.28	100
	소재	가-128	1.28	1.28	100
	소재	가-129	1.28	1.28	100
기	소재	가-130	1.28	1.28	100
	소재	가-131	1.28	1.28	100
	소재	가-132	1.28	1.28	100
기	소재	가-133	1.28	1.28	100
	소재	가-134	1.28	1.28	100
	소재	가-135	1.28	1.28	100
기	소재	가-136	1.28	1.28	100
	소재	가-137	1.28	1.28	100
	소재	가-138	1.28	1.28	100
기	소재	가-139	1.28	1.28	100
	소재	가-140	1.28	1.28	100
	소재	가-141	1.28	1.28	100
기	소재	가-142	1.28	1.28	100
	소재	가-143	1.28	1.28	100
	소재	가-144	1.28	1.28	100
기	소재	가-145	1.28	1.28	100
	소재	가-146	1.28	1.28	100
	소재	가-147	1.28	1.28	100
기	소재	가-148	1.28	1.28	100
	소재	가-149	1.28	1.28	100
	소재	가-150	1.28	1.28	100
기	소재	가-151	1.28	1.28	100
	소재	가-152	1.28	1.28	100
	소재	가-153	1.28	1.28	100
기	소재	가-154	1.28	1.28	100
	소재	가-155	1.28	1.28	100
	소재	가-156	1.28	1.28	100
기	소재	가-157	1.28	1.28	100
	소재	가-158	1.28	1.28	100
	소재	가-159	1.28	1.28	100
기	소재	가-160	1.28	1.28	100
	소재	가-161	1.28	1.28	100
	소재	가-162	1.28	1.28	100
기	소재	가-163	1.28	1.28	100
	소재	가-164	1.28	1.28	100
	소재	가-165	1.28	1.28	100
기	소재	가-166	1.28	1.28	100
	소재	가-167	1.28	1.28	100
	소재	가-168	1.28	1.28	100
기	소재	가-169	1.28	1.28	100
	소재	가-170	1.28	1.28	100
	소재	가-171	1.28	1.28	100
기	소재	가-172	1.28	1.28	100
	소재	가-173	1.28	1.28	100
	소재	가-174	1.28	1.28	100
기	소재	가-175	1.28	1.28	100
	소재	가-176	1.28	1.28	100
	소재	가-177	1.28	1.28	100
기	소재	가-178	1.28	1.28	100
	소재	가-179	1.28	1.28	100
	소재	가-180	1.28	1.28	100
기	소재	가-181	1.28	1.28	100
	소재	가-182	1.28	1.28	100
	소재	가-183	1.28	1.28	100
기	소재	가-184	1.28	1.28	100
	소재	가-185	1.28	1.28	100
	소재	가-186	1.28	1.28	100
기	소재	가-187	1.28	1.28	100
	소재	가-188	1.28	1.28	100
	소재	가-189	1.28	1.28	100
기	소재	가-190	1.28	1.28	100
	소재	가-191	1.28	1.28	100
	소재	가-192	1.28	1.28	100
기	소재	가-193	1.28	1.28	100
	소재	가-194	1.28	1.28	100
	소재	가-195	1.28	1.28	100
기	소재	가-196	1.28	1.28	100
	소재	가-197	1.28	1.28	100
	소재	가-198	1.28	1.28	100
기	소재	가-199	1.28	1.28	100
	소재	가-200	1.28	1.28	100
	소재	가-201	1.28	1.28	100
기	소재	가-202	1.28	1.28	100
	소재	가-203	1.28	1.28	100
	소재	가-204	1.28	1.28	100
기	소재	가-205	1.28	1.28	100
	소재	가-206	1.28	1.28	100
	소재	가-207	1.28	1.28	100
기	소재	가-208	1.28	1.28	100
	소재	가-209	1.28	1.28	100
	소재	가-210	1.28	1.28	100
기	소재	가-211	1.28	1.28	100
	소재	가-212	1.28	1.28	100
	소재	가-213	1.28	1.28	100
기	소재	가-214	1.28	1.28	100
	소재	가-215	1.28	1.28	100
	소재	가-216	1.28	1.28	100
기	소재	가-217	1.28	1.28	100
	소재	가-218	1.28	1.28	100
	소재	가-219	1.28	1.28	100
기	소재	가-220	1.28	1.28	100
	소재	가-221	1.28	1.28	100
	소재	가-222	1.28	1.28	100
기	소재	가-223	1.28	1.28	100
	소재	가-224	1.28	1.28	100
	소재	가-225	1.28	1.28	100
기	소재	가-226	1.28	1.28	100
	소재	가-227	1.28	1.28	100
	소재	가-228	1.28	1.28	100
기	소재	가-229	1.28	1.28	100
	소재	가-230	1.28	1.28	100
	소재	가-231	1.28	1.28	100
기	소재	가-232	1.28	1.28	100
	소재	가-233	1.28	1.28	100
	소재	가-234	1.28	1.28	100
기	소재	가-235	1.28	1.28	100
	소재	가-236	1.28	1.28	100
	소재	가-237	1.28	1.28	100
기	소재	가-238	1.		



구로구 은수동 대풍, 성원, 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공원2(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당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반 시설	계	1,331.00	231.92	-	-	-	7	
	소 계	228.08	228.08	-	-	-	7	
	도 로	188.46	188.46	-	-	-	-	
조경 시 설	광 장	39.62	39.62	-	-	-	-	
	조 경 시 설	-	-	-	-	-	-	
유형 시 설	휴 양 시 설	3.84	3.84	-	-	-	6	
	유 희 시 설	-	-	-	-	-	-	
	안 논 시 설	-	-	-	-	-	-	

구	과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면			국유지 면적 (㎡)	비 고
				목수 (㎡)	바닥면적 (㎡)	영면적 (㎡)		
	공 양 시 설	-	-	-	-	-	-	
	편 이 시 설	-	-	-	-	-	-	
	관 리 시 설	-	-	-	-	-	1	
	녹 지 미 기 타	1,099.08	1,099.08	-	-	-	-	
시 설 을 (제출됨)		(231,921,331.00 x 100 = 17.42%						
건 폐 (보정 20%)		(0.00/1,331.00) x 100 = 0.0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축물(㎡)		건축물 면적률 (%)	비 고
								비대면적	연면적		
기본 시설	합 계			1,331.00	231.92	-	-	-	-	6	17.42%
	소계	-	-	228.08	228.08	-	-	-	-	-	17.14%
	도로	-	-	188.46	188.46	-	-	-	-	-	
	광장	가	운수동 44-1	39.62	39.62	-	-	-	-	-	
조경 시설	소계	-	-	-	-	-	-	-	-	-	
		-	-	-	-	-	-	-	-	-	
휴양 시설	소계	-	-	3.84	3.84	-	-	-	-	6	0.28%
	휴게소	나	운수동 44-1	3.84	3.84	-	-	-	-	-	
		나-1	운수동 44-1	1.28	1.28	-	-	-	-	-	
		나-2	운수동 44-1	1.28	1.28	-	-	-	-	-	
		나-3	운수동 44-1	1.28	1.28	-	-	-	-	-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구 모	건축물(㎡)		공작물 공정 (기)	비 고
								비대면적	연면적		
	폐고라	①	-	-	-	-	-	-	-	1	
	입문벽	②	-	-	-	-	-	-	-	2	
	등이자	③	-	-	-	-	-	-	-	3	
양공시설	소계	-	-	-	-	-	-	-	-	-	
	-	-	-	-	-	-	-	-	-	-	
관리시설	소계	-	-	-	-	-	-	-	-	1	
	중합인네판	④	-	-	-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	-	1,099.08	1,099.08	-	-	-	-	-	82.58%
	녹지	-	-	1,099.08	1,099.08		-	-	-	-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86.6	138.87				
신설	소로	3	1	1.5	64.6	96.90	산책로	북측경계	남측경계	
		3	2	1.5	39.6	59.45	연결로	광장	소로3-1	
		3	3	1.5	21.4	32.11	연결로	광장	소로3-1	

조성계획서

대형·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소공원2



조성계획총괄표

구분	사업명	비고	투자비용 (억 원)	사업기간 (월)	연간 유출액 (억 원)
합계					
기 간 별	소계		1,331.00	231.92	7
	상계		228.08	228.08	-
	공계	가	1,102.92	228.08	17.14
년 별	상계		386.62	386.62	
	공계		386.62	386.62	
	합계		384	384	6
유 출 부 속 금	유출액	나	384	384	0.28
	상계	나-1	1.28	1.28	
	공계	나-3	1.28	1.28	
유 출 부 속 금	유출액	다	0	0	1
	상계	다	0	0	2
	공계	다	0	0	3
유 출 부 속 금	유출액	0	0	0	0.05
	상계		1,050.08	-	82.58
	공계				



◆ 금천구공고 제2026-62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254호(2020.6.2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20호(2026.3.1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관악산근린공원(목골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련 서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한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생활밀착형 공원(목골지구) 조성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 132-5 외 1필지
- 사업규모 : 6,182㎡
- 사업내용 : 공원 조성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마. 공고방법 및 열람기간 : 서울시보 게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 2627-1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26-688호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동작구청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2번지 일대에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동작구청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동 작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장승배기로 70, 4층, ☎ 02-820-1083)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①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동작구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87,123	-	87,123	최초결정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17호 (1996.11.20.)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라. 동작구청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㉓	동작구청부지 특별계획구역	노량진동 47-2	8,941	-	8,941	-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도서 참조)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생략(열람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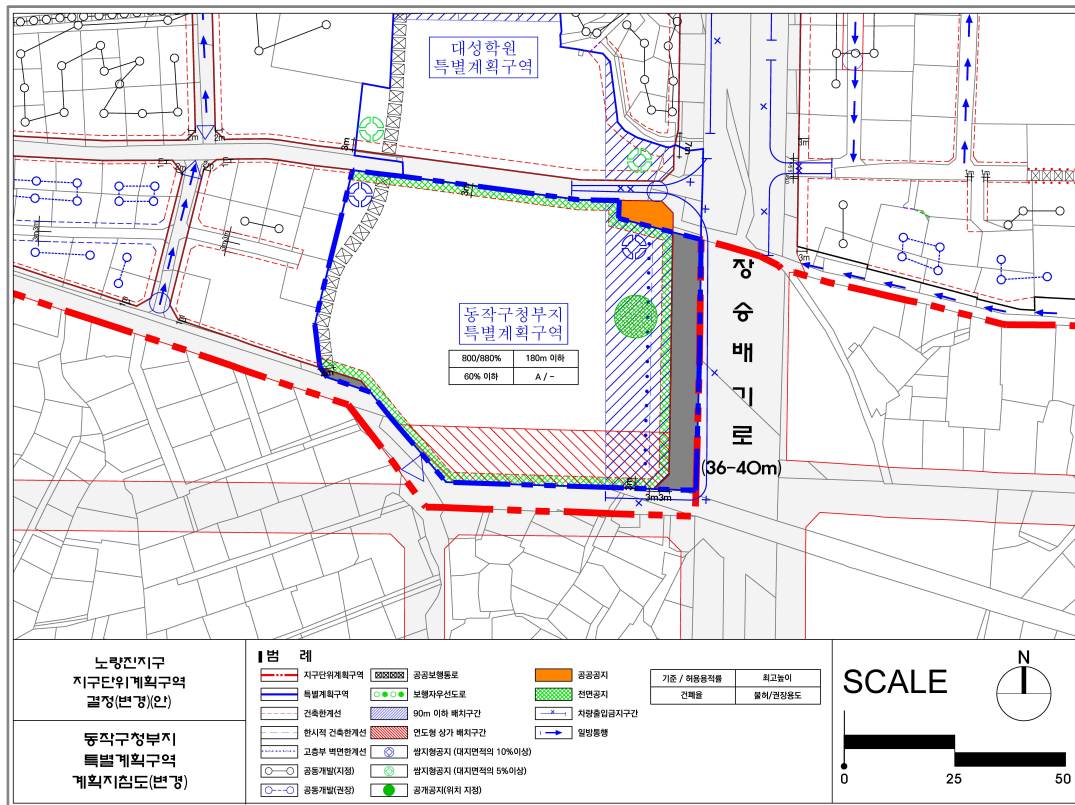
④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 생략(열람도서 참조)

5.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6. 기타사항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02-820-1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 서초구공고 제2026-724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6호(2002.7.2.)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5호(2018.2.8.)로 변경 결정된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14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 초 구 청 장

1.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1), 서초2동 주민센터(02-2155-7445), 양재1동 주민센터(02-2155-7884)
- 의견제출방법: 본 열람내용(도시관리계획(변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서초구청 도시계획과 방문 및 이메일 1001@seocho.go.k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양재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동 1366번지 일대, 양재동 12번지 일대	110,192.0	증)86,499.8	196,691.8	1996. 4. 13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90호)	
변경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일대	3,066,421.7	감)29,877.9	3,036,543.8	2001. 12. 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418호)	
폐지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서초동 1365-8번지 등 8필지	2,805.1	감)2,805.1	-	2017. 12. 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92호)	
폐지	양재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양재동 1-7번지 일대	1,102.9	감)1,102.9	-	2025. 06.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36호)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고)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고)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고)

4.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서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문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함

5.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로 같음)

6. 기타사항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고 관련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공고 제2026-850호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근린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호(2023.2.1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55호(2025.11.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변경)된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내 근린공원 및 소공원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일

강 남 구 청 장

가. 열람내용: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내 근린공원 및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안)

- 1)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등 2개소
- 2) 면 적: 17,679㎡(근린공원: 10,864.5㎡, 소공원: 6,814.5㎡)
- 3) 조성내용: 근린공원 및 소공원 조성

나. 조성계획 결정 조서(안) 및 도면(안): 불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강남구 공원녹지과(☎02-3423-6994)

마.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1. 총괄표 (위치 :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총 계	10,864.50	3,631.91	1	97.75	97.75	109	
기 반 사 설	소 계	2,244.88				-	
	도 로	1,696.67				-	
	광 장	548.21				-	
조 경 시 설	38.00	38.00				-	
휴 양 시 설	943.28	943.28				61	
운 동 시 설	308.00	308.00				2	
관 리 시 설	97.75	97.75	1	97.75	97.75	46	
녹지 및 기타	7,232.59	-				-	
시 설 율 (법정 40%)	$(3,631.91 / 10,864.50) \times 100 = 33.43\%$						
건 폐 율 (법정 20%)	$(97.75 / 10,864.50) \times 100 = 0.9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0,864.50	3,631.91		1	97.75	97.75	109	
기 반 시 설	소계		2,244.88	2,244.88						
	도로		1,696.67	1,696.67						
	광장	소계		548.21	548.21					
		진입광장	가-1	548.21						
조경 시설	소계		38.00	38.00						
	화계		나-1	38.00						
휴 양 시 설	소계		943.28	943.28					61	
	갤러리가든		다-1	589.14	589.14					
	피크닉가든		다-2	75.15	75.15					
	포켓쉼터-1		다-3	19.74	19.74					
	포켓쉼터-2		다-4	20.29	20.29					
	포켓쉼터-3		다-5	19.26	19.26					
	포켓쉼터-4		다-6	25.52	25.52					
	포켓쉼터-5		다-7	34.19	34.19					
	포켓쉼터-6		다-8	11.69	11.69					
	휴게데크		다-9	45.11	45.11					
	웰컴가든		다-10	47.06	47.06					
	가로쉼터-1		다-11	14.46	14.46					
	가로쉼터-2		다-12	13.51	13.51					
	가로쉼터-3		다-13	14.09	14.09					
	가로쉼터-4		다-14	14.07	14.07					
	플랜터		①	-	-				5	
	앉음벽		②	-	-				2	
	통석벤치		③	-	-				10	
	파고라		④	-	-				2	
	막구조파고라		⑤	-	-				3	
	야외데이블세트		⑥	-	-				10	
	그늘벤치		⑦	-	-				4	
	스윙벤치		⑧	-	-				5	
	등의자		⑨	-	-				20	
미 리 시 설	소계		308.00	308.00					2	
	헬시가든		라-1	308.00	308.00					
	복합운동시설-1		⑩	-	-				1	
	복합운동시설-2		⑪	-	-				1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계		-	-					46	
	관리사무소	마-1	97.75	97.75		1	97.75	97.75		
	공원안내판	㉔	-	-					2	
	공원등	㉕							36	
	CCTV	㉖							7	
	분전함	㉗							1	
녹지 및 기타	소계		7,232.59	-						
	녹 지		7,232.59	-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525.0	1,696.67				
신설	소 계				525.0	1,696.67				
	소로	3	1	4.0~10.0	50.5	383.74	진입로	외부보행로	소로3-6	
	소로	3	2	3.0	7.5	22.5	진입로	공동주택단지	소로3-1	
	소로	3	3	2.0	23.0	46.0	연결로	외부보행로	소로3-1	
	소로	3	4	2.0	19.0	38.0	연결로	소로3-3	소로3-6	
	소로	3	5	2.5~4.8	15.0	51.71	진입로	공동주택단지	소로3-6	
	소로	3	6	2.5~3.0	178.0	589.5	연결로	소로3-1	진입광장	
	소로	3	7	2.0	16.0	32.0	연결로	소로3-6	소로3-6	
	소로	3	8	2.0	13.0	26.0	연결로	소로3-6	소로3-6	
	소로	3	9	2.0	8.5	17.0	연결로	소로3-6	소로3-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소로	3	10	2.0	13.5	27.0	연결로	소로3-6	소로3-6	
	소로	3	11	2.0	80.5	161.0	연결로	중앙마당	소로3-13	
	소로	3	12	2.0	44.0	88.0	연결로	소로3-13	진입광장	
	소로	3	13	2.0~4.0	56.5	214.22	진입로	공동주택단지	중앙마당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조서

1. 총괄표 (위치 : 강남구 대치동 1020-1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총 계		6,814.5	1,100.94				47	
기 반 시 설	소 계	889.38	889.38					
	도 로	689.59	689.59					
	광 장	199.79	199.79					
휴 양 시 설		211.56	211.56				18	
관 리 시 설		-	-				29	
녹지 및 기타		5,713.56	-				-	
시 설 율 (법정 20%)		$(1,100.94 / 6,814.50) \times 100 = 16.16\%$						
건 폐 율 (법정 5%)		$(0.00 / 6,814.50) \times 100 = 0.0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6,814.50	1,100.94					47	
기 반 시 설	소계		889.38	889.38						
	도로		689.59	689.59						
	광장	소계		199.79	199.79					
		진입광장	가-1	199.79	199.79					
휴 양 시 설	소계		211.56	211.56					18	
	가로쉼터-1	나-1	23.55	23.55						
	가로쉼터-2	나-2	31.96	31.96						
	숲속쉼터-1	나-3	17.37	17.37						
	숲속쉼터-2	나-4	32.92	32.92						
	숲속쉼터-3	나-5	19.80	19.80						
	숲속쉼터-4	나-6	26.91	26.91						
	숲속쉼터-5	나-7	59.05	59.05						
	파고라	①	-	-					1	
	등의자	②	-	-					8	
	앉음벽	③	-	-					5	
	야외테이블세트	④							4	
관 리 시 설	소계		-	-					29	
	공원안내판	④	-	-					2	
	공원등	⑤	-	-					21	
	CCTV	⑥	-	-					5	
	분전함	⑦	-	-					1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녹지 및 기타	소계		5,713.56	-			(212.98)			
	녹 지		5,713.56	-						
	지하주차장 램프		(144.22)							
	지하주차장 계단실		(140.41)				(140.41)			
	지하주차장 헬룸		(72.57)				(72.57)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310.0	689.59				
신설	소 계				310.0	689.59				
	소로	3	1	2.0	72.0	144.0	연결로	광장	소로3-4	
	소로	3	2	2.0~4.0	60.0	148.19	연결로	소로3-4	소로3-1	
	소로	3	3	2.0	80.0	160.0	연결로	소로3-1	휴게공간	
	소로	3	4	2.0~2.3	68.0	161.4	진입로	외부보행로	휴게공간	
	소로	3	5	2.0	14.0	28.0	진입로	공동주택단지	소로3-4	
	소로	3	6	3.0	16.0	48.0	진입로	공동주택단지	소로3-3	

오마이파트 재건축사업 그린공원 조성계획(최초) 도면

노회개성적

하루
다
한
날[illegible]

오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소공원 조성계획(최초) 도면

ਮੁਕਤੀ

하
더
서[illegible]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2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자연성회복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내 한강 (한강대교~한강철교)	(선박1척) 9㎡	반포한강공원 자연형 호안 복원공사 중 준공 수심측량	' 26. 3. 25. ~ ' 26. 4. 30.	' 26. 3. 2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서울시계내 한강 (강동대교~ 한남대교)	(선박1척) 13.75㎡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주관 연구 과제인 “대발생 곤충의 저감기술 및 예측 모델 개발(2026)”의 일환으로 한강 수계 내 동양하루살이 유충의 서식 현황 확인	' 26.4.1. ~ ' 26.10.31.	' 26. 3. 2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경찰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99-29번지 외14필지	533㎡	한강경찰대 난지센터 신축공사	' 26.3.25. ~ ' 29.3.24.	' 26.3.2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3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15-3	서울시계 내 한강 (강서구 개화동 174-1)	621.89㎡ (기선 2척, 부선 4척)	정박대기	' 26. 4. 1. ~ ' 26. 4. 30.	' 26. 3. 2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3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펠리스 1905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가양대교북단 (췌췌엔한강랜드 수리소 하류 100m	(선박40척) 10,226.36㎡	공사대기	' 26. 4. 1. ~ ' 26. 4. 30.	' 26. 3. 2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6-13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사회체육 진흥회 수상스키 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29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296	동력선 2척 (머큐리 190, 스마트라이너) 포일보드 4대	수상레저사업 운영	2026. 4. 10. ~ 2026. 11. 10.	2026. 3. 31.

사업소공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6-122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의제기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간 이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6. 04. 02. ~ 2026. 04. 15. (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6. 04. 16. ~ 2026. 04. 29. (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0-2 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을포전아이영관원위반과태로	적법년월	2026-03	사전통지번호	000157	반송순번	1	주민번호	670911-*****	성명(반인명)	이*성	위반내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위반일시	2026-02-22 08:04	부과금액	50,000	사전통지일	2026-03-03	이견제출기한	2026-04-30	등기번호	1078835 2026-03-16 007580	반송일자	2026-03-16	반송 사유	기타	공시소달번호	제2026-122호	공시승인일	2026-03-26	공시시작일	2026-04-02	공시종료일	2026-04-15	우편번호	12039	납세자기본주소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	부서코드	6114357	부서명	영문총괄과	위반장소	북섬한강공원 영문총괄과 지영내들목주변
2	10-2 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을포전아이영관원위반과태로	적법년월	2026-03	사전통지번호	000162	반송순번	1	주민번호	740208-*****	성명(반인명)	오*힐	위반내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위반일시	2026-02-22 08:09	부과금액	50,000	사전통지일	2026-03-03	이견제출기한	2026-04-30	등기번호	1078835 2026-03-13 007577	반송일자	2026-03-13	반송 사유	기타	공시소달번호	제2026-122호	공시승인일	2026-03-26	공시시작일	2026-04-02	공시종료일	2026-04-15	우편번호	17045	납세자기본주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부서코드	6114357	부서명	영문총괄과	위반장소	북섬한강공원 영문총괄과 지영내들목주변
3	10-2 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을포전아이영관원위반과태로	적법년월	2026-03	사전통지번호	000165	반송순번	1	주민번호	600107-*****	성명(반인명)	김*식	위반내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위반일시	2026-02-22 08:13	부과금액	50,000	사전통지일	2026-03-03	이견제출기한	2026-04-30	등기번호	1078835 2026-03-16 007543	반송일자	2026-03-16	반송 사유	폐문 부재	공시소달번호	제2026-122호	공시승인일	2026-03-26	공시시작일	2026-04-02	공시종료일	2026-04-15	우편번호	58851	납세자기본주소	전라남도신안군조천면	부서코드	6114357	부서명	영문총괄과	위반장소	북섬한강공원 영문총괄과 지영내들목주변
4	10-2 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을포전아이영관원위반과태로	적법년월	2026-03	사전통지번호	000170	반송순번	1	주민번호	781017-*****	성명(반인명)	성*영	위반내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위반일시	2026-02-22 08:30	부과금액	50,000	사전통지일	2026-03-03	이견제출기한	2026-04-30	등기번호	1078835 2026-03-16 007571	반송일자	2026-03-16	반송 사유	기타	공시소달번호	제2026-122호	공시승인일	2026-03-26	공시시작일	2026-04-02	공시종료일	2026-04-15	우편번호	11783	납세자기본주소	경기도의정부시산단로	부서코드	6114357	부서명	영문총괄과	위반장소	북섬한강공원 영문총괄과 영문드서평장합 주변
5	10-2 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을포전아이영관원위반과태로	적법년월	2026-03	사전통지번호	000182	반송순번	1	주민번호	110111-*****	성명(반인명)	주**** **아	위반내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위반일시	2026-02-22 08:47	부과금액	50,000	사전통지일	2026-03-03	이견제출기한	2026-04-30	등기번호	1078835 2026-03-12 007588	반송일자	2026-03-12	반송 사유	기타	공시소달번호	제2026-122호	공시승인일	2026-03-26	공시시작일	2026-04-02	공시종료일	2026-04-15	우편번호	02618	납세자기본주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전동로4길	부서코드	6114357	부서명	영문총괄과	위반장소	북섬한강공원 영문총괄과 지영중앙나들목 앞
6	10-2 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을포전아이영관원위반과태로	적법년월	2026-03	사전통지번호	000183	반송순번	1	주민번호	591030-*****	성명(반인명)	김*섭	위반내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위반일시	2026-02-22 08:48	부과금액	50,000	사전통지일	2026-03-03	이견제출기한	2026-04-30	등기번호	1078835 2026-03-13 007537	반송일자	2026-03-13	반송 사유	기타	공시소달번호	제2026-122호	공시승인일	2026-03-26	공시시작일	2026-04-02	공시종료일	2026-04-15	우편번호	08866	납세자기본주소	서울특별시관악구미성길	부서코드	6114357	부서명	영문총괄과	위반장소	북섬한강공원 영문총괄과 나원정나들목 앞

7	10-2 88706	[시일반]서울 특별시환경공 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 로	적합년 월	2026- 03	사전통 지번호	00019- 0	반송 순번	1	주민번호 번호	880607- *****	성명(반 인명)	김*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	위반내용	2026-02- 22 08:55	부과금 액	2026- 03-03 04-30	사건통 지일	이견제 출기한	등기번호	1078835 2026- 03-13 007539	반송일 자	반송 사유	제2026- 122호	공시납 번호	1	공시 승인	공시 일	2026- 03-26	공시 일	2026- 04-02	공시 일	2026- 04-15	공시종 료	14295	납세자기 주	경기도광명 시광화포13 번길	61143 57	부서 명	영문 총괄 과	유역장소 명	북서향강공 원 지양내들목 하수 관
8	10-2 88706	[시일반]서울 특별시환경공 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 로	적합년 월	2026- 03	사전통 지번호	00022- 0	반송 순번	1	주민번호 번호	490901- *****	성명(반 인명)	반*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	위반내용	2026-02- 18 04:47	부과금 액	2026- 03-04 04-30	사건통 지일	이견제 출기한	등기번호	1078835 2026- 03-13 015715	반송일 자	반송 사유	제2026- 122호	공시납 번호	1	공시 승인	공시 일	2026- 03-26	공시 일	2026- 04-02	공시 일	2026- 04-15	공시종 료	07048	납세자기 주	서울특별시 동작구영문 로25길	61143 57	부서 명	영문 총괄 과	유역장소 명	여의도 환경공원 내 원효대교 하부 주변
9	10-2 88706	[시일반]서울 특별시환경공 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 로	적합년 월	2026- 03	사전통 지번호	00022- 5	반송 순번	1	주민번호 번호	761004- *****	성명(반 인명)	최*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	위반내용	2026-02- 26 12:23	부과금 액	2026- 03-04 04-30	사건통 지일	이견제 출기한	등기번호	1078835 2026- 03-13 015721	반송일 자	반송 사유	제2026- 122호	공시납 번호	1	공시 승인	공시 일	2026- 03-26	공시 일	2026- 04-02	공시 일	2026- 04-15	공시종 료	14438	납세자기 주	경기도부천 시오정구	61143 57	부서 명	영문 총괄 과	유역장소 명	여의도 환경공원 내 제4호 매점 주변
10	10-2 88706	[시일반]서울 특별시환경공 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 로	적합년 월	2026- 03	사전통 지번호	00023- 0	반송 순번	1	주민번호 번호	480609- *****	성명(반 인명)	강*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	위반내용	2026-02- 28 10:58	부과금 액	2026- 03-04 04-30	사건통 지일	이견제 출기한	등기번호	1078835 2026- 03-13 015727	반송일 자	반송 사유	제2026- 122호	공시납 번호	1	공시 승인	공시 일	2026- 03-26	공시 일	2026- 04-02	공시 일	2026- 04-15	공시종 료	07359	납세자기 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여 의대방로47 길	61143 57	부서 명	영문 총괄 과	유역장소 명	여의도 환경공원 내 서울항 주변
11	10-2 88706	[시일반]서울 특별시환경공 원보전및이용 관련위반과태 로	적합년 월	2026- 03	사전통 지번호	00023- 8	반송 순번	1	주민번호 번호	650926- *****	성명(반 인명)	정*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	위반내용	2026-03- 03 22:58	부과금 액	2026- 03-05 04-30	사건통 지일	이견제 출기한	등기번호	1078835 2026- 03-17 021944	반송일 자	반송 사유	제2026- 122호	공시납 번호	1	공시 승인	공시 일	2026- 03-26	공시 일	2026- 04-02	공시 일	2026- 04-15	공시종 료	05710	납세자기 주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 대로32길	61143 57	부서 명	영문 총괄 과	유역장소 명	광나루한강 공원내 천호대교하 부 주변(185도 8480)자등 차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6-123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위반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6. 04. 02. ~ 2026. 04. 15. (14일)
5.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6.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반송구분	주민 (법인) 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승인 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제고지 일자	공시 승인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1	부과고지	720716- *****	이*갑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워반과테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6-03	000184	2026-03-03	2026-04-30	Y	2026-03-13	폐문부재		2026-03-26	2026-04-02	2026-04-15
2	부과고지	610210- *****	한*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워반과테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3	000185	2026-03-03	2026-04-30	Y	2026-03-13	기타		2026-03-26	2026-04-02	2026-04-15
3	부과고지	820711- *****	고*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워반과테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6-03	000186	2026-03-03	2026-04-30	Y	2026-03-16	기타		2026-03-26	2026-04-02	2026-04-15
4	부과고지	510417- *****	김*연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워반과테로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6-03	000187	2026-03-03	2026-04-30	Y	2026-03-16	기타		2026-03-26	2026-04-02	2026-04-15
5	부과고지	900508- *****	J*****N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워반과테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6-03	000188	2026-03-03	2026-04-30	Y	2026-03-16	기타		2026-03-26	2026-04-02	2026-04-15
6	부과고지	740505- *****	강*국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워반과테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3	000189	2026-03-03	2026-04-30	Y	2026-03-13	기타		2026-03-26	2026-04-02	2026-04-15
7	부과고지	591223- *****	하*왕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워반과테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3	000191	2026-03-03	2026-04-30	Y	2026-03-16	폐문부재		2026-03-26	2026-04-02	2026-04-15
8	부과고지	920529- *****	김*진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워반과테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6-03	000195	2026-03-12	2026-04-30	Y	2026-03-17	수취인불 명		2026-03-26	2026-04-02	2026-04-15
9	부과고지	050623- *****	LE****H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보전및이용관련워반과테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6-03	000196	2026-03-12	2026-04-30	Y	2026-03-24	기타		2026-03-26	2026-04-02	2026-04-15

◆ 강남소방서공고 제2026-19호

청문조서 열람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소방시설관리업체 사업장에 청문조서 열람 통지(알림)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장 부재 및 연락 두절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일
강 남 소 방 서 장

청문제목	소방시설관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에 따른 청문
통 지 인 (청문주제자)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장 김진숙
피통지인 (당 사 자)	주식회사 아는***엔씨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841호(수서동)]
열람장소	강남소방서 3층 회의실
열람문서	청문조서
열람기간	2026.4.2.(목)~2026.4.16.(목)

열람하신 청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 사항이 있으시면 문서 또는 구술로 청문주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열람이 없는 경우 청문조서는 원안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기 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 제2026-1호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고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 징수규정」 제10조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반입수수료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단위 : 원/톤)

폐기물 종류	반입수수료	시행일	비고
생활폐기물(연탄재 제외)	146,880	2026년 4월 1일	

※ 폐기물 명칭 변경 : 고�형화오니 ➡ 하수오니(자원화),
사업장생활계(자가) ➡ 사업장비배출시설계(기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01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공항대로 34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271-64번지 일원
 - 면 적: (기간) 5,446.6㎡ (일시) 1,93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가스배관 보강 공사
 - 내 역: 가스관(D500mm, L6,657m) 1식 매설 구간 중 일부 최소매설심도 확보를 위한 하천 보강(세굴방지블럭(37m x 50m) 설치) 공사
5. 점용기간: 2024.10.16.~2029.10.15.
6. 공사기간: (당초) 2025.11.1.~2025.12.15.
(변경) 2025.12.1.~2026.1.14.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6-102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66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31
 - 면 적: 0.683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전주 2본 설치
 - 내 역: H=12.0m
5. 점용기간: 2026.3.31. ~ 2026.7.31.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